대법관(박영재) 임명동의안
심 사 경 과 보 고 서

2024. 7.

대법관(노경필·박영재·이숙연) 임명동의에 관한
인 사 청 문 특 별 위 원 회

목 차

1. 심사 의안 ····· 1

2. 심사 일정 ····· 1

3.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활동 경과 ····· 2

가. 구성경위 ····· 2

나. 활동경과 ····· 2

다. 회의경과 ····· 3

라. 자료제출 요구 및 접수 ····· 5

마. 서면질의서 및 답변서 제출 ····· 8

바. 구두질의요지서 제출 ····· 8

4. 인사청문회 실시 내용 ····· 9

가. 위원장 인사말 요지 ····· 9

나. 후보자 모두발언 요지 ····· 9

다. 후보자에 대한 주요 질의·답변 요지 ····· 12

라. 후보자 마무리발언 요지 ····· 65

마. 위원장 마무리발언 요지 ····· 66

5. 종합의견 ····· 67

6. 첨부자료 ····· 70

<참고자료 1> 대법관(노경필·박영재·이숙연)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명단

<참고자료 2> 대법관(노경필·박영재·이숙연)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부 록> 대법관(박영재) 후보자 서면답변서

대법관(박영재)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2024. 7. .

대법관(노경필·박영재·이숙연) 임명동의에 관한
인 사 청 문 특 별 위 원 회

1. 심사 의안

대법관(박영재) 임명동의안

2. 심사 일정

가. 임명동의안 제출: 2024. 7. 5.

나. 임명동의안 회부: 2024. 7. 8.

다. 상정 및 청문 일자

제416회국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2024. 7. 16.) 상정

제3차 위원회(2024. 7. 24.) 인사청문회

제5차 위원회(2024. 7. 26.)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3.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활동 경과

가. 구성경위

○ 2024. 7. 5. 대법관(박영재)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었고, 2024. 7. 8. 동 동의안이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회부됨.

○ 같은 달 9일, 의장으로부터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통보가 있었음.

- 더불어민주당 소속(7인): 박범계, 허 영, 김기표, 김남근, 박희승, 백혜련, 주철현 위원
- 국민의힘 소속(5인): 유상범, 곽규택, 박준태, 조배숙, 주진우 위원
- 비교섭단체(1인): 박은정 위원

○ 같은 달 16일, 제1차 위원회에서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이 있었음.

- 위원장: 박범계 위원(더불어민주당)
- 간 사: 허 영 위원(더불어민주당), 유상범 위원(국민의힘)

나. 활동경과

○ 활동기간: 2024. 7. 5. ~ 7. 26. (22일 간)

○ 위원회 구성 및 인사청문회 준비: 2024. 7. 5. ~ 7. 15. (11일 간)

- 제1차 위원회(2024. 7. 16.)

○ 인사청문회 실시

- 제3차 위원회(2024. 7. 24.)

○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 제5차 위원회(2024. 7. 26.)

다. 회의경과

○ 2024년 7월 16일부터 7월 26일까지 3차에 걸쳐 위원회를 개회함.

○ 7월 16일 제1차 위원회에서는

-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함.
- 대법관(노경필·박영재·이숙연)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함.
- 자료제출 요구의 건을 의결함.

○ 7월 24일 제3차 위원회(인사청문회)에서는

- 위원장의 인사와 대법관 후보자 박영재의 선서 및 모두발언에 이어서 후보자에 대한 주질의(위원별로 7분)를 실시하고, 후보자에 대한 보충질의(위원별로 7분)를 실시한 후, 후보자에 대한 추가질의(위원별로 5분)를 실시함.

○ 7월 26일 제5차 위원회에서는

- 위원장 및 간사 간 협의한 심사경과보고서(안)대로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함.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회의경과

차수	일 시	의사일정	심사경과	장 소
1차	2024. 7. 16. 10:00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대법관(노경필) 임명동의안 4. 대법관(박영재) 임명동의안 5. 대법관(이숙연) 임명동의안 6. 대법관(노경필·박영재·이숙연)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6. 자료제출 요구의 건	○ 위원장 선임 -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위원 ○ 간사 선임 - 더불어민주당 허 영 위원 - 국민의힘 유상범 위원 ○ 대법관(노경필·박영재·이숙연)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안)대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로 의결함. ○ 자료제출 요구의 건을 의결함.	제3회의장(본관 제245호)
3차	2024. 7. 24. 10:00	1. 대법관(박영재)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 위원장 인사말 ○ 대법관 후보자(박영재) 선서 및 모두발언 ○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 후보자에 대한 주질의(위원별 7분) - 후보자에 대한 보충질의(위원별 7분) - 후보자에 대한 추가질의(5분) ○ 대법관 후보자(박영재) 마무리 발언	제3회의장(본관 제245호)
5차	2024. 7. 26. 09:00	1. 대법관(박영재)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제3회의장(본관 제245호)

라. 자료제출 요구 및 제출

(1) 교섭단체별 요구 현황

(단위: 건)

합 계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비교섭단체(조국혁신당)
976	578	268	130

(2) 대상기관별 요구·제출 현황

(기관명 수, 단위: 건)

연번	기 관	요구	제출	미제출	부분제출	미제출 · 부분제출 사유
1	감사원	8	2	-	6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 - 개인정보제공 미동의
2	강원랜드	1	-	-	1	- 개인정보제공 미동의
3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	-	1	-	- 개인정보제공 미동의
4	경기도청	9	2	3	4	- 개인정보제공 미동의 - 해당자료 부존재
5	경찰청	58	36	22	-	-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제6조제3항 - 「형실효법」 제6조 - 해당자료 부존재
6	고용노동부	13	13	-	-	
7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1	-	1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8	공무원연금공단	10	4	3	3	- 개인정보제공 미동의 - 해당자료 부존재
9	관세청	25(31)	27	4	-	- 비소관 사항
10	교육부	37	24	3	10	-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11	국가인권위원회	5	5	-	-	
12	국민건강보험공단	33	6	2	25	- 개인정보제공 미동의
13	국민권익위원회	11	11	-	-	
14	국민연금공단	9	0	3	6	- 개인정보제공 미동의
15	국방부	10(11)	11	-	-	
16	국세청	91	91	-	-	
17	국토교통부	30	-	4	26	- 개인정보제공 미동의 - 해당자료 부존재

연번	기 관	요구	제출	미제출	부분제출	미제출 · 부분제출 사유
18	근로복지공단	1	1	-	-	
19	금융감독원	25(20)	-	17	3	- 금융실명법 제4조 - 개인정보제공 미동의 - 해당자료 부존재
20	금융위원회	2(4)	-	4	-	- 해당자료 부존재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12조
21	금융정보분석원	1(-)	-	-	-	
22	농림축산식품부	7	-	3	4	- 개인정보제공 미동의 - 해당자료 부존재
23	대법원	381	381	-	-	
24	대전광역시청	9	9	-	-	
25	대한변호사협회	1	1	-	-	
26	대한적십자사	6	5	-	1	- 개인정보제공 미동의
27	도로교통공단	1	-	-	1	- 개인정보제공 미동의
28	법무부	52	7	34	11	- 개인정보제공 미동의 - 해당자료 부존재 - 당사자의 명예 또는 사생활 침해 우려
29	병무청	9	7	-	2	- 국방부 소관사항 부분이첩
30	보건복지부	1	1	-	-	
31	부산광역시청	7	-	1	6	- 개인정보제공 미동의
32	서울대학교	11	11	-	-	
33	서울특별시	9	-	-	9	- 개인정보제공 미동의
34	서울특별시교육청	3	1	2	-	- 개인정보제공 미동의 - 해당사항 없음
35	신광렬 법률사무소	3	3	-	-	
36	외교부	5	1	-	4	- 개인정보제공 미동의
37	인사혁신처	2	2	-	-	
38	주택도시보증공사	2	-	-	2	- 개인정보제공 미동의
39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5	12	2	1	- 개인정보제공 미동의
40	특허청	4	-	-	4	- 개인정보제공 미동의
41	한국거래소	4	-	4	-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 - 해당자료 부존재
42	한국고용정보원	1	-	-	1	- 개인정보제공 미동의

연번	기 관	요구	제출	미제출	부분제출	미제출 · 부분제출 사유
43	한국도로공사	2	2	-	-	
44	한국은행	12(16)	10	3	3	- 해당자료 부존재
45	한국장학재단	7	2	1	4	- 개인정보제공 미동의
46	한국주택금융공사	1	-	-	1	- 개인정보제공 미동의
47	한국토지주택공사	3	-	-	3	- 개인정보제공 미동의
48	행정안전부	37	24	13	-	- 해당자료 부존재
합 계		976 (983)	712	130	141	

※ ( )안의 숫자는 요구받은 기관에서 재분류하거나 이첩(타 기관으로 이첩하거나 타 기관에서 이첩받은 건수)된 자료의 건수로, 이를 토대로 제출·미제출 건수를 계산함.

마. 서면질의서 및 답변서 제출

○ 서면질의서 573건

교섭단체	위 원 명		
더불어민주당(7인)	박범계	허 영	김기표
	김남근	박희승	백혜련
	주철현		
국민의힘(4인)	유상범	곽규택	박준태
	조배숙		
비교섭단체(1인)	박은정		

※ <부록> 대법관 후보자(박영재) 서면답변서

바. 구두질의요지서 제출

○ 구두질의요지서 (7인)

교섭단체	위 원 명		
더불어민주당(4인)	허 영	김남근	백혜련
	주철현		
국민의힘(2인)	곽규택	박준태	
비교섭단체(1인)	박은정		

4. 인사청문회 실시 내용

가. 위원장 인사말 요지

○ 여러 훌륭하신 위원님들과 함께 박영재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함.

○ 청문회 운영을 책임진 위원장으로서 국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검증은 철저하게 하되 생산적이고 품격 있는 인사청문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 또한, 이 자리에 출석하신 박영재 후보자께도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음. 이번 청문회를 실시하는 과정 속에서 후보자 입장에서는 다소 불편한 질문도 없지는 않을 것임.

○ 그러나, 위원님들의 질의는 국민들을 대신하여 대법관으로서의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니만큼 후보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지한 자세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람.

나. 후보자 모두발언 요지

○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인사청문회를 위하여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림.

○ 주권자인 국민을 대표하는 위원님들 앞에 대법관후보자로서 자질

과 능력을 검증받는 엄중한 자리에 서게 되어, 영광스러운 한편으로 떨리는 마음임.

○ 저는 청소년 시기부터 지금까지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을 좌우명으로 삼고, 재판에 임하면서도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였는지 철저하게 점검하여 최선을 다해 결론을 도출하려고 노력하였고, 그래서 그에 대한 평가에 담담하게 임할 수 있었음.

○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선출과 관련하여, 투표가치의 평등이 지켜지지 않은 선거구 획정과 이에 따른 근로자위원 선거는 무효라고 판결하여 헌법상의 평등 원칙은 선거구 획정에 있어서도 보장되도록 함.

○ 저는 법관 생활 동안 다른 법관보다 법원행정처 등에서 사법행정에 참여할 기회가 많았고, 그 경험은 저로 하여금 재판과 법원을 국민의 시각에서 다시 보게 하였음.

○ 2012년 당시 문제가 되던 이른바 '막말 판사'에 대한 사회적 비판에 대응하여 법관을 대상으로 한 1:1 법정언행컨설팅 제도를 도입하는 데 관여하여 결과의 타당성 못지않게 공정한 외관도 중요하다고 믿고 추진한 이 제도가 지금도 성공적으로 시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보람을 느낌.

○ 2016년 법원행정처에 설치된 양성평등연구반의 반장으로서 법관 연수에 성인지 교육을 도입하고, 피해자 의사를 존중하는 처리절

차 등을 마련함으로써 법원 내 성평등 실현에 기여했다는 긍지를 갖고 있음.

○ 도산사건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2023년 수원회생법원과 부산회생법원을 출범시키고, ‘신속한 도산사건 처리를 위한 종합대책팀’을 운영하여,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국민과 기업의 회복을 돕는 데 다소나마 역할을 한 것도 뿌듯한 기억으로 남아 있음.

○ 최근 국민들께서 법원에 요구하는 바를 헤아려보면, 법원이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는 재판 지연의 해소임. 상고심 재판을 담당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복잡하게 얽혀있는 재판지연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저의 경험과 지식을 보태어, 우리 법원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음.

○ 오늘 귀한 시간을 내어 청문회를 준비해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림.

다. 후보자에 대한 주요 질의·답변 요지

1) 대법관으로서의 자질과 소신에 관한 사항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법원행정처에서 사법행정 경험을 많이 하셨는데, 법원행정처 경험 중 주목할 만한 성과는 무엇이 있는지?	○ 법정언행컨설팅, 양성평등연구반, 회생법원 설치 및 지원 등이 있음. 그 밖에 사법서비스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 등을 위한 접근센터 설치에 관여함. 또한, 영상재판과 형사전자소송 제도의 출범 준비에 관여함.
○ 후보자는 선후배로부터 두터운 신망을 받고, 대인관계도 아주 훌륭해 평소에 후보자 같은 분이 대법관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함.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마음의 빚이 있어 사법시험 준비를 했다고 했는데, 생각나는 게 있는지?	○ 대학 재학시절 당시 사법시험을 준비해야 하는지 고민한 동기, 친구들이 많이 있었음. 법조인 중 당시 시대상에 대한 고민으로 법조경력이 늦어진 분들이 있고, 이 당시 사회적 상황에 참여하지 못한 데 대해서 이 분들에 대한 마음의 빚이 있음.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마음의 빚, 대법관이 되면 꼭 지켜주길 바람	○ 명심하겠음.
○ 인사말씀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마음의 빚은 법관이 되어 어려운 사람이 되어 돕는 것으로 갚겠다.”라고 발언한 부분은 인상 깊음. 판사	○ 유념하겠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생활하는 동안 그러한 정신에 충실했기를 바라고, 앞으로도 대법관이 되어서도 소신을 관철하기를 바람. ○ 사법부의 독립은 정치권으로부터의 독립이 중요함. 정치인들이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과 관련하여 재판부에 압박을 가하는 경우가 보이는데, 후보자는 이런 부분에 대해 판사로서 독립해서 판결할 자신감 있는지?	○ 국가권력, 여론으로부터 독립해 재판해야 하고, 저도 그렇게 해야 함.

2) 대법원의 구성·기능 및 사법정책·제도에 관한 사항

(2-1) 대법원의 구성·기능에 관한 사항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재판 중에 재판의 당사자인 국민이 나라의 주권자이고 나의 권력의 원천이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지?	○ 직접적으로 생각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음.
○ 미국 등 선진 국가에서는 법관을 선출하거나 아니면 선출직에 의해 직접 임명을 하고 있는바, 이를 통해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대법관 외 나머지 법관은 고위직 공직자임에도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대법원장이 임명한다는게 맞지 않다고 보이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 이전에 권위주의 시절에는 대통령이 법관을 임명했던 때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는 바람직하지 않고, 현재 대법원장이 국민의 선출을 받지 못한 사람이 하게 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은 충분히 지적받을 수 있다고 생각함.
○ 법관의 임명방식이 바뀔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지? 그래야 민주적 정당성이 확보되고 국민의 신뢰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 일부 국가에서는 법관이 선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장단점이 있다고 보이고 관련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임.
○ 현재 법원은 민주적 정당성이 부족하다고 보이는데, 대법원장이 법관들을 임명하고 연임하게 됨에 따라 국민들이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함. 법관이 주권자로부터 선출된다는 것은 국민을 섬기는 기관이 된다는 의미와 동일하다고 생각되는데, 향후 이에 대	○ 향후 검토해 보겠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해 검토해 볼 생각이 있는지?	
○ 적절한 대법관 수가 몇 명이라고 생각하는지?	○ 대법관은 규범적 가치기준을 선언하는 역할을 함. 그러므로 너무 많은 것은 곤란할 수 있으나, 지금보다 늘어날 수는 있다고 생각함. 개인적인 의견을 밝히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현재보다 5명 이내로는 증가해도 된다고 보임.
○ 올해 초 대법관 인사청문회에서 대통령이 원하지 않는 대법관은 대법원장이 제청하지 말라는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침해하는 일이 있었음. 이것은 삼권분립에 반하고 대법원장의 임명제청권을 중대히 침해하는 심각한 행위로 보여지는데 후보자의 의견은?	○ 대법관 임명은 삼부가 각자의 역할을 하게 되어 있음. 대통령의 임명권과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각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함.

(2-2) 사법정책·제도 관련 사항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재판지연 관련>	
○ 법원의 문제점, 우선순위, 해결과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 법원의 문제는 국민신뢰 저하임. 그 이유는 재판지연이고, 이에 대한 해결이 중요함.
○ 공직선거법 관련 빠른 결론이 나도록 선거법에 재판 기간 관련 강행 규정을 두고 있으며, 대부분의 선거법 재판에서 100일 정도 내외에 1심의 결론이 나온다는 통계가 있음. 그러나, 주목받는 사건 또는 정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한 재판이 지연된다는 지적이 있음. 해법이 있는지?	○ 선거재판 여러 번 담당했는데, 법원 내외부로부터 신속한 재판을 하라는 의견을 듣고 있음. 최근 몇몇 선거재판에서 재판이 지연되는 점에 마음이 무거움. 소송지휘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 함.
○ 지난 4년간 국정감사장에서 재판지연과 관련하여 개선방안을 요구받았는데, 실제로 가시적인 성과가 별로 없어 보임. 어떻게 생각하는지?	○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송구함.
<양형 관련>	
○ 최근 양형위원회에서 지식재산권과 기술 침해 범죄에 대해 양형기준을 강화하는 결정을 하였음. 2022년도 사건 통계를 보면, 43건의 영업비밀 침해 사건 즉, 우리나라의 선진 첨단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거나 타인에게 유출된 사건에 있어 징역형이 선고된 사건이 6건에 불과함. 양형위원회 운영에 있어 시기성, 적정성이 부족한	○ 위원님 지적에 공감함. 양형이 시대에 맞는 양형, 상황에 맞는 기준이 성립될 필요가 있는데, 양형기준 변경에 대한 많은 요청을 받아 과부하가 걸린 탓인지 시의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많은 지원을 통해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임.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것으로 보임. 후보자는 향후 양형위원회가 어떻게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 양형 기준이 다소 추상적이고 해석이 다르다 보니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임. 양형 기준을 조금 더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 강력범죄에 대한 양형 강화와 더불어 무고죄에 대한 양형 강화도 함께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 법관이 양형에 대한 재량을 갖고 있으나 국민의 법감정을 반영하기 위해 양형기준이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고, 강력범죄, 무고죄 등을 포함해 여러 범죄에 대해 세부적인 기준 마련 필요하다고 생각함.
○ 중앙보다 지방에 양형이 센 경향이 있음. 서울에서는 몇 억대 사기 사건이 많은데, 지방에서는 흔치 않음. 중앙과 지방간 양형 차이에 대한 부분을 잘 살펴보고 균형을 잡기를 바람.	○ 유념하겠음.
<수사 사법통제 관련>	
○ 후보자는 압수수색이 무리하게 남용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 동의하는지?	○ 많은 지적 있다고 알고 있음.
○ 노경필 후보자는 사전심문제도 도입하는 것에 대해 대법원 규칙으로 하는 것이 맞는지 법으로 제정하는 것이 맞는지 심도있게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하나, 다만 법률에 의하는게 타당하다는 일부 입장도 있고 법률안도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음. 그런 상황에서 법원이 대법원규칙으로써 바로 추진하는 것이 맞는지는 검토해 보아야 함. 법안이 주효하지 못하다거나 대법원 규칙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있으면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같이 논의해야 한다고 봄.
○ 조희대 대법원장도 법률로 추진하겠다고 말씀했음. 검찰은 반대하고 있음. 23년에 45만건에 발부율이 99%임. 주거지 압수수색은 과도한 인권침해소지가 있고 생을 마감하는 불행한 일도 벌어짐. 대법관이 되면 이 부분 문제의식을 가지고 대해야 하고, 법률로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은 많은 검찰 반대를 이유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도 높음. 압수수색 영장과 관련하여서는 절차에 관련된 것이기에 굳이 법률이 아니어도 규칙으로도 가능하다고 생각함. 대법관 후보자로서 검찰의 반대를 물리칠 수 있는 보다 바람직한 방안을 생각해 주셨으면 함.	○ 명심하겠음.
○ 압수수색 영장 관련, 발부율은 점점 높아지고 있음. 99%에 달하는데, 거의 기각되지 않고 바로 발부되는 형태임.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문제에 대해 두루뭉술한, 검찰의 손을 들어준 것 같은 답변을 했음. 후보자는 대면심리제 찬성인지 반대인지?	○ 찬성임.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였음.
○ 압수수색 사전 심문제도 도입 논의 관련, 압수수색은 수사 초기에 단서를 확보하기 위한 강제수사 수단임. 심문을 한다는 것은 사건당사자 즉,	○ 수사 밀행성, 신속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됨.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피의자를 심문할 수 있다는 뜻이 포함될 수 있는데, 수사 초기단계에서 판사가 당사자에게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이유로 심문을 하는 경우 수사 밀행성이 침해될 수 있는 것 아닌지?	
○ 압수수색 사전 심문제도 도입 논의 관련, 법원에 재량을 부여하여 선택적 심문으로 규정하게 된다면 형평성 문제 발생 소지가 있다고 보임. 형사소추절차는 죄형법정주의를 전제로 함. 따라서 관련 제도의 구체적인 사항을 대법원 규칙으로 규정한다는 것도 논란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후보자의 생각은?	○ 형사절차 법정주의 주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관련하여 발의된 법안도 심의가 필요하다고 보임. 다만, 피의자의 인권 보장 측면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법에 규정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
○ 압수수색영장 대면심리 제도 도입 관련 법안의 내용 중 문제는 피의자나 변호인의 참여권 규정임. 이 경우 수사의 내용이 피의자에게 공개되는 문제가 있고, 수사의 밀행성을 유지하기 힘들게 됨. 또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 신청한 후 즉각 압수수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수사의 시기를 놓칠 수 있게 되는 문제가 발생함.	
○ 압수수색영장 대면심리제도는 법원에서 대상 사건을 임의적으로 선택할 수 밖에 없게 됨. 즉, 특정 경우에만 심문을 하게 됨. 따라서, 정치적 사건을 심문하지 않게 될 경우 편파성	○ 제도 도입 여부 결정에 있어서는 의원님의 의견이 고려되어야 함. 수사의 밀행성과 신속성 부분도 특히 고려되어야 함. 제도 도입 여부와 방식을 결정할 때 많은 점이 고려되어야 함.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논란이 발생할 수 있게 됨. 따라서, 이런 제도를 도입할 경우 법원이 정치적 논란에 휩싸이게 됨. 후보자의 견해는 어떠한지?	
○ 미란다 원칙은 최초 입법에 근거한 것이 아니었고, 법원이 수사기관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판결로써 제재를 한 것임. 따라서, 미란다 원칙은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고 그 철학과 원칙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 동의함.
○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할 때 그 범위가 특정되지 않고 너무 광범위하다고 법원이 느꼈다면, 법원이 판례를 통해 범위를 특정하는 등 통제를 하는 것이 미란다 원칙의 철학에 부합하는 것임. 검찰이 반발한다고 해도 사법부가 기본적 철학을 놓쳐서는 안 됨. 후보자는 동의하는지?	○ 동의함. 대법원 판례도 피의자가 압수수색 절차에서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고, 전자정보 압수수색의 범위를 정하고 있음.
○ 국민 입장에서는 사법부가 수사기관의 권한남용에 대한 통제를 해 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데, 법원이 입법이 안 되었다고 소극적으로 나서면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높음. 그런 점에서 법원은 압수수색영장 대면심리 제도 도입에 대한 문제 해결에 스스로 나서야 함.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 저도 동의함. 다만, 법안이 제출되어 있는 과정에서 법원이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에 대한 고민이 있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구속영장실질심사 제도가 논란 거치면서 정착이 되어서 피의자 인권이 증대된 측면이 있음. 따라서, 압수수색 영장의 과도한 발부로 인한 인권 침해요소에 대해서도 판례라던지 대법원 규칙을 통해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법원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봄.	
○ 조국 전 장관에게 최초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할 때, 사모펀드 등 단순히 언론 기사에서 나온 내용을 모아서 청구하였는데, 결과적으로 무죄가 선고됨. 이는 사회적 주목을 끄는 사건에 대한 압수수색을 경계해야 하는 이유임. 이런 측면에서 대면심리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후보자의 견해는?	○ 위원님 말씀에 공감함.
○ 조서에 의한 재판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검사의 권한이나 역할이 축소된다고 생각하지 않음. 검사는 공판정에서 멋진 공판수행능력을 보여주면 된다고 생각함.	○ 위원님 말씀에 공감함.
○ 대부분의 압수수색 영장은 보이스피싱, 인터넷 댓글 명예훼손사건, 해외직구 사기 사건 등에 주로 활용됨. 만약 압수수색 영장 제도가 바뀌게 되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빨리 구제받지 못하고 범인을 놓치게 될 수 있고, 대한변협도 같은 맥락에서 반대	○ 국회에 법안이 제출되어 있는 상태라 국회의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그에 따라 대법원에서 후속적 논의가 필요할 것임.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하고 있음. 그러한 차원에서 국민 이해관계를 생각했을 때 대면심리제도를 예규보다 법에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함. 후보자의 견해는?	
○ 후보자는 대검 D-Net 자료 중 별건 수사에 활용하여 문제된 사례를 알고 있는지?	○ 구체적으로 확인해보지는 않았지만 하급심 판례에 있었다고 알고 있음.
○ D-Net에 전체 이미지 파일을 보관하는 것은 해시값 때문이고, 핸드폰의 경우 각종 앱이나 SNS, 메신저 등은 한 개의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저장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분리할 수 없음. 검찰에서는 재판이나 사건이 종결되면 폐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분기별로 한번씩 점검을 하고 있음. D-Net의 불법적 사용에 대해 우려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들이 되어 있고 대법원에서도 이미 그 불가피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림.	○ 알겠음.
○ 수사절차에 있어서 수사권 남용에 대해서 국민들의 관심이 많아지는 것 아는지?	○ 알고 있음.
○ 법관들이 수사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특별한 노력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음. 동의하는지?	○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음.
○ 그나마 증거를 조작한 간첩죄 누명 사건은 법원이 공소권 남용 및 수사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권 남용을 지적한 훌륭한 사례지만, 헌법재판소에서 당시 대법원의 판단을 5대4로 기각한 바 있음. ○ 후보자는 검찰과 수사기관에 대한 사법통제를 서면답변에서 강조한 바 있음. 그런데 주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만 언급하고 있음. 불기소 처분이 아닌 공소권 남용 방지를 위한 제도적 방안이 별도로 없음. ○ 그래서 법왜곡죄는 의도적으로 잘못된 법적용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필요성이 언급되고 있는 것임.	
○ 우리나라 법관이 법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앎. 그런데 왜 우리 법원은 법왜곡죄의 도입이 대상인 법관을 탄핵으로 몰아가는 것으로 생각해 두려워 하는식으로 답변을 하는지?	○ 공소권 남용에 대한 우려와 부작용에 대한 대응으로 법왜곡죄가 논의되는 것으로 앎. 다만, 시행되는 과정에서 재판의 독립 침해에 대한 우려가 있음.
○ 국회에서 법왜곡죄를 만들면, 법관의 독립적인 재판권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수 있음. 만약 본인에게 불리한 재판 결과가 나오면 그 책임을 검사나 판사에게 돌리는 셈이 됨. 법왜곡죄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은?	○ 위원님이 지적하신 문제 의식을 공감함. 제도를 새로 구상할 때에는 그러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단점이 없도록 만들어야 할 것임.
○ 1심에서 당사자가 원치 않는 판결을 선고받고, 당사자가 법왜곡죄로 고소고발하면 결국 경찰이나 검찰로부터	○ 재판을 한 판사나 수사를 한 검사에 대해 고소고발이 이루어진다면 사법시스템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제대로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판사가 수사를 받는 결과가 됨. 이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사법시스템에 대한 문제임.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된 역할을 할 수 없게 된다고 생각함.
○ 법왜곡죄가 규정하는 것은 고의로 사실관계나 증거를 조작한다든지 고의로 해야 될 것을 안 하거나 안 해야 될 것을 하는 경우에만 적용함. 이는 사법부의 일반적 심급구조상 하기 힘든 일임. 법관이 스스로 자신을 경계하게 하기 위한 마지막 통제 수단으로서 법왜곡죄는 의미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함.	○ 독일에서도 몇 건 있지는 않지만 법왜곡죄 제도가 존속하는 이유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에 있다고 이해하고 있음.
<형사사법체계 관련>	
○ 검찰청법 제5조 기억하는지? 검사의 직무관할이라는 조항임. 수사에 필요할 때만 관할 구역이 아닌 데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내용임. 소속 검찰청 검사가 공판에 들어와야 하는데 타 청 검사가 들어오기도 하는데 어떠한지?	○ 그 부분은 검찰청 내부의 문제라 제가 말씀드리기 어려움. 이의가 제기되면 법원에서 판단할텐데 이의가 제기된 적은 없었음. 검토해볼 필요는 있다고 보임.
○ 기소검사가 공판에 관여하는 것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수사와 기소 분리해야 하는데 공판을 기소한 검사가 진행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 정확한 사실관계는 모르나, 기소검사가 직관이라고 해서 공판에 관여하는 경우도 본 것 같음.
○ 검찰청법 제4조제2항에 보면, 검사는 자신이 수사개시한 것에 대해서는 공	○ 살펴보도록 하겠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것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과거 관행이 없어지지 않고 진행되는 것 같은데?	
○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위증교사 재판이 진행되고 있으나 법에 의거하지 않은 불법 재판임. 검찰청법 제4조에는 수사 범위에 대해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라고 명시되고 있음. 그러나 '등'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기소하는 것은 문제 아닌지?	○ 답변드리기 어려움.
○ 권한 없는 자가 수사한 사건에 대하여 재판의 효력이 있는지? 재판 자체가 불성립하는 것이 아닌지?	○ 기본적으로 권한 없는 수사기관이라면, 해당 수사기관의 서류를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음.
○ 검찰청법 제4조에 따르면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에 검사의 수사개시권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증죄 등은 예정하지 않는 것으로 법률이 개정되었음. 그런데 시행령에서 여러 범죄를 규정하고, 검찰은 이를 근거로 수사개시를 하고 있는 상황임. 시행령이 본법에 어긋나서 시행령의 효력이 없다면 기존에 수사했던 것의 효력은? 이 경우 재판 자체가 불성립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법률의 집행이 필요하지 않은 내용의 시행령이라고 한다면 이는 효력을 가질 수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있으며, 재판과정에서 법률적 쟁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함.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검찰의 수사권 관련 논의가 많이 있음. 검찰청법 제4조에서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등가성을 표현할 때 “등”을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유사 중요 범죄는 수사권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반드시 부패범죄, 경제범죄로 제한한 것은 아니지 않은지?	○ 바로 답변하기는 곤란함.
○ 검찰청법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무고죄, 위증죄 등과 같이 사회적 사법질서를 유지하고 수사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검찰이 수사를 한 것은 타당하다고 보임. 특히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는 것은 수사권에 대한 판단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 재판이 진행되거나 영장이 발부가 되었다면 그 부분은 판단이 되었다는 뜻이라고 생각함.
○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에 위반될 경우 공소기각을 하도록 되어 있음. 수사기관이 수사권이 없는데 수사를 행하면 공소기각의 사유가 됨. 그래서 검찰이 부패수사와 경제수사만 직접수사할 수 있는데, 시행령 통해 위증, 무고 등으로 수사범위를 확대한 것이 논란이 됨. 따라서, 시행령의 위법성을 판단해야 하는데 어디서 하는지?	○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심사해야 함.
○ 법원이 검찰이 위증, 명예훼손 부분에 대하여 수사권이 없는데 수사한 것을 공소기각 판결을 통해 명확히해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야 함. 그런데, 판사들은 수사절차에 문제가 있으면 양형에 반영하는 것을 생각함. 정확히는 법원이 수사권 없는데 수사를 한 것은 공소기각 판결을 통해 수사기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함.	
<법원조직·운영 관련>	
○ 해사법원 설치가 필요한 시기라고 보이는데, 아직 해사 전문법원이 없는 상황임. 제20대 국회와 제21대 국회에서도 해사법원 설치 관련 법안이 발의됐으나, 무산된 바 있음.	
○ 우리나라에 해사전문법원이 없고 외국에서 소송할 수밖에 없어, 약 4,000억원 추정치 정도의 국부가 유출되고 있다는 연구가 있음.	
○ 후보자는 서면답변에서 해사법원 설치시 예상 사건 수가 확정되어야 한다고 답변하였으나, 국내의 사건 수만으로 해사법원 설치의 적절성을 검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 후보자는 향후 법원행정처장을 하실 수도 있다고 보이는데, 후보자의 해사법원설치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지?	○ 부산고등법원 근무 시, 해사법원 관련 다양한 의견을 청취한 바 있음. 해사법원이 설립되어 전문성을 갖게 되면 국부의 유출도 막고, 발전도 있을 것이라고 봄.
○ 코로나 이후 개인회생신청이 늘어나	○ 7~8개월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고 있음. 후보자는 수원 또는 부산회생법원을 출범시킨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 개인회생 신청부터 변제계획인가까지 평균소요기간을 아는지?	
○ 지난해 평균 8.4개월이 소요된다고 함. 개인회생 절차가 지연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 기본적으로 채권자들에 대한 변제가 늦어지겠지만, 더 나아가 채무자가 파산으로 갈 수 있음.
○ 개인회생 절차가 지연되면 파산을 선택하는 경우가 늘어날 수 있음. 후보자는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한 복안이 있는지?	○ 수원, 부산 2개의 회생법원이 생기고 난 후 사건 접수도 많아졌지만, 사건처리도 빨라짐. 적어도 고등법원 소재지에는 회생법원이 생겨서 회생절차가 빨리 진행되고 국민들이 경제로 빨리 복귀할 수 있게 되면 좋겠음.
○ 회생개시 판단이 법원별로 다르다는 지적도 있음. 언론에 따르면 신청자들이 어느 법원이 더 관대한지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 이사를 가는 경우도 있다고 함. 회생절차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회생개시 판단 기준을 확립하고 실무준칙을 만들어 일반법원에 적용할 필요가 있음.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 회생절차도 재판절차의 일부로 준칙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부분이 있음. 다만, 준칙이 생겨 참고해서 진행하면 큰 도움이 될 것임.
○ 법원 청사와 검찰 청사가 같은 위치에 있는데, 다른 나라는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음. 다른 나라 중 법원 청사와 검찰 청사가 위치가 붙어있는 경우는 검찰이 기소권만 있는 나라임. 이는 일제 강점기 통치의 수월성	○ 연혁적 이유와 형사재판의 수월성이라는 이유가 있지만, 다른 나라의 사례에 비추어 법원 청사와 검찰 청사가 함께 있는 것은 예외적인 경우임. 일본의 경우도 최근에는 달리 가는 경우가 많다고 함. 국민들이 볼 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을 위해 위치를 묶어 논 데서부터 기인하는 것으로 보임. 과거 법원청사 신축 시 검찰청사와 위치를 달리하려고 하면, 검찰이 반대해서 실패했던 기억이 남.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법원, 검찰 상호 독립된 기관이라는 인식을 위해 고민할 필요 있음.
○ 외형적으로 법원은 사법부, 검찰은 행정부인데 같은 위치에 있으므로, 국민들이 사법부가 나의 편이 맞느냐는 오해가 있고, 법원과 검찰의 구분이 어려운 측면이 있음. 향후 법원행정을 담당하게 된다면 법원과 검찰청사 위치의 분리가 필요하다고 봄.	○ 잘 이해하고 있음.
○ 배석판사들이 부장판사와 식사도 안 하는 등 사법부의 선후배 간의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현재 사법부 분위기를 방치할 것인지?	○ 위원님 우려에 공감함. 저도 선배 법관들로부터 큰 도움을 받았고, 제 생각의 중추도 거기에서 연유한 바 있음. 최근 법관들 사이에 식사도 잘 안 하는 분위기는 안타까움. 저는 적극적으로 노력한 편이고, 이것이 도움이 됐다고 말하는 후배들도 있음.
○ 저도 과거 법원근무 시의 배석판사와 현재까지 교류하고 있음. 법관들 간 교류와 대화를 통해 사건 처리에 대한 경험들이 공유될 수 있음. 지금 사건처리율이 떨어지는 것은 법관들의 개인주의적 문화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봄. 사법행정 차원에서 문제해결을 위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보는	○ 선배들을 직접 만나서 들은 후 습득하게 되는 여러 가지 정보와 지식도 일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는데,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데, 후보자의 견해는?	
○ 최근 외부인사 중심의 사법행정자문위원회를 폐지하고, 법원조직법상 사법정책자문위원회를 부활시킴. 이는 사법농단의 폐해를 극복하는 노력에 역행하는 정책 아닌지?	○ 사법행정자문위원회는 제가 기조실장 및 차장으로 있을 때 운용된 제도임. 사법의 민주화, 투명화를 위해서 만든 것인데, 사법행정자문위원회는 사법행정위원회를 전제로 하여 만든 조직인데 사법행정위원회가 결국 입법에 실패하였음. 이에 따라 법에 있는 사법정책자문위원회를 다시 활용했던 것임.
○ 그렇다면 사법정책자문위원회를 기존 사법행정자문위원회의 취지에 맞게끔 상설로 운용하고 외부 인사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참고로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은 비법관 위주로 구성된 다양한 합의제 사법행정기구를 운영하고 있음.	○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함.
<법관인사제도 관련>	
○ 경력법관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5년, 7년 경력의 법관을 신규채용하고 있어서, 우수인력이 법원에 못 오고 있음.	○ 법조일원화는 경륜 있는 법관을 임용하려는 의도였으나, 실제로는 그 목적을 위한 여건이 잘 갖추어지지 못함. 법조경력이 긴 분들은 법원에 오기 쉽지 않고 앞으로 어려움이 예상됨.
○ 21대 국회에 법조일원화 관련 법안이 제출되었으나 잘 안 됐음. 후보자도 알고 있는지?	○ 국회에서 부결되었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재판 지연의 원인 중 하나는 우수한 인적자원이 법원에 들어오지 못하는 데 이유가 있음.	○ 동의함. 과거 인사업무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우수한 인력의 채용이 가장 중요함.
○ 최근 10년간 판사 임용을 살펴보면, 10대 로펌 변호사들이 58%임. 특정 로펌 출신 변호사가 법관이 되어 후관예우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유능한 인사 채용에 애로사항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특정 로펌 출신 법관 채용도 문제 아닌지?	○ 맞음. 대형로펌 출신이 법관으로 임용되는 데 비판 많다는 것 앎. 앞으로 이런 비판에 대응해 임용제도 개선을 검토해야 할 것임.
○ 개혁의 미명 아래 추진된 현재 사법시스템은 완전히 망가져있다고 생각함. 법원장추천제는 인기투표로 변질될 수 있고, 고법부장승진제 폐지는 판사들로 하여금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의욕을 꺾는 제도임. 이로 인한 재판지연 등의 부작용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피해를 야기함.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의 사법시스템을 다시 그 전으로 복원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후보자의 견해는?	○ 위원님 말씀에 상당히 공감을 함. 국민에 대한 책무를 다할 수 있는 사법부가 되기 위해서는 반성과 성찰이 필요하고, 필요하면 예전의 제도에 대한 재고려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임.
○ 재판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거의 제도를 다시 복구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음. 고법부장승진제 부활은 없었던 혜택을 다시 살리는 것이라 법원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는 있지만, 고법부장승진제가 법관의 일할 의욕 고취에는 기여하였다고 생각함.	○ 고법부장승진제는 이미 폐지된 지 수년이 흘러 같은 모습으로 부활하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됨. 다만 다른 방법으로 인사제도를 합리적으로 수정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함.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위원님의 견해는?	
○ 인사평가제도가 형해화되어 업무평가가 인사에 반영되지 않아 판사의 업무몰입도가 떨어진다는 점, 법원장추천제로 인해 사법행정에 대한 지휘가 되지 않는 점을 지적함. 다행히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후에는 법원장추천제를 사실상 폐지하는 것으로 앎. 대법관이 되시면 병폐적 제도를 과감히 폐지해 주기를 바람.	○ 유념하겠음.
○ 후보자는 법원행정처 경험도 있고 인사 업무도 많이 해봄. 2011년 사법개혁 관련하여 국회에 사개특위 구성되었을 당시 법원 관련된 개혁안으로는 크게 2가지가 있었음. 대법원에서 사건 적체가 심해 대법관 수를 대폭 늘려야 한다는 것과 법조일원화로 법조경력 10년 이상의 법조인만을 법관으로 임명하는 것임. 이와 같이 사법부에 대한 개혁 요구가 있었는데 알고 있는지?	○ 당시 근무는 안 했지만 알고 있음.
○ 대법원에 사건이 적체되어 신속한 재판이 안 되는 것은 대법관 수가 너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국회에서 대법관 수를 두배로 늘려주겠다고 하니, 법원에서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며 이유를 대법관의 권위가 떨어진다며 그 안은 법원에서 받아들	○ 아시다시피 법조일원화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음. 로클럭 등 제도가 완비되어야 쉽사리 정착이 가능할텐데 법원의 개선 작업이 성공적으로 못 된 것은 맞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일 수 없는 안이라고 하였음. 그래서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되고, 법원에서 받아들인 개혁안이 법조일원화 안이었음. 이것도 처음에는 법조일원화였는데, 법원측에서 국회에 이야기해서 단계적으로 된 것임. 5년, 7년 등 단계적으로 하는 조건으로 10년의 법조일원화 시행 시기를 상당히 늦춰준 것임. 지금 5년 법조경력자로 법관을 임용하다가 내년부터 7년으로 한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 대법원에서는 여러 이유로 사실상 시행이 힘들다는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 논의가 10년도 훨씬 넘음. 그렇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10년 경력자를 법관으로 선발하는 시대가 오는데도 법원에서는 별다른 준비를 안했는지?	
○ 재판을 받는 당사자들이 보기에, 법관들이 너무 어려보여서 과연 내 사건을 경험이 풍부하고 여러 사건을 다뤄본 법관이 재판을 보는 것이 맞는지 의구심이 생겨 그렇게 한 것임. 그 당시에는 사법연수원 시스템이었지만 그 뒤에 로스쿨이 되어 따져보면 만 19세에 대학 입학하여, 로스쿨까지 7년 마쳐봐야 만 26세임. 군대를 안갔다오는 상황일거 같으면 만 26세부터 5년이라는 법조 경력을 지	○ 법원에서도 준비는 부족했으나, 제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는 여건이 법원 외에서도 만들어졌어야 하는데 그게 아쉬움. 인적·물적 지원과 처우의 상향 등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못된 것도 요인이 아니었나 아쉬움이 남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나봐야 만 31~32세임. 그런 분들이 그대로 법관으로 임명되는 것임. 당시 법조일원화라는 취지에 지금도 굉장히 못미친다고 생각함. 10년 법조경력자를 원래 법 취지대로 한다 하더라도 30대 중반 정도 되어 법관이 되는 것인데, 그 정도는 연륜 있는 분이 법관이 되어야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올라가지 않냐 하는 것이 국회의 논의였고 사법부에서도 받아들인 것임. 그런 취지를 생각하면, 5년 법조경력해보고 법원에서는 준비도 안 되어 있고 하니 10년으로 하면 법원에 지망하는 사람이 없다고 하니 얼마 안되어 다시 없던 것으로 하고 5년으로 굳히자는 것은 법원에서 준비는 안 한 상태로 있으면서 결국에는 법 취지는 몰각하는 것임. 그에 대해 입장을 말해주시기 바람.	
○ 법관이탈 가속화된다는 지적이 있음. 15년차 이상 판사 이탈에 대한 2018년부터 2024년까지 퇴직자 71명을 분석해보니 평균 4.2년만에 법복을 벗었다고 하고 1년만에도 6명이나 됨. 올해 2월 정기인사에서도 57명이나 사직하였음. 법관의 이탈 원인이 무엇이라고 보는지?	○ 설문조사 해보면, 이유에 관해 지방근무와 경제 상황을 가장 많이 꼽음. 그 밖에도 업무량이나 난이도도 꼽기도 함.
○ 결국은 경제적 문제도 심각하지만,	○ 처우개선이 필요함.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법관이 공무원 3급 이상에 해당하지만 로펌에 비하면 처우가 낮음. 경력 대비 인센티브 강화하고 보수 현실화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의견은?	
○ 법원 예산을 살펴보면, 21년부터 지난해까지 평균 인상률이 1.6%로, 같은 기간 물가인상률 3.7%에도 미치지 못함. 업무용 택시 예산이나, 20년 이상 노후 청사가 32곳이나 되는 등 사법부 예산 근무환경 필요한 예산이 많은데, 법원이 요청한 유지보수 예산 대비 실제 편성은 52%밖에 안 됨. 절대적으로 증액이 필요한데 어떤 노력 하는지?	○ 기재부와 국회를 상대로 요청은 드리나, 말씀처럼 충분히 성공적으로 못하고 있음. 많은 관심을 바람.
○ 우수한 인적 자원 확보하고 양질의 재판 위해서는 예산이 많이 필요하고, 법원 구성원의 노력도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국회에도 많이 설명하고 설득해야 함.	○ 그렇게 하겠음.
○ 법조일원화 관련, 검사와 판사의 보수를 같이 책정하고 있는데,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판사에 연동하게 되어 있는데, 이는 법조일원화 시점에 문제가 있음. 왜냐하면 임용되는 것 자체가 다른 시기인데, 판사는 바로 임용이 되지 않고 법조경력을 가진 사람 중에 임명이 되는 것이고, 검사는 바로 로스쿨 졸업 후	○ 의견에 공감함. 법관과 검사의 보수가 연동되어 있던 것은 연수원 수료 후 임용 시기가 같다는 특성이 반영된 것이며, 법조일원화 채택 상황에선 맞지 않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임명이 되고 있음. 그럼에도 판검사의 보수체계가 연동되어 같이 가는 것은 법조일원화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 보이며, 이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 법조일원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 부분도 개정되어야 할 부분이라 생각함.	○ 많이 도와주시기 바람.
<기타 사항>	
○ 사형제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사형제에 대해서는 존폐론이 존재함. 아직 우리나라는 사형제도를 두고 있으므로 폐지에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함.
○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높지 않음. 국민은 대형 로펌 등 각종 인맥이 작용해서 재판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고, 법관들 스스로의 비위에 대해서는 처벌받지 않는다고 불신함. 실제로 양승태 전 대법관의 통합진보당 행정소송 재판개입 사건, 고영환 전 대법관의 부산고법 판사 비위사건에 대한 재판개입 사건, 임성근 전 판사의 재판개입 사건 등의 재판에서 사실관계는 모두 재판개입을 인정했지만, 결론은 권한이 없으므로 직권남용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로 모두 무죄판결이 남. 일반 국민들은	○ 죄형법정주의 대원칙에 의해서 형사처벌은 형법에 규정된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권한이 없으면 권한이 있는 경우보다 죄질이 더 나쁘다고 느낄텐데, 이렇게 국민의 법감정에 어긋나는 판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 독일은 권한이 없더라도 상급자의 지위를 이용하는 경우 지위남용죄로 처벌하는데, 우리나라도 지위남용죄가 도입될 입법적 필요성을 인정하는지?	○ 독일에 지위남용죄와 같은 처벌 규정이 있다고 들음. 여러 가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입 필요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반대의 문제도 있음. 적극적 행정을 했는데, 직권남용죄로 처벌받는 경우도 있음. 권위적 정권으로부터 부당해고된 교사를 채용했다고 해서 직권남용죄로 재판받는 교육감도 있음. 즉 법원의 직권남용죄 적용 기준이 불분명한 측면이 있고,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직권남용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 적극적 행정을 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함. 직권남용죄 법리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야된다고 보는데, 후보자의 견해는?	○ 위원님 말씀에 공감함. 직권남용과 관련하여 판례가 축적되고 있기는 하나 아직 명확한 기준이 설정된 것은 아님.
○ 재벌총수가 실형을 선고받는 예가 적음. 대부분 재벌총수는 특경법상 횡령이나 배임으로 처벌되고, 최하 형량이 징역 5년이라 집행유예가 나오기 어려운데, 왜 이렇게 집행유예가 많이 나오는 것인지?	○ 구체적인 사건 내용을 알지 못하여 답변드리기 힘듦.
○ 중소기업에서는 몇 억 횡령해도 실형인데, 대기업은 몇 십, 몇 백억을 횡	○ 재벌총수의 형량이 일반적 경우보다 관대하다고 보는 지적을 잘 알고 있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령해도 집행유예를 받으면, 사법부가 사건이 아닌 사람을 보고 재판한다고 국민이 오해할 수밖에 없음.	고, 법원 내부에도 그러한 논의가 있음. 최근 양형기준이 다소 강화되기는 하였지만 더욱 위원님 말씀에 부합하는 양형기준이 마련되기를 바람.
○ 재판에 대해 국민들이 공정하지 못하다, 기울어진 운동장 재판이라고 비판하고 있음. 경제적 약자들이 경제적 강자인 대기업과 분쟁할 때 많이 생김. 대표적으로 기술 탈취임. 기술 침해했단 증거는 대기업 내부에 있는 것이고 자료를 내놓지 않으면 입증하기 어려움. 중소기업이나 소비자에게 입증하라면 어려운데 그런 경험 있으신지?	○ 있음.
○ 대기업들이 어차피 우리나라에 불법행위 손해배상 범위라는 것은 실손을 상한으로 하고, 시간 끌다가 배상해줘도 경제적 이익이 크니 아예 고의적으로 불법행위하거나, 다 드러났는데도 일부러 시간을 지연하며 배상하기도 함. 가습기살균제 피해사건도 배상을 받아 치료도 해야 하는데 시간을 질질 끌었음. 이런 사건이 많아 재판이 공정하지 못하다 보니 입법부가 나서 고의적으로 불법행위 했거나 악의적으로 배상 안하면 제재를 해야 한다고 해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함. 어떤 법률에 있는지 아는지?	○ 개인정보보호법에도 있고, 하도급법에 처음 도입되었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고의적 불법행위 사건이나 고의적으로 지적재산권·신용정보 유용 등에 대해 실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얼마나 적용되어 판결된다고 보는지?	○ 3~5배가 법제인데 못 미친다고 알고 있음.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2배를 넘는 것도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음.
○ 납품단가 후려치기 사건 등에 대해서도 1.6배에 불과함. 국회에서 어렵게 입법해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30여개 법률이 있는데 사법부가 무력화시키는 것임. 대법원에서 기준을 만들어서 하급심 법원이 입법 취지 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 전통적 손해배상 개념에 익숙한 기존 법조인에게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안 맞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음. 법 취지는 그것을 뛰어넘어 배상하라는 것인데 아직까지 충분히 입법취지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함. 말씀대로 해당 재판부 간에 상의해서 기준 만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함.
○ 법원이 심도 있게 심리를 안 하고 무분별하게 형식적으로 재판해서 국민을 전과자로 양산하는 전근대적 판례들도 많음. 대표적으로 집시법 위반으로 대량 전과자를 만드는 것이 법원의 잘못된 관행이라고 생각함. 한 해에 300~500명 생기기도 함. 대표적인 법리가 공모공동정범이라는 것인데, 집회 주최자와 참가자까지 처벌함. 미국은 NAACP 판결에서 보듯이, 집회에서 일부 시위자들이 폭력적인 행동을 했더라도 주최자를 같이 처벌하거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별도의 증명이 있어야 처벌함. 이런 법리 알고 있는지?	○ 미국 법리에 대해선 잘 모르고 있었음.
○ 독일도 집회 참가하면 그 중 일부 시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위자가 폭력 행동이 예견된다고 하더라도 참가한 것만으로는 공모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함.	
○ 다른 나라 법원은 세심하게 법리를 구성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전부 공모공동정범으로 몰고 있음. 이런 것은 반드시 고쳐져야 함.	
○ 평화적 집회의 자유를 보호해야 하기에, 다양한 사람들이 참가하고 있고, 집회 시위 주최자들에게 함부로 확대하면 안 되는데, 대법원 판례로까지 이어지지 않음. 개선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떠한지?	○ 외국의 법제와 판례 연구해서 국민들의 기본권을 합리적으로 보장하도록 하겠음.
○ 동일한 사실관계를 두고 심급별로 판단이 달라지는 널뛰기 판결에 대한 지적이 있음. 원님 재판 아니냐는 비판도 있고, 이는 사법불신을 초래한다고 보는데?	○ 1심과 2심이 양형이 달라질 경우에는 비판이 많고 법원에서도 고민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함. 새로운 증거로 항소심에서 달라지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말씀하신 것은 법원에서 진중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봄.
○ 최근 대기업 회장의 이혼 소송에서 1심과 2심이 달랐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한 것인지?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 이 사건은 항소심에서 다른 사실관계가 인정된 것으로 알지만, 1심과 2심의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것은 국민에게 오해의 소지가 있기는 함. 기본적으로 법원이 신중하게 증거와 사실관계 파악해서 가급적 오차 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함.
○ 법원이 기존 판례와 법리의 일관성을 유지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 유념하겠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목소리가 있기에 심급별 널뛰기 판결에 대해 각별히 관심 기울여주시기 바람.	
○ 소송지휘권 행사에 있어 변호사들이 재판장의 스타일을 분석할 정도로 재판부별로 편차가 있음. 법원 내부의 기준 등을 마련하여 공평하고 형평성 있게 재판이 진행되었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 공감함. 법관연수나 간담회 등을 통해 소송지휘, 재판진행 등에 있어 만족도를 높이고, 신속히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고 생각함.
○ 선출직 단체장이 되면 시민 또는 시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함. 특히 행정행위를 하다가 시민 전체의 희생으로 개인이 이익을 보면 공공재로 환수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그러한 노력이 시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음. 그런데 19년 대법원에서 제3자뇌물죄 성립을 인정한 뒤로 지자체장이 적극적 행정행위를 하기 어렵게 됨. 관련하여 이재명 대표도 성남FC 후원금 사건으로 기소가 되었음. 대법원 판결이 얼마나 중요하고 개인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지 후보자가 심각하게 느껴야 한다고 생각함.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함. 적극행정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면 대법원도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입장에서는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 대화에 참여한 사람이 녹음하여 공개하면 통비법 위반은 아닌데 민사상으로는 어떻게 되는지?	○ 형사상 통비법 위반은 아니지만, 헌법상 사생활 보호와 관련하여 민사상 책임이 있을 수 있다고 본 하급심 판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례가 있음.
○ 대부분의 국민은 통비법만 생각하여 당사자간 대화의 경우 녹음 및 공개하더라도 전혀 민사상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대법원도 이 부분과 관련하여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봄.	○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겠음.
○ 국민참여재판이 어정쩡한 제도라고 생각함. 국민참여재판을 다시 줄여서 법관의 재판을 늘리는 방안 또는 제도의 수정이나 아예 전체적 배심제도로 바꾸는 방안 등 후보자는 국민참여재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 헌법상 제한이 없으면, 배심제처럼 국민참여재판을 확대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봄. 제가 국민참여재판을 한 번도 진행해본 적은 없지만, 제도의 필요성은 항상 느끼고 있음. 배심원으로 왔다가 법원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는 측면이 있고, 또한 국민의 시각이 법원에게도 도움이 되기도 함.
○ 충북동지회 사건, 제주간첩단 사건 등 국가안보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인권보장을 위한 제도를 모두 활용하고 있음. 본인이 관할이전 신청이나 국민참여재판 신청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는 경우 구속기간을 정지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후보자의 견해는?	○ 피고인의 권한이기 때문에 이를 막을 수는 없지만, 소송지휘권을 적절히 행사한다던지 아니면 제도를 추가로 만들어서 소송지연을 방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2-3) 수사·재판 관련 사항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주관적, 자의적 요소에 따라 피고인의 양형이 달라지는 것은 죄형법정주의나 정의에 반하는 것 아닌지?	○ 바람직하지 않음.
○ 후보자는 여러 개의 재판을 동시에 받는 피고인이 한 재판부에서 재판받는 것이 이득이라는 동시심판의 이익을 알고 있는지?	○ 동시심판의 이익은 형사소송 절차에서 피고인의 권리 내지 이익으로 인정되는 것임.
○ 피고인이 반대하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동시심판의 이익을 인정해야 하는 것 아닌지?	○ 일반적으로 그러함.
○ 이재명 대표의 경우 피고인의 병합신청을 대법원에서 아무런 설명 없이 기각함.	○ 대법원에서 이미 판결한 거라 말씀드리긴 적절치 않으나, 토지관할 병합심리와 관련 동시심판의 이익은 공동피고인의 존재 여부, 재판의 효율성도 함께 고려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 동시심판의 이익은 법원의 시혜적 조치인지? 국민의 권리가 아닌지?	○ 피고인의 이익을 위한 제도이기는 하나, 다른 요소도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있음.
○ 형사재판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이익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닌지? 병합심리 신청에 대하여 법관의 자의적 판단 권한이 있는지?	○ 법관에게 자의적 판단 권한 없음.
○ 법관이 재판할 때 피고인을 진정한	○ 제가 형사재판에서 가장 좋아하고 마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주권자로 대접하는지? 재판의 대상으로만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음에 두는 법언은 의심스러울 땐 피고인의 이익으로 임.
○ 이재명 대표는 일주일에 네 번 재판을 받아야 함. 정상적인 정치 활동이 어려운 상황임. 피고인의 토지병합 신청을 인정해 주는 것이 피고인에게 이익임. 토지병합 신청을 기각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함.	
○ 동시심판의 이익과 관련한 다른 위원의 질의에서, 이는 피고인의 권리이고 이익이라고 답변하였음. 동시심판하지 않고 개별 사건을 각각 빨리 선고하는 것은 오로지 기소하는 측의 이익이 있는 것이고 피고인과는 무관한 것이 아닌지?	○ 동시심판의 이익은 당연히 피고인의 권리로서 인정되어야 함. 다만 다른 공동피고인도 있다는 점과 재판 절차상 효율성을 같이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임.
○ 이재명 전 대표 사건에 대해 국민의힘 일부 의원이 국정감사 당시 병합하지 말라는 요구를 하였는데, 이는 사법부 독립에 심대한 영향임. 재판부에서 만일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병합해야 하는데 국회의원의 지적 때문에 안 했다면 심대한 침해 아닌지?	○ 여러 고려사항 있다고 말씀드림.
○ 국민의힘 의원들이 신속한 진행 촉구하며 법원에 항의 방문 하기도 하였는데, 이렇게 압력 넣는 문제가 사법부 독립과 권한 침해 아닌지?	○ 명백히 답변 드리기 어려움.
○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사건 병합신청 기각 결정 전에 의원들이 대법원	○ 대법관들이 외부 영향을 받아 결정을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에 방문을 하고 면담도 한 것으로 알고 있음. 이러한 행동이 법원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닌지?	
○ 판결 진행 과정에서 유력자들이 항의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사법권의 독립을 저해하는 것이 아닌지?	○ 전적으로 동의함. 재판의 독립에 침해가 될 수 있음.
○ 이화영 전 부지사 사건에서 증언한 사람을 위증했다고 바로 조사하고 영장을 청구하였는데, 반면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다고 해서 피고인이 기소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음. 증인에 대해 재판이 종결되기도 전에 위증으로 입건하고 기소하고 하는 것이 실질적 정의 및 피고인에게 맞는 제도라고 생각하는지?	○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이 재판 진행 중 증인을 기소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범죄로 인한 피해가 확산되는 등 특수한 경우에는 증인에 대한 기소가 필요할 수도 있다고 생각함.

(2-4) 기타 사법부 관련 사항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에서 법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기각률이 88%에 해당하는데, 일반 사건의 기각률은 1% 밖에 되지 않음. 이것은 어떻게 설명 가능한지?	○ 그 부분은 제가 자세히 모르지만, 수치가 너무 대조적임.
○ 윤석열 총장 시절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검찰이 생산한 특수공안사건 재판부 분석 자료에 따르면, 재판부의 출신 학교, 세평, 취미, 가족관계 등이 기재되어 있었음. 이러한 검찰의 행태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은?	○ 사건화가 되었던 부분이라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기 어려우나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함.
○ 판사 사찰은 그 자체로도 부적절하지만 2018년 사법농단 당시에 검찰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압수한 자료를 판사 사찰 문건의 내용으로 활용된 점도 문제임. 이는 영장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 아닌지? 판사 사찰은 영장주의에 반하는 반헌법적 행위였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림.	○ 그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지만, 일반론적으로 압수수색 영장으로부터 획득한 자료를 다른 곳에 사용하는 것은 잘못되었음.
○ 2018년도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과 한동훈 제3차장이 사법농단 수사를 했음. 후보자는 사건의 참고인이었음. 후보자가 문제가 된 것은 아니나 검찰에서 조사받은 적 있는지?	○ 있음.
○ 조사받은 경험이 어땠는지?	○ 조서에 의한 재판은 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몸으로 느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조사한 검찰에서 후보자 말씀대로 조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해주시는 것 같음. 당시 조사받은 판사 중 어떤 사람은 조사받고 나와 검찰청 가로수에 머리를 처박고 울기도 했다는 보도도 있음. 사법농단 수사는 인권침해가 자행되었고, 언론을 통해 심각한 피의사실이 유출되었음. 그러나 이후 많은 사람들이 줄줄이 무죄가 났음. 법원에서 봐주기 재판을 했기 때문만은 아닐 것임. 그런데 검찰에서 아무도 책임지지 않음. 인권침해적 수사에 언론에 피의사실 노출이 자행되었음에도 줄줄이 무죄난 사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 법원에서 문제가 많이 된 사건임. 오랜 기간을 거쳐 숙고를 거친 판결이라고 봄. 항소심 재판 계류중이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움.

3) 기타 사회적 현안에 관한 사항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김건희 여사가 받은 명품백이 대통령기록물인지 아닌지는 결국 대법원에서 판단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임. 대통령 부인이 받은 금품이 대통령기록물이 될 수 있는지?	○ 보통은 외국에서 받는 물건을 따로 활용하면 안 되는 제도가 대통령기록물제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당 사안이 대통령기록물인지는 검토해봐야 할 것으로 보임.
○ 후보자 말처럼 외국 국빈간의 의례적 선물 교환은 대통령기록물이 될 수 있지만, 영상에서 보이는 것처럼 그런 자리에서 받은 물건은 대통령기록물이 될 수는 없다고 봄. 이 부분은 앞으로 법원이 판단하게 될 텐데 명확하게 생각해보셔야 함.	○ 유념하겠음.
○ 후보자는 배우자가 고가의 선물을 받았다면 반환하겠다고 서면답변 함. 답변이 유효한지?	○ 제가 알았다면 반환하겠다는 취지임.
○ 국민권익위원회는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가 청탁금지법 위반 문제 없다고 종결처리 함. 선출직 공무원의 배우자가 명품백을 받은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는 의견도 있고, 청탁이 있었다면 알선수재, 직권남용 등 범죄가 성립한다는 의견이 있음. 후보자의 배우자가 청탁을 받고 명품백을 수수한다면 이는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	○ 그렇다고 볼 수 있음.
○ 해당 사건은 최재영 목사의 의견에	○ 제 문제라면 그렇게 했을 것임.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따르면 실제로 국가보훈부 등에 청탁이 있었다고 볼 수 있음. 후보자는 명품백 수수와 관련, 의심이 있으면 공직자로서 신고하는 등 법률적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 후보자의 사법행정 관련 경험에 비추어 볼 때,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수사와 관련 서울중앙지검 관계자가 검찰청법상 검찰 사무 최고책임자인 검찰총장에게 보고 했어야 된다고 보는데 후보자의 의견은 어떠한지?	○ 법원의 일이 아니고 검찰청 내부의 일로 확답하기는 어려움.
○ 대법원에서 부하직원들이 지휘체계를 건너 뛰고 보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 규정에 보고하라고 되어있으면 보고를 하라고 지시할 것이고, 보고를 안 했다면 제재를 하거나 다음부터는 잘 하라고 할 것 같음.
○ 검찰총장에게 보고를 해야하는 사무를 보고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며, 보고를 하지 못하게 한 검찰관계자는 직권남용임.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 확답 어려움.
○ 최근 미국 검찰이 수미테리 미국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을 외국인대리등록법 위반으로 기소함. 공소장에 따르면 고가의 식사대접과 명품백 선물을 받았다고 적시되어 있음. 국민권익위는 대통령 배우자의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해 대통령 기록물이고 외국인이 주었기 때문에 신고의	○ 그렇게 알고 있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무가 없다는 무혐의 종결처분을 하였음. 청탁금지법은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뚜렷하지 않은 공직자의 금품수수 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만든 법이고, 직무관련성이 명백한 경우에는 형법의 뇌물죄로 처벌하면 되는 것이 아닌지?	
○ 국민권익위 홈페이지 게시판에 대통령 배우자에게 명품백 선물이 가능한지에 대한 답변에서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이 직무와 무관한 경우에는 배우자의 금품 수수를 제한하지 않는다고 답변함. 권익위의 해석이 맞는 해석이라고 보는지?	○ 형법상 수뢰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직접적 관련성이 있어야 되고, 직무와 전혀 관련이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청탁금지법은 적용된다고 생각함.
○ 국민권익위는 2년 전에 배우자는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공직자 배우자는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을 수 없고 공직자는 지체없이 신고해야 한다고 해석함. 권익위는 현행 대통령 배우자 명품백 수수 사건의 무혐의 종결처분을 위해 국민 법감정에 부합하지 않는 허무맹랑한 해석을 하고 있음.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의 유권해석이 법원 판결의 자료로 사용될 수도 있음. 후보자는 대법관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 두 법을 연결해서 보면, 직무와 관련성이 있으면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을 수 없으나 직무와 관련이 없으면 받을 수 있다는 논리가 되는 것 같은데, 형법과 청탁금지법의 상호 해석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봐야 할 것 같음.
○ 대통령 배우자가 가방을 받은 사건에	○ 일반적 법리는 그러함.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대해서는 대통령도 부적절한 처신이었다고 인정하고 사과함. 그런데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을지는 법리적인 문제임. 공무원 본인은 직무관련성을 아예 따지지 않지만, 공무원의 배우자는 직무의 범위가 워낙 다양하므로 직무관련성을 요건으로 하게 됨. 뇌물죄의 성립은 물건을 받는 시점을 기준으로 직무관련성을 따지는 것으로 아는데 맞는지? 최재영 목사는 가방을 줄 당시에는 촬영을 할 목적으로 물건을 준 것이고, 직무관련성은 없었다고 함.	
○ 최재영 목사가 사후적으로 김창준 전 하원의원을 국립묘지에 안장해야 한다는 말은, 예전부터 논의가 있었던 부분이고, 직무와 관련된 청탁이라기보다는 대화 중 최재영 목사의 정무적 조언인 차원이 있음. 그러한 법리 부분에 대해서만 지적하고 가고 싶음.	○ 알겠음.
○ 청탁금지법과 관련하여, 직무와 관련성이 없는 경우 배우자가 금품 수수를 제한받지 않는다는 내용과,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100만원을 초과하여 받을 수 없다는 내용이 모순된 것은 아님. 권익위의 두 답변을 가지고 권익위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지적	○ 알겠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함.	
○ 윤석열 정부 들어 국회에 발의된 탄핵소추안은 12건임. 판사 탄핵안이 현재 제출된 건은 없지만, 최근 국회 일각에서는 심판도 선출해야 한다는 등의 관련 발언이 나오고 있어 이에 대한 우려가 있음. 이러한 판사 탄핵을 암시하는 발언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무엇인지?	○ 헌법에는 공직자에 대한 탄핵관련 규정이 있음.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될 경우 탄핵할 수 있고 대상엔 법관이 포함이 되어 예외가 될 수 없음. 다만, 중대한 법률 위반이 있어야 탄핵 사유가 되고, 탄핵을 할 경우 그러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면밀히 살펴야 하며, 탄핵으로 재판의 침해가 일어나서는 안 됨.
○ 다수결이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다수결 만능주의가 국회에서도 벌어지고 있는데, 여야가 합의 없이 또는 협의과정조차 없이 일방의 주장으로 통과되는 법안들이 많아지고 있음. 그렇게 되면 국민 다수의 의견이 반영되기 힘든 구조로 법안이 성안되므로, 정파적 내용의 법안들이 많아진다는 지적이 있음.	
○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르면, 자유로운 토론기회가 전제되어야 하고 합리적인 심의과정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판시함.	○ 그런 뜻으로 보임. 헌법재판소 결정 내용이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지지함.
○ 대법원은 전원합의에 이르지 못해도 다수결로 결정한다고 알고 있는데, 모범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함.	○ 명심하겠음.
○ 헌법 제53조제2항 내지 제5항은 법률안 거부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절차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및 효력이 규정되어 있음. 그동안 대통령 재의요구의 정당성을 확인하는 정치적 학문적 논의가 풍부하게 이루어져 왔음.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입법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위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가진 거라고 했고, 성낙인 전 서울대총장은 대통령 재의요구권 상황에 대해 집행불능의 법률안, 국익에 어긋나는 법률안, 정부에 부당한 정치적 압력을 가하는 법률안 등이라 했고, 유진오 초대 법제처장은 다수의 횡포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 했음.	
○ 일각에서 대통령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두고 탄핵 사유라고까지 하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은 헌법에 규정된 권한임. 그러나 헌법에 행사 요건이나 절차가 없기에 논란이 되는 것으로 보임. 탄핵 사유인지에 대해서는 중대한 헌법 내지 법률 위반이어야 함.
○ 대통령 본인 및 본인의 가족에 대한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 헌법에 재의요구 절차는 자세히 규정되어 있으나 재의요구 행사 요건, 대상은 헌법 및 법률에 별다른 규정이 없어 논란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법치주의 등의 이념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함.
○ 대한민국 건국일이 언제인지?	○ 헌법 전문에는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되어있음. 그런 측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면에서 우리나라의 건국 이념은 그때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음.
○ 건국일에 대해 질문이 있었는데, 헌법에 임시정부의 법통을 전승한다는 규정이 있음. 영토, 국민, 주권 국가로서의 외교권 등이 있어야 건국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임. 이런 부분들을 모두 고려하여 답변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 아닌지?	○ 그렇다고 볼 수 있음.
○ 건국일 관련 저는 1948년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후보자의 견해는?	○ 건국일에 대한 두가지 견해 모두 타당한 점을 가지고 있으며 역사관의 차이라고 생각하고, 계속 논의해 나가야 함.
○ 국가의 구성요소는 주권, 국민, 영토임. 헌법 전문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는다는 말이 있는데 이는 독립정신을 높이 평가하기 위한 것이고, 우리나라가 국가로 출범한 것은 1948년임. 상해 임시정부에서 우리 농민들한테 세금을 받지 못한 것을 보면 우리나라는 주권을 행사하지 못한 것임. 건국일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건국시기, 건국일의 뜻이 무엇인가가 고민스러움. 고등학교때까지는 국사시간에 정부수립일이라고 배웠고 건국일이라고 배운 적은 없음. 다만 여러 역사관들이 등장하며 건국일의 개념이 등장했는데 어떤 개념인지 불분명하다고 생각함.
○ 명령 규칙 예규에 대한 위헌위법심사권은 어디 있는지?	○ 대법원에 있음.
○ 법률이 위임하지 않은 사항을 시행령을 통해서 정하는 것은 위법한 것인지?	○ 시행령은 법률에서 위임된 내용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한 내용만 담을 수 있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행정부가 입법부가 입법한 사항을 시행령으로 자의적으로 시행하고 있음. KBS 시청료 분리징수,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설치,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는 법이 정한 내용을 초과해서 시행령으로 위법하게 집행하는 제도임. 이에 대한 대법관의 견해는?	○ 적법한 위임 입법인지 여부는 대법원 또는 각급 법원에서 판단하고 있고, 일반론적으로 위임입법의 명확성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함.
○ 구 교육공무원법은 제12조에서 교육공무원을 임명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채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임용령도 특채의 공개경쟁 방식을 따로 규정하지 않았다가 16년에서야 공개경쟁방식을 규정하고, 법률에는 22년에서야 공개경쟁방식으로 규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18년에 공개경쟁방식을 규정하지 않은 구 교육공무원법을 기준으로 특별채용을 한 것은 위법한 것인지? 이렇게 한 사안에 대해서 현재 직권남용죄를 걸어 재판이 진행 중임.	○ 정확히 사안을 알지 못하나, 그 당시 공개경쟁을 규정하지 않았다면 특별채용을 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보임.
○ 법이 위임하지도 않은 내용을 시행령이 담고 있거나 법이 정한 것을 무력화하기 위해서 시행령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대법원이 명확히 지적하고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생각함.	○ 유념하겠음.
○ 한국행정연구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전체 공무원의 30%가 최소한의 업	○ 적극행정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업무가 진행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무만 하겠다고 하는 조용한 사직 상태에 있다고 함. 무분별한 직권남용 처벌이 가져온 후과로서 소극행정 행태라고 생각함. 앞으로 직권남용 판례를 보다 엄격하게 만들어서 적극행정을 독려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함. 후보자의 견해는?	함.
○ 서울고등법원은 판결이 두 개 있음. 방통위법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위원 2인의 소집요구와 위원장이 소집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최소 필요 인원은 3인이라고 해석될 수 있다는 판결과 임명처분은 단 2인의 위원들의 심의 및 결정에 따라 이루어진바 임명처분에 대한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방통위법의 입법취지를 저해할 수 있다는 판결임. 후보자는 방통위원장과 관련된 현재 사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지?	○ 판결에 대해서는 정확히 잘 알지 못하고, 개별 사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움. 다만 일반론적으로 판결은 존중되어야 할 것임.
○ 최근에 동성커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 이 판결에 따르면 사실상 동성혼을 인정하고 있음. 우리 헌법에 동성혼을 인정하고 있는지?	○ 헌법상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앎. 다만 대법원 판결이 동성혼을 정면으로 인정하는 판결은 아니라고 생각함.
○ 동성혼을 직접 인정하는 판결은 아니지만, 판결 내용을 보면 우회적으로 동성혼을 인정하고 있음. 입법부는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고 법	○ 말씀하신대로, 입법부의 역할과 사법부의 역할이 구분된다고 생각함. 사법부의 역할을 충실히 구현하는 것이 법관들의 태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률을 만들고, 사법부는 그 법률을 적용하는 역할을 함. 선출되지 않은 판사들이 왜 사실상 입법 작용을 하는 것인지? 후보자의 인사말씀에 헌법적 가치를 수호한다고 하였는데, 앞으로 동성혼이 문제가 되는 경우 후보자는 어떤 의견을 낼 생각인지?	함.
○ 아직까지 우리 헌법은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음. 대법원 판사들이 이 부분을 정확히 지켜주셨으면 좋겠음.	○ 유념하겠음.
○ 난민법 제5조제6항은'난민신청자는 난민인정 여부에 관한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그 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대법원 행정소송 10건 중 4건이 난민소송인 상황이고, 소송 진행 중 국내 체류 자격이 인정되는 것을 악용하거나, 브로커나 변호사가 개입되어 허위 난민 신청을 알선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문제가 되고 있음. 법원에서 난민 관련 소송을 신속히 진행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닌지?	○ 재판을 신속히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 난민에 대한 인도주의적 배려가 중요하다 할 것이나, 난민 인정 후 전통 및 관습과의 충돌이 발생하는 문제도 있음. 최근 이민청 신설에 대한 의견	○ 난민보호는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음. 이민청은 인구부족과도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 있음. 외국인 근로자의 필요성과 사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이 제시됨에 따라 관련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후보자는 이민청 신설 등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문화적인 충돌 문제 등을 여러 가지 고려하여 결정할 문제인 것으로 보임.

4) 후보자의 개인신상 및 도덕성에 관한 사항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후보자의 재산신고 내역을 살펴보면 가액변동을 제외하고 2020년과 2021년 2년 간 총 4억 3천만원이 증가했는데, 재산변동 사유는 후보자의 봉급저축과 후보자의 배우자가 모친으로부터 9천만원 증여를 받은 것 뿐이며, 최근 후보자의 배우자가 후보자의 대법관 후보 거론 이야기가 나오자 증여세와 가산세를 납입한 사실이 확인됨. 이 사실 만으로 후보자의 이와 같은 재산 증가는 납득이 어려움.	
○ 후보자 재산신고사항 보니, 장녀가 17세부터 계속 재산이 계속 늘어나고 있음. 성년이 되지 않았을 때부터 돈이 늘어나는데, 만 19세에는 1,400만원 이상 늘어나고, 22세때는 3,000만원에 가까운 돈이 늘어났음. 증여세를 낸 기록은 없음. 장녀가 직업을 갖지 않았다는 것은 공개적으로 확인된 사실임. 학생인데 왜 이렇게 늘어난 것인지?	○ 기본적으로는 어릴 때부터 받아온 용돈이나 세뱃돈이 있지만, 2,000만원 늘 때는 증여세를 내지 않는 면세범위에서 양가 조부모에게 받은 것이 있음.
○ 구체적으로 얼마 받았는지?	○ 전체적으로 따지면 5,000만원 가량인 것으로 생각됨.
○ 장녀의 재산에서 5,000만원정도까지는 조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는 것인지?	○ 그렇게 알고 있음. 대체로 계산해 보니 그러함.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아내분의 증여 문제 관련 자료 내셨는지?	○ 행정처에서 설명 드린 것으로 알고 있음.
○ 대법관 후보자로서 요즘에는 이런 것이 문제된다는 사실 알고 있는지? 청문회 준비단도 많이 해봤을 텐데? 사전에 깨끗하게 이런 부분들 정리하셨어야 하지 않는지?	
○ 재산 신고 과정에서 불성실 신고, 불성실 납세 사실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지?	○ 재산등록 신고를 함에 있어 변동 신고를 할 때는 재산이 얼마나 늘었는지 그 증가 사유가 무엇인지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증여세 납부 대상인지 아닌지에 관한 신고를 따로 하지는 않음. 재산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다 신고한 것임.
○ 후보자는 부모에게 5천만원 증여를 받았다고 하였고, 배우자는 9천만원 증여를 받았다고 하였음. 본인이 1억원을 증여받으면 10% 과세만 납부하면 되는데, 왜 본인이 5천만 원을 더 증여받지 않고 배우자가 9천만 원을 증여받게 된 것인지?	○ 본인이 증여받은 돈은 금융 채무를 변제하는데 썼는데, 변제 후 생활비가 모자라서 부모님이 처에게 생활비로 증여를 해준 것으로 알고 있음.
○ 후보자는 2020년 자녀에게 5천만원을 증여했다고 했는데, 자녀가 소유한 재산이 1억 3천만원 정도임. 2020년은 자녀가 성인인 시점인데, 미성년 시기에 증여받은 금액은 얼마인지?	○ 고등학교와 대학교에서 장학재단을 통해 받은 장학금 2,400만원이 있었고 별도로 증여받은 것은 없음.
○ 후보자는 21년 5월부터 23년 4월까지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 위원을 하였	○ 이해충돌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을 것으로 봄.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음. 그런데 후보자의 장녀는 서울대 로스쿨 20년 3월에 입학하여, 23년 1월 변호사시험에 응시했음. 변호사시험법에 따르면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는 시험문제의 출제나 시험합격자의 결정 등 변호사시험을 총괄함. 시험을 치루는 사람과 관리위원이 관계된 사람인 경우 이해충돌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 법무부에서도 관리위원 추천을 위하여 대법원에 공문을 보낼 때, 그 직계비속이 변호사시험을 치룰 예정인 경우에는 추천에서 제외하도록 명확히 적시함. 후보자의 딸은 당시 로스쿨에 재학중이었으므로 3년 내에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것이 분명했는데, 후보자가 추천받은 이유는?	○ 저는 이 공문 내용을 전혀 몰랐고, 이러한 내용에 대해 안내를 받은 바도 없음. 단지 기조실장은 변호사시험관리위원이 당연직처럼 위촉되는 관례에 따라 추천된 것으로 앎.
○ 후보자가 공문 내용을 몰랐다는 해명을 수긍할 수 없음. 후보자는 법원행정처 인사담당관, 기획총괄심의관, 기조실장, 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역임하면서 법원행정처의 업무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인데, 해당 내용을 몰랐다는 점을 납득할 수 없음.	○ 정말 해당 공문을 몰랐고, 안내받은 바가 없음. 최근 인사총괄심의관에게 물어보니 본인도 해당 공문을 받고 접수를 했음에도 해당 내용을 몰랐다고 말함.
○ 법원이 이렇게 중요한 사안을 지나치	○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당연히 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는 허술한 조직인 것인지? 법관들의 자녀들이 로스쿨 재학 및 변호사시험을 응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해충돌의 여지가 크고 매우 중요한 내용인데, 이에 대해 몰랐다는 사실 자체가 심각한 문제임.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청년들은 심각한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음.	리위원 추천에서 배제되었어야 한다고 생각함.
○ 법무부 공문 지시란에 후보자의 사인이 들어가 있는데 어떤 의미인지?	○ 제가 사인한 것이 아니고, 결재권자가 저를 위원으로 추천한다고 지시하는 내용임. 아마도 법원행정처 처장의 글씨로 추측됨.
○ 변호사시험관리위원에 대한 법무부 공문을 단순히 못 봤다라고 해명하는 것은 옹색하고 납득하기 어려움. 후보자는 평생 법관을 해오면서 이해충돌에 대해 많이 고민하였을 것임. 내 자녀가 곧 변호사시험에 응시할텐데 내가 변호사시험관리위원이 되는 것이 맞는지 당연히 스스로 생각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지?	○ 당시 딸이 시험을 보고 합격자로 결정되려면 2년 이상의 기간이 남아있었고, 만약 실제로 그 시점이 오면 당연히 관련 업무를 안해야겠다고 생각했음.
○ 만약에 그러한 인식을 했다면 의견을 표명했어야 한다고 봄.	○ 공정성에 의심이 갈 수 있을 부분을 세심하게 살펴보지 못한 점을 사과드림.
○ 다른 위원님의 질의에서 결재라인에 있었던 사람이 자신을 배제했어야 한다는 취지로 답변했는데, 후보자는 기획조정실장이었고 배제에 대한 검	○ 법원은 법무부와 다르게 인사 라인이 기획조정실과는 별도로 되어 있어 체계가 상이함.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토 및 지시를 내릴 사람 역시 기조실장인 본인임. 마치 유체이탈화법처럼 다른 사람이 그러한 배제를 했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맞는지?	
○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업무는 합격자 정원을 정하는 것이고, 시험을 출제하거나 하지는 않는 것이 아닌지?	○ 맞음. 4월 합격자 발표 직전에 합격자 수와 커트라인을 정하는 회의가 가장 중요한 업무임.
○ 매년 회의 과정에서 정원 수를 급격히 늘리거나 하는 경우가 있는지?	○ 그렇지는 않고 매년 비슷한 수의 인원 수준으로 결정되고 있음.
○ 그동안 법원 관례상 기조실장은 항상 관리위원으로 추천되어왔는지? 후보자가 자원을 한 것인지?	○ 법원행정처에서는 사실상 당연직처럼 추천하는 관례가 있음. 제가 자원을 한 것이 아님.
○ 합격자 수의 정원을 늘리자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낸 적이 있는지?	○ 그런 적은 없음.
○ 딸이 실제로 시험을 쳤을 때, 합격자 커트라인을 정하는 업무에 관여하였는지?	○ 그 시점에 다른 위원이 위촉되어 저는 업무를 벗어난 상태임.
○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위원에 로스쿨에 재학 중인 자녀를 둔 부모가 있다는 점은 외부에서 보기에 공정성 시비가 생길 수 있을 것으로 봄. 법무부뿐만 아니라 법원도 스스로 이를 점검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후보자의 견해는?	○ 위원님 말씀에 공감함.
○ 변호사시험 관리위원 담당 시기와 딸이 처음 응시한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 딸이 처음 응시한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결정 시기는 23년 4월인데, 23년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발표 기간이 겹치는지?	2월에 사실상 기조실장 업무를 관두고 차장이 되어, 관리위원 업무에도 사실상 관여하지 않음.
○ 딸이 처음 응시한 변호사시험 시험기간과 관리위원에 있었던 시기가 겹치는지?	○ 그러함.
○ 3년 내에 자기 직계비속이 시험을 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 이를 신고하거나 확인하는 절차가 없는지?	○ 법무부에서는 그것을 요구했던 것으로 보이나, 당시 법원행정처에서는 이를 알려주지 않았음.
○ 왜 공정성에 의심이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 딸이 시험을 볼 때 관여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향후 시험을 볼 수 있는 위치에 있었는데 딸에게 정보가 전달될 수 있는 점에 대한 우려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됨.

라. 후보자 마무리발언 요지

○ 바쁘신 중에도 사법부에 대한 애정으로 긴 시간 진심 어린 충고와 충언을 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림.

○ 이번 청문회를 준비하고 참석하는 과정에서 저의 법관으로서의 삶을 되돌아보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염려와 기대를 다시금 깊이 깨닫게 되었음.

○ 위원님께서 주신 충고와 지적은 저에게 큰 배움이 되었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지침이 될 것임.

○ 민의를 대변하시는 위원님들 앞에 솔직하고 성실하게 말씀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였으나 부족한 점이 있었다면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림.

○ 만일 제가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법관에 임명된다면 오늘 청문회에서 위원님들의 귀중한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고 국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며 공정하고 정의로운 법원을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음.

○ 오늘 청문회를 위해 애써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그리고 국회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림.

마. 위원장 마무리발언 요지

○ 박영재 대법관후보자가 모두발언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마음의 빚’이라는 표현은 평소에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면서 듣기 어려운 표현이었음.

○ 상당히 신선하게 느꼈고 또 반대로 변호사시험 관리위원이 되면서 혹시나 그 평소에 남다른 기지와 여러 가지 민첩함 이런 것을 감안하면 회피했으면, 알건 모르고를 떠나서 회피했으면 더욱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듬.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마음의 빚을 갖고 있는 박영재 후보자가 대법관이 된다면 우리 사회에 있어서 사법 통제와 국민의 인권보호에 대한 보루로서 자신의 역할을 충분히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림.

○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위원회 직원들과 보좌진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림.

○ 그리고 대법원 등 관계기관 직원 및 모든 관련자 여러분께도 협조해 주신 것에 대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림.

5. 종합의견

○ 대법관(노경필·박영재·이숙연)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는 박영재 대법관 후보자에 대하여 ① 임명동의안 및 부속서류, ② 위원들의 자료제출 요구에 따라 제출된 자료, ③ 위원들의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 ④ 인사청문회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후보자의 답변 등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검증하였음.

첫째, 대법관으로 임용되려면,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20년 이상 판사·검사·변호사 등의 경력이 있고 45세 이상이어야 하는데, 후보자가 이들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을 확인함.

둘째, 후보자가 대법관으로서 직무 수행에 필요한 자질과 소신을 갖추고 있는지를 검증함.

셋째, 대법원의 구성과 기능에 관한 사항, 사법정책과 사법제도 전반에 관한 사항, 기타 사회적 현안에 관한 사항에 대한 후보자의 종합적인 식견 등을 검증함.

넷째, 후보자의 개인 신상 및 도덕성 등의 측면에서 대법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는지를 검증함.

○ 인사청문회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후보자의 답변과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우리 위원회의 의견은 다음과 같음.

일부 청문위원은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위원은 그 직계비속이 3

년 내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예정인 경우에는 추천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되어 있는데, 후보자는 후보자의 장녀가 변호사시험에 응시한 기간에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위원을 역임하였던 점,

후보자 본인 및 배우자 그리고 장녀의 재산 증가 사유와 증여 내역이 명확하게 소명되지 않았고, 후보자의 배우자가 후보자가 대법관 후보로 거론되는 과정에서 과거 납부하지 않았던 증여세 일부를 납부한 점, 우리나라 건국일이 언제인지에 대한 후보자의 명확하지 않은 입장 등을 지적하였음.

반면, 후보자는 1996년 서울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약 28년 동안 전국 각지의 여러 법원에서 민사, 형사, 가사 등 다양한 재판 업무 경험을 쌓아왔으며,

특히,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차장을 역임하면서 수원·부산회생법원의 설치, 코로나19 시기 영상재판의 활성화, 형사전자소송시스템의 구축 등 사법행정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대내외적 소통능력과 리더십을 갖춘 법관으로 인정받고 있고,

후보자가 후보자의 장녀가 가까운 장래에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위원을 역임한 것은 내부 관례대로 추천되어 위촉된 것이고 본인은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으나 공정성에 의심을 가져올 수 있었다는 점에 송구하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음.

또한, 후보자는 사법시험을 준비할 때부터 사회적 약자에 대한 마음의 빚을 지니고 있다고 토로하면서, 사법부의 역할과 책무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보호에 있다는 소신을 밝히고 있으며,

해사법원 등 전문법원의 설치 필요성, 법원의 병합심리의 필요성, 재판 지연의 원인과 개선방안, 법원장 추천제·법조 일원화·고등법원 부장판사 직급 폐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청탁금지법의 해석, 직권남용죄의 기준설정 필요성, 재벌총수등에 대한 양형 부적정 및 지역별 양형 편차 과다, 행정권의 위임입법 범위 일탈, 대법관 적정 증원 인원, 징벌적 손해배상의 적정 배상액, 법관 조기 사직의 원인과 대처방안,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와 입법형식, 판·검사 보수 이원화 필요성, 난민법의 문제점과 이로 인한 난민소송의 과다, 이민청의 신설 필요성, 대통령 재의요구권의 문제점, 시행령으로 정한 검찰 수사권의 범위에 대해 법원이 시행령의 위법성 판단을 통한 가이드라인 필요성, 법관 임용방식의 변경 필요성, 양형기준의 정비 필요성, 공소권 남용에 대한 제재방안, 법왜곡죄 도입의 필요성, 압수수색영장의 범위를 넘어 수집한 자료의 별건수사 활용, 국민참여재판의 필요성, 대한민국 건국일에 대한 입장 등

답변이 용이하지 않은 위원들의 질의에 비교적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대답하여 현재 법원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하여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의지와 역량을 갖추었다고 보이므로 후보자는 대법관의 직무를 무난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6. 첨부자료

<참고자료 1> 대법관(노경필·박영재·이숙연)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명단

<참고자료 2> 대법관(노경필·박영재·이숙연)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부 록> 대법관(박영재) 서면답변서

참고자료 1

대법관(노경필·박영재·이숙연)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명단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박 범 계 (63년생, 대전 서구을)** · 4선(19 · 20 · 21 · 22대) ·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 · (전)제68대 법무부장관 · (전)서울 · 전주 · 대전 지방법원 판사 · (전)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현)국회 국방위원회 위원**	회관 837호 784-6960 6788-6456 F)6788-6460

2024. 7. 9. 현재

더불어민주당	간 사		**허 영(70년생,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 재선(21 · 22대) ·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국제관계학 석사과정 수료 · (전)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 (전)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전)더불어민주당 강원특별자치도당위원회 위원장 **· (현)국회 국방위원회 위원**	회관 610호 784-1840 6788-7431 F)6788-7435
			**김 기 표 (72년생, 경기 부천시을)** · 초선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공법학과 졸업 · (전)대검찰청 검찰연구관 · (전)청와대 민정수석실 반부패비서관 · (현)민주연구원 이사 **· (현)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회관 324호 784-4840 6788-6061 F)6788-6065
			**김 남 근 (63년생, 서울 성북구을)** · 초선 · 서울대 법학 학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 박사 · (전)참여연대 집행위원회 위원장 · (전)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부회장 · (현)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 공동의장 **· (현)국회 정무위원회 위원**	회관 929호 784-2470 6788-6251 F)6788-6255
			**박 희 승 (63년생,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 초선 · 한양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수료 · (전)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 (전)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장 · (전)법무법인 호민 대표변호사 **· (현)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회관 519호 784-5031 6788-6161 F)6788-6165
			**백 혜 련 (67년생, 경기 수원시을)** · 3선((20 · 21 · 22대) ·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사회학 졸업 · (전)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 (전)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전)제21대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 **· (현)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회관 1004호 784-6130 6788-6566 F)6788-6570
			**주 철 현 (59년생, 전남 여수시갑)** · 재선(21 · 22대) ·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전)민선6기 여수시장 · (전)대검찰청 강력부장, 광주 · 창원 검사장 · (전)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 (현)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	회관 536호 784-6341 6788-7311 F)6788-7315
국민의힘	간 사		**유 상 범 (66년생,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 재선(21 · 22대) · 서울대학교 사법학과 졸업 · (전)창원지방검찰청 검사장 · (전)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전)국민의힘 원내부대표 **· (현)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회관 736호 784-4760 6788-6811 F)6788-6815
			**곽 규 택 (71년생, 부산 서구동구)** · 초선 · 서울대 사법학 학사, 동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 (전)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 (현)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 (현)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현)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회관 528호 784-5970 6788-6711 F)6788-6715
			**박 준 태 (81년생, 비례대표)** · 초선 ·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법학 석사 · (전)대통령비서실 행정관 · (전)국무총리비서실 시민사회협력행정관 · (현)국민의힘 원내대변인 **· (현)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회관 320호 784-6430 6788-6176 F)6788-6180
			**조 배 숙 (56년생, 비례대표)** · 5선(16 · 17 · 18 · 20 · 22대) · 서울대 법학 학사, 동 법과대학원 법학 석사 · (전)서울지방검찰청·인천지방검찰청 검사 · (전)수원지방법원·대구지방법원·서울고등법원 판사 · (전)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 (현)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회관 606호 784-5711 6788-6946 F)6788-6950
			**주 진 우 (75년생, 부산 해운대구갑)** · 초선 · 서울대학교 공법학과 졸업 · (전)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 · (전)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6부 부장검사 · (전)대통령비서실 법률비서관 **· (현)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회관 339호 784-9423 6788-7271 F)6788-7275
조국혁신당			**박 은 정 (72년생, 비례대표)** · 초선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 졸업 · (전)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지청장 · (전)법무부 감찰담당관 · (현)조국혁신당 검찰독재조기종식 특별위원회 위원장 **· (현)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회관 517호 784-3080 6788-6551 F)6788-6555

참고자료 2

대법관(노경필 · 박영재 · 이숙연)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2024. 7.

대법관(노경필·박영재·이숙연) 임명동의에 관한

인 사 청 문 특 별 위 원 회

대법관(노경필)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1. 목　　적

대법관(노경필)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하여 공직후보자를 상대로 질의를 행하고, 답변과 의견을 청취하며, 필요한 경우 증인 등으로부터 증언·진술을 청취함으로써 공직후보자에 대한 공직자로서의 도덕성과 자질 및 업무수행능력 등을 검증한다.

2. 안　　건

대법관(노경필)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3. 인사청문회 실시일

2024. 7. 22.(월) 10:00

4. 장　　소

국회 제3회의장(본관 제245호)

대법관(박영재)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1. 목　　적

대법관(박영재)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하여 공직후보자를 상대로 질의를 행하고, 답변과 의견을 청취하며, 필요한 경우 증인 등으로부터 증언·진술을 청취함으로써 공직후보자에 대한 공직자로서의 도덕성과 자질 및 업무수행능력 등을 검증한다.

2. 안　　건

대법관(박영재)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3. 인사청문회 실시일

2024. 7. 24.(수) 10:00

4. 장　　소

국회 제3회의장(본관 제245호)

대법관(이숙연)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1. 목　　적

대법관(이숙연)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하여 공직후보자를 상대로 질의를 행하고, 답변과 의견을 청취하며, 필요한 경우 증인 등으로부터 증언·진술을 청취함으로써 공직후보자에 대한 공직자로서의 도덕성과 자질 및 업무수행능력 등을 검증한다.

2. 안　　건

대법관(이숙연)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3. 인사청문회 실시일

2024. 7. 25.(목) 10:00

4. 장　　소

국회 제3회의장(본관 제245호)

5. 운영방침

가. 인사청문회는 공직후보자의 선서, 모두발언 청취, 질의·답변, 증인·참고인 신문, 보충질의·답변, 후보자 최종 발언 순으로 행한다.

나. 공직후보자에 대한 질의시간과 증인 및 참고인 신문이 있는 경우 신문시간은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다. 인사청문회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인사청문회법 제14조(국가 안전보장 등) 각 호의 1에 해당하거나 같은 법 제15조(공직후보자 등의 보호)에 따라 공직후보자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 인사청문회의 질의·답변은 1문1답 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 의결로 일괄질의 등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다.

마. 기타 인사청문회운영에 관하여는 국회법, 인사청문회법 등 국회관계법규에 따라 진행하되,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6. 심사경과보고서

“대법관(노경필)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대법관(박영재)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및
“대법관(이숙연)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는
각각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위원회에서 의결한다.

7. 소요경비

인사청문회활동비 및 증인여비 등은 국회의 지급기준에 따른다.

8. 행정사항

가. 인사청문회 개회공고

o 인사청문회 개회공고는 청문회 개회 5일 전에 국회전자게시판에 공고한다.

나. 언론관계

o 인사청문회의 중계방송은 방송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인사청문회의 실시·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위원장이 허가한다.

다. 인사청문회 방청

o 일반방청은 방청권 소지자에 한하여 허용한다.

[붙임 1]

의 사 일 정

일 시	안 건	비 고
<제1차> 2024. 7. 16.(화) 10:00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대법관(노경필) 임명동의안 4. 대법관(박영재) 임명동의안 5. 대법관(이숙연) 임명동의안 6. 대법관(노경필·박영재·이숙연)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7. 자료제출 요구의 건	※ 장소: 국회 제3회의장 (본관 제245호)
<제2차> 2024. 7. 22.(월) 10:00	1. 대법관(노경필)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 장소: 국회 제3회의장 (본관 제245호)
<제3차> 2024. 7. 24.(수) 10:00	1. 대법관(박영재)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 장소: 국회 제3회의장 (본관 제245호)
<제4차> 2024. 7. 25.(목) 10:00	1. 대법관(이숙연)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 장소: 국회 제3회의장 (본관 제245호)
<제5차> 2024. 7. 26.(금) 09:00	1. 대법관(노경필)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2. 대법관(박영재)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3. 대법관(이숙연)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 청문회 당일에 채택하는 경우 미개최	※ 장소: 국회 제3회의장 (본관 제245호)

※ 의사일정, 회의일시, 장소는 필요한 경우 위원장 및 간사 간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붙임 2]

공 고

국회법 제65조의2 및 인사청문회법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사청문회를 개회합니다.

1. 안 건: 대법관(노경필)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2. 일 시: 2024. 7. 22.(월) 10:00

3. 장 소: 국회 제3회의장(본관 제245호)

2024년 7 월 17 일

대법관(노경필·박영재·이숙연)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장 박 범 계

[붙임 3]

공 고

국회법 제65조의2 및 인사청문회법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사청문회를 개회합니다.

1. 안 건: 대법관(박영재)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2. 일 시: 2024. 7. 24.(수) 10:00

3. 장 소: 국회 제3회의장(본관 제245호)

2024년 7 월 17 일

대법관(노경필·박영재·이숙연)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장 박 범 계

[붙임 4]

공 고

국회법 제65조의2 및 인사청문회법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사청문회를 개회합니다.

1. 안 건: 대법관(이숙연)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2. 일 시: 2024. 7. 25.(목) 10:00

3. 장 소: 국회 제3회의장(본관 제245호)

2024년 7 월 17 일

대법관(노경필·박영재·이숙연)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장 박 범 계

인사청문특별위원회

2024. 7.

대법관후보자박영재

- 목　　차 -

《박범계 위원장 서면질의》 ····· 3

1. 대법관이 갖추어야 할 능력과 자질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 ····· 3

2. 후보자가 스스로 대법관으로서 적임자라고 생각하는 이유 ····· 4

3. 대법관이 된다면 앞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과제 3가지와 그 이유 ····· 5

4. 후보자가 가장 존경하는 인물 ····· 7

5. 후보자가 담당했던 사건 중 가장 의미있거나 자랑스러운 판결 3건 및 그 이유 ····· 8

6. 후보자가 담당했던 사건 중 가장 아쉬운 판결 3건과 및 그 이유 ····· 10

7. 법관탄핵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 ····· 11

8. 법관을 탄핵할만한 헌법, 법률위반이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라고 생각하는지 11

9.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정치적 편향성을 지니고 있는 단체라는 일부언론과 정치권의 지적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 ····· 12

10. 대법원의 판결이 국민의 법감정과 괴리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대법관 인적 구성 다양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 ····· 13

11. 민사본안 사건의 70%가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종결되는데, 이에 대한 당사자들의 불만이 많음. 이에 대한 후보자가 생각하는 해결방안 ····· 15

12. 한정위헌결정과 관련하여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간의 갈등이 있는데, 후보자의

견해는 ····· 17

13. 정부가 시행령 마련 시 상위법의 입법(개정)취지를 반영해야한다는 주장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 ····· 18

14. 대법원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가해기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한 판결을 내린 이후 정부가 마련한 민간기업을 통한 피해 보상안(일제강제동원 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한 배상금 지급)이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반한다는 지적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 ····· 20

15.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심리전단국 직원들을 동원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인터넷 게시판 등에 댓글을 남겨 정치와 선거에 개입한 혐의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 ····· 21

16. 후보자는 대통령에게 개별 수사에 대한 지휘권이 인정된다고 생각하는지 · 22

17. 사형제 폐지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 ····· 23

18. 법왜곡죄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 ····· 24

19. 검사의 기소편의주의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 ····· 25

20.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는 무제한으로 인정된다고 생각하는지 후보자의 견해 ····· 26

21. 전관예우 및 후관예우를 근절하기 위해 후보자가 생각하는 해결방안 ···· 27

22. 성범죄 방지를 위해 법정형을 상향하자는 주장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 ··· 29

23. 형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모욕죄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므로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 ····· 30

24. 노동법원 설치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 ····· 32

25.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 ····· 33

26. 간통죄 폐지된 후에도 법원이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액수를 과거의 관행대로 여전히 낮게 책정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34

27. 대법원이 도입을 검토 중인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도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 ····· 35

28.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이 90%가 넘는 등 과잉 발부라는 지적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 ····· 36

29. 검찰의 과도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에서 최후의 보루인 법원의 적정한 사법통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 ····· 36

30. 특히 검찰이 사생활이 담긴 전자정보를 '통째'로 압수수색 하는 경우가 많아 법원이 일부기각 등 적절한 통제를 해야한다는 지적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36

31. 공정위, 국세청, 감사원 등 권력형 조사기관들에 대하여 검찰, 경찰 수사와 같이 피조사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변호인 조력권을 인정해야한다는 주장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 ····· 38

32. 최근 문제되고 있는 교제 폭력, 디지털 성범죄 등의 심각성에 비해 양형기준이 낮다는 지적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 ····· 39

33. 후보자가 받은 국외 교육훈련을 통해 사법정책 개선 방안을 제안한 것이 있는지 ····· 41

34. 후보자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4촌 이내 친인척 등이 재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소송이 있는지 ····· 42

35. 후보자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세금을 누락하여 신고한 적이 있는지 ····· 43

36. 조희대 대법원장과 근무를 함께 하였거나 사적으로 친분이 있는지 ····· 44

37.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소만 옮겨놓은 적이 있는지와 그 이유는 ····· 45

38. 자녀의 재산축적 경위와 세금을 뒤늦게 납부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 46

39. 독립생계를 유지하는 가족 또는 소득있는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연말정산 인적공제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 47

40. 후보자가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재직시 주요성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48

41. 신광렬 법률사무소가 대리/변호한 사건 중 후보자가 판결한 사건이 있는지 50

42. 과거 사법농단 수사 과정에서 법원의 영장 발부가 공정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 ····· 51

43. 후보자가 법원행정처에 설치된 양성평등연구반 반장을 맡았을 때 주요 성과 및 소회 ····· 52

44. 2020년 학생이었던 후보자의 장녀의 예금액이 급증하게 된 경위 ····· 53

45. 2020, 2021 배우자의 증여세 납부경위 및 납부자금 마련경위 ····· 54

46. 후보자의 자녀가 후보자와 수년간 근무 인연이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 입사하였는데 과거 인연이 특혜로 작용했다는 의혹에 대한 입장 ····· 55

《허영 위원 서면질의》 ····· 59

1. 대법관의 위상과 역할은? ····· 59

2. 후보자께서 대법관에 임명되고자 하는 이유는? ····· 60

3. 대법관이 어떠한 위치라 생각하며, 가장 중요한 덕목이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 61

4. 후보자의 좌우명은 무엇이며,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 62

5. 후보자가 존경하는 인물은 누구인가? ····· 63

6. 판사로 일하면서 가장 잘한 일 3가지와 후회되는 일 3가지는 무엇인가? · 64

7. 본인의 재판 중 가장 자랑스러운 판결은 무엇인지, 그리고 가장 아쉬운 판결은 무엇인지와 그 이유는? ····· 66

8. 대법관 퇴임 후 계획은? ····· 67

9. 법원의 대표적인 문제점 세 가지와 개선 방안에 대한 견해는? ····· 68

10. 법원 개혁 우선순위 5건이 있다면? ····· 68

11. 상고심제도 개선에 대한 견해는? ····· 71

12. 평생법관제 도입 필요성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과 제도 도입이 안 되는 원인에 대한 견해는? ····· 73

13. 우리 국민이 사법부에 대해 갖는 가장 큰 불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그와 같은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74

14. 사법개혁 필요성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필요하다면, 가장 먼저 풀어야 할 개혁과제는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 76

15. 전관예우가 실제로 있는지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있다면 이를 해소할 방법, 없다면 국민의 인식과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 77

16. 법원, 검찰 등 법조계의 기수문화에 대한 후보자의 평가와 개선 방향은? 78

17. 하급심 판결에 대한 불신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데, 원인과 해법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79

18. 재판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81

19. 법적 판단의 최종 권한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중 어디에 있다고 보는지, 대법원과 헌재는 어떠한 관계이며 어떤 관계를 지향해야 한다고 보는가? ····· 82

20. 일 가정 양립에 대한 견해와 여전히 양립하지 못하는 근본적 원인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 83

21.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과 그 사유에 대한 견해는? ····· 84

22. 전세사기피해자 보호를 위해 법원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 85

23. 사형제 존폐 및 사형 집행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87

24. 동성결혼 및 동성애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88

25. 대한민국 건국일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89

26. 사회적 약자를 위해 후보자가 노력한 것은 어떠한 것이 있으며, 이를 위해 법원이 해야 할 책무는 뭐라고 생각하는가? ····· 90

27. 종교인 과세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93

28. 민주주의에서 표현의 자유의 의미와 그 한계는 무엇이라 보는가? ····· 94

29. 대통령 탄핵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95

30. 5.18 정신을 헌법전문에 담는 것에 대한 견해는? ····· 96

31. 현재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다양한 인권 이슈 중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인권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97

32. 현행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평가와 바람직한 조정 방향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98

33.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대한 후보자의 평가는? ····· 99

34. 공판중심주의가 유명무실해졌다는 지적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과 개선 방안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100

35. 대법원 구성이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기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101

36.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도 도입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103

37. 조건부 구속영장제 도입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104

38. 대통령이 거부권을 남발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105

39. 법관회의 활성화를 통한 법원 내부 민주주의를 활성화하고 법관회의를 국민이 들여다볼 수 있도록 회의결과 및 과정을 투명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임. 이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과 현실적인 개선 방안에 대한 견해는? ····· 106

40. 법원의 전문성, 독립성, 민주성, 관점에서 노동법원, 환경법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107

41. 현행 노조법 제3조는 '이 법에 의한 파업', 즉 합법 파업으로 기업이 손해를 입었다면, 노동조합이나 노동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함. 파업이란 원래 기업에 손해를 끼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임. 파업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항이지만, 법원이 이를 '불법 파업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해 왔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오히려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가 됐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108

42. 공익 소송 패소자 소송비용 부담 주의 개선 방안에 대한 입장은? ····· 109

43. 후보자는 사회에서 다양한 경험을 습득하고 검증된 법조인들을 법관으로 임용해야 한다는 법조일원화 제도의 취지와 필요성에 공감하는지? ····· 110

44. 압수수색 영장 대면심리수단 도입 등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112

45. 국가보안법 폐지에 관한 입장은? ····· 113

46. 성범죄 사건의 판결에 있어서 성인지 감수성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으며, 판결에서 어떻게 구체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 114

47. 가맹점법, 대리점법 등 다수의 공정거래 관련 법안은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현실이며, 입증이 되지 않으면 기각되고 있음. 증거와 정보의 구조적 편재 등으로 인해 피해자가 과실이나 결함,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개선 방안에 대해 제언한다면? ····· 116

48. 차량 급발진 의심사고의 제조사 책임 판례가 0건인 문제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 117

49. 지난해 12월 하루에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의 주간 합산이 12시간을 넘어도 1주일간 총 노동시간이 52시간만 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바 있음. 극단적 초과 노동을 대법원이 허용했다는 비판과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118

50.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배우자가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는데, 권익위는 디올백 수수는 대통령 직무와 관련 없으니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함.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119

51. 전세 사기에 대해 과감한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특경법이 개정돼야 함. 하지만 법원행정처가 이를 반대해 개정이 무산됨.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120

52. 법관 중심의 법원행정처가 사법행정을 맡고 있어 사법권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법원행정처 규모 축소·확대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122

53. 현재 판결서 인터넷 열람 제도가 시행 중이지만 해외 사례와 비교해보면 판결 연도와 사건의 범위가 아직 협소하며 접근성 역시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공적 자산인 판결문의 공개 확대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우리 사회의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증대시킬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123

54.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한 법원 판결들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노동계 지적과 과도한 형사처벌이라는 재계 반응이 대립되는데 이와 관련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인지? ····· 125

55. K-압수수색이라는 비판과 법원은 영장 자판기라는 지적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126

56. '구속영장이 발부됐을 때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차질이 예상된다'와 '구속영장이 기각됐을 때 검찰 수사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의견 중 어떤 견해가 우리 헌법 정신에 부합한다고 여기는지, 후보자의 견해는? ····· 127

57. 현재 검찰 구속수사에 관한 후보자의 입장과 개선 방안은 무엇인지? … 127

58. 영장 발부에 구체적 기준이 없어 판사의 재량이 개입할 여지가 다분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영장에도 항고제도를 도입해 수사기관이나 피의자가 상급 법원에 다시 판단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무엇인지? …… 129

59. 조건부 구속제도 도입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130

60.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 분리에 관한 후보자의 입장은 무엇인지? …… 131

61. 중대범죄수사청 설립에 관한 입장과 설치 시 법원 및 재판에 미칠 영향에 대한 견해는? …… 132

62. 법원이 유죄를 판결한 지 석달도 채 되지 않은 이들에 대해 사면이 이뤄진 적이 있음. 삼권분립 정신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와 관련해 후보자의 견해는? …… 133

63. 국회가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검사 수사범위를 6대 범죄에서 부패, 경제범죄로 제한했음에도 법무부는 시행령을 개정해 사실상 수사범위를 넓힌 것과 관련해 상위법을 위반하고 입법권을 무력화한 것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134

64. 후보자는 부당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적 있는지? …… 135

65. 후보자는 검사가 공소권을 남용해 기소한 사례를 경험한 적이 있는지, 있다면, 이를 기각한 적이 있는지? …… 136

66. 심리불속행 제도에 대한 후보자 입장 …… 137

66-1. 가사 사건의 경우 '24년 상반기 82.3%가 심리불속행 기각된 것으로 알고

있음(일반 민사 사건보다 10% 이상 높은 수치).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는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 137

66-2. 심리불속행 제도는 사실상 아직 입법도 되지 않은 '상고허가제', '상고심사제' 기능을 수행. 현행법 체계에서는 심리불속행 제도를 상고심사제처럼 운영하면 안되고 충실한 심리를 해야하는 것이고, 상고제도 개선에 대한 대책은 별도로 추진해야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 137

67. 가사소송의 증거능력 문제 ····· 139

68. 후보자는 개헌이 필요하다고 보는지 ····· 141

68-1. 필요하다면 개헌에서 가장 중요한 3가지 조항은 무엇인지? ····· 141

68-2. 불필요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 141

68-3. 개헌을 통해 사법부의 독립성과 함께 민주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있는데 개헌을 통해 헌법기구로 대법관 추천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에 대한 견해는? ····· 141

68-4. 개헌을 통해 대법관 임기를 없애고 외국처럼 정년만 남기고 대신 징계나 해임을 가능하도록 하는 것에 대한 견해는? ····· 142

69. 사법부에 대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국민 불신이 과거에 비해 줄었다고 생각하는지? 줄었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지? 여전하다면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는지? ····· 143

70. 기후위기 대응이 엄중해진 시기, 환경법 판결 등에서 사법부가 취해야 할 역할은 무엇이라고 보는지? 관련하여 사법부가 보완해야 할 요소는 무엇이 있다고 보는지? ····· 144

71. 구속영장 발부 여부 등을 포함한 법원의 판결과 결정 뒤 법관 개인에 대한

과도한 '신상털기'가 잦아진데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무엇이고, 사법권의 독립을 보호하기 위한 후보자의 계획은 무엇인지? ····· 145

《김남근 위원 서면질의》 ····· 149

1. 후보자의 좌우명은 무엇입니까? ····· 149

2. 후보자가 가장 존경하는 역사적 인물은 누구입니까? ····· 150

3. 후보자가 가장 존경하는 법조인은 누구입니까? ····· 151

4. 후보자가 가장 존경하는 선배 법관은 누구입니까? ····· 151

5. 후보자가 가장 존경하는 대법관은 누구입니까? ····· 151

6. 후보자는 어떤 대법관이 되고 싶으십니까? ····· 152

7. 법관과 대법관과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53

8. 법관과 비교하여 대법관으로서 가장 중요한 능력과 자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53

9. 본인이 대법관 후보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154

10. 후보자가 읽은 책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책은 무엇입니까? ····· 155

11. 후배 법관들에게 반드시 읽기를 추천하고 싶은 책은 무엇입니까? ····· 156

12. 후보자는 명예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57

13. 후보자는 법관으로서 명예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57

14. 후보자는 법관 재직 중 가장 후회되는 에피소드는 무엇입니까? ····· 158

15. 후보자는 법관 재직 중 명예가 실추된 적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있다면 무엇입니까? ····· 158

16. 후보자는 정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59

17. 후보자는 정의가 어떻게 실현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159

18. 후보자는 정치적 이념적 양극화로 인해 편견과 증오로 가득 찬 정치 현실에서 정의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159

19. 후보자는 사회적 정의 실현을 위한 법관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59

20. 법관의 직무와 관련하여 후보자 자신의 점수를 매긴다면 몇 점입니까? 161

21. 법원 행정사무와 관련하여 후보자 자신의 점수를 매긴다면 몇 점입니까? ····· 162

22. 법원개혁으로 별도의 사법행정기구에서 사법행정권을 담당하고자하는 것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 163

23. 사법행정기구를 비법관으로 전원을 구성하는 것에 대해 후보자의 의견은? ····· 164

24. 후보자가 생각하는 법원의 개혁과제와 개선 방안은 무엇입니까? ····· 165

25. 대법관으로 임명될 경우 본인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 167

26. 대법관으로 임명될 경우 제일 먼저 하고 싶은 일은 무엇입니까? ····· 168

27. 대법원 판결 중 가장 의미있다고 생각하는 판결 3가지와 아쉽다고 생각하는 판결 3가지는 무엇인가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169

28. 사법부의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 170

29. 사형제 폐지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171

30. 소년법 폐지 논란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 172

31. 정부에서 추진중인 형사미성년자 연령하향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173

32.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충돌, 역할 조정문제에 대한 논란이 계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데,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역할은 각각 어떠하다고 생각합니까? ····· 174

33. 대법원은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을 부인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음. 헌법재판소의 변형결정이 법원에 대하여 기속력을 갖는지 여부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 175

34.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결 사이에 괴리가 발생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사법부 기관 간 대립으로 인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상황에 대해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176

35. 위와 같이 사법부 기관 간의 대립으로 기본권이 침해된 국민은 어떻게 구제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176

36. 대법원이 정치적으로 독립된 재판을 할 수 있도록 가장 필요한 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78

37. 대법원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79

38. 우리 사회에 있는 여러 사회·인권 이슈 중 가장 먼저 해결되어야 할 인권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80

39. 검사장, 법원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등 퇴직한 법조계 고위공직자가 대형로펌, 기업 고문 변호사로서 활동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181

40. 국민들은 법조계 전관예우에 대해 굉장한 우려감을 가지고 있음. 후보자님은 법조계 전관예우가 존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182

41.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후보자가 생각하는 해결법은 무엇입니까? ····· 182

42. 후보자께서 대법관으로 취임한다면 법조계 전관예우 근절 및 제도 개선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것입니까? ····· 182

43. 법조일원화로 인해 숙련된 변호사가 판사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로펌에 근무한 변호사에서 판사가 될 경우, 해당 로펌에서 변호하는 사건에 대해 심리함에 있어, 공정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184

44. 대법관이 된다면, 43번 우려를 해소하고자 어떤 역할을 수행할 것인지? ····· 184

45. 43번 우려가 가시화 될 경우, 사법신뢰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184

46. 유엔 인권이사회는 한국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한바 있습니다. 이러한 권고에도 차별금지법 제정이 이뤄지지 않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186

47. 차별금지법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 186

48. 일각에서는 차별금지법이 성소수자를 조장하는 법이라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187

49. 법관의 이념과 지향성(진보, 보수, 중도 등)이 재판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향을 미친다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이유는 무엇입니까? ····· 188

50. 법원에 있었던 사법농단 의혹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하며 해소되고 대국민

의 사법적 신뢰도가 상승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 189

51. 대법관 수 증원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증원에 동의한다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증원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 190

52. 51번 질문에 대해, 동의·비동의를 택하지 못할 경우, 본인이 오랫동안 근무한 사법부에 대한 체계·근본적 고민이 없었다고 봐도 무방한 것인지? ····· 190

53. 현재 대법원이 국민의 다양성을 대변하고 포용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 191

54. 대법원이 위 다양성을 대변하고 포용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191

55. 대법원을 포함한 각급법원의 다양성(성별, 나이등)을 확보하기 위해 어떤 노력과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193

56. 공적인물의 사생활 보호와 일반 국민의 알권리 중 무엇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195

57. 공적인물의 사생활 보호와 일반 국민의 알권리가 충돌할 경우 해결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95

58. 검찰의 공소장 공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196

59. 일각에서는 공판개시 전 공소장 공개가 피의사실공표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 197

60. 기성세대가 일으킨 기후위기가 미래세대의 행복추구권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침해하고 있다는 의견에 대해 후보자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 198

61. 탄소 배출 등 기후위기를 일으키는 요인에 대해 정부의 불충분한 감축목표가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의견에 대해 후보자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 198

62. 후보자는 대법관이 되었을 경우, 타 국의 사례를 수용·비교하며 재판을 진행할 의향이 있습니까? …… 200

63. 후보자는 존엄사를 찬성/반대하는지? 찬성/반대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201

64. 각급법원의 장기미제 사건을 해소하기 위한 후보자만의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 202

65. 후보자는 헌법과 법률, 양심과 소신에 따라 판결하지 않고 특정 이념에 기반을 두어 판결한 사실이 있습니까? …… 203

66. 후보자가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사회적 약자의 보호를 위해 내렸던 판결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 204

67. 후보자는 현 대법관의 구성이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 구성을 탈피하지 못했다는 비판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까? …… 206

68. 후보자는 사법부에 필요한 '외적 다양성'에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또한 이를 충족하기 위한 방안이 있습니까? …… 207

69.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재판에 반영하기 위해 대법관의 자격요건을 완화하여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208

70. 후보자께서는 오랫동안 법원에 몸담은 법관으로서 우리나라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가 하위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209

71. 후보자께서 생각하는 국민의 사법부 신뢰도 회복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209

72. 법관은 다른 어떠한 자리보다도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자리임. 하지만 각종 비리·비위 행위에도 불구하고 판사에 대한 징계나 처벌은 매우 경미한다는 지적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211

73. 후보자께서는 오랫동안 법원에 몸담은 법관으로서 일부 법관 동료, 선·후배들의 비위 행위가 반복되고 있는 원인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212

74. 후보자께서는 퇴임 후에 어떠한 진로를 생각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213

75. 후보자께서는 허위사실이 아닌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는 지적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214

76.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와 조화될 수 있는지에 대해 후보자의 견해는 어떤지? ····· 214

77. 모욕죄의 경우 하급심 판결이 파기되는 사례가 많아 실제로 처벌 대상의 행위여부를 사전에 알기 어려워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216

78. 후보자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기본권의 최후 보루인 대법원의 재판관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217

79. 윤석열 정부 들어서 강경 보수 기조가 뚜렷해지고 있고,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에 사회적 갈등이 커져가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대법원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대법관으로서 어떠한 사회적 인식과 자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218

80. 법무부는 정부조직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을 개정하여 인사혁신처의 공직후보자 등에 대한 정보 수집 권한을 수탁받아 법무부내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하였음. 그러나, 정부조직법상(제32조) 법무부의 관장사무는 "검찰", "행형",

"인권옹호", "출입국관리", "그 밖의 법무에 관한 사무"로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은 법무부의 관장사무에 해당하지 않음. 다만, 제6조제1항이 행정기관의 소관사무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에 위탁·위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조직법 제6조제1항(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과 제32조제1항 해석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법 위반 지적에 대해서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219

81. 행정 각부에 불과한 법무부가 대법원장 및 대법관의 임명 절차에 개입할 수 있게 되어 삼권분립 원칙 훼손이 우려되고, 공무원의 인사 등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 다음의 상급행정기관인 국무총리실 산하 인사혁신처에 둔 입법취지도 훼손된다고 판단하는데, 후보자는 인사정보관리단 설치에 따른 헌법 위반 여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219

82. 과거 대법원 판결 중 가장 아쉬운 판결은 무엇인가요? ····· 221

83. 과거 대법원 판결 중 가장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판결은 무엇인가요? · 221

84.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고 생각하는지요? 우리나라의 현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222

85. 후보자에게 사회적 약자의 기준과 정의는 무엇인지요? ····· 223

86.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아직 우리 사회에 적용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224

87.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법원의 역할을 무엇입니까? ····· 226

88. 가장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사법개혁 내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227

89. 대법관의 업무 부담을 덜고 부실 판결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상고허가제와

대법관의 증원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 방안들에 대한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229

90. 동성결혼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231

91.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232

92. 하급심보다 상급심에서 성범죄 가해자의 형량이 줄어드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233

93. 92번과 같이 성범죄 재판에 대해 상급심에서 형량이 줄어드는 판결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 233

94. 92번과 같이 성범죄 재판에 대해 상급심에서 형량이 줄어드는 판결이 국민의 지탄을 받을 경우 법관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233

95. 최근 법관들이 사회적 이슈 내지 법원을 둘러싼 현안에 대해 개인 SNS를 통해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관의 SNS 활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234

96. 우리사회에서 '사법부의 정치 중립'은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왔습니다. 후보자는 사법부의 정치 중립이란 기본적으로 무엇이며, 사법부의 정치 중립에 찬성한다면 어떠한 방향으로 확립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235

97. 후보자가 가지고 있는 '사법부 독립'의 취지, 목적, 방향, 한계 및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 236

98. 우리사회는 법원 내 진보적 성향을 가진 판사들에 대해 '특정이념'을 가진 법관들이라며 이들을 마치 일반 판사들과는 다른 정체성을 지닌 집단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237

99. 법관의 이념과 지향성(진보, 보수, 중도 등등)이 재판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향을 미친다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237

100. 후보자는 법원의 사법농단사건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238

101. 후보자는 법원의 사법농단사건이 잘못되었다고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238

102. 후보자는 사법농단에 관여되어, 기소된 재판관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239

103. 대부분 재판관이 무죄가 나옴에 따라, '법원 스스로 면죄부를 준 것'이라는 비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239

104. 후보자는 법원이 밝힌 사법농단 비위법관 66명에 속해있습니까? 속해있다면, 어디·누구에게로부터 어떻게 전달받았습니까? ····· 240

105. 사법농단은 대법원장의 단독행위가 아니라 여러 법관 엘리트들이 도운 조직적인 사건이며, 피의자나 참고인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법관들이 다수라는 것은 이미 언론을 통해 밝혀진 사실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징계는 불복소송을 통해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이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 241

106. 구체적으로 후보자는 조희대 대법원체제의 법원개혁 방향, 활동, 방안들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또한 한계와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242

107. 후보자는 조희대 대법원체제의 법원개혁에 대해 법원 구성원들이 동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242

108. 직권남용죄에 대한 법리를 제시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공직자 부당 행위를 처벌할 '직권남용'이란 법리에서 빠져나갈 구멍은 여전히 커다랗게 남겨놓았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직권남용을 형식적 논리로 엄격히 해석하면 '권력자는 처벌받지 않는다'는 불신이 커지기 때문에 이른바 '법왜곡죄'로 최고 징역 5년까지 처할 수 있습니다. 후보자는 이러한 비판에 대해 어떠한 입장입니까? ····· 243

109. 위 108번의 직권남용의 판결로 인해 사법농단과 관련된 법관 대부분이 무죄로 면죄부를 받는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245

110. 사법농단에 관여한 재판관이 퇴직 후, 로펌 등 변호사로 재직하고 있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246

111.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받고 강제 전역처리가 된 변희수 하사는 재입대를 희망하였습니다. 과거, 국내 한 여대에 합격한 트랜스젠더 여성은 학내반발과 인신공격등으로 등록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법과 제도는 이들의 정체성을 인정하는 추세임에도 당사자들이 실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어 많은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법의 판단과 결정이 사회적 규범으로 자리 잡는데 일면 부족하다는 견해가 있는데,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247

112. 해외 여러 국가는 성전환자의 군복무를 '완전히 허용'하고 있으며 대학 입학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오랜 사회적 논쟁과 많은 진통 속에서 얻게 된 결과물들입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우리사회의 다양한 가치와 사회적 규범이 서로 충돌할 때, 법과 법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249

113. 대법원은 지난 2018년 암호화폐의 대표 격인 비트코인이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자산'으로 판시하였습니다. 암호화폐의 명칭, 소득세 대상 여부 등 세법 개정 관련한 다양한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으며, 국제 암호화폐 시장의 산업발전과 국제 추세도 고려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후보자는 대법원의 판단과 이에 따른 문제제기와 사회적 논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250

114. 2009년 야간집회시위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바 있고, 2014년에는 헌법재판소가 한정위헌을 내린바 있음. (2014년 한정위헌 판례 中"'해가 진 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의 시위'에 적용하는 한 헌법에 위반") 그리고 현재 대법원은 헌법재판소 판결 중 '한정위헌' 결정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법원이 2009년에 진행한 헌법재판소에서 야간집회시위 헌법불합치 결정만 인정하게 된다면, 현재 00시~06시까지만 야간집회를 금지하겠다는 입법은 대법원으로써 인정할 수 없는 위헌적 발상이라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252

115. SK최태원회장과 노소영 전 관장과의 이혼소송에 따르면, 노태우의 밝혀지지 않았던 비자금을 노소영 전 관장의 재산으로 인정한 바 있음. 불법으로 승계된 범죄수익이 재산으로 인정된 것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 254

116.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상황에서 비자금 등 불법 승계되어 형성된 수익을 환수해야한다는 주장에 대해 후보자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 255

117. 형사소송과는 달리, 민사/가사소송의 경우에는 법정 증언 등을 통해 증거의 신빙성 여부에 대한 검증 과정이 생략되기도 함. 민사/가사 사건에서도 제출된 증거가 원본인지 사본인지, 작성자에 의해 제대로 작성된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제대로 검증을 해야한다는 주장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 256

118. 117번 주장과 관련, 법조인이자 재판관으로서 미국식 디스커버리(증거개시) 제도 도입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동의하지 않는다면 이유는 무엇입니까? …… 257

119. 최근 5년간('19년~'23년) 판결 경정 신청 건수는 약 4천건에 달한다고 함. 단순 오류의 경우 경정 대상이나, 판결의 핵심 내용을 수정하는 행위는 법원 신뢰도 저하 초래, 판결문 작성 여건 등을 점검해 제도/시스템적으로 오류를 줄일 수 있는 개선책을 마련해야한다는 의견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 258

120. 판결문의 경정오류를 집계(통계화)시켜 공개하는 것이 법원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법적 신뢰도를 올릴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한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258

121. 판결문의 경정신청에 대한 인용/기각 사유를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동의한다면, 후보자가 대법관이 될 경우 적용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 것입니까? …… 258

122. 후보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내린 권고결정을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260

123.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내린 권고결정을 위반했으나, 이를 무시하고 재판을 진행했을 경우, 위 재판이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261

124. 위 재판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판결에 대한 절차가 적법하다고 인정되어 수사기관과 사법부에 미칠 영향이 부정적일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261

125. 위 재판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국가인권위의 권고결정이 형해화 된다는 우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261

126.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항소심에서의 판사 직권심판은 보다 강력하다고 할 수 있음. 후보자는 위 직권심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262

127.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의 직권심판은 언제 활용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262

128. 아동권리협약을 위반한 수사기관의 수사로, 아동을 수사하는 과정에 보호자에게 즉각 알리지 않고 수사하는 것이 적법한 수사로 보십니까? ····· 264

129. 구치소에 수감 중인 장애인과 아동에 대해 수감 중이지 않은 장애인 및 아동에 비해 그 권리는 보호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는지? 제한할 수 있다면 일반 수감자와 비교했을 때 어느정도 제한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265

130. 후보자는 사법부의 높은 압수·수색 영장발부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266

131. 후보자는 사법부의 높은 압수·수색 영장발부가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266

132. 피의자의 압수·수색 영장의 발부 과정에 대면심리절차를 도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267

133. 수사기관이 휴대폰, 노트북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전자정보 전체를 통째로 보관하고 있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268

134. 위 133번이 기본권 침해라는 주장에 대해 후보자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 268

135. 중소기업의 기술침해 손해배상 소송에서 입증의 어려움으로 피해구제를 받는 것이 쉽지 않음. 이를 개선하기 위해 법원이 지정하는 전문가가 침해기업에 대한 사실조사를 할 수 있는 '전문가 사실조사제도'를 도입하고, 특허침해 자료를 특정하기 위한 '자료 목록제출제도' 등을 도입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269

136. 법원은 중소기업 기술침해 소송에서 징벌적손해배액에 인정에 대해 보수적 입장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고의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억제할 정도의 위하적 효과를 가지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취지와 목적 달성을 위하여 대법원 규칙이나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 270

137. 노동조합 쟁의행위에 대한 업무방해죄 적용에 대해 후보자는 어떤 입장인가요? ····· 271

138. 포괄일죄 법리에 의하면 동일한 범의를 가지고 일련의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 공소시효 계산은 마지막 범행일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1심 법원이 검찰의 포괄일죄 주장을 일부만 인용한 것이 포괄일죄에 대한 일반적인 판례 법리와 다르다는 지적에 대해 후보자는 어떤 입장인가요? ····· 272

139. 이사의 충실의무는 회사와 주주 모두에게 미친다는 것이 미국 등에서 판례법리로 정립되어 있는데, 우리 법원은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사건에서 이사의 충실의무가 주주에게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독 삼성 관련 사건에서 일반적인 판례 법리와 다른 특별한 논리들이 등장하는 이유에 대해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 273

140. 재벌총수 재판에 대한 비판으로 제기되는 '3.5정찰제'를 극복하기 위해 후보자

는 법원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 274

141. 2016년 12월 사법정책연구원에서 발표한 학술대회 자료집에 따르면, 법원의 불리한 보도를 취재 및 게재했다는 이유로 취재원 색출시도가 있었다고 함. 이와 같은 법원의 행동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275

142. 141번과 같은 취재원 색출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당한 행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275

143. 후보자는 이러한 취재원 색출시도에 대해 동의합니까? 동의한다면 이유는 무엇입니까? 후보자라면 어떻게 행동하셨을 것입니까? ····· 275

144. 대법관이 된다면, 이러한 부당한 시도를 막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까? ····· 275

《박희승 위원 서면질의》 ····· 279

1. 대법관 구성이 다양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현재 대법관 구성이 다양성을 추구하고 있다고 보는지, 그렇지 않다면 개선책은 무엇입니까? ····· 279

2. 일본은 최고법원 구성의 다양화를 위해 직역할당제를 운영하고 있고, 영국, 독일, 프랑스의 경우에는 추천위원회 구성에 있어 법원 인사가 없거나 과반수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구성의 민주적 정당성 강화 및 바람직한 대법원 구성 방향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281

3. 사법부의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283

4. 특정 판결에 대해 해당 판사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284

5. '손해배상 시효 범위를 3년에서 6개월로 축소'한 판례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거래 대상이 된 판례입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285

6. 후보자가 생각하는 법원의 개혁 과제는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그 개선 방안은? ····· 286

7. 법조일원화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288

8. 현 법관임용시스템에서 개선되어야 할 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89

9. 후보자는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관을 탄핵할만한 '헌법·법률위반'이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라고 생각하십니까? ····· 291

10. 우리법연구회, 국제법연구회 출신들에 대한 비판적 시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292

11. 과거 아우디, 폭스바겐 사건처럼 집단적 피해를 수반하면서도 증명이 어려운 분야가 증가하고 있는데, 민법상 개별적 분쟁해결은 절차가 복잡하고 피해구제 또한 충분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집단소송제도와 미국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있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293

12.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 시 검찰은 내부 규정을 들어 변호사의 발언권 등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 시 변호인의 참여권을 확대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295

13. 대통령의 사면권이 남용되고 있고 편파적이라는 평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현행 사면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고, 어떤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297

14. 대학교수, 변호사 등 일반 국민이 판결 정보, 특히 하급심판결을 공개하라는 요구가 많은데, 이러한 요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298

15. 법원이 국선전담변호인을 관리·감독하는 현행 체제 하에서 국선전담변호인이 법원에 맞서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제대로 변론하기 어렵기 때문에 국선전담변호인제도를 법원으로부터 독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 299

16. (1) 재판헌법소원, (2) 변형결정의 기속력, (3) 명령, 규칙에 대한 위헌심사권 관련, (4) 관습법 등과 관련 대법원과 헌재의 헌법해석, 적용에 있어서의 불일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후보자가 생각하는 방안은 무엇입니까? ····· 302

17. 사법부에 독자적인 예산편성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303

18. 사법부에 독자적인 법률안제출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304

19. 2008년 도입된 국민참여재판이 공판중심주의 정착을 위해 거둔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305

20. 국민참여재판의 취지상 평결에 구속력이 없이 권고적 효력만을 가지는 점이 문제로 제기되는데, 배심원의 평결을 판결에 반영하는 것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307

21.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의 평결에 대해 기속력을 부여하는 것의 위헌성 여부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308

22. 전자소송 현황 및 이용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309

23. 공정한 재판을 담보하는 법관 기피신청 활성화 방안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310

24. 우리나라 대법관 1인당 처리하는 상고심 사건이 많습니다. 상고사건이 증가하는 근본적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311

25. 매년 증가하는 재판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대법관을 포함한 법관의 증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관 수 증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현재보다 몇 명(또는 몇 배)을 증원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313

26. 상고제도 개선을 위한 도입되어야 할 제도 중 가장 합리적인 제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315

27. 장기미제사건의 신속처리 요청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장기 미제사건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 317

28. 근로자에 대한 과도한 손배가압류 문제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이와 관련하여 전략적 봉쇄소송을 방지하는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는데, 이 법안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318

29. 과거사 관련, 국가의 시효소멸 항변에 대해 민법상 시효정지기간인 6월을 적용하여 과거사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상당히 제한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319

30. 일부에서는 대법관의 정치적 성향을 '보수, 중도, 진보'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320

31. 후보자는 법원행정처 주요 보직에서 경험한 적 있습니다. 최근 법원행정처를 폐지하는 대신 새로운 개방형 회의체 사법행정기구인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하자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321

32. 능력 있는 법관들이 재판 업무에 전념하도록 법원행정처에 근무하는 법관을 최소화하고 행정업무는 일반직이 책임지고 처리하도록 하자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323

33. 법원행정처가 김명수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설치된 사법행정자문회의를 폐지하는 대신 사법정책자문위원회를 운영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했습니다. 현재까지 진행상황과 이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325

34. 후보자가 생각하는 사법행정권의 정의와 범위, 적정 행사 방법, 향후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과 관련 개선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326

《백혜련 위원 서면질의》 ····· 331

1. 대법관이 갖추어야 할 능력과 자질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331

2. 대법관으로서 후보자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덕목과 원칙은? ····· 332

3. 후보자가 생각하는 대법원이 지금까지 했던 판결 중 가장 좋은 판결 5건과 가장 아쉬운 판결 5건을 꼽는다면 어떤 것이고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인지? ··· 333

3-2. 후보자의 판결 중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판결 5건을 꼽는다면 어떤 것이고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인지? ····· 333

4. 검찰의 악의적 분리기소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법원의 법관 사건배당 예규에 공동피고인 1인에 대한 사실심선고 이후에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분리기소를 재배당 사유에 추가하는 것에 대한 생각은? ····· 335

5. 중대비위를 저지른 판검사, 기타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공직자가 비위를 저지르고 퇴직을 했음에도 변호사법 8조상 '재직 중 위법행위'에 대한 변호사협회의 적용이 사실상 사문화되어 적용에 협회의 재량이 크게 작용하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 337

6. 초범, 반성, 음주 등 범죄사실과 무관한 양형기준으로 인해 범죄자 형량 감형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피해자는 이 과정에서 2차 피해를 입고 있음. 직접적 범죄

사실과 무관한 양형기준이 감형 요소에 포함된 점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과 개선점을 제시한다면 어떤 것이 있을지? ····· 338

7. 피해자가 합의의사가 없고 가해자의 엄벌을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기습공탁으로 인해 가해자가 감형이 되는 경우가 있음. 공탁이 감경사유가 되는 것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개선점을 제시한다면 어떤 것이 있을지? ····· 340

8. 촉법소년 연령을 조정하여 중대범죄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 342

9. 대통령의 사면권으로 인해 사법권의 독립성이 해쳐질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 343

10. 대법관으로서 사회적 비주류와 소수자의 권익을 대변하기 위해 후보자는 어떤 각오를 하고 있는가? ····· 344

11. 퇴임한 대법관들이 변호사로 개업하여 과거 함께 근무했을 수 있는 대법관들의 상고심 사건을 수임하는 행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345

12. 고위직 판검사 출신의 변호사 개업이 전관비리로 연결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으로 어떤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 346

13. 사형제도 존치에 대한 후보자 입장은? ····· 347

14. 집단소송제도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348

15. 국민의 사법부 불신 및 법관의 정치재판 논란과 관련하여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면? ····· 349

16.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배우자가 인사청탁을 이유로 명품백을 받는 것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 ····· 350

17. 민사 본안 사건 10건 중 7건 꼴로 대법서 심리 불속행이 기각 돼 당사자들이

이유도 모른채 상고를 기각당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2014년 54.5%에 그치던 심리불속행 기각률은 작년 70.5%로 10년 새 16%나 증가하였음.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있다면? ····· 351

18. 체액 테러 가해자에게 대부분 벌금형이 선고되는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 352

19. 본 위원이 발의한 체액테러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 352

····· 352

20. 현재 음주운전 양형기준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 353

21.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여러번 낸 피고인에 대해 유족에게 합의금을 지급했고 용서를 받았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벌금형에 처해진 경우가 있음. 음주운전에 대한 사법부의 솜방망이 처벌이 항상 논란이 되고 있는데 양형기준 및 관련 법 강화 등 법이 범죄 억제라는 제 기능을 하기 위한 방안은 어떤 것이 있다고 보는지? ····· 353

22. 개인회생에 대한 처분 기준이 지역 회생법원마다 상이해 채무자들이 관대한 처분을 하는 법원의 지역으로 이주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음. 이는 법원에 따라 실무준칙이 모두 달라 발생하는 것으로 보임. 이에 대해서 후보자는 어떤 복안이 있는지? ····· 354

23. 경찰 수사심의위원회 위원 명단을 공개하라는 취지의 법원 판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 355

24. '채 상병 순직사건'의 수사심의위원회 명단이 공개되어야 한다고 보는지?

····· 355

25. 법원행정처는 AI를 활용한 재판 업무 보조 시스템을 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에

도입할 것이라 밝혀. 사법부가 어떤 식으로 AI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 보는지? ····· 356

26. 법관은 고도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성매매 등 각종 성비리를 저지르고도 파면·해임 등의 징계를 하지 않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논란이 있음.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358

27. 법원 내 연구단체의 순기능과 역기능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 360

28. 법원 내 연구단체가 법조계 카르텔을 조장한다는 국민들의 우려가 있음.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 360

29. 언론보도에 따르면 2023년 5월부터 2024년 5월까지 발생한 집단성폭력 사건 26건 중 절반 이상인 16건의 사건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사건이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셋 중 하나는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음. 의제 강간 적용 연령이 상향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처단형 범위와 선고형 간 간극이 크다는 지적이 있음. 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후보자의 의견은? ····· 361

30. 최근 법원은 데이트 폭력으로 전 남친을 고소한 여성이 다시 가해자로부터 무고죄로 역고소 당해 재판을 받은 사례가 있음. 해당 사건의 2심 재판부는"수사기관의 무고죄 인지는 또 다른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성인지 감수성에 유의하면서, 개별적·구체적인 사건에서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처했던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해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명시한 바 있음. 이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은? ····· 362

31. 사이버렉카, 배드파더스와 같은 사적 제재가 횡행하는 것은 사법부의 솜방망이 처벌로 인한 국민들의 실망과 분노가 그 원인이라 할 수 있음.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떤 것이 있다고 보는지? ····· 364

32. 법관들이 「공직자윤리법」과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은 물론, 법률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도 높은 수준의 윤리 의식과 소명감, 공정성과 청렴성을 가지고 공직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는지? ····· 365

33. 행정부가 시행령 통치를 통해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고 입법 취지를 훼손하는 것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 366

34. 윤석열 정부 2023년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영장청구는 45만 7천여건으로 2021년 34만 7천여건보다 11만건이 증가했고, 2012년 12만 2천여건에 비하면 무려 3.7배 증가하였음. 그러나 지난 11년 법원의 압수 수색영장 발부율은 최저 98.7%, 최고 99.2%를 기록하며 사실상 통제기능이 전혀 작동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생각하는 해결방안이 있는지? 367

35. 과도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로 인한 개인의 기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어떤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 367

36. 검찰이 과도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정보를 바탕으로 당초 사건과 관련없는 사안까지 수사하는 이른바 '별건 수사'에 대해 후보자의 입장은? 또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은? ····· 369

37.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법원 재판 과정에서 영상을 재생하는 등 2차 가해를 하여 재판 절차상 문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 370

38. 최근 마약범죄 건수가 급증하고 있고 청소년들도 마약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어 그 문제가 매우 심각함. 그러나 법원은 기소유예, 집행유예 처분을 하는 등 엄벌에 처하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음. 마약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 371

39. 청문회 대상자인 국무위원 후보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청문회에서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행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 372

40. 국토균형발전 측면에서 서울에 집중돼있는 사법기관을 분산시켜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견해는? ····· 373

41. 배우자가 사랑의 홈케어에서 일을 시작하게 된 경위와 맡은 업무는? ··· 374

42. 2020년과 2021년 배우자에게 증여세 발생하게 된 사유와 이를 2024년이 되어서 납부한 이유는? ····· 375

43. 최근 5년간 소득이 없는 장녀가 재산을 증식하게 된 과정과 증빙할 만한 자료가 있는지? ····· 376

《주철현 위원 서면질의》 ····· 379

1. 후보자의 자녀 1인의 금융채무(중소기업금융채권 49,838천원)의 사유 및 사용 현황은? ····· 379

2. 후보자의 자녀가 2024년 3월부터 근무한 '변호사 신광렬 법률사무소'관련, 해당 직장의 후보자 자녀의 직책 및 직급, 입사시험(시험절차, 입사 시 지원자 숫자 등 지원률) 등의 절차 여부 그리고 후보자와 신광렬 변호사와의 학연, 지연 여부 및 신광렬 변호사 법관 재직 시 업무 관계는? ····· 380

3. 후보자가 2001.06.30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동 312-1 진달래아파트 105-1304로 전입했다가, 2002.04.06.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92 현대아파트 425-1203 및 2002.08.01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12 둥지아파트 101-1105로 순서대로 전입한 이유는? ····· 381

4. 또한, 2001.06.30. 전입한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동 312-1 진달래아파트 105-1304 및 2002.08.01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12 둥지아파트 101-1105의 세대주는 누구며, 세대주와의 관계는? ····· 382

5. 대법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383

6. 대법관 제청을 수락한 이유는? ····· 384

7. 소위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이 발생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는지? ····· 385

8. 소위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의 파장이 모두 해소됐다고 생각하는지? · 385

9. 현재의 대법원 판결이나 운영 방식에서 드러난 개선 과제 3가지를 뽑는다면? ····· 387

10. 광주 5.18민주항쟁의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은? 389

11.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배제하거나 그 국가배상에 대한 소멸시효를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은? ····· 390

12. 국민참여재판의 범위를 확대하고 평결 효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 391

13. 음주운전 사망사고 가해자에 대한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오랜 비판에도 전혀 변화가 없다는 지적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은? ····· 392

14. 사형제 폐지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은? ····· 393

15. 소년범들의 흉악 범죄 증가에 따라 소년법 폐지 또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 주장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은? ····· 394

16. 후보자의 판결 중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판결로 기억에 남는 3가지는? 395

17. 시대 변화와 이에 부응하지 못하는 법률 간의 괴리로 고뇌한 경험이 있다면, 어떤 사건이었고 어떤 판결을 내렸는지? ····· 397

18.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전부)기각률이 1%에도 미치지 않아 '영장 자판기'라는 비판까지 받고 있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과 후보자가 생각하는 개선 방안은? ····· 398

19.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회복 가능성 없는 환자에 대한 의료 조력사망을 허용하는 '조력존엄사법'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은? ····· 400

20. 최근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고령 운전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급발진 및 부주의 사고들도 급증하고 있어, 고령 운전자 면허 제한(반납)등 제도 도입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후보자의 의견은? ····· 401

21. 전 세계적으로 주4일제 시행이 화두가 되면서 국내 또한, 7월 충남도가 시군 공공기관 471명을 대상으로 주4일제 의무화를 시행하는 등 일부 기업에서도 동참하고 있는 와중 생산성 저하 대 휴식권 확충 등 찬반이 첨예하게 나뉘고 있는데, 후보자의 의견은? ····· 402

22.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죄에 대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직권의 남용'이란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불법하게 행사하는 것을 말하므로, 소위 '월권행위'처럼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지 않는 사항에 대한 불법 부당한 지시는 직권남용죄를 적용할 수 없음. 그러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지 않음에도 실질적인 위력과 지위를 이용한 '월권행위'의 비난 가능성은 오히려 직권남용보다 크다고 할 것인데, 그와 같은 지시에 폭행 또는 협박이 수반되지 않을 경우 현행법으로는 이를 처벌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사법적 제재 수단이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다면, 후보자가 생각하는 제도 개선 방안은? ····· 403

23. 대법원이 재판 외에 등기 등 일반 행정에 속하는 업무까지 관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지? ····· 404

24. 현재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등 대부분의 공적 증명과 장부는 온라인으로 열람할 경우에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나, 유독 대법원(법원행정처)이 관리하는 등기부등본은 온라인 열람에도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대법원은 연간 약 700억원에 달하는 수입을 벌어들이고 있음. 기실 등기부등본의 온라인 열람·발급 무료화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는데, 집을 구하는 세입자들을 위해 '건물 등기사항의 열람'만이라도 무료화하여 국민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은? ····· 405

25. 법조계의 전관예우 폐해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개선할 방안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은? ····· 407

26. 대법원 전원합의체 재판 변론 공개를 확대하고, 공개변론은 인터넷을 통해 중계 의무화하도록 하는 것에 대한 후보자 의견은? ····· 408

27. 재판 지연 해소를 위한 대법관 포함 판사 증원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은?

····· 409

28. 도입 약 15년이 지난 로스쿨 및 변호사시험제도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 410

29. '법조일원화'의 장단점과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은? ····· 411

30. 국가균형발전 차원의 대법원의 지방 이전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412

31.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에도 헌법상의 내재적 한계가 존재한다고 보는지? 만약 그렇다고 본다면, '이해충돌금지원칙'도 대표적인 내재적 한계라고 보는지? ····· 413

32. 동일 법원에 속한 재판부가 관련 사건에 대한 동일 심급에서 상충하는 판결을 내릴 경우 법원에 대한 신뢰도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과 개선 방안은? ····· 414

33. A피고인에게 유죄 판결을 내려 단정적인 예단을 갖고 있는 재판부에, 해당 판결이 유무죄 또는 양형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B피고인의 사건이 배당된

다면, 이는 공소장일본주의나 공판중심주의에 역행하는 조치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과 개선 방안은? ····· 415

34. 후보자의 배우자나 자녀가 지인으로부터 후보자가 담당하는 업무와는 별개로 고가의 선물을 받았다면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 416

35.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 법원은 본인이 참여한 대화나 통화는 "타인간의 대화"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대방의 동의없이 녹음하더라도 형사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을 유지하고 있음. 그러나, 대화 당사자의 녹음이라고 하더라도 헌법상 보장되는 상대방의 음성권 및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미국이나 독일처럼 상대방의 동의 없는 녹음도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은? ····· 417

36. 본인이 참여한 대화의 녹음은 처벌하지 못한다는 형사법원 판례와 달리, 본인이 참여한 대화도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한 행위가 민사상 손해배상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판례(2013나8981)가 존재하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은?

····· 419

37. 국민 다수가 본인 참여 대화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도 (민사상으로도) 얼마든지 녹음할 수 있다고 오인하고 있고, IT 기술의 발달로 '자동녹음 기능' 등 대화와 통화 녹음이 일상화된 상황을 감안하면 무차별 다수가 언제든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이와 완전히 동일한 행위에 대한 형사법원과 민사법원의 판단을 통일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은? ·· 420

38. 제3자뇌물제공죄에 대한 대법원 판례(2010도12313 등)에 따르면, '부정한 청탁'이란 "직무집행 자체는 적법하더라도 어떤 대가관계와 연결시켜 이에 대한 대가의 교부를 내용으로 하는 청탁"이면 되고,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도 제3자뇌물

제공죄의 제3자가 될 수 있음. 예를 들면, A구청장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건축허가 등의 직무집행을 했더라도, 그 과정에서 해당 A구청 소속 동주민센터의 화장실 보수나 관할 경로당의 에어컨 설치를 요구했다면, 그 요구 자체만으로도 A구청장에게 '제3자뇌물제공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게 대법원의 입장임. 그러나, 이와 같은 판단은 개발 이익의 공익 환원 등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지자체의 적극행정을 제약하는 과도한 해석이라는 비판이 있는데, 이런 지적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 422

39. 헌법기관이자 독립기관인 대법원의 법원행정처장이나 헌법재판소의 사무처장이 직접 국회에 출석하여 업무현황을 보고하고, 예결산 심사를 받는 것이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한다는 지적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은? ····· 423

40. 국가 예산의 편성 절차 등을 규정한 「국가재정법」에 따라, 대법원을 비롯한 모든 중앙관서의 장은 소관 예산요구서를 작성해 기재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기재부장관은 예산요구서에 따라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정부는 이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함. 만약 「국가재정법」의 명시 규정에도 불구하고, A중앙관서의 장이 소관이 아닌 B중앙관서의 예산요구서까지 작성해 기재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대로 최종 반영된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면, 해당 예산안의 법적 효력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 424

41. 만약 위와 같이 「국가재정법」에 따른 의무와 절차를 위반해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을 국회에서 의결한다면, 그 하자가 치유된다고 보는지? ····· 424

42. 수원지법 형사 15부는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에게 대한 1심 판결문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대북송금을 "쌍방울 주가 상승 목적"이라고 판시했으나, 같은 수원지법의 형사 11부는 동일한 대북송금에 대해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방북비용 대납"이라고 적시하며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중형을 선고하였음.

아무리 재판부가 다르더라도 같은 법원의 형사재판에서 불과 1년 여만에 이처럼 완전히 상충되는 판결이 나온 것에 대해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 425

43. 동시적 경합범의 경우에는 피고인의 '동시 심판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서 부득이한 이유가 없다면 재판의 이송과 변론 병합 등으로 하나의 재판부에서 같이 재판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은? ····· 426

44. 최근 대법원이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에 대해 검찰의 병합 반대 의견서만 일방적으로 받아들이면서 기각 결정을 내렸는데, 이는 명백히 '동시 심판의 이익'에 어긋나는 결정이 아닌지? ····· 427

45. 법원행정처장은 최근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 해당 사안에 대해 "기피 신청이라든지 아니면 토지관할 병합 이송 신청이라든지 이런 것은 가능"이라고 답했음에도 대법원이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을 기각한 이상, 해당 재판부(수원지법 형사11부)에 대한 기피를 신청한다면, 당연히 인용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은? ····· 428

《유상범 위원 서면질의》 ····· 431

1. 후보자가 생각하는 대법관 후보 지명 이유 및 대법관이 갖추어야 할 능력과 자질, 스스로에 대한 평가 ····· 431

2. 후보자의 좌우명 ····· 432

3. 존경하는 법조인 ····· 433

4. 가장 좋아하는 법언 ····· 434

5. 공직생활 하면서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점 ····· 435

6. 공직생활 하면서 가장 아쉽거나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점 ····· 436

7. 법관 재직중 가장 의미있게 생각하는 판결, 그 이유 ····· 437

8. 법관 재직중 가장 아쉬웠던 판결, 그 이유 ····· 438

9. 과거에 참여했거나, 현재 참여하고 있는 연구모임 또는 동호회 ····· 439

10. 전관예우 관련 퇴직 후 거취에 대한 견해 ····· 441

11. 사형제에 대한 견해 ····· 442

12. 가석방없는 종신형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 ····· 443

13. 플리바게닝 제도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 ····· 444

14. 촉법 연령 하향 및 처벌 강화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 ····· 445

15. 정치의 사법화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 ····· 446

16. 사법의 정치화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 ····· 447

17. 2019년, 순천지원 민사2부에서 소수의견을 기재한 판결문이 나왔음(2018가합12187). 3심이나 헌법재판소가 아닌 하급심(1,2심)에서 소수의견이 기재된 판결문이 작성되는 것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 (해당 질의는 관련 재판에 대한 질의가 아니라 하급심에서 '소수의견'이 기재된 판결이 이뤄지는 것 자체에 대한 질의임) ····· 448

18. 현재 사법부의 가장 시급한 현안은 무엇이라고 보는지? ····· 449

19. 법관이 SNS를 통해 정치적 의견을 내는 일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음.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451

20. 법조일원화 제도를 직접 경험한바, 해당 제도에 대한 후보자의 평가는?452

21. 고등법원 판사 퇴직자 증가 원인 및 대책 ····· 454

22. '변시 응시기간 5년 제한'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 및 견해? ····· 456

23. 관행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대법관 중 1인이 겸임하는 것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457

24. 최근 통과된 출생통보제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458

25. 법률의 한글화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459

26. 상고법원 설치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460

27. '존엄사 등 적극적 안락사'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 ····· 461

28. 후일 언젠가 개헌이 이루어진다면, 법원 관련해서 헌법에서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 462

29. 최근 탄핵안 발의 권한이 없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탄핵 청원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하려는 불법적인 일이 진행되고 있음. 이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은? ····· 463

30. 판사 증원 및 검사 증원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은? ····· 464

31. 사법부 당면 과제로 꼽히는 재판 지연 해소방안에 대해 장기적 법관 증원과 더불어 법률AI가 하루가 달리 발전하는 가운데 일명 'AI 판사' 등 인공지능(AI) 기술을 우리 사법부에도 보다 적극적으로 접목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후보자는 오랜 기간 법관으로 재직한바, 법관 업무에 인공지능 활용이 접목되는 것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은? ····· 466

《곽규택 위원 서면질의》 ····· 471

1. 대법관이 갖추어야 할 능력과 자질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 ····· 471

2. 평소 마음에 두고 있는 법언이나 좌우명 ····· 472

3. 이제까지 판결 중 가장 의미 있었다고 생각하는 판결, 이유 ····· 473

4. 이제까지 판결 중 가장 아쉬웠던 판결, 이유 ····· 474

5. 판결 이외에 이제까지 법관 재직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 이유 ····· 475

6. 기억에 남는 연구모임이나 동호회, 이유 ····· 476

7. 후보자가 집필한 저서, 논문, 판례평석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 이유 ···· 477

8. 대법관으로 퇴직하게 되면, 퇴직 후에 하고 싶은 일, 이유. ····· 478

9. 후보자는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차장을 역임하였는데, 최근 언론보도 등에서 지적하고 있는 '재판지연'의 주요원인과 해결방안에 관한 견해 ····· 479

10. 법조일원화 제도에 따라 올해까지 최소 법조경력 5년이상, 내년부터는 최소 법조경력 7년 이상 경력 법조인 중에 판사를 선발하게 되는데, 경력기간 확대에 대한 견해, 대안이 있다면 그에 대한 견해 ····· 481

11. 해사법원 설치여부, 설치지역, 해사민사사건의 사건관할에 대한 각 견해

····· 483

12. 현재 서울, 수원, 부산에 각 회생법원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 외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한 견해 ····· 485

13. 회생법원의 사건 수 대비 법관과 회생위원 등 관련 직원 증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 ····· 487

14.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데, 해당 청원이 국회법(제123조)과 청원법(제6조)에 따라 접수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견해 ····· 489

15. 최근 사회 여러분야에서 'AI'(인공지능 시스템)이 도입되고 있고 일부 대형로펌

에서도 초기 단계 'AI'를 도입하는 등 확대되는 분위기이고, 지난 1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취임사에서 "재판 지연 해소에 AI를 활용하겠다"고 밝혔는데, 재판에 AI를 도입하는 것에 대한 견해 ····· 490

16. 최근 일부에서 상법 제622조의 특별배임죄에 대한 완화 또는 폐지 필요성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 ····· 492

17. 현재 중대재해처벌법 사건은 법원조직법 제32조에서 합의재판부 담당 예외 사건으로 규정하여 단독재판부 관할로 두고 있고 재정합의에 따라 합의부가 재판할 수도 있게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 다수 희생자가 발생하고 사회적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합의부에서 심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 ····· 493

18. 사법부의 현재 가장 시급한 현안, 이유 ····· 494

《박준태 위원 서면질의》 ····· 499

1. 대법관이 갖추어야 할 능력과 자질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499

2. 대법관이 된다면 중점적으로 추진할 과제는? ····· 500

3. 신속한 권리구제와 법적 안정성 확보를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 502

4. 법원장 후보추천제 도입에 대한 평가와 개선점은? ····· 504

5. 사법질서 확립에 대한 후보자의 원칙과 소신은? ····· 505

6. 법관의 거짓말은 일반 국민보다 더 무겁고 엄중히 다뤄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506

7. 역대 대법원장 중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못했던 사례와 이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과 견해는? ····· 507

8. 후보자의 신념과 가치관의 배경이 되는 법언은? ····· 508

9. 후보자가 법관으로 재직하며 내린 판결 중 후회나 아쉬움이 남는 판결은? 있다면, 그 사유는 무엇인지? ····· 509

10. 소송비용 패소자 부담주의 원칙으로 공익소송의 활성화가 어려움. 후보자가 대법관이 된다면 예외를 인정하는 판례를 만들 의지가 있는지? ····· 510

11. 헌법 제53조에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규정하고 있음. 이 규정에 담긴 의미와 헌법정신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511

12. 대법관 등 고위직 출신의 전관예우 논란에 관련된 입장과 견해는? ····· 512

13. 재판 지연현상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실현방안에 대한 견해는? ····· 513

14. 법관 증원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지난 21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폐기되었음.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515

15. 구 '사법정책자문회의'가 사법개혁의 어떤 부분에 기여했는지? ····· 516

16. '사법정책자문회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시 기대효과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517

17. 대법관 또한 법관징계법상 징계 대상자라고 보는지? 아니라면 대법관이 공직자의 품위유지를 위반하면 어떤 근거로 조치하는지? ····· 519

18. 올해 대법원 판례 중 성범죄에 대한 무죄 추정의 원칙을 재강조한 판례가 나왔지만, 최근 '동탄 경찰서 CCTV 사건'처럼 무고한 인원이 가해자처럼 조사를 받는 사례가 발생함. 관련하여 후보자의 견해는? ····· 520

19. 우리나라 사법부의 신뢰도는 전체 167개국 中 146위로 이는 군, 정부, 정치권보다 하위 수준임. 사법부가 신뢰받지 못하는 사유와 개선대책은? ····· 521

20. 형사재판 중 국선변호 사건 비율이 높아지고 있지만 국선변호인에 대한 수임료 연체 등 처우와 관련해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후보자가 생각하는 국선변호사 제도 개선 방안은? ····· 523

21. 대법원 판결 이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장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 525

22. 지난 '95년 대대적인 비자금 수사 이후, '97년 대법원 판결까지 거쳐 전두환/노태우에 대한 비자금 관련 뇌물죄가 확정되었음. 그런데, 23년 전두환 전 대통령 손자인 전우원씨가 폭로한 전두환 비자금에 이어, 이번 최태원-노소영 재판을 통해서도 새롭게 노태우 전 대통령의 안방 비자금이 드러나, 당시 비자금에 관한 수사/판결이 충분했던 것인지 비판이 일고 있음. 대법원 판결 이후 범죄수익금인 비자금이 새롭게 밝혀진 경우 법에 따라 준엄한 심판을 내리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 명확한 기준을 세워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 526

23. 심급별 널뛰기 판결 문제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 528

24. 2018년 해군 미투 판결(1심 징역 10년, 2심 무죄), 2019년 전남지역 군수 3명 선거법 위반 판결(3명 모두 1,2심에서 당선무효형 판단이 모두 달라짐) 등 동일한 사실관계를 두고 심급별 널뛰기 판결로 인해 국민 혼란 초래함. 특히, 가사사건의 경우 재산분할의 핵심요소인 재산분할대상, 기여도는 가사 비송사건에 해당하여 판사의 재량에 따라 1심과 2심이 큰 차이를 보여 '원님재판'이라는 비판 있음. 법적 기준 마련이 시급해 보이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 530

25. 간첩죄 적용 관련 친소관계 구분 적용해야 한다는 발언으로 논란이 된 바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지? ····· 531

26. 주요 국보법 사건들 모두 1년 이상 재판 중. 재판부 기피신청 등 재판 지연전략과

관련해 형소법 제20조의 적용 및 해당 조항이 규정하는 '명백한 소송 지연 목적'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533

《조배숙 위원 서면질의》 ····· 537

1. 대법관의 가장 중요한 덕목과 자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 537

2. 대법원장이 된다면 앞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할 과제는? ····· 538

3. 후보자가 판결한 사건 중 가장 기억에 남는 판결 3건 ····· 540

4. 국민들의 사법부 불신에 대한 이유와 후보자가 생각하는 개선 방안은? · 542

5. 법조계 전관예우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이러한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 544

6. 대법원장으로 임명된다면 퇴임 후 거취에 대한 견해는? ····· 545

7. 존엄사에 대한 입장과 그 이유는 무엇인지? ····· 546

8. 사형제 존폐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547

9. 가석방 없는 종신형제도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548

10. 소년법 존폐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549

11. 국가보안법 존폐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550

12. 북한 주민들의 인권 탄압 및 유린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551

13. 차별금지법이 성소수자 인정법안이라는 주장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552

14. 대법관 증원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553

15. 상고허가제, 고등법원 상고부 설치, 상고법원 설치 등 상고심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554

16. 고법부장제, 법원장추천제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556

17.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이후 사실상 법원장들의 사법행정권 기능이 작동하지 않고 있음. 최소한의 사법행정권 행사를 위한 규범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하는 의견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557

18. 김명수 前대법원장 재임기간 동안 대법관회의 및 전국법원장회의가 유명무실해지고 반면 전국법관회의가 사실상 사법부의 주요사항을 결정함. 이러한 방식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 대법관회의, 전국법원장 회의의 활성화 및 전국법관회의 기능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558

19. 경력대등재판부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559

20. 작년 대법원의 현대자동차 손해배상 연대책임 제한 판결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560

21. 별도의 사법행정기구에서 사법행정권을 담당하는 것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561

22. 현직 판사가 SNS 상에 특정 정치성향을 여과 없이 표출하는 행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 562

23. 김명수 前대법원장의 사법개혁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563

24. 임성근 판사 사표 수리를 거부하고 국회에 거짓 답변서를 보낸 김명수 前대법원장의 소위 거짓말 논란 사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564

25. 현재 특정 성향의 연구회 출신들이 법원 주요 요직에 자리 했다는 논란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565

26. 대법원(대법관) 구성의 다양성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566

27. 각급 법원의 사건처리 지연에 대한 후보자의 대처 방안은? ····· 567

28. 사건이 남아있더라도 오후 6시면 재판을 끝내는 이른바 '땡퇴근' 및 3·3·3캡(주3건씩 3주간 총9건 판결문 작성)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569

29. 장기미제 사건 해소를 위해 후보자가 생각하는 해결 방안은? ····· 570

30. 후보자는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내정 소식을 최초 누구로부터 언제 어디서 어떻게 전달 받았는지? ····· 571

31. 후보자는 법관으로 재직하며 대략 몇 건의 사건을 처리했는지? 그리고 가장 판결 내리기 어려웠던 판결은 어떤 사건인지? ····· 572

32. 후보자가 판결한 사건 중 정치적으로 쟁점이 됐던 대표 사건 3건의 사건 개요, 판결, 판결이유는? ····· 573

33. 헌재의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결정에 대한 후보자 견해는? ···· 574

34. 22대 국회 이기헌 등 민주당 의원 17명이 발의한 국조완박(국정원 조사권 완전박탈)법안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575

35. 후보자가 생각하는 법관의 근로의욕 고취 및 인사 제도 개혁 방안은? · 576

36. 강제징용 관련 제3자 변제 공탁불수리에 대한 후보자 견해는? ····· 577

37.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은 지난 11. 29. 1심이 선고되어 송철호, 황운하, 백원우, 박형철 등 대부분 유죄 판결을 받았음. 문제는 1심 판결까지 3년 10개월이라는 시간이 소요되어 송철호는 울산시장을, 황운하는 국회의원 임기를 다 채우게 된 바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578

38. 국회의 무분별한 탄핵소추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580

39.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내일 당장 가겠다", "비회기 중 영장청구하라"라고 발언한 바 있음. 이처럼 형사사건 소환 조사 일시, 영장 청구일을 수사기관이 아닌 피의자가 지정하는 것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581

40. 사법부의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 582

41. 검찰의 권한 남용과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현재 검찰개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후보자가 생각하는 검찰개혁 방안은 무엇인지? ····· 583

42. 비위 법관에 대한 징계해임제 도입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584

43. 현행 판사연임심사제도에 대한 공정성 및 외부평가 필요성에 대한 후보자 견해는? ····· 585

44. 법관평정 결과 공개와 변호사단체 법관평가결과 반영 등 법관 평가방식 개선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586

45. 사회적 약자라고 하는 장애인, 여성, 노인, 성적 소수자 등을 위해 그동안 후보자가 노력한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 또 이를 위해 대법원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 588

46. 현재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에 공개된 판결문은 법원이 선고하는 판결 전체의 1%도 채 안 돼 판결은 공개해야 한다는 헌법 제109조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판결문 공개 확대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591

47. 국민의 사법부 불신 및 법관의 정치재판 논란 등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국민참여재판 확대 의견이 있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592

48. 고위직 판검사들의 퇴임 후 로펌 취업 후 고액 급여 수령에 대한 견해?

····· 593

49.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 구성 시 민주적 정당성을 제고하기 위해 대통령 및 대법원장의 권한을 축소하고, 국회 선출 및 후보추천위원회 추천을 통한 기관 구성하자는 의견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594

50. 현행 헌법상 헌법재판관을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이 3인씩 임명, 지명하도록 한 헌재재판관 구성방식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595

51.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간 역할 및 권한, 위상 등에 대한 다툼이 있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해소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 596

52. 부산 돌려차기 사건 등 잇따른 강력범죄에 대하여 '너그러운 양형'이 국민적 반감을 사고 있는 바 후보자는 현재 양형기준이 합리적이고 국민의 상식과 법 감정에 부합한다고 생각하는지? ····· 597

53. 개헌이 이루어질 경우 법원 관련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598

54. 압수수색 영장 발부시 대면 심리제도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은? ····· 599

55. 경력법관 임용 중 대형 로펌 출신이 다수인 것으로 나타남. 후관예우 등을 근절하기 위한 후보자의 대안 및 입장은? ····· 600

56. 촉법소년 연령을 조정하여 중대범죄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 601

57.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 참여하는 법관을 추천하도록 한 것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은? ····· 602

58.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 참여하는 법관을 지원한다며 '지원단'을 구성하도록 한 것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은? ····· 603

59. 기피신청·국민참여재판신청·재판장고발 등 간첩사건 재판지연 논란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대책은? ····· 604

60. 제주 ㅎㄱㅎ사건 관련, 직권보석·전자팔찌착용 면제·주거제한 일시 해제 등 간첩사건 피고인에 대한 각종 혜택과 배려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 605

61. 계속중인 형사 재판 피고인의 죄명과 형벌의 종류를 감경해 달라는 국회의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민원(업무) 처리 절차 및 보고절차는? ····· 606

62. 특정 재판과 관련하여 국회의원 등 정치인들의 지속적인 피고인 면회(신청), 검찰청 연좌농성 상황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607

63. 피의자(피고인) 신분으로 수사(재판)를 받고 있는 국회의원이 대법원장·대법관·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등 사법부 인사청문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608

64. 법원노조와 법원장의 교섭대상은 무엇이며 재판 시간도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 609

65. 국회의원 개개인의 헌법상 지위와 독립성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 후보자의 임명 동의 여부를 당론으로 결정하여 표결하도록 하는 양태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611

66. 조희대 대법원장과의 사적(학연, 지연 등 친목 모임 등), 공적(법원 근무지, 학술연구모임 등) 인연은 어떠한가? ····· 612

67. 조희대 대법원장과 가장 최근에 만난 공적 만남은 어떤 자리인가? ···· 613

68. 조희대 대법원장과 가장 최근에 만난 사적 만남은 어떤 자리인가? ····· 614

69. 조희대 대법원장으로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2027. 6. 정년 퇴임을 하게 되는 바 이에 대한 후보자의 우려 내지 전반적인 견해는? ····· 615

70. 헌재의 결정 이후 발생한 낙태법 장기 공백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616

71. 최근 '36주 낙태 브이로그'가 논란이 되고 있는 바 해당 영상이 사실일 경우 관련자에 대한 죄명은 무엇인가? ····· 617

72. 이적단체에서 핵심 구성원으로 활동하며 국가보안법을 위반하는 등 수차례

유죄판결을 확정받은 안보사범이 현역 국회의원과 접촉하며 원내에 진입하려는 시도하는 행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 618

73. 국회에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를 청원'하는 국민동의청원을 접수하였을 때 헌법 및 국회법과 청원법상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가? ····· 619

74. 수사기관이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하여 국회가 특검을 진행하는 것에 대하여 삼권분립에 위배된다는 의견이 있는 바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620

75. 선거사범은 1심의 경우 6개월 이내에 판결을 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판이 길어져 '해당 조문의 사문화', '판사들의 위법'과 같이 지적되는 바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621

76. 역대 국회에서 발의된 탄핵소추안 중 가장 탄핵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탄핵안은 어떤 것이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 ····· 623

77. 최근 '유튜버 쯔양 금품갈취 사건'과 관련 수익을 좇는 사이버 레커들에 대한 형량이 너무 낮다는 여론이 일고 있음. 이런 사이버 레커에 관한 건은 특별히 과중하는 방향으로 양형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624

《박은정 위원 서면질의》 ····· 629

1. 사형제 폐지와 국가보안법 폐지에 관한 후보자 입장은? ····· 629

2. 지난 7월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에 관한 건을 심사하기 위한 청문회 일정을 19일과 26일로 의결하였음.

- 국회법 제125조에 따라 위원회에 회부된 청원을 90일 이내에 심사하여 국회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는 조항과 국회법 제65조 1항, 중요한 안건의 심사와 관련하여 청문회를 열 수 있다는 조항에 따라 위원회 의결로 청문회 실시의 건이

채택되었음. 이번 청문회가 탈헌법적, 탈법률적 청문회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 630

3. 상고법원 도입 등 상고심 제도 개선과 현행 13인 체제의 대법관을 증원하는 방안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631

4. 상고심 적체와 대법원의 재판 지연에 관한 국민 불편이 증가하고 있음. 상고심 적체와 대법원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할 후보자의 의견은? ····· 633

5.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사건은 6월 10일 사건 종결 처리되었음. 김건희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에 대한 판단 근거로 배우자 제재 규정이 없다는 이유를 들었고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없어 처벌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었음.

-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사나 사실관계 확인조차 거치지 않은 부실한 절차였다는 비판이 일고 있음. 국민의 법 감정상 국민권익위의 결정이 과연 옳은 결정인지? 후보자의 입장은? ····· 635

- 김건희 여사가 청탁의 대가로 명품 등을 수수한 뒤, 김창준 전 미국 연방 하원의원의 국정자문위원 임명과 국립묘지 안장 등 청탁 내용을 참모진에게 검토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한 알선수재 혐의와 국민권익위의 직무 유기 혐의가 있을 수 있다는 일각의 지적이 있음. 이러한 지적에 대한 후보자의 법적 견해는? ····· 635

6. 지난 2020년 12월, 서울행정법원은 두 차례에 걸쳐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장관을 상대로 "직무집행 정지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음.

- 첫 번째 직무집행 정지처분 인용 이후인 12월 16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재판부 사찰 문건 작성·배포 ▲채널A 사건 감찰 ▲채널A 사건 수사 방해 ▲정

치적 중립 훼손을 이유로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림.

- 이에 윤 전 총장은 징계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고, 10개월 만인 2021.10,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용석 부장판사)는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 1심 재판부는 윤 전 총장의 징계 사유 4건 중 3건인 '재판부 사찰 문건 작성·배포'와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가 인정된다고 판결했음. ····· 637

- 재판부는 이런 행위가 검찰의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한 비위라고 밝혀. 결국 법원의 판단에 따르면 윤석열 감찰과 이에 따른 직무정지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하였는데 1심 판결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 637

- 1심 재판부가 인정한 "▲재판부 사찰 문건 작성·배포 ▲채널A 사건 감찰 ▲채널A 사건 수사 방해" 세 개의 각각 혐의별 후보자의 법리적 의견이 어떠한지?

····· 637

7. 2023.2, 서울고등법원 행정1-1부(심준보 김종호 이승한 부장판사)는 윤 전 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처분이 유효하다고 판단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계처분 취소를 선고했음. 재판부는 징계 절차의 위법을 파기 사유로 들었음.

- '징계를 청구한 사람은 사건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는 감사징계법 17조에도 불구하고, 당시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1차 심의기일을 지정·변경하거나 징계위원을 신규 위촉해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로 지정한 행위를 두고 위법이라고 판단했음. 또한 징계위원 기피 신청과 징계 의결 과정에서 정족수 요건을 미달했고 징계위원회가 윤석열 총장 쪽의 증인 심문 청구를 합리적 이유 없이 기각한 것도 적법절차 원칙에 어긋나 위법하다고 봤음.

- 재판부는 "징계위원회의 원고(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의결 및 그에 터잡은 (문재인) 대통령의 징계처분은 모두 위법하므로, 징계사유의 존부에 대해서

는 나아가 판단할 것 없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대통령의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을 취소한다"라고 판시했음.

- 징계사유가 타당한지에 대한 판단을 배제한 채, 징계 절차의 위법성만 강조한 2심 재판부의 판결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 639

- 1심에서 승소한 변호인을 대거 해촉하고 교체한 징계 취소 소송의 피고인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의 소위 "패소할 결심"이 논란을 낳기도 했음. 현직 대통령과 검사 재직시절부터 특수관계를 형성해 온 한 전 장관이 선임한 변호인단은 항소심 과정에서 재판부로부터 신문이 부실하다는 질책을 여러 차례 받기도 하였음. 항소심 변론을 부실하게 진행한 피고인측 변호인단의 소극적인 변론으로 인해 판결이 뒤바뀔 수밖에 없었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은? · 639

- 현직 대통령에게 임면 권한이 있는 법무부장관이 과거 함께 근무했던 고위공직 당사자(검찰총장)의 징계취소 소송 변호인단을 새로 선임하고 항소심 변론을 부실하게 진행한 행위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형법상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에 적용될 수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후보자는 어떠한 입장인지? · 640

8.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징계취소 소송 항소심 선고 이후, 법무부는 상고를 포기함으로써 2024. 1, 윤석열 대통령의 징계가 최종 취소되었음. 현직 대통령의 검찰총장 재임 당시의 비위로 진행된 징계라는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법률심을 통해 법리상 제대로 된 판결을 받았어야 했다는 비판이 있음. 대법관 후보자로서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에 비춰 법무부가 상고를 포기하여 대통령을 구제하고, 법무부장관은 집권여당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정치권에 데뷔했던 점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대통령의 중대 비위 의혹에 대해 법률심에서 위 사안을 다뤘어야 했다고 판단하는지? ····· 641

9. 오석준 현 대법관이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에 재직하던 2011년 '운송수입금 800원으로 자판기 커피 2잔을 사 마신 버스기사의 해고는 정당하다'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고, 이후 2022년 대법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제 판결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겁다. 국민 우려에 십분 공감한다"라고 사과의 뜻을 밝히기도 하였음.

- 미국의 피오렐로 라과디아(1882~1947) 판사는 뉴욕 치안 판사로 재직하면서 1920년대 어느 겨울, 나흘을 굶고 식료품 가게에 들어가 10달러 정도의 빵을 훔친 혐의의 절도죄로 법정에 선 노인에게 10달러의 벌금형을 선고하며 "이 노인이 이렇게 어려운 삶을 살게 된 데에는 이 비정한 도시에 사는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돌보지 않은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이 잘못에 대해 나 자신에게 벌금 10달러를 선고합니다. 그리고 이 법정에 온 모든 참석자도 함께 잘못을 저질렀으므로 각기 5센트의 벌금을 선고합니다."라고 평결하였고 재판장에서 모은 57달러 50센트 중 벌금 10달러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노인에게 전달하였음.

- 오석준 대법관과 라과디아 판사의 평결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642

- 평생을 법관에 봉직해 온 고위공직자로서, 평소 후보자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활동과 경험이 있는지? ····· 643

10. 소위 50억 클럽 논란으로 뇌물수수 및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의원은 2023. 2. 8,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 배석판사 남민영·홍사빈)는 "곽상도 피고인의 아들 곽병채에게 화천대유가 지급한 50억 원은 사회 통념상 이례적으로 과다하다"면서도 "아들 계좌로 입금된 성과급 중 일부라도 피고인에게 지급되는 등 의 사정이 없는 점을 감안하면 검찰 증거만으로 아들에게 지급된 돈을 피고인에게 지급된 것으로 평가하는 것은 어렵다", "뇌물 의심 되지만 증명되지 않는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음.

- 50억 퇴직금이 사회 통념상 이례적으로 과다하다는 설명에 동의하는지? 644

- 1심 재판부 판결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644

11. 양승태 대법원장 재임 당시 불거진 소위 사법농단(판사 사찰,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 변협회장 사찰 및 변협 외압행사, 민변 외압 행사, 재판 거래 등)에 법원행정처를 비롯한 사법행정기관의 위법 부당한 혐의에 대법원이 개입되었다는 의혹이 있었음. 사법농단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무엇인지? 법원행정처 등 사법행정 사무를 관장하는 대법원의 일원으로서 재발 방지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645

- 양승태 사법농단의 관련자들이 무죄를 선고 받았고, 이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많음. 헌법상 최고법원의 일원으로서 후보자가 대법관에 지명된다면 사법농단 판결상 유죄가 인정된 부분에 대한 재발방지책은 무엇이 있을지? 사법농단 각 혐의점들에 대해 후보자의 입장은? ····· 645

12. 감사원은 지난 5월 14일 법원행정처에 보낸 공문을 통해 「법원 노동조합 전임자 급여 지급실태 점검」을 위한 감사를 5월 16일부터 6월 5일까지 실시한다고 통보했음. 또한 5월 22일 자로 법원행정처에 공문을 보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 출신 전·현직 간부 14명에게 출석답변요구서 제출을 통보했음.

- 감사원법 제24조 3항에 따라 감사원이 감찰할 수 있는 직무감찰 대상에 법원 소속 공무원이 제외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이 직무권한을 남용하여 법원 내의 노동조합에 대한 부당한 직무감찰을 실시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었음. 이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 646

13.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극단적 선택에 이른 배우 이선균 씨는 수사단계의 정보가 유출되었고, 인천지방검찰청의 수사관과 인천지방경찰청의 경찰관 등 다수의 공무원이 유출에 연루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음. 한편,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은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의 제출 이유를

설명하면서 공판청구 전에 피의사실과 범죄행위를 공표하였음.

- 위의 두 사례가, "형법 제126조(피의사실공표) 검찰, 경찰 그 밖에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피의사실을 공소제기 전에 공표(公表)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와 "형사소송법 제275조의2(피고인의 무죄추정)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의 조항에 위배되는 불법행위라는 지적이 있는 바, 이에 대한 후보자의 법적 견해는? 648

14. 현행 공직자윤리법상 재산을 등록할 의무가 있는 등록의무자에게는 이해충돌을 방지할 의무도 규정하고 있음. 고위공직자 등 재산등록 의무자의 배우자가 의무자와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기업의 비상장주식을 사들여 자녀에게 매수하게 한 뒤, 6년 만에 30배가 넘는 차익을 거둬들이게 하는 행위에 대해 국민의 법 감정과 도덕적 잣대에 비춰 후보자의 의견은 어떠한지? ····· 650

15.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 의무가 있는 고위공직자의 자녀가 30배가 넘는 비상장주식 거래 차익을 통해 개발 호재가 있는 서울 시내 지역의 다세대주택을 7.7억 원에 분양받았으며, 전세를 끼고 투자하는 소위 갭투자를 실행하였음. 재산등록 의무가 있는 고위공직자의 자녀는 별다른 소득이 없는 대학원생으로 확인되었음. 비상장주식의 거래가 완료되기 전에는 고위공직자의 배우자로부터 2억 원이 넘는 자금을 차용하였다가 비상장주식의 거래 완료 후, 이를 한 번에 상환하였음.

- 국민의 법 감정과 사회적으로 모범을 보여야 할 고위공직자의 사회적 책임에 비춰, 위 고위공직자가 임명 동의가 필요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면 공직자 후보자로서 처신이 적절했는지?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651

16. 현행 공직자윤리법 제4조에는 재산등록 의무자의 등록대상재산을 규정하고 있으며,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증권 및 주식도 등록대상재산으

로 분류하고 있음. 지난 2023년 이균용 전 대법원장후보자는 공직자윤리법상 신고대상인 비상장주식의 신고를 누락하여 이에 사퇴한 바 있음. 국회의 임명동의와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공직후보자가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된다면 사퇴해야 하는 게 맞는지? ····· 652

- 인사청문 과정을 통해 밝혀진 공직자윤리법 위반 내역에 대해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심의를 통해 징계 등을 사후에 결정하여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지? 후보자의 견해는? ····· 652

- 인사청문 과정을 통해 밝혀진 공직자윤리법 위반 내역에 대하여는 불문에 부치는 게 적법한 판단일지?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652

17.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654

18. 고위공직자들의 자녀가 약탈적 학술지에 논문을 기고해서 해외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스펙 부풀리기에 사회적 비판이 있음. 일부 고위공직자의 자녀 또한 논문 대필을 통해 약탈적 학술지에 논문을 기고해 논란이 되었음. 이처럼 고위공직자들이 자녀의 대학 진학을 위해 학문 시스템의 허점을 악용하는 것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 655

19. 고위공직자를 역임한 퇴직자의 재직 당시의 징계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원고인 퇴직자와 피고인 주무부처 장관은 같은 기관에 소속하여 깊은 유대관계를 형성하였음. 이에 따라 재판의 적법성과 공정성에 대한 우려와 비판이 있었음. 해당 주무부처 장관은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하였음에도 1심 변호사들을 교체하고, 상고를 포기하여 징계취소가 확정되었음. 이와 같이 재판의 양 당사자가 이해관계나 친소관계가 얽혀있는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재판의 공정성과 적법성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656

20. 23. 6. 28. 법사위 1소위에서 후보자는 간첩죄 개정안에 대해 '간첩을 친소관계에

따라 형량을 달리 적용해야 한다'고 발언하였는데 이에 대해 당시 언론과 법조계의 비판이 있었음. 현재 후보자의 입장은? ····· 657

21. 현재 노랑봉투법은 여당이 반대하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까지 거론되고 있는 법안임.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노랑봉투법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659

22. 최근 정부와 의료계에서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간 대치 국면에 서 있음. 최근 의료계 측이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대법원은 최종 기각을 내림. 이에 대해 동의하는지? 또한 각 대학 총장을 상대로 의료계가 낸 집행정지 신청이 10건 넘게 서울고법에 계류 중인데 판결에 대해 후보자의 입장은? ····· 660

23. 방통위 위원장 후보로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이진숙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 때 MBC 기획조정본부장을 지내며 언론노조 MBC 본부 간부들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음. 이에 대한 판결에 대해 동의하는지 대법관 후보자로서 견해는? 또한 MBC, YTN 바이든-날리면 보도에 따른 방심위의 법적제재가 있었음. 정부의 언론탄압이라는 국민적 의견에 대해 후보자의 법적 견해와 의견은? ····· 661

24. 최근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이 '채해병 특검법'과 관련해 대법원장이 특별검사 후보를 추천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음.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이에 따른 근거 ····· 662

25.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은 주거공간 또는 대통령관저에 포함된다고 생각하는지? 대통령실 용산 이전 이후 경찰이 인근 지역 집회를 막아오고 있는데 이에 대한 법적 판단과 의견은? ····· 663

26. 보이스피싱, 전세사기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 664

27. 검찰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는 검찰권의 폐해에 대한 사회적 비판에 따라 마련된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이 지난 2022년부터 시행되어 오고 있음.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의 개정 취지에 맞게 법이 시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시행령을 개정하여 국회의 입법 취지를 형해화하고 본법의 의미를 퇴색시켰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음.

- 개정 검찰청법에 따라 검찰이 명예훼손 사건을 직접 수사할 수 없음에도 검찰은 대검찰청 예규를 근거로 수사를 강행했으며, 특히 보도의 신속성을 담보해야 하는 언론의 특성상 검찰의 무분별한 명예훼손 사건 수사로 인해 언론의 자유와 독립성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 또한 커지고 있음. 일례로 뉴스타파 前 전문위원 신학림 씨는 대통령을 명예훼손했다는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았고, 기소되었음.

- 법률에 위반되는 내용의 검찰 내부지침인 예규로 검찰 수사권을 무한하게 확장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665

- 현재 대법원의 위헌명령, 규칙, 처분심사권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대책은 무엇인지? ····· 666

- 검찰의 과도한 영장 행사의 폐해를 방지하고자 개인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와 수색을 제한하고 사전심문제를 도입하여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들이 제안되고 있고 논의되고 있음. 이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 666

28. 헌법에서는 독립적인 사법기관으로서 법원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명시하고 있으며, 조직의 구성은 물론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임명 및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음. 반면 법무부의 외청 행정기관인 검찰청은 독립적인 사법기관이 아닌

행정기관으로서 검찰을 구성하는 공무원들 역시 기존의 행정 공무원과 신분상의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독점적 특권을 누려왔다는 비판이 있어 왔음.

- 법원과 대등한 검찰의 각급 검찰청의 설치와 법관과의 직급체계의 유사성, 앞서 서술한 시행령과 검찰 예규를 통한 권한 통제의 비대칭성 등 입법·사법·행정 권력을 넘나드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해 왔다는 비판이 있음.

- 검찰이 법무부의 외청으로서 검사가 행정부의 국가공무원으로서 본연의 역할과 기능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검찰개혁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 669

29.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1)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를 담당하는 공소청으로 재조정하여 공소청 소속 검사는 수사의 적법성 통제 및 공소의 제기, 유지 등의 직무만을 수행하게 하며 2)검사의 수사권을 모두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관하며 3)기소권에 대한 시민 통제를 체계화 하기 위한 기소심의위원회의 설치하고 4)검사의 지위를 행정부 소속 공무원으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소위 "공소청법" 제정안이 최근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음. 후보자는 공소청법 제정안의 위의 4개 주요 내용별로 각각 입장이 어떠한지?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재구성하는 방안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입장은? ····· 671

30.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중대범죄수사청법"제정안은 1)검사의 직접수사가 폐지되며 2)중대범죄에 대한 수사를 중대범죄수사청이 맡게 됨. 3)직접수사대상 또한 부패, 경제범죄에 더해 공직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 범죄, 대형참사, 마약범죄수사로 확대하고, 국가 반부패 수사에 대응토록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며 4)중수청을 검사가 속하지 않은 수사조직으로 강제수사를 위한 영장청구는 공소청을 통하게 함으로써 겸제와 감시의 균형으로 수사권의 오남용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논의되고 있음.

- 중대범죄수사청법 제정안에 대한 위 4개 주요사항별 각각 후보자의 입장과 견해는? ····· 672

- 중대범죄수사청이 검사의 직접수사권 이관에 그치지 않고 독점적으로 행사되는 국가형벌권의 엄정한 집행에 앞장서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떠한 입장인지? ····· 672

31. 국회에서 논의 중인 "수사절차법" 제정안과 관련된 내용임.

- 아래 수사절차법 제정안에 대한 7개의 각 주요 내용별 후보자의 견해와 입장은? ····· 673

-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온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수사 적법절차에 관한 내용을 반영.

1) 수사의 주체가 검사가 아닌 사법경찰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법안 전체에서 관철, 관통되도록 함.

- 다만, 현행법상 검사가 수사권을 갖는 공수처, 특별검사의 임명에 관한 법률 및 국회 입법에 의한 특별검사, 군검사의 경우에는 수사절차에서 이 법을 준수하도록 함(법안 제2조).

2) 불구속수사원칙, 증거수사주의, 별건, 타건 수사 금지 규정 등 수사에 있어서의 적법절차와 인권보호 관련 원칙 및 수사기관이 준수해야 할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법안 제3조, 제4조).

3) 형사소송법의 수사에 관한 규정을 쉽게 이해하고 찾아볼 수 있도록 조문의 편제와 나열을 국민 눈높이에 맞춤.

4) 피의자 수사에 있어서 피의자의 인권 및 적법절차의 구현을 위한 여러 규정들을 마련(법안 제34조 ~ 제42조).

5) 압수수색 영장 발부 요건을 강화해 인권침해를 최소화하고자 함.

- 주거지 압수수색 영장의 발부 요건을 강화하고(법안 제75조 제2항), 전자정보

압수수색 또한 최근 대법원에서 입법예고한 형사소송규칙 안을 입법으로 반영(법안 제82조).

6) 수사 중 언론에 의한 명예형 인격살인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형사사건 공개금지를 상세하게 입법(법안 제4장 제105조 ~ 제113조).

7) 별건수사, 타건으로 본건에 대한 진술을 강요하는 행위(법안 제114조), 수사기밀 공개 내지 누설하는 경우/형사사건 관련하여 언론기관 종사자와 개별접촉하는 경우(제115조), 수사과정에서 취득한 서류 또는 물건에 대한 목록을 작성하지 않거나 증거기록 편철을 누락한 때(법안 제116조) 처벌하도록 함.

- 특히 상대방이 수사기밀을 누설받아 이를 공개하는 경우를 처벌하도록 함(제115조 제2항).

- 누설받은 자는 처벌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로 인한 처벌의 사각지대를 해소.

32. 국회에서 논의 중인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된 내용임.

- 아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3개의 각각 주요 내용별 후보자의 견해와 입장은? ····· 676

1) 수사절차법 제정을 통해 형사소송법상 수사편을 분리 독립

2) 형사소송법 전반에 존재하는 검사 수사권의 잔재 규정을 정비

3) 재정신청제도 및 준항고 제도를 실효성 높게 개정

- 재정신청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1. 필요적 심문 및 필요적 증거조사 도입, 2. 3개월 시한 폐지, 3. 심리 공개를 규정하여 재정신청이 활성화, 신속화할 수 있도록 함.

- 준항고 제도의 활성화, 신속화를 도모하기 위해 필요적 심문 제도 및 심문 종료 후 2주 내 결정을 하도록 함.

33. 언론에 보도된 대검찰청 예규 '검사의 수사개시에 대한 지침'을 보면 제7조 1항은 '범인·범죄사실·증거 중 어느 하나 이상을 공통으로 하는 등 합리적 관련성이 있는 범죄의 경우'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 보고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개정 검찰청법의 취지가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로 명시한 부패·경제범죄, 경찰공무원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이 범한 범죄, 경찰이 송치한 사건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 제한하고 있는 바, 검찰의 예규 및 시행령 개정을 통한 수사 권한 확대로 인해 그 외의 범죄도 수사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줬다는 비판이 있음.

-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지난 7월 12일, "검사 수사개시에 대한 지침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에 정보 공개를 판결하였음. 행정법원의 판결 결정에 대한 취지에 대한 후보자의 이해와 견해는? ····· 677

- 비공개된 대검찰청 예규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형사사법절차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해결책은? ····· 677

34. 노동운동을 탄압하는 데 악용됐던 노동쟁의조정법의 '제3자 개입금지조항'이 업무방해방조죄라는 이름으로 부활한 게 아닌지 우려가 있음. 업무방해 방조죄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678

박범계 위원장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

《박범계 위원장 서면질의》

1. 대법관이 갖추어야 할 능력과 자질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

○ 대법관으로서 가장 중요한 능력과 자질은 사람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에 따라 대법관에게는 헌법적 가치에 대한 수호 의지, 함께 살아가는 시민들에 대한 애정, 소수자 보호에 대한 신념,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포용하고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균형 감각 그리고 최종심급 담당자로서 시대적 요구와 가치를 반영하는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통찰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 후보자가 스스로 대법관으로서 적임자라고 생각하는 이유

○ 제가 스스로를 대법관 적임자인지 판단하는 것은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제가 지향하였던 법관의 모습을 위주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타당한 결론을 선언하기 위해 내내 연구하고 고민하는 판사, 당사자와 잘 소통하는 판사가 되고자 늘 치열하게 노력하였고, 이를 좋게 평가해 주신 것 같아 감사할 뿐입니다.

3. 대법관이 된다면 앞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과제 3가지와 그 이유

○ 사법부는 재판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기관입니다. 그러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최근 재판지연 현상에 대해 국민의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신속한 재판을 구현하기 위해서 우선 재판지연의 원인을 정확히 분석하고, 인적·물적 자원이 확충되기 전에라도 재판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재판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올해부터 법관 사무분담을 장기화하고, 법원장이 직접 재판을 담당하며, 판결서 작성방식을 사건 난이도에 따라 적정화하여 사건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또한 이를 위하여 법관 및 재판연구원 증원 등 인적 여건의 확충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법관증원에 관해서는 21대 국회에서 법관증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무척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법부 구성원은 물론이고 여, 야 가릴 것 없이 모두 법관 증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22대 국회에서는 조속하게 법관증원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아울러 법조일원화가 시행된 지 10년이 되었는바, 풍부한 경력과 실력을 갖춘 법조인이 법관으로 임용되고, 임용된 법관이 열정과

사명감을 가지고 재판에 임할 수 있도록 법관 인사제도 개선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고민을 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 최근 대법원장 자문기구인 사법정책자문위원회에서도 관련하여 법관인사제도 및 재판절차 개선을 위한 논의에 착수하였고, 2024. 7. 16.자 회의 결과 '법관임용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법원조직법 개정을 통해 5년 이상 법조경력자를 법관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면서, 재판장이 되기 위한 요건은 법조경력 10년 이상으로 강화하여 법조일원화의 목적과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건의 내용을 잘 반영하여 법관임용제도를 개선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구현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4. 후보자가 가장 존경하는 인물

○ 공직자로서 오로지 백성을 위하는 위민(爲民)의 자세를 보여주셨던 세종대왕을 존경합니다. 세종대왕께서는 백성들을 위하여 훈민정음을 창제하고 우리나라 최초의 농사책인 농사직설을 편찬하였을 뿐 아니라, 노비와 죄인 등 사회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는 백성들에 대해 지금 보더라도 파격적인 정책을 펼쳤다는 면에서 놀라움과 존경의 마음을 늘 간직하고 있습니다.

5. 후보자가 담당했던 사건 중 가장 의미있거나 자랑스러운 판결 3건 및 그 이유

○ 서울고등법원 노동전담부에 근무하면서 헌법과 법에 따른 근로자의 권리가 보장되고 있는지 늘 고민하며 재판하였습니다.

○ 노동전담부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은, 근로자가 파면처분의 무효를 구한 사건에서 파면처분 이후 이미 정년 도래로 당연 퇴직되었는데 파면처분의 무효를 구할 이익이 있는지가 선결 쟁점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파면처분 이후 당사자의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대한 구제신청,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한 재심신청이 각 기각되고, 위 재심판정에 대한 행정소송도 이미 기각 확정되어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장으로서 저는, 1심과 달리 파면처분에 대해 제기한 무효확인청구소송 중 정년이 도래하였다고 하더라도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퇴직급여 등이 감액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면 징계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보았고, 나아가 징계 재심 절차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협약에서 정한 재심의결 기한을 경과하여 근로자의 정년이 도래하기까지 재심의결을 하지 않았다면 당초 징계처분은 무효가 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위 사건에서 저는 근로자가 징계처분의 효력을 다툴 소의 이익을 폭넓게 인정하고, 징계 재심에서의 근로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 학원강사들의 근로자성이 문제된 사건에서, 해당 강사들이 학원과

수강료를 일정한 비율에 따라 나눠 갖는 소위 '비율제 강사'들이었고, 근로계약의 형식이 강의위수탁계약으로 형식적으로 개인사업자의 성격을 띠고 있기는 하지만, 학원이 교육과정별 통일성 있는 수업 진행을 하도록 하고, 학생 수 및 학생들의 레벨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강사를 지정하였으며, 수강료의 비율을 정하는 점 등 그 실질에 대하여 충실하고 심도 깊게 심리하여 해당 학원강사들이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사업부문별 근로자 수의 차이가 큰데도 각 사업부문을 선거구로 하여 같은 수의 근로자위원을 선출한 선거가 무효라고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노사협의회에 근로자위원의 선출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자율적으로 정할 재량이 있더라도, 그 재량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헌법상 권리가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헌법상의 평등 원칙은 노사협의회의 선거구 획정에 있어서도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6. 후보자가 담당했던 사건 중 가장 아쉬운 판결 3건과 및 그 이유

○ 가장 아쉬웠던 판결로 특별히 기억이 나는 사건은 다행히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가장 판결 내리기 어려웠던 사건으로는 부산고등법원에서 담당하였던 '발달장애인의 영아 투기 살인 사건'이 기억납니다.

○ 1세에 불과한 어린 피해자를 난간 아래로 집어던져 살해하였다는 사실로 발달장애 1급의 18세 피고인이 기소가 되었던 사건입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심신상실 상태를 인정하여 무죄판결을 하고, 치료를 받을 필요와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치료감호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항소심 재판장으로서 관여하였던 저는 결과의 참담함과 자신의 행위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발달장애인인 피고인의 특성 사이에서 깊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무죄판결은 유지하고, 항소심에서의 추가적인 감정결과 등을 종합하며 치료감호는 받아들였습니다. 정신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처우에 대해 우리 사회가 깊이 고민해야 할 숙제를 던져준 사건이었습니다.

7. 법관탄핵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

8. 법관을 탄핵할만한 헌법, 법률위반이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라고 생각하는지

○ 위 질의에 대한 공통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 헌법 제106조 제1항에서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정한 바와 같이 재판의 독립을 위해 법관의 신분은 엄격하게 보장되어야 합니다.

○ 헌법 제65조는 법관 등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헌법재판소법 제53조는 헌법재판소로 하여금 “탄핵심판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에는 피청구인을 해당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이때 “탄핵심판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란 피청구인의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헌법재판소 2023. 7. 25. 결정 2023헌나1).

○ 법관에 대한 탄핵은 헌법 및 법률이 정한 엄격한 절차와 요건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고 일반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 외에 대법관 후보자로서 구체적인 의견을 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9.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정치적 편향성을 지니고 있는 단체라는 일부언론과 정치권의 지적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

○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같은 특정 성향 연구단체가 정치화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던 점은 알고 있습니다.

○ 그러나 법원내 학술 모임은 자발적인 모임이고, 법관이 어느 연구회에 소속되어 활동하는지에 따라 해당 법관의 이념이나 성향을 단정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 법관 개개인이 생활에서 절제하여 자신의 재판에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활동을 삼가야 하지만, 특정 모임에 가입하고 있다는 이유로 해당 법관의 이념이나 성향을 단정하는 것이 법원내 갈등을 오히려 증대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0. 대법원의 판결이 국민의 법감정과 괴리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대법관 인적 구성 다양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

○ 대법원은 사회 구성원의 다양한 이해관계의 통합을 이루어 내고, 이를 통하여 우리 사회의 규범적 가치 기준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대법원이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관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인적 구성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깊이 공감합니다.

○ 우리나라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대법관의 학력, 경력, 성별, 지역을 안배하는 방향으로 구성을 다양화 하여야 한다는 요구가 크고, 이러한 방안도 대법원 인적 구성 다양화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궁극적으로는 사회적 쟁점에 관한 가치관이나 사법철학을 다양화하는 방향이 강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대법관 제청절차에서 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피천거인 중 심사동의자의 명단과 정보를 미리 공개하여 후보자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비당연직 위원에 대한 추천절차를 도입하는 한편 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를 비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하며,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에 대하여도 다시 한 번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는 것은 대법관 구성에서 다양성을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 아직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이 국민의 눈높이에 충분하지 않을 수 있으나, 위와 같은 노력에 더하여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와 법조일원화 제도가 정착되어 감에 따라 법관 구성 자체가 다양해지고 있어 향후 대법원의 다양성이 더욱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11. 민사본안 사건의 70%가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종결되는데, 이에 대한 당사자들의 불만이 많음. 이에 대한 후보자가 생각하는 해결방안

○ 대법원은 최고법원으로서 당사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최후의 보루이자, 헌법 원리에 입각하여 법령을 최종적으로 해석 · 적용함으로써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법률적 쟁점에 관하여 규범적 기준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러나 대법원에 접수되는 사건 수를 고려할 때 대법관들이 모든 사건에 대하여 하급심 판결과 같이 상세한 논증을 담은 판결서를 작성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 이용훈 대법원장 시기부터 전임 대법원장 시기까지, 상고제도 개편 방안에 관하여 이미 많은 연구 결과가 축적되어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상고허가제, 고등법원 상고부 설치 방안, 상고법원 설치방안 등은 각각 제도의 장점과 단점에 대한 연구, 검토 결과가 상당히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기부터 섣불리 어떤 방식을 정해 추진하기보다, 그동안 연구·검토된 결과를 기초로, 법원 내부 구성원을 포함한 각계의 총의를 모아가며 큰 틀에서의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현재 운영되는 제도로서는 심리불속행제도가 대법원의 법률심 기능을 확보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이유의 기재가 없다는 등 사유로 여러 비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현재의 과다한 대법원의 사건 부담에 비추어 볼 때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따라서 우선적으로 심리불속행제도의 긍정적인 역할을 유지하면서도, 심리불속행 기준을 마련하는 등 보다 합리적으로 제도를 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상고이유서 원심법원 제출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고, 장기적으로는 상고심에서 심리할 실질적인 사건을 선별하는 상고심사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고심사제를 도입하더라도, 헌법을 부당하게 해석한 사건,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는 판단을 한 사건, 판결의 이유를 밝히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사건 등 권리구제가 필요한 사건들은 본안판단의 대상이 될 것이므로, 현행 제도 하에서 상고심에서 파기될만한 사건들은 상고심사제 하에서도 본안판단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하는 동시에 법률심인 대법원의 기능도 충분히 발휘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하급심 강화를 통해 재판에 대한 승복률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이와 함께 큰 틀에서의 상고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검토도 지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2. 한정위헌결정과 관련하여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간의 갈등이 있는데, 후보자의 견해는

○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재판소원의 인정여부, 한정위헌 결정의 기속력, 명령·규칙에 대한 위헌심사권, 관습법·긴급조치에 대한 위헌심사권 등에 관하여 다소 입장의 차이가 있어 왔습니다.

○ 우리 헌법은 제5장에서 법원을 사법권의 담당기관으로 규정하고, 제6장에서는 헌법재판소를 위헌법률심판 등을 관장하는 헌법기관으로 규정하여, 담당하는 사법권의 영역이 서로 상이하지만 대등한 사법기관으로서 지위와 권한이 분배되어 있습니다.

○ 양 기관이 헌법의 취지에 따라 서로의 역할과 기능을 존중하여 각자의 영역 내에서 헌법질서의 유지 및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사명에 충실한다면, 위와 같은 입장의 차이를 점차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3. 정부가 시행령 마련 시 상위법의 입법(개정)취지를 반영해야한다는 주장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

○ 헌법 제75조는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만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으므로, 법률의 시행령은 모법인 법률에 의하여 위임받은 사항이나 법률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 법률을 현실적으로 집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만을 규정할 수 있을 뿐, 법률에 의한 위임이 없는 한 법률이 규정한 개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보충하거나 법률에 규정되지 아니한 새로운 내용을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정부가 시행령 제정 시 상위법의 입법취지를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은 이러한 법률유보원칙에 충실하게, 상위법의 입법취지 및 법률의 규정을 살펴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집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시행령으로 규정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 취지에 공감합니다.

○ 한편 대법원판례에 따르면 ① 법률의 위임 규정 자체가 의미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여 위임의 한계를 분명히 하고 있는데도 하위 법령이 문언적 의미의 한계를 벗어났다든지, ② 위임 규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의미를 넘어 범위를 확장

하거나 축소함으로써 위임 내용을 구체화하는 단계를 벗어나 새로운 입법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 이는 위임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에서 시행령이 모법의 상위법의 위임의 한계를 벗어났는지를 판단할 때에 모법의 법률규정 문언을 일차적으로 살피고 그 의미를 해석할 때에 입법취지도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4. 대법원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가해기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한 판결을 내린 이후 정부가 마련한 민간기업을 통한 피해 보상안(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한 배상금 지급)이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반한다는 지적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

○ 민법 제469조 제1항은 "채무의 변제는 제삼자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삼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단서의 해석과 관련하여 채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3자의 변제가 허용되는지, 나아가 제3자가 변제공탁을 하였을 때 공탁관이 이러한 사유로 불수리 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법률적인 쟁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런데 해당 사건에서 제3자 변제안을 기초로 한 공탁신청에 대하여 공탁관의 불수리처분이 있었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항고절차가 진행 중에 있으므로, 대법관 후보자로서 이에 관한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심리전단국 직원들을 동원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인터넷 게시판 등에 댓글을 남겨 정치와 선거에 개입한 혐의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

○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국정원 직원들을 통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인터넷 게시판 등에 댓글을 남기는 등으로 정치에 관여하여 국가정보원법을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유죄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통령과 정부의 정책은 국민들 사이 또는 정치세력 사이에 찬반양론이 있을 수밖에 없고, 국민의 여론은 각 개인과 정당을 비롯한 정치적 결사체들 사이의 건전한 비판과 토론을 통하여 자유롭게 형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대법관 후보자로서 위 판결 결과에 대하여 더 나아가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후보자는 대통령에게 개별 수사에 대한 지휘권이 인정된다고 생각하는지

○ 대한민국 헌법 제66조 제4항에 따라 대통령은 행정권을 가지고, 검찰청법 제8조는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과 개별 법률상 대통령에게 개별 수사에 관한 지휘권을 부여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 이와 같은 법률 규정에 관한 일반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 외에 대법관 후보자로서 이에 관하여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면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 사형제 폐지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

○ 사형제에 관하여 찬·반 양론이 대립하고 있고, 양 주장 나름대로 타당한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다만 법정형에 사형이 존치되고 있는 현 상황을 전제로 말씀드리면, 사형제도는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형벌로서 일단 집행된 경우에는 오판이라 해도 돌이킬 수가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범행에 대한 책임의 정도와 형벌의 목적에 비추어 누구라도 그것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사형이 선고되는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18. 법왜곡죄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

○ 법왜곡죄란 판·검사 등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증거나 사실관계를 조작하거나, 적용되어야 할 법령을 적용하지 않거나 부당하게 적용하는 등 법 왜곡 행위를 한 경우 처벌하는 규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 법원과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형사사법절차에서의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자 하는데 그 입법 취지가 있다고 이해하고 있으나, 법왜곡죄는 법왜곡이라는 개념 자체의 추상성, 사건 관계인들의 고소· 고발 남발 가능성, 수사와 재판의 독립성 침해의 우려도 있습니다.

○ 이에 대하여는 유관기관,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해외 입법 사례에 대해 연구·조사하는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회에서 신중하게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19. 검사의 기소편의주의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

○ 형사소송법 제247조(검사는「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기소편의주의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범죄자의 정상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경우에 반드시 기소하여야 한다면, 오히려 구체적 정의에 반하는 경우가 생기고 형사정책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 한편, 우리나라는 기소편의주의 외에도 검사의 기소독점주의를 채택하고, 검사에게 광범위한 수사지휘권까지 부여하여 다른 나라에 비해 검사의 권한이 지나치게 넓다는 비판이 있기도 합니다.

○ 따라서 검사가 기소편의주의 하에서 기소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도 자의적인 불기소처분을 막기 위한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하고, 구체적인 권한 행사에도 각별히 유념하여야 할 것입니다.

○ 법관들도 검사의 기소편의주의를 통제하기 위해 마련된 재정신청 제도를 그 취지에 맞도록 제대로 운영하여 검사의 권한을 적절하게 통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울러 재정신청을 통해 기소된 사건의 공소유지를 불기소한 검찰에서 담당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취지에서 공소유지변호사제도의 부활에 대한 진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는 무제한으로 인정된다고 생각하는지 후보자의 견해

○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면하고(대한민국 헌법 제78조), 일정한 절차에 따라 국무총리(대한민국 헌법 제86조), 국무위원(대한민국 헌법 제87조), 행정각부의 장(대한민국 헌법 제94조), 감사원장(대한민국 헌법 제98조) 등을 임명합니다.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 이와 같은 법률 규정에 관한 일반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 외에 대법관 후보자로서 더 이상의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면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 전관예우 및 후관예우를 근절하기 위해 후보자가 생각하는 해결방안

○ 전관예우 관행이 존재한다고 믿는 국민들이 적지 않고,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를 떠나, 재판은 실체와 외관 모두 공정해야 하므로, 이러한 국민들의 우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법원은 부단히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 이를 위해 정원 외 법관으로서 원로법관제도 도입 및 법관의 직무환경 개선 등을 통해 법관이 정년에 이르기까지 근무하는 평생법관제도가 정착되어, 전관변호사의 발생을 근본적으로 차단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재판과정 및 결과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형사사건에 있어서는 법정 외 변론 금지, 수임 제한, 연고관계 재배당, 회피제도 활성화 등이 전관예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기준을 토대로 공정하고 적정한 양형을 하고, 국민참여재판, 불구속 재판과 국선변호를 적절하게 확대해 나가 국민들에게 재판과정과 결과에 대하여 정확하게 설명하고 그에 대한 이해를 구하는 데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후관예우라 함은 법조일원화 제도가 시행되면서 일정 경력을 갖춘 법조경력자들이 법관으로 임용되기 때문에 특히 대형 로펌에서 이러한 변호사들을 특별 예우 한다는 것입니다. 사법부로서는 블라인드 방식으로 절차를 진행하고 또 다양한 외부 인사의 참여를 통해 공정한 법관

임용절차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왔음에도 그러한 비판이 있다는 것이 다소 안타깝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큰 사건을 대형 로펌이 주로 담당하는 현실이나 과거 전관예우로 인한 문제로 인해 이른바 후관예우에 대해서도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바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 이미 후관예우 방지를 위해서 형사소송법상 제척사유로 퇴직 후 일정기간이 지나지 않은 법무법인의 사건을 규정하고 있고, 예규와 각급 법원 내규에서 연고관계에 있는 사건의 경우 재배당할 수 있는 제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다만, 공정성을 중시하는 현재의 법관임용절차에서 일정 비율의 대형 로펌 출신 법관이 선발되는 것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비율이 과도한 것인지 제대로 점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그 비율이 과도하다면 다양한 법조경력자가 선발될 수 있도록 임용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겠으나, 그 경우에도 공정성이 크게 훼손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22. 성범죄 방지를 위해 법정형을 상향하자는 주장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

○ 양형기준은 법원조직법 제81조의2, 6에 따라 형을 정함에 있어 국민의 건전한 상식을 반영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을 실현하기 위하여 마련된 기준으로, 그동안 국민의 법 감정에 부합하는 양형, 객관적이고 예측가능성 있는 양형을 실현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 성범죄 양형에 관하여 과거 법원의 양형이 약하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였으나 최근 법정형의 상향, 양형기준 상향 설정 등을 바탕으로 과거보다 매우 엄정한 양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성범죄의 엄중한 처벌을 원하는 국민적 요구에 대하여는 개별 형사법관들도 무겁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으나, 법정형을 과도하게 상향한다면 전체 형사법체계의 정합성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물론, 개별적인 사건에서 책임에 비례하는 적정한 양형이 어렵게 될 수도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23. 형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모욕죄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므로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

○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일반의 평가를 보호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사회구성원의 인격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다만 허위사실이 아닌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것에 대하여,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와 언론·출판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정치적으로 악용될 위험이 있다는 비판과 함께 위헌 논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다만, 헌법재판소는 두 차례에 걸쳐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관한 헌법 제307조 제1항에 대하여 합헌결정을 내린 바 있고, 대법원 역시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개인 사생활의 공개는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한 부작용이 크며 형벌을 대체할 만한 적절하고 효과적인 수단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들어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라도 명예훼손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저는 이러한 헌법재판소 결정과 대법원 판결을 기본적으로 존중합니다. 다만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적용 과정에서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을 수 있도록, ①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증명가능성, 문맥, 상황 등을 고려하여 사실의 적시와 의견 표현을 적절히 구별하고(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8도11491 판결 등), ② 적시된 사실의 내용, 공표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명예 침해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진실성과 공익성의 요건을 갖춘 경우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을 부정하는 등의 방법(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도1473 판결 등)을 통하여 신중하게 법률을 해석하여 적용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모욕죄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모욕죄의 보호법익,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볼 때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 감정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금지되는 행위가 무엇인지를 예측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보기 어렵고, 대법원이 모욕의 의미에 대하여 객관적인 해석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헌법재판소 2013. 6. 27. 선고 2012헌바37 전원재판부 결정, 2020. 12. 23. 선고 2017헌바456 등 전원재판부 결정, 2021. 9. 30. 선고 2021헌가2 등 전원재판부 결정). 저 또한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기본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 다만 위 헌법재판소 결정의 반대의견처럼 '모욕'의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여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있으므로, 법 적용 및 처벌에 있어서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4. 노동법원 설치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

○ 최근 노동법원 신설에 대해 사회적 관심이 증대된 것을 언론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제21대 국회에서도 노동법원 신설 법률안이 발의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최근까지 법원행정처 차장, 기획조정실장으로 근무하며 가정법원과 회생법원의 신설을 추진하기도 하여 전문법원의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 노동법원의 설치와 관련하여서는 노동사건의 전문성과 신속한 법률서비스 제공을 근거로 이를 긍정하는 견해가 있으나, 노동사건의 수가 별도 법원을 설치할 필요로 많지 않은데,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는데 드는 비용이 상당한 점 등을 근거로 이를 부정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현황과 통계 분석을 기초로 노동법원의 필요성, 효과, 관계기관과의 업무조율 등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 충분한 연구와 논의를 한 이후,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25.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고의 또는 악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가해자에게 실제 피해액보다 많은 금액의 손해배상을 하도록 함으로써 사회 일반에 대한 불법억제 효과를 도모하고, 광범위한 피해 발생을 예방하려는 점에서 긍정적인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제도 역시 경제성장 저해 우려, 소송의 남발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등의 시행 사례 등을 참고하여 확대 적용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6. 간통죄 폐지된 후에도 법원이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액수를 과거의 관행대로 여전히 낮게 책정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 현재 법원의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산정 기준이 국민의 정서와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을 잘 알고 있고, 위자료 액수의 형평성 제고, 위자료 현실화 방안, 유형별 기준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법원은 2016. 10. 20. “불법행위 유형별 적정한 위자료 산정방안” 최종안을 작성하였고, 그 과정에서 전국 법관들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법원은 매년 손해배상소송실무 연수를 통해 손해배상소송과 관련한 제문제에 대해 담당법관들의 현재 실무상 문제되고 있는 주제에 관하여 심층적인 토론과 의견교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다만, 위 산정방안이 작성된 지 상당한 기간이 지났으므로, 법원은 그동안의 사회변화와 실무의 동향을 반영한 새로운 위자료 산정기준을 마련하기 위하는 작업에 착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이고 형평성 있는 위자료 산정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물색하여 실행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7. 대법원이 도입을 검토 중인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도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

○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관련 임의적 대면심사제도는 압수·수색 영장 발부 여부 및 그 범위를 정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법관이 필요성과 대상의 특정 등 영장발부 요건이 충족되었는지에 대하여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설명을 청취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 기본적인 취지는 수사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전자정보에 대하여 선별적인 압수·수색이 이루어지도록 압수·수색실무를 개선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더욱 충실하게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사 밀행성과 신속성 또한 중요한 가치이므로 이를 해하지 않는 제도 운용 방안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한편 이와 같은 제도의 도입은 대법원 규칙보다는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고, 최근 22대 국회에서 관련 법률안이 발의된 만큼, 국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지혜로운 결론을 도출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28.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이 90%가 넘는 등 과잉 발부라는 지적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

29. 검찰의 과도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에서 최후의 보루인 법원의 적정한 사법통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

30. 특히 검찰이 사생활이 담긴 전자정보를 '통째'로 압수수색 하는 경우가 많아 법원이 일부기각 등 적절한 통제를 해야한다는 지적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위 질의에 대한 공통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과도한 압수·수색으로 인하여 국민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침해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사회의 특성상 압수·수색을 통하여 휴대전화, 컴퓨터 등에 저장된 내밀한 사생활 정보까지 무분별하게 압수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사법부가 적절히 통제하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는 점에 공감합니다.

○ 다만 실무상 압수·수색영장 전부를 기각할 만한 사안은 많지 않고, 통상 일부기각의 방법으로 과도한 압수·수색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압수·수색영장의 발부를 신중히 해야 한다는 점에는 깊이 공감하

고, 이를 위하여 법관들이 수사의 밀행성과 필요성을 존중하면서도,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조화롭게 고려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심리할 수 있는 수단을 부여하는 등의 제도적 개선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먼저 무분별한 압수수색영장의 발부를 제한하기 위하여, 압수·수색영장 발부 단계에서 압수 대상 정보를 최대한 선별할 수 있도록 심리 여건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도도 이러한 취지에서 압수·수색 영장 발부 여부 및 그 범위를 정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법관이 필요성과 대상의 특정 등 영장발부 요건이 충족되었는지에 대하여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설명을 청취할 수 있게 함으로써, 선별적인 압수·수색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도입 여부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나아가 압수된 정보가 수사 및 재판절차 종료 후 확실히 폐기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 역시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31. 공정위, 국세청, 감사원 등 권력형 조사기관들에 대하여 검찰, 경찰 수사와 같이 피조사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변호인 조력권을 인정해야한다는 주장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

○ 권력형 조사기관들의 조사는 행정조사에 해당하고 수사기관의 활동인 수사와는 근본적으로 그 성격을 달리하나, 각 권력기관들은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피조사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고, 행정조사도 수사기관의 수사와 마찬가지로 그 조사절차에 있어서 적법절차 원칙이 준수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권력기관과 일반 사인인 피조사자가 실질적으로 대등한 지위에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결국 피조사자의 방어권 행사를 위하여서는 일정한 수준의 변호인 조력권을 인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에 공감합니다.

○ 그러나 행정조사와 수사는 그 성격과 절차 및 관련 규율이 다르므로, 변호인 조력권의 인정 범위 및 내용에 관하여 전문가의 의견, 해외 사례와 국민의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회에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하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32. 최근 문제되고 있는 교제 폭력, 디지털 성범죄 등의 심각성에 비해 양형기준이 낮다는 지적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

○ 양형기준은 양형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이면서도 헌법이 보장하는 법관의 양형판단권을 보장하여 구체적 타당성 있는 판결을 할 수 있는 형태로 설정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디지털 성범죄를 포함한 성폭력범죄 등의 양형기준이 국민의 법감정에 비추어 볼 때 형량이 낮다는 비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데이트 폭력 사건이 증가하고 피해도 커짐에 따라 국민들의 우려가 크다는 점도 알고 있습니다.

○ 먼저 데이트 폭력은 서로 교제하고 있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폭력 범행에 쉽게 노출이 되는 반면, 연인관계에서 오는 양가감정으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이루어 질 수 있다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데이트 폭력의 특수성이 고려되지 않고 일반 폭력의 양형기준이 적용되어 처벌이 충분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고, 데이트 폭력범죄의 관계 특수성을 고려한 별도 규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는바, 경청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폭력범죄 양형기준에는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각 특별가중인자로 열거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사실이 밝혀지면 양형의 가중요소로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처벌불원’에 대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자나 유족(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이 처벌불원의 법적 · 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정의하면서 ① 피고인 측의 사실상의 강요 또는 기망에 의한 처벌불원 등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지 않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나, ②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처벌불원의사에 통상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정의하고 있으므로, 처벌불원 의사의 진실성을 따져 신중하게 인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구체적인 데이트 폭력 사건에서 위 각 양형인자에 대한 충실한 양형심리를 통해 피고인의 책임에 부합하는 올바른 양형을 내려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 다음으로, 양형위원회에서는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를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하고, 법정형이 동일한 범죄에 설정된 양형기준보다 권고 형량범위를 규범적으로 상향하여, 종전 실무보다 엄정한 양형이 이루어지도록 양형기준을 만들었고, 2021. 1. 1.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 「2022년 양형기준 적용현황분석」에 의하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카메라등 이용촬영,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통신매체이용음란 전체 대유형에서 기본영역이 적용된 사건이 제일 많고 그 다음으로 가중영역이 적용된 사건이 많았습니다. 각 재판부가 구체적 사건에서 위와 같은 특별가중인자를 비롯한 다양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한 양형을 선고하도록 노력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33. 후보자가 받은 국외 교육훈련을 통해 사법정책 개선 방안을 제안한 것이 있는지

○ 장기 국외훈련 파견기간 동안에, NYU school of law에서 ‘회사법(corporate law) 전공 LL.M.’을 하였고, 귀국 후 ‘회사 합병계약 중 사정변경조항과 관련하여’라는 제목으로 소논문을 작성하였습니다.

○ 단기 해외출장으로, UNCITRAL(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 회의에 다녀온 뒤 ‘UNCITRAL 담보부거래 입법지침 연구’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작성하기도 하였습니다.

○ 또한 한국에 양형기준 제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던 초기에 외국의 양형제도연구 책자에 ‘미국 뉴욕주의 양형제도’에 관한 논문을 개제하였습니다. 미국 뉴욕주의 양형제도가 범죄, 형벌을 어떻게 분류하고, 그리드식 양형기준을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상세히 설명하고, 우리나라의 양형기준 수립에 있어 비교법적 논의의 바탕을 제공하였습니다.

34. 후보자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4촌 이내 친인척 등이 재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소송이 있는지

○ 20여년 전에 어머니가 소유 건물의 점유자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밖에는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관련 소송은 없습니다.

○ 그 밖에 4촌 이내 친인척 관련 소송에 관하여는 알지 못합니다.

35. 후보자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세금을 누락하여 신고한 적이 있는지

○ 2020년 후보자의 모친으로부터 약 6,000만 원을 수증받아 증여세 면세한도(1,000만원)를 초과한 5,000만 원에 대한 증여세 7,436,350원을 납부하였습니다. 그리고 2021년 후보자의 모친으로부터 약 3,000만 원을 수증받아 이에 대한 증여세 4,198,410원을 납부하였습니다.

○ 올해 대법관 후보로 거론되는 과정에서, 당시 증여에 관한 검토가 이루어졌고, 일부 증여세가 납부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배우자가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하였습니다.

○ 그 외에는 없습니다.

36. 조희대 대법원장과 근무를 함께 하였거나 사적으로 친분이 있는지

○ 없습니다.

37.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소만 옮겨놓은 적이 있는지와 그 이유는

○ 없습니다.

38. 자녀의 재산축적 경위와 세금을 뒤늦게 납부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 딸의 재산은 어릴 때부터 모은 용돈, 장학금(학비 제외한 금액), 변호사가 되어 받은 보수 등으로 형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자녀 관련 세금을 뒤늦게 납부한 사실은 없습니다.

39. 독립생계를 유지하는 가족 또는 소득있는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연말정산 인적공제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 없습니다.

40. 후보자가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재직시 주요성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재직하면서 훌륭한 법관 및 직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 업무하면서 여러 성과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 법조일원화제도와 평생법관제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면서도 신속하고 충실한 재판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재판연구원의 충원이 필요합니다. 저는 기획재정부와의 직제협의 및 재판연구원 규칙 개정을 통해 2023년 재판연구원 정원을 기존 300명에서 350명으로 증원하였고, 2024년 재판연구원 정원을 400명으로 증원하였습니다.

○ 또한 형사전자소송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형사전자소송이 도입되면 소송기록의 전자화로 기록에 대한 접근권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어 피고인의 방어권이나 피해자의 절차관여권 등 소송관계인의 기본권이 크게 강화되고, 사법절차의 투명성이 제고되어 사법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3. 6. 형사전자소송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국 법원 간담회를 실시하고, 2023. 7. 형사전자소송시스템 구축사업 계약을 체결한 뒤 형사전자소송시스템 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5년 초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편 형사전자소송의 전면 실시에 대비하는 과정에서 경력대등재판부를 중심으로 '형사소송 전자기록사본 열람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시행하였는데, 이 역시 같은 재판부 소속 법관들이 동시에 기록을

열람하는 것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경력대등재판부가 본연의 취지대로 운용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 도산사건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2023년 수원회생법원과 부산회생법원을 성공적으로 출범시키고, ‘신속한 도산사건 처리를 위한 종합대책팀’을 운영하여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국민과 기업의 회복을 돕는 데 다소나마 역할을 한 것도 뿌듯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2023. 3. 개원한 수원회생법원·부산회생법원의 경우 개원 전·후 법인회생사건 처리기간이 절반으로 단축(개시결정까지 소요기간 : 수원 개원 전 61일 ⇨ 현재 28일, 부산 개원 전 97일 ⇨ 현재 45일)되는 등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채무자의 신속한 갱생과 회복을 돕고 도산사건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41. 신광렬 법률사무소가 대리/변호한 사건 중 후보자가 판결한 사건이 있는지

○ 없습니다.

42. 과거 사법농단 수사 과정에서 법원의 영장 발부가 공정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

○ 형사소송법에 정한 구속 사유, 즉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주거부정, 증거인멸의 염려, 도망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이를 심사함에 있어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 법원은 이와 같은 법률규정에 따라 영장재판에 임하여 온 것으로 알고 있다는 점 외에 대법관 후보자로서 이에 관하여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면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 후보자가 법원행정처에 설치된 양성평등연구반 반장을 맡았을 때 주요 성과 및 소회

○ 우리 사회가 사회구조적인 성차별을 개선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에 성차별적 요소는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저는 2016년 젠더법연구회의 참여 하에 법원행정처에 설치된 양성평등연구반의 반장을 맡아 경력별 연수 등 법관연수에 성인지 교육을 도입하는 한편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성희롱 등 처리절차와 양성평등상담위원 제도를 포함한 피해회복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양성평등 가이드북을 제작하는 등 법원 내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나아가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해 신설된 법관연수 성인지 교육과정에 강사로 참여하기도 하였습니다. 양성평등연구반 반장으로서 하였던 위와 같은 활동이 법원 내 성평등을 실현에 작은 보탬이 되었던 것 같아서 보람되게 생각합니다.

44. 2020년 학생이었던 후보자의 장녀의 예금액이 급증하게 된 경위

○ 딸의 재산은 어릴 때부터 모은 용돈, 장학금(학비 제외한 금액) 등으로 형성되었고, 그 외에도 면세한도 내에서 후보자의 모친으로부터 일부 증여를 받았습니다.

45. 2020, 2021 배우자의 증여세 납부경위 및 납부자금 마련경위

○ 2020년 후보자의 모친으로부터 약 6,000만 원을 수증받아 증여세 면세한도(1,000만원)를 초과한 5,000만 원에 대한 증여세 7,436,350원을 납부하였습니다. 그리고 2021년 후보자의 모친으로부터 약 3,000만 원을 수증받아 이에 대한 증여세 4,198,410원을 납부하였습니다.

○ 올해 대법관 후보로 거론되는 과정에서, 당시 증여에 관한 검토가 이루어졌고, 일부 증여세가 납부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하였습니다.

46. 후보자의 자녀가 후보자와 수년간 근무 인연이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 입사하였는데 과거 인연이 특혜로 작용했다는 의혹에 대한 입장

○ 딸은 서울대 경제학부를 거쳐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올해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 이러한 딸의 학력 등을 고려하여 신광렬 변호사 사무실에서 채용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허영 위원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

《허영 위원 서면질의》

1. 대법관의 위상과 역할은?

○ 대법원은 최고법원으로서 당사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최후의 보루이자, 헌법 원리에 입각하여 법령을 최종적으로 해석 · 적용함으로써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법률적 쟁점에 관하여 규범적 기준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러한 대법원의 역할을 올바로 수행하기 위해서, 대법관은 국민의 기본권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법적 기준과 가치를 제시하며, 서로 대립하는 다양한 가치와 이해관계가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또한 대법관은 대법관회의의 구성원으로, 법관의 임명과 연임, 대법원규칙의 제정과 개정, 판례의 수집 및 간행, 예산 요구, 예비금 지출과 결산 등을 비롯한 사법부의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2. 후보자께서 대법관에 임명되고자 하는 이유는?

○ 저는 1996년 판사로 임관한 이래 전국 각지의 법원에서 다양한 재판업무를 경험하였습니다. 지난 28년 동안, 타당한 결론을 선언하기 위해 내내 연구하고 고민하는 판사, 당사자와 잘 소통하는 판사가 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 기회가 주어진다면, 법관으로서 오랜 기간 고민하면서 축적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가 보다 자유롭고 정의로운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 기여하고 싶다는 저의 소망을 밝히는 것으로 답변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3. 대법관이 어떠한 위치라 생각하며, 가장 중요한 덕목이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 대법원은 최고법원으로서 당사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최후의 보루이자, 헌법 원리에 입각하여 법령을 최종적으로 해석 · 적용함으로써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법률적 쟁점에 관하여 규범적 기준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 이러한 대법원의 역할을 올바로 수행하기 위해서, 대법관은 국민의 기본권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법적 기준과 가치를 제시하며, 서로 대립하는 다양한 가치와 이해관계가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야 할 책임이 있는 위치라고 생각합니다.

○ 대법관으로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사람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능력과 자질을 갖추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에 따라 대법관에게는 헌법적 가치에 대한 수호 의지, 함께 살아가는 시민들에 대한 애정, 소수자 보호에 대한 신념,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포용하고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균형 감각 그리고 최종심급 담당자로서 시대적 요구와 가치를 반영하는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통찰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4. 후보자의 좌우명은 무엇이며,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 좌우명은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입니다. 큰일을 앞두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한 후에(盡人事) 하늘에 결과를 맡기고 기다린다(待天命)는 뜻입니다.

○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 임하자고 스스로 다짐하는 의미와 그 후에 따라오는 결과에 대해서는 평정심을 가지자는 의미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담당해온 재판과 사법행정 업무 모두 어렵고 부담스러운 일이었는데, 매번 좌우명이 큰 도움과 위로가 되었습니다.

○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직업적인 면에서는 정의로운 재판이고 그 외의 면에서는 가족입니다.

5. 후보자가 존경하는 인물은 누구인가?

○ 공직자로서 오로지 백성을 위하는 위민(爲民)의 자세를 보여주셨던 세종대왕을 존경합니다. 세종대왕께서는 백성들을 위하여 훈민정음을 창제하고 우리나라 최초의 농사책인 농사직설을 편찬하였을 뿐 아니라, 노비와 죄인 등 사회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는 백성들에 대해 지금 보더라도 파격적인 정책을 펼쳤다는 면에서 놀라움과 존경의 마음을 늘 간직하고 있습니다.

6. 판사로 일하면서 가장 잘한 일 3가지와 후회되는 일 3가지는 무엇인가?

[가장 잘한 일 3가지]

○ 첫 번째는, 법정언행 컨설팅을 시행한 것이 생각납니다. 법정언행 컨설팅은 커뮤니케이션 전문가가 법관의 재판 진행을 관찰한 후 개별적으로 맞춤형 개선책을 제시하는 제도입니다. 이른바 '막말 판사'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거센 상황에서 기존에 해오던 '강의형 연수'만으론 부족하던 차에 1:1 컨설팅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법원행정처 기획총괄심의관으로서 컨설팅 전문가들에게는 법원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시키고, 법관들에게는 제도의 필요성을 설득하는데 노력을 기울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2012년부터 기초작업을 시작해서 2013년에 시범실시, 전국법원 확대실시를 하였습니다. 지금도 이 제도가 계속 성공적으로 시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보람을 느낍니다.

○ 두 번째로는, 양성평등연구반 활동이 기억납니다. 2016년 젠더법연구회의 참여 하에 법원행정처에 양성평등연구반이 생겼고, 제가 반장으로서 활동을 하였습니다. 경력별 연수 등 법관연수에 성인지 교육을 도입하였고, 피해자 의사를 존중하는 방식의 성희롱 등 처리절차와 양성평등상담위원 제도를 비롯하여 피해회복 지원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양성평등 가이드북을 제작하는 등 법원 내 성평등을 실현하는 데 기여하였다고 생각합니다.

○ 세 번째로는, 서울고등법원에서 부장판사로 재직하면서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기억에 남는 사건으로, 근로자가 파면처분의 무효를 구한 사건이 있었는데, 파면처분 이후 이미 정년 도래로 당연 퇴직되어 파면처분의 무효를 구할 이익이 있는지가 선결 쟁점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파면처분 이후 당사자의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대한 구제신청,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한 재심신청이 각 기각되고, 위 재심판정에 대한 행정소송도 이미 기각 확정되어 많은 고민을 하였으나, 1심과 달리 파면처분에 대해 제기한 무효확인청구소송 중 정년이 도래하였다고 하더라도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퇴직급여 등이 감액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면 징계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보았고, 나아가 징계재심 절차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협약에서 정한 재심의결기한을 경과하여 근로자의 정년이 도래하기까지 재심의결을 하지 않았다면 당초 징계처분은 무효가 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제가 한 판결이 사회의 약자를 보호하는 데 한 걸음이 될 수 있다는 것에 보람을 느낀 사건입니다.

[가장 후회되는 일 3가지]

○ 재판업무의 중요성과 사법행정업무의 파급효과 등을 생각하면 제가 내린 결정이나 처리한 업무가 항상 옳다고 자신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상황에 맞춰 제 주위에 있었던 훌륭한 법관 및 직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 업무에 임했기에 다행히도 잘못했다고 아쉬운 마음이 남아 있는 것은 없습니다.

7. 본인의 재판 중 가장 자랑스러운 판결은 무엇인지, 그리고 가장 아쉬운 판결은 무엇인지와 그 이유는?

○ 가장 기억에 남는 판결로는, 근로자가 파면처분의 무효를 구한 사건이 있었는데, 파면처분 이후 이미 정년 도래로 당연 퇴직되어 파면처분의 무효를 구할 이익이 있는지가 선결 쟁점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파면처분 이후 당사자의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대한 구제신청,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한 재심신청이 각 기각되고, 위 재심판정에 대한 행정소송도 이미 기각 확정되어 많은 고민을 하였으나, 1심과 달리 파면처분에 대해 제기한 무효확인청구소송 중 정년이 도래하였다고 하더라도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퇴직급여 등이 감액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면 징계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보았고, 나아가 징계 재심 절차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협약에서 정한 재심의결기한을 경과하여 근로자의 정년이 도래하기까지 재심의결을 하지 않았다면 당초 징계처분은 무효가 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제가 한 판결이 사회의 약자를 보호하는데 한 걸음이 될 수 있다는 것에 보람을 느낀 사건입니다.

○ 제가 관여한 판결이 모두 옳고 정당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당시 상황에 맞춰 최선을 다해 임했기에 특별히 아쉬운 마음이 남아있는 판결은 없습니다.

8. 대법관 퇴임 후 계획은?

○ 영리 업무에 종사하지 않고 공익적인 활동을 하고 싶습니다.

9. 법원의 대표적인 문제점 세 가지와 개선 방안에 대한 견해는?

10. 법원 개혁 우선순위 5건이 있다면?

○ 위 질의에 대한 공통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 법원 개혁은 법원의 대표적인 문제점을 찾아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으므로, 위 질의에 대하여 공통으로 답변하겠습니다.

○ 사법부는 재판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기관입니다. 그러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최근 재판지연 현상에 대해 국민의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신속한 재판을 구현하기 위해서 우선 재판지연의 원인을 정확히 분석하고, 인적·물적 자원이 확충되기 전에라도 재판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재판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올해부터 법관 사무분담을 장기화하고, 법원장이 직접 재판을 담당하며, 판결서 작성방식을 사건 난이도에 따라 적정화하여 사건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또한 이를 위하여 법관 및 재판연구원 증원 등 인적 여건의 확충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법관증원에 관해서는 21대 국회에서 법관증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무척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법부 구성원은 물론이고 여, 야 가릴 것 없이 모두 법관 증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22대 국회에서는 조속하게 법관증원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아울러 법조일원화가 시행된 지 10년이 되었는바, 풍부한 경력과 실력을 갖춘 법조인이 법관으로 임용되고, 임용된 법관이 열정과 사명감을 가지고 재판에 임할 수 있도록 법관 인사제도 개선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고민을 해야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 최근 대법원장 자문기구인 사법정책자문위원회에서도 관련하여 법관인사제도 및 재판절차 개선을 위한 논의에 착수하였고, 2024. 7. 16.자 회의 결과 '법관임용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법원조직법 개정을 통해 5년 이상 법조경력자를 법관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면서, 재판장이 되기 위한 요건은 법조경력 10년 이상으로 강화하여 법조일원화의 목적과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건의 내용을 잘 반영하여 법관임용제도를 개선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구현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 아울러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구현하기 위한 노력으로 감정제도 개선, 판결서 적정화 등을 통해 재판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또한 법관은 재판연구원의 보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판 및 판결서 작성 과정 전체를 혼자 수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업무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법률과 판례를 검색하고, 간단한 사건의 판결문 작성 보조로 어떻게 AI를 활용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이를 어떤 기준으로 활용할 것인지 연구되어야 합니다.

11. 상고심제도 개선에 대한 견해는?

○ 대법원은 최고법원으로서 당사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최후의 보루이자, 헌법 원리에 입각하여 법령을 최종적으로 해석 · 적용함으로써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법률적 쟁점에 관하여 규범적 기준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러나 대법원에 접수되는 사건 수를 고려할 때 대법관들이 모든 사건에 대하여 하급심 판결과 같이 상세한 논증을 담은 판결서를 작성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 따라서 상고제도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상고이유서 원심법원 제출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고, 장기적으로는 상고심에서 심리할 실질적인 사건을 선별하는 상고심사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비교법적으로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 많은 선진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 상고심사제를 도입하더라도, 헌법을 부당하게 해석한 사건,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는 판단을 한 사건, 판결의 이유를 밝히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사건 등 권리구제가 필요한 사건들은 본안판단의 대상이 될 것이므로, 현행 제도 하에서 상고심에서 파기될만한 사건들은 상고심사제 하에서도 본안판단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하는 동시에 법률심인 대법원의 기능도 충분히 발휘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하급심 강화를 통

해 재판에 대한 승복률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이와 함께 큰 틀에서의 상고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검토도 지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2. 평생법관제 도입 필요성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과 제도 도입이 안 되는 원인에 대한 견해는?

○ 평생법관제 도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비해 복잡하고 어려운 사건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경륜 있는 법관의 전문 지식과 경험을 계속 활용할 수 있어야 국민에 대한 사법서비스의 수준이 높아질 수 있고, 최근 심각한 문제로 대두된 재판지연도 해소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전관예우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평생법관제가 정착되어 전관변호사가 생기지 않는다면 근본적인 문제 해결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 평생법관제가 잘 되지 않는 이유는 법관의 직무환경 개선이 뒷받침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법조인들도 가족이 있는 생활인으로서 자신의 신념에 따라서만 직업을 선택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법관직의 중요도에 걸맞은 급여인상, 일과 가정을 건강하게 모두 유지할 수 있는 업무부담 완화 및 인사제도 개선, 주어진 사건을 충실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재판연구원 등 보조인력 확충 등 여러 방면에서 법관직의 선호도를 높일 수 있는 처우개선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정년 후에도 정원 외 법관으로 계속 근무하는 시니어법관제도 도입도 평생법관제를 완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3. 우리 국민이 사법부에 대해 갖는 가장 큰 불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그와 같은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사법부의 존재근거이자 존립근거입니다. 법원은 그동안 인적구성 및 재판시스템에 있어서 많은 개혁과제를 추진하여 왔고,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한 변화와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사법신뢰도는 국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안타까운 마음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 현재의 사법신뢰도에 영향을 미친 원인으로는, 종래 사법의 독립과 재판의 공정에 대하여 의혹을 불러일으킨 여러 사건들, 그리고 특히 최근에는 재판지연 현상을 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외부적인 요인들도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가 극단적인 진영논리로 양분되어, 판결 결과를 반대하는 일부 진영, 언론, 개인의 과도한 비난이 사법의 독립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고, 흥미 본위의 자극적인 기사들이 사법의 공정성에 대한 오해와 불신을 가중시킨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사법신뢰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판사실에서의 기록검토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닌 법정에서의 공판절차나 변론절차가 중심이 되는 투명한 재판절차를 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양한 경험과 풍부

한 경륜을 갖춘 실력 있는 훌륭한 법조인이 법관이 되어 평생 동안 자긍심을 갖고 법관으로 재직하도록 하는 법조일원화와 평생법관제가 우리 실정에 맞게 설계되고 정착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판과 각종 사법정보의 공개를 확대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증대시키고, 국민참여재판을 확대 및 활성화함으로써 합리적인 국민의 견해가 재판에 반영될 수 있게 하는 한편, 국민들이 바라는 법원과 재판의 모습을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시대와 소통하고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안목을 길러 국민의 건전한 법감정에 부합하는 법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14. 사법개혁 필요성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필요하다면, 가장 먼저 풀어야 할 개혁과제는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 서면질의 9번, 10번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법부는 재판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기관입니다. 그러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최근 재판지연 현상에 대해 국민의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신속한 재판을 구현하기 위해서 우선 재판지연의 원인을 정확히 분석하고, 법관 및 재판연구원 증원 등 인적 여건의 확충, 효율적인 재판제도의 개선 등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법조일원화가 시행된 지 10년이 되었는바, 풍부한 경력과 실력을 갖춘 법조인이 법관으로 임용되고, 임용된 법관이 열정과 사명감을 가지고 재판에 임할 수 있도록 법관 인사제도 개선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고민을 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15. 전관예우가 실제로 있는지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있다면 이를 해소할 방법, 없다면 국민의 인식과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 전관예우 관행이 존재한다고 믿는 국민들이 적지 않고,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를 떠나, 재판은 실체와 외관 모두 공정해야 하므로, 이러한 국민들의 우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법원은 부단히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 정원 외 법관으로서 원로법관제도 도입 및 법관의 직무환경 개선 등을 통해 법관이 정년에 이르기까지 근무하는 평생법관제도가 정착되어, 전관변호사의 발생을 근본적으로 차단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더불어 재판과정 및 결과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형사사건에 있어서는 법정 외 변론 금지, 수임 제한, 연고관계 재배당, 회피제도 활성화 등이 전관예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기준을 토대로 공정하고 적정한 양형을 하고, 국민참여재판, 불구속 재판과 국선변호를 적절하게 확대해 나가 국민들에게 재판 과정과 결과에 대하여 정확하게 설명하고 그에 대한 이해를 구하는 데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16. 법원, 검찰 등 법조계의 기수문화에 대한 후보자의 평가와 개선 방향은?

○ 법조계 외에도 행정부, 군대, 경찰 등 우리 사회 곳곳에 기수문화가 있습니다. 다만 법조계의 기수문화는 과거 모든 법조인이 사법연수원을 수료하여야 했던 상황에서 다른 분야에 비해 더 큰 의미를 갖게 되었고, 그로 인해 법조계의 폐쇄성과 경직성이 더 강해진다는 비판이 높았습니다.

○ 그러나 법조인의 숫자가 많아지고, 특히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으로 법조인이 되는 과정이 비교적 다양해짐에 따라 과거와 같은 기수문화는 더 이상 유지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법조일원화가 시행된 지 10년이 지남에 따라 다양한 경력의 법관이 임용되어 법원에서도 과거와 같은 기수문화가 점점 퇴색되어 가고 있습니다. 사법행정에 있어서 '법조경력'이 아닌 '법관경력'을 더 우선해 달라는 요구도 점점 등장하고 있습니다.

○ 결국 시대의 변화에 따라 법조계의 기수문화도 자연스럽게 변하고 있는데, 그 변화의 방향이 국민을 위해 바람직한 방향이 되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7. 하급심 판결에 대한 불신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데, 원인과 해법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법관의 한 사람으로서, 또한 최근까지 법원행정처 차장 등 사법행정업무를 담당했었던 사람으로서, 하급심을 포함한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저하에 대하여 무척 가슴 아프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원인은 다양하겠지만, 국민의 법감정에 부합하지 않는 판결, 최근 심화된 재판지연 문제 등이 주요한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국민의 법감정에 부합하지 않는 판결이 많다는 지적에 대하여 사법부의 모든 구성원은 스스로를 돌아보고 더 낮고 헌신적인 자세로 재판이라는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더 나은 재판으로 그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재판제도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국민 모두가 더 쉽고 효율적으로 사법에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사용자 위주의 전자소송 시스템 개선, 장애인 등을 위한 사법접근센터의 확충,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국민의 신속한 재기를 돕는 개인도산 전문상담센터의 확대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해 법원의 문턱을 낮추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하겠습니다.

○ 최근 재판지연 현상에 대해 국민의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신속한 재판을 구현하기 위해서 우선 재판지연의 원인을 정확히 분석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효율적인 재판제도의 개선, 이에 필요한 법관 및 재판연구원 증원 등 인적·물적

여건의 확충 방안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최근 대법원장 자문기구인 사법정책자문위원회에서도 관련하여 법관인사제도 및 재판절차 개선을 위한 논의에 착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사법부는 재판의 공정성 및 독립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 위에서 존재할 수 있으므로, 국민의 눈높이에서 사법부를 돌아보고 사법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항상 고민하겠습니다.

18. 재판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재판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법관 개개인이 정치권력 등 사회 여러 세력으로부터 재판의 독립을 지켜내려는 확고한 의지와 용기를 가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오직 법과 양심에 따라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소수자 보호를 위해 충실히 재판을 하여야 하고, 법관 자신의 판단이 이념적으로 편향되었다고 보일 여지는 없는지 늘 경계하여야 할 것입니다.

○ 법관들이 소신을 가지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도록, 국민으로부터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여 법관 인사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등 재판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를 만들어 나가는 것도 필요합니다.

○ 아울러 행정부 등 외부로부터의 불필요한 영향을 받지 않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사법부 등 헌법기관에 독립적인 예산안 편성권을 부여하는 것도 재판의 독립과 관련하여 깊이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9. 법적 판단의 최종 권한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중 어디에 있다고 보는지, 대법원과 헌재는 어떠한 관계이며 어떤 관계를 지향해야 한다고 보는가?

○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재판소원의 인정여부, 한정위헌 결정의 기속력, 명령·규칙에 대한 위헌심사권, 관습법·긴급조치에 대한 위헌심사권 등에 관하여 다소 입장의 차이가 있어 왔습니다.

○ 우리 헌법은 제5장에서 법원을 사법권의 담당기관으로 규정하고, 제6장에서는 헌법재판소를 위헌법률심판 등을 관장하는 헌법기관으로 규정하여, 담당하는 사법권의 영역이 서로 상이하지만 대등한 사법기관으로서 지위와 권한이 분배되어 있습니다.

○ 양 기관이 헌법의 취지에 따라 서로의 역할과 기능을 존중하여 각자의 영역 내에서 헌법질서의 유지 및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사명에 충실한다면, 위와 같은 입장의 차이를 점차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 일 가정 양립에 대한 견해와 여전히 양립하지 못하는 근본적 원인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 과거와 같이 일을 최우선으로 두고 가족을 등한시 하여서는, 법관에게 주어진 과중한 업무를 지치지 않고 건강하게 지속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업무를 위해서도 일과 가정의 양립이 중요합니다.

○ 일과 가정의 양립이 여전히 어려운 이유는 우리 인식이 변화하는 속도를 제도적 뒷받침이 따라오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원을 예로 들어 보면, 재판지연으로 인한 국민의 불만이 높은 상황에서 법관증원이나 재판연구원증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가정을 돌볼 여유 없이 업무에 매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법관들은 전국순환근무로 인해 가족과 떨어져 지내야 하는 상황에서 스마트워크 확대를 위한 시설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물론 가정을 위해 연가를 사용하거나 육아기 단축근무제도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 관대한 문화가 정착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 “빨리 가려면 혼자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건강하게 지속될 수 있으려면 가정을 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서로 배려하는 마음이 무엇보다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21.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과 그 사유에 대한 견해는?

○ 최근 몇 년 간 연이어 발생한 이태원 참사 같은 대규모 안전사고에 관하여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 일반론으로 안전보호조치 위반 및 대응 부실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살펴 책임주의 원칙에 따라 개별 지휘권자의 책임 유무를 가려야 할 것입니다.

○ 다만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관련자들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대법관 후보자로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 전세사기피해자 보호를 위해 법원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 전세사기는 대부분 경제적 여유가 부족하고 결혼, 이직 등으로 이사가 잦은 청년이나 신혼부부가 그 피해자인데, 재산의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고액의 전세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전세보증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임차권등기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임대인이 사망하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임차권등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에 법원에서는 전세피해자들이 신속하게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도록 대위상속등기를 거치지 않고도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게 하고, 임차권등기명령 송달절차를 간소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임대인에게 송달되기 전에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임차권등기, 가압류, 경매 등을 신청할 때 납부하여야 할 등기신청수수료를 면제하는 내용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 한편, 2023년 상반기에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집중된 지역 관할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 처리가 길어졌으나, 현재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법원으로서는 가능한 범위에서 기존 인력 재배치, 사무분담 조정 등을 통해 늘어난 임차권등기명령 수요에 신속히 대응하여,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신속·적

정하게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임대차보증금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3. 사형제 존폐 및 사형 집행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사형제에 관하여 찬·반 양론이 대립하고 있고, 양 주장 나름대로 타당한 부분이 있습니다.

○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사형은 법무부장관의 명령에 따라 집행하고, 사형집행의 명령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6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형의 집행은 법무부장관의 명령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그 집행 여부에 대하여는 법무부장관의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 다만 사형제도는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형벌로서 일단 집행된 경우에는 오판이라 해도 돌이킬 수가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범행에 대한 책임의 정도와 형벌의 목적에 비추어 누구라도 그것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사형이 선고되는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24. 동성결혼 및 동성애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성소수자 역시 헌법상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누리고 성적 지향이 부당한 편견이나 차별의 이유가 될 수 없음은 명백합니다. 성적 지향성은 지극히 내밀한 사적인 영역이므로 타인에 대한 강요나 위해가 수반되지 않는 한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성소수자에 대하여 어떠한 사회적·법률적 보호를 할 것인지는 입법정책적인 문제로, 공론화 및 폭넓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국민적·사회적 합의를 통하여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다양성이 공존하면서도 조화를 이루는 사회가 되기를 바라며, 사법부 역시 재판을 통해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 대한민국 건국일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대한민국 건국 시점에 대하여, 헌법 전문의 취지에 따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1919년 4월 11일이라는 견해,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1948년 8월 15일로 보는 견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임시정부가 수립된 때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는 헌법 전문에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것을 주요한 근거로 하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는 국제법상 국가로 인정받은 것을 근거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개개인의 역사관이나 정치적인 이념에 따라 다양한 의견이 제시될 수 있는 사안에 관하여 대법관 후보자로서 구체적인 견해를 표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 사회적 약자를 위해 후보자가 노력한 것은 어떠한 것이 있으며, 이를 위해 법원이 해야 할 책무는 뭐라고 생각하는가?

○ 서울고등법원 노동전담부에 근무하면서 헌법과 법에 따른 근로자의 권리가 보장되고 있는지 늘 고민하며 재판하였습니다.

○ 학원강사들의 근로자성이 문제된 사건에서, 해당 강사들이 학원과 수강료를 일정한 비율에 따라 나눠 갖는 소위 '비율제 강사'들이었고, 근로계약의 형식이 강의위수탁계약으로 형식적으로 개인사업자의 성격을 띠고 있기는 하지만, 학원이 교육과정별 통일성 있는 수업 진행을 하도록 하고, 학생 수 및 학생들의 레벨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강사를 지정하였으며, 수강료의 비율을 정하는 점 등 그 실질에 대하여 충실하고 심도 깊게 심리하여 해당 학원강사들이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사업부문별 근로자 수의 차이가 큰데도 각 사업부문을 선거구로 하여 같은 수의 근로자위원을 선출한 선거가 무효라고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노사협의회에 근로자위원의 선출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자율적으로 정할 재량이 있더라도, 그 재량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헌법상 권리가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헌법상의 평등 원칙은 노사협의회의 선거구 획정에 있어서도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 근로자가 파면처분의 무효를 구한 사건이 있었는데, 파면처분 이후 이미 정년 도래로 당연 퇴직되어 파면처분의 무효를 구할 이익

이 있는지가 선결 쟁점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파면처분 이후 당사자의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대한 구제신청,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한 재심신청이 각 기각되고, 위 재심판정에 대한 행정소송도 이미 기각 확정되어 많은 고민을 하였으나, 1심과 달리 파면처분에 대해 제기한 무효확인청구소송 중 정년이 도래하였다고 하더라도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퇴직급여 등이 감액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면 징계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보았고, 나아가 징계재심 절차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협약에서 정한 재심의결기한을 경과하여 근로자의 정년이 도래하기까지 재심의결을 하지 않았다면 당초 징계처분은 무효가 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 근로자의 퇴직일을 그해 말일로 보는 사내 관행이 있는 경우 이를 취업규칙으로 인정하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만 나이가 도래하는 날' 근로자를 정년 퇴직시킨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도 하였습니다.

○ 또한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 정한 해고예고제도는 근로자로 하여금 해고에 대비하여 새로운 직장을 구할 수 있는 시간적·경제적 여유를 주기 위한 것이므로, 해고의 예고는 그 일자를 정하여 확정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피고가 '수습기간 후 업무능력과 업무태도가 개선되지 않으면 정식채용을 하지 않겠다.'라고 불확정한 조건을 붙여 한 해고의 예고는 효력이 없다고 본 사건도 있었습니다.

○ 한편, 법원은 재판을 통하여 법을 해석하여 적용하는 기관으로,

다른 권력으로부터 독립하여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보장하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기본원리인 다수결의 원칙에 따를 경우 다수의 권익이 효과적으로 보장될 수 있으나,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의 권리는 배척되거나 침해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법원은 오직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독립하여 판단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 아울러 법치주의의 핵심은 국민의 사법접근성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법원은 사회적 약자가 손쉽게 법원에 접근하여 그들이 권리를 호소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법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해 왔습니다. 향후에도 사회적 약자의 사법접근성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각종 제도 개선 과제들을 성실히 수행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7. 종교인 과세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2015년 종교인에 대한 과세가 명시되어 개정된 소득세법은 2018. 1. 1.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공평과세의 원칙과 조세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종교인 과세 역시 수긍할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종교인에 대하여는 과세 여부뿐 아니라 과세기준의 차이 등으로 인한 조세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세의 적정한 수준과 방법에 대하여는 종교 활동의 특수성, 국민의 보편적 인식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국회에서 정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28. 민주주의에서 표현의 자유의 의미와 그 한계는 무엇이라 보는가?

○ 헌법 제21조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는, 국민 개개인이 의견의 자유로운 형성과 표명을 통해 인격을 실현할 가능성을 갖는다는 점, 표현의 자유의 보장은 민주주의 토대를 형성한다는 점에서 특별한 중요성을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령이나 공권력에 대하여는 보다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그러나 표현의 자유라 하더라도 일정한 한계가 있습니다.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모욕적 표현, 혐오표현까지 제한 없이 보호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9. 대통령 탄핵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헌법 제65조는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 등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헌법재판소법 제53조는 헌법재판소로 하여금 '탄핵심판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에는 피청구인을 해당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탄핵심판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란 피청구인의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고 설시하고 있습니다(헌법재판소 2023. 7. 25. 결정 2023헌나1).

○ 이와 같은 헌법 규정과 헌법재판소 결정에 관한 일반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 외에 대법관 후보자로서 더 이상 언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0. 5.18 정신을 헌법전문에 담는 것에 대한 견해는?

○ 대한민국 헌법 전문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한다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 광주 5.18민주항쟁은 1980년 5월 광주 관련 지역에서 일어난 시위에 대하여 군부 등에 의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대한 민주항쟁으로 다수의 희생자와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이고,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 과정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 사건입니다. 다만 이를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것은 헌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므로 국민적 합의를 통해 대한민국 헌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31. 현재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다양한 인권 이슈 중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인권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우리 사회는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 왔으나, 여전히 고민하고 개선해야 하는 인권 현안들이 남아 있습니다.

○ 이는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인, 성소수자, 여성, 피해자 등 사회적 약자들의 요구이고,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과제이므로, 가장 먼저 해결되어야 할 인권 문제를 하나만 꼽기는 어렵습니다.

○ 법원은 재판을 통하여 법을 해석하여 적용하는 기관으로, 다른 권력으로부터 독립하여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보장하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2. 현행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평가와 바람직한 조정 방향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검·경 수사권 조정은 기본적으로 행정부 내부에서의 각 기관의 권한 배분의 문제입니다. 검·경 수사권을 조정하는 방향과 입법안에 대하여 법조계와 학계 등 전문가의 의견, 해외 사례와 국민의 여론 등 치열하게 논의를 거쳐 입법되었고, 그 절차적 정당성을 둘러싼 법적 분쟁도 있었습니다. 아직도 수정 방향 및 범위, 방법에 대하여 계속적인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 대법관 후보자로서 행정부 내부에서 각 기관의 권한이 어떻게 배분되는 것이 타당한지에 관한 의견을 밝히는 것은 권력분립의 원칙상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대한 후보자의 평가는?

○ 대법관 후보자로서 행정부 내부에서 각 기관의 권한이 어떻게 배분되는 것이 타당한지에 관한 의견을 밝히는 것은 권력분립의 원칙상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사회적 논의를 거쳐 설치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그 설치 목적에 맞게 잘 운영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4. 공판중심주의가 유명무실해졌다는 지적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과 개선 방안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이른바 '조서재판'에 대한 반성에서, 법정에서의 심리에 의해 유무죄 판단의 심증을 형성하여야 한다는 공판중심주의는 우리나라 형사재판 변화에 큰 영향을 끼쳤고, 여전히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 공판중심주의로 인해 법관의 부담이 증가되었다거나, 공판중심주의로 인해 형사재판의 처리기간이 늘어나고 있다는 분석이 자주 거론되는 것을 보면, 공판중심주의가 유명무실해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오히려 공판중심주의의 정신을 살리면서도,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할 때가 되었다는 생각도 듭니다.

○ 또한 국민참여재판이 활성화된다면, 공판중심주의를 통해 구현하려는 바람직한 형사재판제도가 더욱 발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35. 대법원 구성이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기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대법원은 사회 구성원의 다양한 이해관계의 통합을 이루어 내고, 이를 통하여 우리 사회의 규범적 가치 기준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대법원이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관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인적 구성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깊이 공감합니다.

○ 우리나라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대법관의 학력, 경력, 성별, 지역을 안배하는 방향으로 구성을 다양화 하여야 한다는 요구가 크고, 이러한 방안도 대법원 인적 구성 다양화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궁극적으로는 사회적 쟁점에 관한 가치관이나 사법철학을 다양화하는 방향이 강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대법관 제청절차에서 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피천거인 중 심사동의자의 명단과 정보를 미리 공개하여 후보자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비당연직 위원에 대한 추천절차를 도입하는 한편 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를 비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하며,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에 대하여도 다시 한번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는 것은 대법관 구성에서 다양성을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 아직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이 국민의 눈높이에 충분하지 않을 수 있으나, 위와 같은 노력에 더하여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와 법조일

원화 제도가 정착되어 감에 따라 법관 구성 자체가 다양해지고 있어 향후 대법원의 다양성이 더욱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36.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도 도입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관련 임의적 대면심사제도는 압수·수색 영장 발부 여부 및 그 범위를 정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법관이 필요성과 대상의 특정 등 영장발부 요건이 충족되었는지에 대하여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설명을 청취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 기본적인 취지는 수사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전자정보에 대하여 선별적인 압수·수색이 이루어지도록 압수·수색실무를 개선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더욱 충실하게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사 밀행성과 신속성 또한 중요한 가치이므로 이를 해하지 않는 제도 운용 방안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한편 이와 같은 제도의 도입은 대법원 규칙보다는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고, 최근 22대 국회에서 관련 법률안이 발의된 만큼, 국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지혜로운 결론을 도출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37. 조건부 구속영장제 도입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종래 수사기관의 역량과 관심이 지나치게 구속 여부에 집중되어있고, 이로 인하여 여러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무죄로 추정되는 피고인이 본안재판을 받기도 전에 여론에 의한 유죄 판단을 받고 방어권이 중대하게 침해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음으로써 실체진실이 왜곡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 점에 대한 문제의식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 법원이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실제로 구속과 불구속의 경계에 있는 사건들이 다수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현행 구속제도는 구속·불구속의 양자택일의 선택만 가능하기 때문에 사안별로 적절한 대응이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 조건부 구속영장제도는 피의자로 하여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하되 전자장치 부착, 피해자 접근금지, 차량 운행 금지, 마약 등 사용금지, 의료기관 치료 또는 입원 등의 조건을 부과하여,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방지도 효과적으로 도모할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38. 대통령이 거부권을 남발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대한민국 헌법 제53조 제1, 2항은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 대통령은 해당 법률안에 대하여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대통령으로 하여금 의회의 의결권 행사에 제동을 가할 수 있게 함으로써 상호 견제와 균형을 도모하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인 재의요구권 행사에 관하여 대법관 후보자가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면이 있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 법관회의 활성화를 통한 법원 내부 민주주의를 활성화하고 법관회의를 국민이 들여다볼 수 있도록 회의결과 및 과정을 투명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임. 이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과 현실적인 개선 방안에 대한 견해는?

○ 각급 법원의 판사회의는 물론이고 각급 법원에서 선출한 법관 대표들이 모여 구성하는 전국법관대표회도 자율성이 보호되어야 의미 있는 논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결과 및 과정을 공개하는 부분까지도 참여하는 법관들의 논의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각 회의에 참여하는 법관들도 논의과정과 결과 공개를 통한 투명성 제고에 대해 국민들의 요청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생산적이고 진솔한 논의를 위하거나 회의에서의 발언이 공개됨에 따라 재판에 미치게 될 영향을 우려하여 사안에 따라 공개 여부 및 범위 등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법원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관심을 고려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나 각급 법원 판사회의의 활성화와 투명화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40. 법원의 전문성, 독립성, 민주성, 관점에서 노동법원, 환경법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최근 노동법원 신설에 대해 사회적 관심이 증대된 것을 언론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까지 법원행정처 차장, 기획조정실장으로 근무하며 가정법원과 회생법원의 신설을 추진하기도 하여 전문법원의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 다만 전문법원의 설치는 결국 국민의 추가적인 부담이 수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전문법원의 필요성, 효과, 관계기관과의 업무조율 등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 충분한 연구와 논의를 바탕으로 전문법원의 신설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41. 현행 노조법 제3조는 '이 법에 의한 파업', 즉 합법 파업으로 기업이 손해를 입었다면, 노동조합이나 노동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함. 파업이란 원래 기업에 손해를 끼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임. 파업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항이지만, 법원이 이를 '불법 파업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해 왔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오히려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가 됐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근로자의 근로3권, 노동권 등은 국민의 행복과 생존을 좌우하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 존중의 척도가 되는 기본권이므로,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할지 여부를 정함에 있어 사용자의 경영권이나 공동체의 경제 질서를 부당하게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의 권리가 두텁게 보호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다만 단체행동권이 헌법이 근로자에게 보장하는 기본권이지만 다른 상충하는 기본권과의 관계를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용자의 재산권과도 적절히 조화를 이루어야 하고, 폭력적인 방식이 허용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가 규정되었고, 법원이 그에 따라 손해배상소송을 처리해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42. 공익 소송 패소자 소송비용 부담 주의 개선 방안에 대한 입장은?

○ 공익소송에서도 민사소송법상 소송비용 패소자 부담주의가 그대로 적용된다면 공익소송이 위축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원고에게 가혹한 결과가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수긍이 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 소송비용 패소자부담주의는 무분별한 소송 제기를 방지하고, 소송의 유형을 불문하고 정당하게 응소하여 승소한 당사자로 하여금 자신이 지출한 소송비용을 보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예외적으로 승소한 당사자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99조, 제100조).

○ 이와 같은 점을 염두에 두고, 공익소송에 대한 편면적 패소자 부담주의 도입, 공익소송에서 국가의 소송비용 부담 제도, 정보공개소송 소가 하향 등 현재 논의되는 개선 방안은 현행 법 체계 및 실무와의 정합성, 공익소송의 개념과 효과 등 여러 쟁점에 대한 면밀한 검토 이후 입법정책적으로 결정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43. 후보자는 사회에서 다양한 경험을 습득하고 검증된 법조인들을 법관으로 임용해야 한다는 법조일원화 제도의 취지와 필요성에 공감하는지?

○ 법원행정처에서 법관인사와 기획업무를 담당하였던 경험으로 인해 법조일원화 제도의 도입 배경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사회경험이 거의 없는 비교적 젊은 나이에 바로 법관으로 임용되었던 경력법관제에 대한 반성에서 법조일원화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따라서 사회적 경험과 연륜을 갖춘 법조인 중에서 법관을 선발하자는 법조일원화 제도의 취지와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 현행 법원조직법에 따르면 내년부터 법관임용 시 요구되는 법조경력이 5년에서 7년으로 상향되는데, 그로 인해 법관임용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걱정이 사법부 내외에서 많다고 들었습니다. 또한 현재 법원조직법이 시행을 예정하고 있는 10년의 법조경력은 세계적으로도 상당히 높은 수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력이 높은 경우 다양한 경험과 연륜이 풍부하다는 장점이 있을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다른 법조직역에서 그 정도의 경력을 쌓은 우수한 법조인이 법관직에 지망하기에는 법관의 처우가 열악한 상황입니다. 또한 7년, 10년의 사회생활 동안 여러 이해관계에 노출되어 공정성 시비에서 자유롭지 못할 우려도 있습니다.

○ 그러한 상황에서 5년의 법조경력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법조인으로서의 초반 5년 동안 상당한 정도의 경험을 쌓을 수 있고, 법조경력 10년에 비해 이해관계에서 좀 더 자유로울 수 있기도 합니다. 게다가 사건이 점점 복잡해지고 파악해야 할 기록도 많아지는 상황에서 조금 더 젊은 나이의 법관이 임용된다면 신속한 재판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법조경력을 5년으로 하향하는 것이 5년차 법조인만을 법관으로 선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5년차의 비교적 젊은 법관과 함께 10년차, 15년차 등 다양한 경력의 법관을 선발하게 된다면 연령적인 측면에서 법관의 다양화, 즉 여러 세대를 대표할 수 있는 법관의 다양화로 발전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최근 사법부에서 법원조직법의 개정을 추진한 것은 법조일원화 제도를 경력법관제로 되돌리기 위한 것이 아닌, 현재 우리의 상황에서 더 적합한 법조일원화 제도를 정착하기 위한 노력으로 이해해주셨으면 합니다.

44. 압수수색 영장 대면심리수단 도입 등「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관련 임의적 대면심사제도는 압수·수색 영장 발부 여부 및 그 범위를 정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법관이 필요성과 대상의 특정 등 영장발부 요건이 충족되었는지에 대하여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설명을 청취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 기본적인 취지는 수사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전자정보에 대하여 선별적인 압수·수색이 이루어지도록 압수·수색실무를 개선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더욱 충실하게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사 밀행성과 신속성 또한 중요한 가치이므로 이를 해하지 않는 제도 운용 방안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한편 이와 같은 제도의 도입은 대법원 규칙보다는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고, 최근 22대 국회에서 관련 법률안이 발의된 만큼, 국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지혜로운 결론을 도출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45. 국가보안법 폐지에 관한 입장은?

○ 우리나라는 과거 국가보안법이 악용되었던 아픈 과거가 있고, 헌법재판소에서도 여러 차례 그 위헌성이 문제된 적이 있었던 만큼, 국가보안법 존폐 여부에 대해서는 다양한 논의가 있어 왔습니다.

○ 헌법재판소는 2015. 4. 30. 국가보안법상 이적행위 조항(제7조 제1항), 이적단체가입 조항(제7조 제3항), 이적표현물 조항(제7조 제5항)에 대하여 합헌 결정을 하였고, 2023. 9. 26. 이적행위 조항 및 이적표현물 조항에 대하여 다시 한 번 합헌 결정을 하였습니다. 기본적으로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존중합니다.

○ 과거 국가보안법이 지나치게 확대 적용되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던 과거가 있었던 만큼, 법관으로서는 국가보안법을 적용할 때 입법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만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법률을 해석·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6. 성범죄 사건의 판결에 있어서 성인지 감수성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으며, 판결에서 어떻게 구체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및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에서 성희롱 또는 성폭력 관련 사건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기준 중 하나로 '성인지 감수성' 개념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는 이른바 '피해자다움'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피해자의 일부 언행이 그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경험칙에 반한다고 보아 그 신빙성을 배척하면 안 되고, 같은 상황에서도 성별과 피해자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다른 반응을 보일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도13081 판결은 지적장애가 있는 피고인의 추행 사건에서, 성인지적 관점을 유지하여 성범죄 피해자가 처한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함을 인정하면서도, 그렇다고 하여 성범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제한 없이 인정하여야 한다거나 그에 따라 공소사실을 무조건 유죄로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설시하였습니다. 성범죄 피해자 진술에 대하여 성인지적 관점을 유지하여 보더라도,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타당성뿐만 아니라 객관적 정황, 다른 경험칙 등에 비추어 증명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설시하였습니다.

○ 결국 위 두 대법원 판결은 기존에 경험칙의 내용으로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던 소수자의 관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경험칙의 내용을 풍부히 함으로써 더욱 신중하게 사실인정을 해야 한다는 취지라 생각합니다. 법원은 성범죄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 또는 성인지적 관점을 잃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형사법상 대원칙인 무죄추정의 원칙이 이로 인하여 훼손되지 않도록 균형을 가져야 함은 당연합니다.

47. 가맹점법, 대리점법 등 다수의 공정거래 관련 법안은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현실이며, 입증이 되지 않으면 기각되고 있음. 증거와 정보의 구조적 편재 등으로 인해 피해자가 과실이나 결함,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개선 방안에 대해 제언한다면?

○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그 손해의 발생과 인과관계 등을 입증해야 하는 고전적 입증책임의 분배에 대한 비판이 여러 분야에서 있었고, 그에 따라 입증책임의 전환, 손해의 추정 등을 통해 실질적 형평을 기하기 위한 변화가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 최근 대리점 갑질 사건 등을 통해 공정거래 분야에서도 그러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해당 분야에서 증거와 정보의 구조적 편재 등이 어느 정도인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바탕으로 입법 등을 통한 제도적 정비가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48. 차량 급발진 의심사고의 제조사 책임 판례가 0건인 문제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 차량 급발진으로 의심되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보도를 종종 접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한 관련 소송의 진행경과와 그 결과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지 못하고 있어, 제 견해를 말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사회적으로도 급발진 현상의 명확한 원인을 잘 파악하지 못하는 것이 재판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 분야가 입증책임의 전환 등이 필요한 영역의 문제인지에 대해 제조사와 소비자의 증거와 정보의 구조적 편재 정도 등 여러 사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49. 지난해 12월 하루에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의 주간 합산이 12시간을 넘어도 1주일간 총 노동시간이 52시간만 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바 있음. 극단적 초과 노동을 대법원이 허용했다는 비판과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0조는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제1항),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제2항)고 규정하고, 제53조 제1항은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구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의 문언, 연혁, 취지 등을 고려하여 연장근로시간의 한도를 1주간을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을 뿐이고 1일을 기준으로 삼고 있지 아니하므로, 1주간의 연장근로가 12시간을 초과하였는지는 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을 초과하였는지를 고려하지 않고 1주간의 근로시간 중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여 연장근로 한도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한 선례를 남겼습니다(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0도15393 판결).

○ 대법관 후보자로서 이미 종결되었거나 여전히 유사한 쟁점이 문제되어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배우자가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는데, 권익위는 디올백 수수는 대통령 직무와 관련 없으니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함.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배우자가 공직자의 직무 관련 청탁을 부탁받으면서 일정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합니다)은 해당 공직자에 대하여 신고의무 및 반환의무 등을 부여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규정을 두고 있으나(청탁금지법 제9조 제1항, 제6항, 제22조 제1항 제2호), 배우자에 대하여는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 이와 같은 법률 규정에 관한 일반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 외에 대법관 후보자로서 이에 관하여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면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 전세 사기에 대해 과감한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특경법이 개정돼야 함. 하지만 법원행정처가 이를 반대해 개정이 무산됨.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최근 전세사기로 인해 다수의 피해자가 양산되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전세사기범죄의 수도 증가하여, 처벌강화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편취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일 때 이를 가중처벌 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경제범죄법')은 여러 범죄가 일죄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수죄에 해당하는 다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전세사기 범죄에 대하여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기범죄의 양형기준은 금액대별로 소유형(1억원 미만, 1억 원 - 5억 원 미만, 5억 원 - 50억 원 미만, 50억 원 - 300억 원 미만, 300억 원 이상)을 나누고 있고, 일반 사기죄와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죄 모두에 적용되는데, 일반 사기죄의 경우라도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기 때문에 특정경제범죄법상 일죄의 이득액이 동일한 경우 같은 유형이 적용됩니다.

○ 21대 국회에서 동종 유사 수법의 범행에 관하여는 포괄일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피해금액을 합산하여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개정안의 적용과 효과는 결국 일죄인지 포괄일죄인지의 죄수와 관련된 것으

로 공소장변경의 허용 여부, 추가기소 가능 여부 나아가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에까지 면밀하고 심도 깊게 연구된 이후에, 법률전문가와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52. 법관 중심의 법원행정처가 사법행정을 맡고 있어 사법권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법원행정처 규모 축소·확대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법원행정처에서 법관이 근무하는 경우 관료화가 심화되고, 법관의 관료화는 재판에 대한 내부적 독립 침해의 우려가 있다는 것이 법원행정처 규모 축소 주장의 주요한 논거로 알고 있습니다.

○ 그로 인해 전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에서 근무하는 법관의 수가 상당히 감소하였고, 거기에 이른바 사법행정권 남용사태로 인한 교훈까지 더해져 법관의 관료화로 인한 내부적 재판독립 침해 우려는 상당 부분 없어졌다고 생각합니다.

○ 그러나 재판제도개선을 비롯한 재판지원, 사법정보화 등 대부분의 사법행정사무는 결국 재판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재판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법관이 배제된 사법행정은 제대로 된 방향으로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법행정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면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거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한 지원도 어렵게 됩니다.

○ 결국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법행정 중 어떤 분야에 어느 정도의 법관이 관여하는 것이 적절한지 연구와 논의를 지속하여 노력을 통해 재판독립을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효율적인 사법행정을 만들어 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53. 현재 판결서 인터넷 열람 제도가 시행 중이지만 해외 사례와 비교해보면 판결 연도와 사건의 범위가 아직 협소하며 접근성 역시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공적 자산인 판결문의 공개 확대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우리 사회의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증대시킬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현행법에 따라 일반 국민에게 공개되어야 하는 2023. 1. 1. 이후 확정된 형사사건, 2015. 1. 1. 이후 확정되었거나 2023. 1. 1. 이후 선고된 민사(행정·특허 포함) 사건의 판결문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서 100% 가까운 비율로 공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판결서에 기재된 문자열, 숫자열이 검색어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면서 소송관계인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기 위한 고안된 검색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차세대전자소송에서는 오픈 AI 등을 활용하여 판결 검색을 좀더 용이하게 하기 위한 방안들이 연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필요한 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 형사 미확정 판결서에 대하여는 전면 공개 요청이 있으나, 형사 미확정 판결서의 공개는 무죄추정의 원칙이나 소송관계인의 개인정보 보호 문제 등에 대한 우려가 있어,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통하여 균형점을 찾아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결국 판결문을 어느 정도로 공개할지는 사법부가 독자적으로 결정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전체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헌법상 권리인 국민의 알 권리와 소송당사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충돌을 조화롭게 해결하기 위한 범위, 비식별조치의 정도 등 판결문 공개에 있어 해결되어야 할 여러 쟁점에 대해 생산적이고 활발한 논의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54.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한 법원 판결들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노동계 지적과 과도한 형사처벌이라는 재계 반응이 대립되는데 이와 관련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인지?

○ 2022년부터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사업주 등이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이를 처벌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로, 그 입법취지에 공감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하여 법 시행 전후로 사고에 직접 관여하지도 않은 사람을 처벌하는 것은 책임주의원칙에 반하여 과도한 것이라는 견해가 있었고, 반면 법 시행 후에는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약하여 중대재해를 막기 위해 법을 제정한 취지가 제대로 구현되지 못한다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다만 아직 법률이 시행된 지 3년이 되지 않은 초기 단계로 관련 사건의 판결 수도 많지 않고, 여러 쟁점을 비롯한 관련 연구도 이제 막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률의 시행경과에 따라 축적되는 판결례와 이와 함께 진행되는 연구를 토대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국민적 합의를 거쳐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55. K-압수수색이라는 비판과 법원은 영장 자판기라는 지적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과도한 압수·수색으로 인하여 국민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침해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현대사회의 특성상 압수·수색을 통하여 휴대전화, 컴퓨터 등에 저장된 내밀한 사생활 정보까지 무분별하게 압수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사법부가 적절히 통제하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는 점에 공감합니다.

○ 실무상 압수·수색영장 전부를 기각할 만한 사안은 많지 않고, 통상 일부기각의 방법으로 과도한 압수·수색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일부기각까지 포함하면 기각률은 약 10% 내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다만 압수·수색영장의 발부를 신중히 해야 한다는 점에는 깊이 공감하고, 이를 위하여 법관들이 수사의 밀행성과 필요성을 존중하면서도,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조화롭게 고려할 수 있도록 충분히 심리할 수 있는 수단을 부여하는 등의 제도적 개선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56. '구속영장이 발부됐을 때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차질이 예상된다'와 '구속영장이 기각됐을 때 검찰 수사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의견 중 어떤 견해가 우리 헌법 정신에 부합한다고 여기는지, 후보자의 견해는?

57. 현재 검찰 구속수사에 관한 후보자의 입장과 개선 방안은 무엇인지?

○ 위 질의에 대한 공통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우리 헌법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고(제27조 제4항), 형사소송법은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제198조 제1항). 특히 무죄로 추정되는 피고인이 본안재판을 받기도 전에 여론에 의한 유죄 판단을 받고 방어권이 중대하게 침해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음으로써 실체진실이 왜곡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 점에 대한 문제의식에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 한편 피고인의 도주 및 증거인멸을 막아 실체진실을 규명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것 또한 중요한 가치입니다. 특히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피고인의 신병을 확보하는 것의 중요함을 깨닫게 하는 사건도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 실무에서는 법원이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구속과 불구속의 경계에 있는 사건들이 다수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현행 구속제도는 구속·불구속의 양자택일의 선택만 가능하기 때문에

사안별로 적절한 대응이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 이러한 상황에서 조건부 구속영장제도의 도입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로 하여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하되 전자장치 부착, 피해자 접근금지, 차량 운행 금지, 마약 등 사용금지, 의료기관 치료 또는 입원 등의 조건을 부과하여,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방지도 효과적으로 도모할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58. 영장 발부에 구체적 기준이 없어 판사의 재량이 개입할 여지가 다분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영장에도 항고제도를 도입해 수사기관이나 피의자가 상급 법원에 다시 판단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무엇인지?

○ 영장항고제를 도입하여 영장재판에 대하여 상급법원이 다시 한 번 판단하게 함으로써 영장재판의 객관성과 일관성을 높이자는 주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반면 영장항고제를 도입하면 영장재판이 본안화될 우려가 크고, 피의자의 지위가 장기간 동안 불안정하게 되며, 구속적부심·구속취소 등 다른 석방제도와 체계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은 영장 재청구, 피의자는 구속적부심사·보석 청구를 통하여 영장재판에 대하여 각각 실질적인 불복수단을 보유하고 있는 점도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 영장항고제를 도입함에 있어서는 그 필요성과 더불어 위와 같은 문제점도 충분히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59. 조건부 구속제도 도입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종래 수사기관의 역량과 관심이 지나치게 구속 여부에 집중되어있고, 이로 인하여 여러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무죄로 추정되는 피고인이 본안재판을 받기도 전에 여론에 의한 유죄 판단을 받고 방어권이 중대하게 침해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음으로써 실체진실이 왜곡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 점에 대한 문제의식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 법원이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실제로 구속과 불구속의 경계에 있는 사건들이 다수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현행 구속제도는 구속·불구속의 양자택일의 선택만 가능하기 때문에 사안별로 적절한 대응이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 조건부 구속영장제도는 피의자로 하여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하되 전자장치 부착, 피해자 접근금지, 차량 운행 금지, 마약 등 사용금지, 의료기관 치료 또는 입원 등의 조건을 부과하여,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방지도 효과적으로 도모할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60.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 분리에 관한 후보자의 입장은 무엇인지?

○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한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개정안은 오랜 기간 국회에서 치열한 논의를 거쳐 우여곡절 끝에 입법되었으나, 여전히 검찰 직접 수사 범위, 수사와 기소 주체 분리를 비롯한 다양한 부분에서 많은 논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대법관 후보자로서 행정부 내부에서 각 기관의 권한 배분에 관한 의견을 밝히는 것은 권력분립의 원칙상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1. 중대범죄수사청 설립에 관한 입장과 설치 시 법원 및 재판에 미칠 영향에 대한 견해는?

○ 검찰이 가지고 있는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여 검사는 공소제기의 유지 및 헌법이 정한 영장청구 권한을 보유하도록 하고, 검찰이 담당하는 6개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를 전담하는 별도의 기관인 중대범죄수사청을 설립하여 중대범죄수사청 공무원인 수사관이 이를 수행하도록 권한을 배분하려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된 바 있습니다. 이는 행정부 내부에서 각 기관의 권한 배분에 관한 것이고, 중대범죄수사청이 설치되는 경우 법원 및 재판에 미칠 영향은 구체적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의 규모, 수사 권한과 범위 및 수사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므로 현 단계에서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 이와 같은 일반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 외에 대법관 후보자로서 더 이상의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면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2. 법원이 유죄를 판결한 지 석달도 채 되지 않은 이들에 대해 사면이 이뤄진 적이 있음. 삼권분립 정신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와 관련해 후보자의 견해는?

○ 대통령의 사면권은 헌법에 규정된 제도로, 국민 통합, 국가의 이익, 인권 존중 등 다양한 목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다만,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헌법 이념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가이익과 국민통합이라는 제도의 취지에 맞게 투명한 절차를 거쳐 보충적·예외적으로 행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63. 국회가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검사 수사범위를 6대 범죄에서 부패, 경제범죄로 제한했음에도 법무부는 시행령을 개정해 사실상 수사범위를 넓힌 것과 관련해 상위법을 위반하고 입법권을 무력화한 것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해당 사안은 행정부의 행정입법 내용에 관한 것이고, 향후 구체적인 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대법관 후보자가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면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4. 후보자는 부당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적 있는지?

○ 구속영장 청구 사건을 담당하는 1심 판사로 근무한지가 오래 전이라 구체적인 사례가 기억나지는 않습니다.

○ 다만,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고, 피의자의 소명을 충분히 들은 후 구속사유가 없다고 판단이 들면 기각하였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65. 후보자는 검사가 공소권을 남용해 기소한 사례를 경험한 적이 있는지, 있다면, 이를 기각한 적이 있는지?

○ 특별히 기억나는 사건은 없습니다.

66. 심리불속행 제도에 대한 후보자 입장

- 대법원은 지난 '23.1월 상고제도 개선에 대한 입법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음. 주요 내용은 상고심사제 도입, 심리불속행제도 폐지, 대법관 4명 증원 등임. 이중 심리불속행 제도에 대해 살펴보면, '24년 상반기(1월~5월) 심리불속행 기각율은 72.3%에 달해 사실상 3심제의 취지가 지켜지지 않고 있음. 이에 아래 내용을 질의함

66-1. 가사 사건의 경우 '24년 상반기 82.3%가 심리불속행 기각된 것으로 알고 있음(일반 민사 사건보다 10% 이상 높은 수치).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는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66-2. 심리불속행 제도는 사실상 아직 입법도 되지 않은 '상고허가제', '상고심사제' 기능을 수행. 현행법 체계에서는 심리불속행 제도를 상고심사제처럼 운영하면 안되고 충실한 심리를 해야 하는 것이고, 상고제도 개선에 대한 대책은 별도로 추진해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 위 질의에 대한 공통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심리불속행제도에 대하여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이유의 기재가 없다는 외부의 비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 가사사건의 경우 심리불속행 비율이 높은 이유를 정확히 알지는 못하나 사실인정의 문제가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닌지 추측이 됩니다.

○ 대법원에 접수되는 사건 수를 고려할 때 대법관들이 모든 사건에 대하여 하급심 판결과 같은 상세한 논증을 기재한 판결서를 작성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고, 현재의 심리불속행제도는 대법원의 법률심 기능을 확보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개인적으로는 심리불속행제도의 긍정적인 역할을 유지하도록 하면서도, 심리불속행 기준을 마련하는 등으로 보다 합리적으로 제도를 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67. 가사소송의 증거능력 문제

- 일반적으로 민사/가사소송에서는 형사소송과 달리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전문법칙 등 증거능력 인정요건이 엄격하게 적용되지 않고 있음. 하지만, 최근 대법원은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배우자 몰래 녹음한 통화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1·2심을 깨고, 위법한 녹음이라는 이유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시한바 있음

- 위 대법원 판단과 마찬가지로 민사/가사소송에서도 증거능력 인정을 위해서는 위조된 건은 아닌지, 작성자의 의사대로 작성된 것은 아닌지, 출처를 신뢰할수 있는지, 위법한 요소는 없었는지에 대해 엄격한 확인을 거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 형사소송과 달리 민사소송과 가사소송에서는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의 제한이 없습니다. 형사소송에서는 엄격한 증거법칙을 통해 수사기관의 인권침해 등을 막기 위한 필요성이 있는 반면, 민사소송과 가사소송에서는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도 그 이유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 그러다보니 통신비밀보호법 등에서 금지하고 있는 방식으로 수집한 증거를 민사소송이나 가사소송에서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 이 경우 전체 법질서가 일관된 기준으로 사안을 바라보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민사소송이나 가사소송에서의 증거도 무제한 허용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다만, 형사소송에서와 같은 엄격한 증거법칙을 민사, 가사소송에서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재판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민사소송과 가사소송에서 증거능력을 어느 정도로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와 논의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68. 후보자는 개헌이 필요하다고 보는지

68-1. 필요하다면 개헌에서 가장 중요한 3가지 조항은 무엇인지?

68-2. 불필요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 위 질의에 대한 공통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 헌법 개정 여부와 그 방향은 국민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국민적 합의를 통해 매우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문제이므로, 대법관 후보자의 입장에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후보자 개인적으로는,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여 정보기본권을 기본권 조항에 추가하는 방안과, 법원의 조직·인사·시설 등 사법행정과 재판절차·제도에 관한 사법부의 독자적 법률안제출권, 독자적 예산편성권을 인정하여 사법부 독립의 여건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68-3. 개헌을 통해 사법부의 독립성과 함께 민주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있는데 개헌을 통해 헌법기구로 대법관 추천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에 대한 견해는?

○ 헌법 개정 시 대법관 추천위원회를 헌법기구로 신설하자는 주장은 대법관의 독립성을 더 강화하자는 취지라고 생각하여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 다만 대법관 추천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다른 기관과의 관계 등을 어떻게 정하는지에 따라 그 의미가 크게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더욱 면밀한 검토와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68-4. 개헌을 통해 대법관 임기를 없애고 외국처럼 정년만 남기고 대신 징계나 해임을 가능하도록 하는 것에 대한 견해는?

○ 대법관의 임면에 관한 제도는 나라마다 서로 큰 차이가 있고, 그에 따라 장단점도 다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대법관의 임기를 없애고 정년만 남기는 변화는 대법관의 독립성 보장에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해임을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현행 헌법 제106조 제1항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에 비해 독립성이 약화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또한 위와 같은 변화는 대법원 구성, 대법관 임명절차 등 다른 사법 제도와의 관계에서 그 의미가 많이 다를 수 있으므로, 그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69. 사법부에 대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국민 불신이 과거에 비해 줄었다고 생각하는지? 줄었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지? 여전하다면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는지?

○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용어로 대표되는 재판에 대한 불신의 이유는 여러 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 우선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 등의 사법접근성이 과거 현저하게 낮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문제의식에서 국선변호제도가 도입되어 이제 최소한 구금된 피고인은 모두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 전관예우 관행이 존재한다는 국민들의 관념도 그 이유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사법부는 법정 외 변론 금지, 수임 제한, 연고관계 재배당, 회피제도 활성화 등을 통해 전관예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기준을 토대로 공정하고 적정한 양형을 하고, 국민참여재판, 불구속 재판의 확대도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 그로 인해 과거에 비해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비난은 다소 줄었지만, 앞으로도 법원은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 제도적으로나 재판 과정에서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70. 기후위기 대응이 엄중해진 시기, 환경법 판결 등에서 사법부가 취해야 할 역할은 무엇이라고 보는지? 관련하여 사법부가 보완해야 할 요소는 무엇이 있다고 보는지?

○ 헌법은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는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환경권 보장에 관한 법률로 「환경정책기본법」을 들 수 있습니다. 같은 법에 따르면, 국가는 환경보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책무를 지며, 환경오염의 사전예방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 대법원은 환경소송에서의 피해구제와 관련하여, "침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를 넘어서는지 여부는 피해의 성질과 정도, 피해이익의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가해행위의 공공성, 방지조치 또는 회피가능성, 공법적 규제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고(대법원 1995. 9. 15. 95다23378 판결 등), 또한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는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하여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에 따라 무과실책임을 인정하기도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99다55434 판결).

○ 환경문제는 특히 특정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가 서로 연결되어 있고, 인류의 미래가 달려 있어 범지구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사법부는 앞으로 환경권 보장 관련 국제적 논의나 동향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관련 법리에 대한 연구도 지속해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71. 구속영장 발부 여부 등을 포함한 법원의 판결과 결정 뒤 법관 개인에 대한 과도한 '신상털기'가 잦아진데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무엇이고, 사법권의 독립을 보호하기 위한 후보자의 계획은 무엇인지?

○ 헌법은 법관이 독립하여 심판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법부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다른 국가권력 뿐만 아니라, 정치적 단체나 이해집단, 여론으로부터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내는 것도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 우선 법관들 스스로 오직 헌법과 법률, 직업적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판단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합니다. 아울러 법관 개인에 대한 위협 및 인신공격에 대하여 해당 법관이 오로지 재판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남근 위원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

《김남근 위원 서면질의》

1. 후보자의 좌우명은 무엇입니까?

○ 좌우명은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입니다. 큰일을 앞두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한 후에(盡人事) 하늘에 결과를 맡기고 기다린다(待天命)는 뜻입니다.

○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 임하자고 스스로 다짐하는 의미와 그 후에 따라오는 결과에 대해서는 평정심을 가지자는 의미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담당해온 재판과 사법행정 업무 모두 어렵고 부담스러운 일이었는데, 매번 좌우명이 큰 도움과 위로가 되었습니다.

2. 후보자가 가장 존경하는 역사적 인물은 누구입니까?

○ 공직자로서 오로지 백성을 위하는 위민(爲民)의 자세를 보여주셨던 세종대왕을 존경합니다. 세종대왕께서는 백성들을 위하여 훈민정음을 창제하고 우리나라 최초의 농사책인 농사직설을 편찬하였을 뿐 아니라, 노비와 죄인 등 사회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는 백성들에 대해 지금 보더라도 파격적인 정책을 펼쳤다는 면에서 놀라움과 존경의 마음을 늘 간직하고 있습니다.

3. 후보자가 가장 존경하는 법조인은 누구입니까?

4. 후보자가 가장 존경하는 선배 법관은 누구입니까?

5. 후보자가 가장 존경하는 대법관은 누구입니까?

○ 위 질의에 대한 공통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제가 존경하는 법조인은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님입니다. 광복 이후 사법부의 기틀을 세우신 것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법제, 입법, 법조윤리에도 큰 영향을 끼치셨습니다.

○ 특히 발췌개헌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법원판결에 이승만 대통령이 불만을 표시하자 김병로 대법원장이 대답하였다는 발언인 “이의 있으면 항소하시오!”라고 한 일화는, 김병로 대법원장님의 사법부 독립에 대한 의지가 그 누구보다 강하셨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 김병로 대법원장님의 그러한 의지와 용기는 사법부 구성원에게 큰 힘과 위안이 된다는 면에서 무척 존경스럽습니다.

6. 후보자는 어떤 대법관이 되고 싶으십니까?

○ 대법원은 최고법원으로서 당사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최후의 보루이자, 헌법 원리에 입각하여 법령을 최종적으로 해석 · 적용함으로써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법률적 쟁점에 관하여 규범적 기준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 이러한 대법원의 역할을 올바로 수행하기 위해서, 저는 국민의 기본권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법적 기준과 가치를 제시하며, 서로 대립하는 다양한 가치와 이해관계가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최선의 해결책을 찾기 위하여 노력하는 대법관이 되고 싶습니다.

7. 법관과 대법관과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8. 법관과 비교하여 대법관으로서 가장 중요한 능력과 자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위 질의에 대한 공통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기본원리인 다수결의 원칙에 따를 경우 다수의 권익이 효과적으로 보장될 수 있으나, 소수자의 권리는 배척되거나 침해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사법부는 오직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독립하여 판단함으로써 소수자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법관과 대법관 모두 재판을 통하여 법을 해석하여 적용하고, 다른 권력으로부터 독립하여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보장하며,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 다만 대법관과 법관 역할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대법관이 최고 법원 구성원으로서 사회의 규범적 가치기준을 제시하는 역할의 비중이 더욱 크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대법관은 과거 분쟁의 해결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까지도 숙고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결을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국민의 기본권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서로 대립하는 다양한 이해관계가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최선의 해결책을 찾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합니다.

9. 본인이 대법관 후보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대법관으로서 가장 중요한 능력과 자질은 사람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제가 스스로를 대법관 적임자인지 판단하는 것은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제가 지향하였던 법관의 모습을 위주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타당한 결론을 선언하기 위해 내내 연구하고 고민하는 판사, 당사자와 잘 소통하는 판사가 되고자 늘 치열하게 노력하였고, 이를 좋게 평가해 주신 것 같아 감사할 뿐입니다.

10. 후보자가 읽은 책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책은 무엇입니까?

○ 최근에 다시 읽은 책 중 ‘모리와 함께 한 화요일’이 기억에 남습니다.

○ 루게릭병으로 죽음을 앞두고 있는 모리 교수가 인생의 종착역에서 일상적인 삶과 인간관계의 소중함을 담담하게 얘기하는 내용으로서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멸망하리’를 외치는 모습이 큰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11. 후배 법관들에게 반드시 읽기를 추천하고 싶은 책은 무엇입니까?

○ 정인진 변호사의 ‘이상한 재판의 나라에서’라는 책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 전관예우, 재판의 독립 등 법원을 둘러싼 여러 현안들에 관하여 통찰력 있게 서술하고 있어 법관이라면 꼭 한번 읽고 성찰하면 좋을 내용입니다.

○ 특히 ‘법원칙을 지키지 않으면서 법정에서 제왕적 권한을 행사하고 자의적 판결을 내리는 법관은 유해한 존재다’라는 부분은 법관에게 죽비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12. 후보자는 명예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3. 후보자는 법관으로서 명예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위 질의에 대한 공통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일반적으로 명예는 대외적 평판과 스스로에 대한 가치평가로서의 자긍심을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판례에서 명예는 “사람에 대한 객관적 사회적 평가”라고 판시하여 외부적 명예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명예의 의미를 전제로, 법관으로서의 명예는 구체적 사안에서 실체적 진실을 살펴 공정하게 판단하며, 정의의 편에서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아픔에 공감하였는지에 관한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14. 후보자는 법관 재직 중 가장 후회되는 에피소드는 무엇입니까?

15. 후보자는 법관 재직 중 명예가 실추된 적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있다면 무엇입니까?

○ 위 질의에 대한 공통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재판업무와 사법행정업무를 하면서 제가 내린 결정이나 처리한 업무가 항상 옳다고 자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당시 상황에 맞춰 제 주위에 있었던 훌륭한 법관 및 직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 업무에 임했기에 잘못했다고 후회되거나, 명예가 실추되었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남아있지는 않은 점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16. 후보자는 정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7. 후보자는 정의가 어떻게 실현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8. 후보자는 정치적 이념적 양극화로 인해 편견과 증오로 가득 찬 정치 현실에서 정의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9. 후보자는 사회적 정의 실현을 위한 법관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위 질의에 대한 공통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정의의 개념이 무엇인지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사회를 구성하고 유지하기 위해 사회 구성원들이 추구하는 공정하고 올바른 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정의가 실현되는 방식은 사회, 문화, 정치, 경제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법치주의 사회에서, 투명한 정부와 공정한 사법 시스템이 중요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과 제도가 마련되어 이를 엄격하게 시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경제적 불평등을 줄이고 모든 사람이 기본적인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공정한 경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와 동시에 사회구성원들에 대하여 이에 관하여 교육하고 의식을 개선하여야 할 것입니다.

○ 정치적 이념적 양극화가 심화된 사회에서 정의는 공정성과 평등을

기반으로 하여 편견과 증오를 줄이고, 사회통합을 촉진하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 정의를 법원의 관점에서 보자면, 재판의 과정과 결과가 공정해야 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관은 양 당사자에게 균등한 주장·입증 기회를 제공하여 절차적 정의를 구현해야 하고, 동시에 공평하고 엄정한 법적용을 통해 당사자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합당한 결과를 도출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재판에 참여하는 당사자 중 신체적·경제적 능력 등이 부족한 사회적 약자에게도 실질적 평등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각급 법원에 장애인 사법접근센터 설치, 영상재판 실시,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소송구조·국선변호 등 확대는 사법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좋은 예라고 생각합니다.

20. 법관의 직무와 관련하여 후보자 자신의 점수를 매긴다면 몇 점입니까?

○ 법관으로서 자신에 대한 점수를 매긴다는 것이 적절한지는 의문이지만, 백점 만점에 85점 정도는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형편없는 판사는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모범적인 훌륭한 법관이라고 자부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발전 가능한 여지가 남겨있어 더 노력할 수밖에 없다는 각오에서 위와 같은 점수를 스스로에게 매겨봤습니다.

○ 어떤 판사였는지 스스로 평가하는 것이 멋쩍긴 하지만, 제가 지향하였던 법관의 모습을 위주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타당한 결론을 선언하기 위해 내내 연구하고 고민하는 판사, 당사자와 잘 소통하는 판사가 되고자 노력하였던 것 같습니다.

21. 법원 행정사무와 관련하여 후보자 자신의 점수를 매긴다면 몇 점입니까?

○ 법원 행정사무와 관련하여 백점 만점에 80점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법원행정처에서 차장, 기획조정실장, 기획총괄심의관, 인사담당관으로서, 법관 생활 동안 다른 법관과는 달리 사법행정 업무를 많이 담당하였습니다. 당시 훌륭한 법관 및 직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 업무하면서 보람이 컸지만, 법원 내외부의 여러 의견을 조율하면서 재판에 대한 지원을 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성과를 내었다고 자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 다만,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재직하면서 성과라고 하면 우선, 평생법관제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면서도 신속하고 충실한 재판을 구현하기 위해 재판연구원을 충원한 것을 들 수 있습니다. 또한 2025년 초 개통을 목표로 하는 형사전자소송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형사전자소송이 도입되면 소송기록의 전자화로 기록에 대한 접근권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어 피고인의 방어권이나 피해자의 절차관여권 등 소송관계인의 기본권이 크게 강화되고, 사법절차의 투명성이 제고되어 사법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도산사건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2023년 수원회생법원과 부산회생법원을 성공적으로 출범시키고, '신속한 도산사건 처리를 위한 종합대책팀'을 운영하여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국민과 기업의 회복을 돕는 데 다소나마 역할을 한 것도 뿌듯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22. 법원개혁으로 별도의 사법행정기구에서 사법행정권을 담당하고자하는 것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 법원행정처가 아닌 별도의 사법행정기구, 심지어 사법부 외부의 별도 기구에서 사법행정을 담당하는 방안 모두 장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사법행정회의 또는 법무부에서 사법행정을 담당하는 나라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러나 사법제도는 그 나라의 역사, 다른 국가권력기관과의 상호관계,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인식과 기대 등 여러 요소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섣불리 다른 나라의 사법행정제도를 도입하였다가는 그 제도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여 장점을 살리지 못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재판 독립의 침해에까지 이를 수도 있습니다.

○ 결국 우리 국민들이 사법부에 대해 기대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볼 수 있는 재판 독립을 지키면서 사법행정의 여러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찾는 과정은 충분한 연구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3. 사법행정기구를 비법관으로 전원을 구성하는 것에 대해 후보자의 의견은?

○ 과거 이른바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서 법원행정처에서 근무하는 법관의 관료화가 심화되어 결국 재판에 대한 내부적 독립 침해의 원인이 되었다는 반성이 법원행정처 탈판사화의 주요한 논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전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에서 근무하는 법관의 수를 최소화 하였습니다.

○ 그러나 급격한 비법관화 과정에서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 역량 약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고, 각종 제도개선 과제들을 추진해나감에 있어 여전히 법관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특히 법원의 본질적인 기능은 재판업무이고, 사법행정의 중요한 역할이 재판업무를 지원하는 것인데, 재판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법관을 배제한 상태에서는 재판제도개선을 비롯한 재판지원, 사법정보화 등의 업무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사법행정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한 지원도 어렵게 됩니다. 따라서 사법행정기구를 비법관으로 전원을 구성하는 것은 위와 같은 문제점이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결국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법행정 중 어떤 분야에 어느 정도의 법관이 관여하는 것이 적절한지 연구와 논의를 지속하여 재판독립을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효율적인 사법행정을 만들어 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24. 후보자가 생각하는 법원의 개혁과제와 개선 방안은 무엇입니까?

○ 사법부는 재판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기관입니다. 그러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최근 재판지연 현상에 대해 국민의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신속한 재판을 구현하기 위해서 우선 재판지연의 원인을 정확히 분석하고, 인적·물적 자원이 확충되기 전에라도 재판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재판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올해부터 법관 사무분담을 장기화하고, 법원장이 직접 재판을 담당하며, 판결서 작성방식을 사건 난이도에 따라 적정화하여 사건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또한 이를 위하여 법관 및 재판연구원 증원 등 인적 여건의 확충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법관증원에 관해서는 21대 국회에서 법관증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무척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법부 구성원은 물론이고 여, 야 가릴 것 없이 모두 법관 증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22대 국회에서는 조속하게 법관증원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아울러 법조일원화가 시행된 지 10년이 되었는바, 풍부한 경력과 실력을 갖춘 법조인이 법관으로 임용되고, 임용된 법관이 열정과

사명감을 가지고 재판에 임할 수 있도록 법관 인사제도 개선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고민을 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 최근 대법원장 자문기구인 사법정책자문위원회에서도 관련하여 법관인사제도 및 재판절차 개선을 위한 논의에 착수하였고, 2024. 7. 16.자 회의 결과 '법관임용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법원조직법 개정을 통해 5년 이상 법조경력자를 법관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면서, 재판장이 되기 위한 요건은 법조경력 10년 이상으로 강화하여 법조일원화의 목적과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건의 내용을 잘 반영하여 법관임용제도를 개선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구현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25. 대법관으로 임명될 경우 본인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 조희대 대법원장님은 사법의 본질이자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재판을 어떻게 하면 신속하고 공정하게 할 수 있을 것인지 고민하고 사법부 구성원들이 각자의 재판에 정성과 성의를 다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대법관으로 임명이 된다면, 이와 같은 노력에 저의 경험과 지식을 보태어 우리 법원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 대법관으로 임명될 경우 제일 먼저 하고 싶은 일은 무엇입니까?

○ 사법부는 재판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기관입니다. 그러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재의 재판지연 문제에 대해서는 저를 포함한 사법부의 구성원 모두가 매우 무겁게 받아드리고, 그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다만 재판지연의 원인은 법원 내외부의 다양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고 어느 한가지의 원인을 주요원인으로 꼽기는 어렵습니다. 법관의 고령화, 사건의 복잡화, 법관 수의 부족, 일과 가정의 균형을 추구하는 사회의 변화 등 쉽게 꼽아볼 수 있는 원인만 해도 여러 가지입니다. 거기에다가 최근 코로나 사태도 재판지연 현상을 심화시켰다고 생각합니다.

○ 기본적으로 법관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정성을 다해야 하고, 이러한 소명을 다하기 위해 어느 정도 자신의 자유시간도 희생하려는 자세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관의 사명감만을 강조하여 개인의 희생을 강요할 수는 없고, 근본적인 해결책도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우리가 처한 상황에 맞는 제도개선이 전반적으로 이루어져야 재판지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제가 대법관으로 임명된다면,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여러 방면에 걸친 다양한 재판제도를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개선하기 위한 방법이 무엇인지를 연구하는데 가장 먼저 경험과 지식을 보태겠습니다.

27. 대법원 판결 중 가장 의미있다고 생각하는 판결 3가지와 아쉽다고 생각하는 판결 3가지는 무엇인가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대법원은 그간 외부세력이나 여론의 압력 등에 흔들림 없이 공정한 판결을 내리기 위해 치열하게 노력해왔고, 시대의 규범적 가치를 제시하는 수많은 좋은 판결을 선고하여 왔습니다. 대법관 후보자로서 대법원에서 숙고하여 내린 판결에 대하여 직접적인 평가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 사법부의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 헌법은 법관이 독립하여 심판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법부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다른 국가권력 뿐만 아니라, 정치적 단체나 이해집단, 여론으로부터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내는 것도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 우선 법관들 스스로 오직 헌법과 법률, 직업적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판단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고, 아울러 법관 개인에 대한 위협 및 인신공격에 대하여 해당 법관이 오로지 재판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아가 사법부의 독자적인 예산편성권을 인정하는 등 사법부가 행정부의 영향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도록 검토해 나갈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29. 사형제 폐지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사형제에 관하여 찬·반 양론이 대립하고 있고, 양 주장 나름대로 타당한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다만 법정형에 사형이 존치되고 있는 현 상황을 전제로 말씀드리면, 사형제도는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형벌로서 일단 집행된 경우에는 오판이라 해도 돌이킬 수가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범행에 대한 책임의 정도와 형벌의 목적에 비추어 누구라도 그것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사형이 선고되는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30. 소년법 폐지 논란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 최근 미디어의 발달, 경제성장 등의 영향으로 청소년들의 범죄가 늘어나거나 흉폭해지는 경향에 대하여 형사책임연령을 낮추고, 더 나아가 소년법 폐지와 같은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 소년은 정신적·육체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에 있는 자로서 사회적, 법적 책임 외에도 소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양한 보호처분의 활용을 통하여 교육과 치료를 병행함으로써 사회의 건실한 구성원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방안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견지에서 소년법은 존치하면서 필요한 부분은 개선해 나가는 것이 옳다는 입장입니다.

31. 정부에서 추진중인 형사미성년자 연령하향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형법은 14세 미만을 형사미성년자로 처벌하지 아니하고, 소년법은 형사책임연령이 아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을 이른바 촉법소년으로 보호처분의 대상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 최근 미디어의 발달, 경제성장 등의 영향으로 청소년들의 범죄가 늘어나거나 흉폭해지는 경향에 대하여 형사책임연령을 낮추는 방법 등으로 처벌을 강화하자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한 의견에 경청할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다만, 개별적인 책임능력과 달리 형사책임연령을 일괄하여 조정하면 책임능력이 갖추어졌다고 보기 힘든 소년까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우려가 있고, 아직은 어린 나이의 소년들에게 사회적 낙인 효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촉법소년 연령 하향은 사회 환경의 변화, 범죄 예방의 필요성 및 방법, 해외 국가들의 사례, 청소년 처벌에 대한 재범방지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32.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충돌, 역할 조정문제에 대한 논란이 계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데,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역할은 각각 어떠하다고 생각합니까?

○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재판소원의 인정여부, 한정위헌 결정의 기속력, 명령·규칙에 대한 위헌심사권, 관습법·긴급조치에 대한 위헌심사권 등에 관하여 다소 입장의 차이가 있어 왔습니다.

○ 우리 헌법은 제5장에서 법원을 사법권의 담당기관으로 규정하고, 제6장에서는 헌법재판소를 위헌법률심판 등을 관장하는 헌법기관으로 규정하여, 담당하는 사법권의 영역이 서로 상이하지만 대등한 사법기관으로서 지위와 권한이 분배되어 있습니다.

○ 양 기관이 헌법의 취지에 따라 서로의 역할과 기능을 존중하여 각자의 영역 내에서 헌법질서의 유지 및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사명에 충실한다면, 위와 같은 입장의 차이를 점차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33. 대법원은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을 부인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음. 헌법재판소의 변형결정이 법원에 대하여 기속력을 갖는지 여부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 대법원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법률이나 법률조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해석기준을 제시하면서 그러한 해석에 한하여 위헌임을 선언하는 이른바 한정위헌결정을 하는 경우, 이러한 한정위헌결정은 유효하게 존속하는 법률이나 법률조항의 의미·내용과 그 적용 범위에 관한 해석기준을 제시하는 법률해석이고, 합헌적 법률해석을 포함하는 법령의 해석·적용 권한은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는 법원에 전속하는 것이므로, 우리 헌법에 규정된 국가권력 분립구조의 기본원리와 사법권 독립의 원칙상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결정은 법원에 전속되어 있는 법령의 해석·적용 권한에 대하여 기속력을 가질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 저는 이러한 대법원의 판례를 존중합니다.

34.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결 사이에 괴리가 발생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사법부 기관 간 대립으로 인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상황에 대해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5. 위와 같이 사법부 기관 간의 대립으로 기본권이 침해된 국민은 어떻게 구제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위 질의에 대한 공통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서로 독립적이고 동등한 헌법기관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한정위헌결정에 대한 기속력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법률 해석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여,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지적은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 헌법재판소법은 헌법재판소로 하여금 제청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만을 결정하도록 하고(제45조), 법률의 위헌결정에 기속력을 부여하면서(제47조 제1항)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은 효력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제47조 제2항),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위헌결정은 기속력이 있지만, 한정위헌결정과 같은 해석기준을 제시하는 형태의 헌법재판소 결정은 기속력을 인정할 근거는 없습니다.

○ 양 기관이 헌법의 취지에 따라 서로의 역할과 기능을 존중하여

각자의 영역 내에서 헌법질서의 유지 및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사명에 충실한다면, 위와 같은 입장의 차이를 점차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대해서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서로 대립되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 그 간극이 단기간에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이라 생각됩니다.

○ 다만 이러한 차이로 인하여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되고 있다는 점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법조계와 학계 등 전문가의 의견, 해외 사례와 국민의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회에서 입법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6. 대법원이 정치적으로 독립된 재판을 할 수 있도록 가장 필요한 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헌법은 법관이 독립하여 심판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법부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다른 국가권력 뿐만 아니라, 정치적 단체나 이해집단, 여론으로부터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내는 것도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 우선 법관들 스스로 오직 헌법과 법률, 직업적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판단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고, 아울러 법관 개인에 대한 위협 및 인신공격에 대하여 해당 법관이 오로지 재판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아가 사법부의 독자적인 예산편성권을 인정하는 등 사법부가 행정부의 영향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도록 검토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37. 대법원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대법원은 최고법원으로서 대한민국 헌법이 정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최후의 보루이며, 헌법이념과 원리에 입각하여 법령을 통일적으로 해석 · 적용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 나아가 대법원은 새로운 규범적 가치기준을 제시하여 다양한 이해관계가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사회의 발전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정책법원으로서의 역할도 충실히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8. 우리 사회에 있는 여러 사회·인권 이슈 중 가장 먼저 해결되어야 할 인권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우리 사회는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 왔으나, 여전히 고민하고 개선해야 하는 인권 현안들이 남아 있습니다.

○ 그 현안들에는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인, 성소수자, 여성, 피해자 등 사회적 약자들의 요구이고,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과제이므로, 가장 먼저 해결되어야 할 인권 문제를 하나만 꼽기는 어렵습니다.

○ 법원은 재판을 통하여 법을 해석하여 적용하는 기관으로, 다른 권력으로부터 독립하여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보장하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저는 법관으로서, 헌법적 가치에 대한 수호 의지, 함께 살아가는 시민들에 대한 애정, 소수자 보호에 대한 신념을 가지고,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포용하고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균형 감각 그리고 시대적 요구와 가치를 반영하는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통찰력을 갖출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39. 검사장, 법원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등 퇴직한 법조계 고위공직자가 대형로펌, 기업 고문 변호사로서 활동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전관예우가 실제 존재하는지 여부를 떠나서, 전관예우 관행이 존재한다고 믿는 국민들이 적지 않고, 이러한 인식이 사법부의 신뢰에 큰 손상을 가져오므로, 국민들의 불신이 사라질 때까지 전관예우 의혹 해소에 더욱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고위 공직에서 퇴임한 법관이 퇴임 후 바로 대형로펌에 들어가거나 기업 고문 변호사가 되는 것은 전관예우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고려할 때 사법부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절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40. 국민들은 법조계 전관예우에 대해 굉장한 우려감을 가지고 있음. 후보자님은 법조계 전관예우가 존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41.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후보자가 생각하는 해결법은 무엇입니까?

42. 후보자께서 대법관으로 취임한다면 법조계 전관예우 근절 및 제도 개선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것입니까?

○ 위 질의에 대한 공통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재판은 실체와 외관 모두 공정해야 하므로, 이러한 국민들의 전관예우에 대한 우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법원은 부단히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 정원 외 법관으로서 원로법관제도 도입 및 법관의 직무환경 개선 등을 통해 법관이 정년에 이르기까지 근무하는 평생법관제도가 정착되어, 전관변호사의 발생을 근본적으로 차단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더불어 재판과정 및 결과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형사사건에 있어서는 법정 외 변론 금지, 수임 제한, 연고관계 재배당, 회피제도 활성화 등이 전관예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기준을 토대로 공정하고 적정한 양형을 하고, 국민참여재판, 불구속 재판과 국선변호를 적절하게 확대해 나가 국민들에게 재판 과정과 결과에 대하여

정확하게 설명하고 그에 대한 이해를 구하는 데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제가 대법관이 된다면 전관예우 관행이 실제 존재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러한 외관이 형성되지 않도록 부단히 노력하고, 전관예우의 근절을 위해 필요한 재판제도를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개선하기 위한 방법이 무엇인지를 연구하는데 경험과 지식을 보태겠습니다.

43. 법조일원화로 인해 숙련된 변호사가 판사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로펌에 근무한 변호사에서 판사가 될 경우, 해당 로펌에서 변호하는 사건에 대해 심리함에 있어, 공정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4. 대법관이 된다면, 43번 우려를 해소하고자 어떤 역할을 수행할 것인지?

45. 43번 우려가 가시화 될 경우, 사법신뢰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위 질의에 대한 공통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 법조일원화 제도 시행으로 대형 로펌 출신 법관들이 상당수 임명되는 것에 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 사법부로서는 블라인드 방식으로 절차를 진행하고 또 다양한 외부 인사의 참여를 통해 공정한 법관임용절차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왔음에도 그러한 비판이 있다는 것이 다소 안타깝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큰 사건을 대형 로펌이 주로 담당하는 현실이나 과거 전관예우로 인한 문제로 인해 이른바 후관예우에 대해서도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바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이러한 관행이 사실이라면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 다만 사법부는 후관예우 방지를 위해서 형사소송법상 제척사유로

퇴직 후 일정기간이 지나지 않은 법무법인의 사건을 규정하고 있고, 예규와 각급 법원 내규에서 연고관계에 있는 사건의 경우 재배당할 수 있는 제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다만, 공정성을 중시하는 현재의 법관임용절차에서 일정 비율의 대형 로펌 출신 법관이 선발되는 것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비율이 과도한 것인지 제대로 점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그 비율이 과도하다면 다양한 법조경력자가 선발될 수 있도록 임용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겠으나, 그 경우에도 공정성이 크게 훼손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46. 유엔 인권이사회는 한국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한바 있습니다. 이러한 권고에도 차별금지법 제정이 이뤄지지 않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7. 차별금지법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 대한민국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 경제적 · 사회적 ·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 개별법이 마련되어 있기는 하나,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하는 차별을 금지하고 구제하기는 어려워 일반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과거부터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지난 21대 국회에 발의되었던 차별금지법 관련하여 대한민국헌법 제11조 평등의 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법안의 취지에는 기본적으로 공감합니다. 다만, 일부 쟁점에 대하여는 첨예한 논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국민적·사회적 합의를 도출해나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48. 일각에서는 차별금지법이 성소수자를 조장하는 법이라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차별금지법의 기본적인 취지가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평등의 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알고 있고, 일부 쟁점에 대하여는 첨예한 논쟁이 있어 국민적·사회적 합의가 도출되어야 하겠지만, 단순히 성소수자를 조장하는 법이라는 이유로 만으로 반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 성소수자 역시 헌법상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누리고 성적 지향이 부당한 편견이나 차별의 이유가 될 수 없음은 명백합니다. 성적 지향성은 지극히 내밀한 사적인 영역이므로 타인에 대한 강요나 위해가 수반되지 않는 한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성소수자에 대하여 어떠한 사회적·법률적 보호를 할 것인지는 입법정책적인 문제로, 공론화 및 폭넓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국민적·사회적 합의를 통하여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49. 법관의 이념과 지향성(진보, 보수, 중도 등)이 재판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향을 미친다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이유는 무엇입니까?

○ 법관의 이념이나 지향성이 다양할 수는 있겠으나, 이러한 이념과 지향성에 상관 없이, 대부분의 법관들은 재판을 함에 있어 관련 법령과 판례에 기초하여 개개 사안에 따라 구체적 사정에 맞는 타당한 결론을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50. 법원에 있었던 사법농단 의혹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하며 해소되고 대국민의 사법적 신뢰도가 상승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는 국민 여러분에게 큰 실망을 드렸고, 이에 대하여 후보자 역시 법원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재판의 독립은 외부로부터 뿐만 아니라, 내부로부터도 지켜져야 하므로 사법행정이 사법지원의 영역을 넘어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법원 구성원 모두 경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법원은 사법행정권 남용사태로 인해 뼈아픈 반성을 한 뒤, 관료화되어 가고 있다는 비판을 받은 사법행정 분야를 민주적이고 수평적으로 바꾸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현 대법원장님이 취임한 이후에는 과거의 사법정책 중 긍정적으로 평가받는 부분은 더욱 발전시키되, 재판지연 등 당면한 과제를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법원의 노력이 아직 국민의 눈높이에 충분하지는 않을 수 있으나, 사법부의 모든 구성원과 함께 스스로를 돌아보고 더 낮고 헌신적인 자세로 재판이라는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1. 대법관 수 증원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증원에 동의한다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증원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52. 51번 질문에 대해, 동의·비동의를 택하지 못할 경우, 본인이 오랫동안 근무한 사법부에 대한 체계·근본적 고민이 없었다고 봐도 무방한 것인지?

○ 위 질의에 대한 공통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 대법원은 최고법원으로서 당사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최후의 보루이자, 헌법 원리에 입각하여 법령을 최종적으로 해석 · 적용함으로써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법률적 쟁점에 관하여 규범적 기준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러나 대법원에 접수되는 사건 수를 고려할 때 대법관들이 모든 사건에 대하여 하급심 판결과 같이 상세한 논증을 담은 판결서를 작성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 따라서 상고제도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대법관 증원 역시 상고제도 개선 방안 중 하나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관의 수는 단순히 사건의 수에 비례하여 대법관을 증원하는 것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고, 통일적 법해석을 위하여 대법원 재판의 핵심인 전원합의체를 구성하고 유지할 수 있는 정도여야 하며, 상고제도 자체를 개선하는 방안과 결합하여 논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53. 현재 대법원이 국민의 다양성을 대변하고 포용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54. 대법원이 위 다양성을 대변하고 포용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위 질의에 대한 공통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 대법원은 사회 구성원의 다양한 이해관계의 통합을 이루어 내고, 이를 통하여 우리 사회의 규범적 가치 기준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대법원이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관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인적 구성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깊이 공감합니다.

○ 우리나라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대법관의 학력, 경력, 성별, 지역을 안배하는 방향으로 구성을 다양화 하여야 한다는 요구가 크고, 이러한 방안도 대법원 인적 구성 다양화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궁극적으로는 사회적 쟁점에 관한 가치관이나 사법철학을 다양화하는 방향이 강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대법관 제청절차에서 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피천거인 중 심사동의자의 명단과 정보를 미리 공개하여 후보자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비당연직 위원에 대한 추천절차를 도입하는 한편 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를 비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하며,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에 대하여도 다

시 한번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는 것은 대법관 구성에서 다양성을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55. 대법원을 포함한 각급법원의 다양성(성별, 나이등)을 확보하기 위해 어떤 노력과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먼저 대법원 구성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고,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관이 반영되도록, 먼저 대법관 제청절차에서 피천거인 중 심사동의자의 명단과 정보를 공개하여 후보자에 대한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1. 선임대법관, 2. 법원행정처장, 3. 법무부장관, 4. 대한변호사협회장, 5.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6.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7. 대법관이 아닌 법관 1명, 8.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변호사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3명으로 이 중 비법관은 10명중 7명입니다(법원조직법 제41조의2 제3항). 또한 위 8. 비당연직 위원 중 1명 이상은 여성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법원조직법 제41조의2 제3항 제8호 단서).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사회의 다양한 구성원의 의견이 대법관 후보 추천에 반영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와 더불어, 법원 구성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사법연수원을 마치고 바로 법관으로 임용되는 경력법관제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서 법조일원화를 도입하였습니다. 법조일원화 제도는 다양한 사회경험과 연륜을 갖춘 법조인 중에서 법관을 선발하는 것을 핵심적인 요소로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과거 경력법관제가 향후

훌륭한 법관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자질을 확인하기 위해 사법연수원 성적과 같은 정량적인 평가를 할 수밖에 없었다면, 법조일원화 제도에서는 다양한 사회경험, 연륜과 같이 법관으로 임명함이 마땅한 정성적인 부분에 대한 평가에 더욱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도 정착되어 가고 있어 법관 구성의 다양화가 더욱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56. 공적인물의 사생활 보호와 일반 국민의 알권리 중 무엇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57. 공적인물의 사생활 보호와 일반 국민의 알권리가 충돌할 경우 해결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위 질의에 대한 공통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국민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국민의 알권리는 모두 헌법이 보장하는 중요한 기본권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여론의 자유로운 형성과 전달에 의하여 다수의견을 집약시켜 민주적 정치질서를 생성·유지시켜 나가야 하므로 표현의 자유, 특히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헌법상 권리로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합니다.

○ 위 두 기본권 중 어느 하나가 일반적으로 우선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공론의 장에 나선 전면적 공적 인물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비판을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 한계를 설정하는 것은 개별적 사안에서 구체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교형량 되어야 할 것입니다.

58. 검찰의 공소장 공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공소장 공개에 관하여는 어떤 기본권 또는 가치를 더 중시하는지에 따라 의견이 대립되고 있습니다. 공개재판의 원칙, 국민의 알권리를 강조하며 공개를 지지하는 입장과, 무죄추정의 원칙을 중시하며 가급적 공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도 있습니다.

○ 다만, 형사소송법 제47조는 소송에 관한 서류는 '공판의 개정 전'에는 공익상 필요 기타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공개하지 못한다고 하여 공판 개정 전 소송서류의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만큼, 이를 염두에 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59. 일각에서는 공판개시 전 공소장 공개가 피의사실공표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 형사소송법 제47조는 소송에 관한 서류는 "공판의 개정 전"에는 공익상 필요 기타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공개하지 못한다고 하여 공판 개정 전 소송서류의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법 제126조는 피의사실공표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 위 법률의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은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행위는 원칙적으로 일반 국민들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관하여 객관적이고도 충분한 증거나 자료를 바탕으로 한 사실 발표에 한정되어야 하고, 이를 발표함에 있어서도 정당한 목적 하에 수사 결과를 발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에 의하여 공식의 절차에 따라 행하여져야 하며,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여 유죄를 속단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현이나 추측 또는 예단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표현을 피하는 등 그 내용이나 표현 방법에 대하여도 유념하여야 하며, 나아가 피의사실과 불가분의 관계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사기관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사실관계'까지 피의사실에 포함시켜 수사 결과로서 발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22. 1. 14. 선고 2019다282197 판결)"는 취지로 판결한 바 있습니다.

○ 저는 위 판결의 취지에 공감하고, 피의사실의 공표는 대법원이 제시한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60. 기성세대가 일으킨 기후위기가 미래세대의 행복추구권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침해하고 있다는 의견에 대해 후보자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61. 탄소 배출 등 기후위기를 일으키는 요인에 대해 정부의 불충분한 감축목표가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의견에 대해 후보자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 위 질의에 대한 공통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 2015년 '파리기후변화협정' 이후 각 나라가 탄소가스 배출 저감,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노력을 포함하여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있고, 2023년 3월 유엔 총회에서 지구의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각 국가의 의무에 대해 국제사법재판소가 권고적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는 결의안이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헌법이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음에도, 실제 이를 보장하는 구체적인 입법이 완비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공기와 관련하여 '대기환경보전법', 물과 관련하여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기후와 관련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등이 마련되어 있기는 하나, 주로 선언적·정책적인 규정이나 규제 규정이 있을 뿐 이를 권리로서 규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환경권 보장과 기후변화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환경소송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환경권 보장을 위한 사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지적에 공감합니다.

○ 다만 구체적인 사건이 헌법재판소에 계속 중이어서 대법관 후보자로서 더 이상의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면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2. 후보자는 대법관이 되었을 경우, 타 국의 사례를 수용·비교하며 재판을 진행할 의향이 있습니까?

○ 비교법적 연구는 다른 국가나 문화권의 법체계와 실무를 비교함으로써 자국 법체계의 특징과 한계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합니다. 또한 비교법적 연구를 통해 복잡한 법률적 쟁점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 대법원은 헌법 원리에 입각하여 법령을 최종적으로 해석 · 적용하고, 대립하는 다양한 가치와 이해관계가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법적 기준과 가치를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에 대법관은 비교법적 연구 등을 바탕으로 법률적 쟁점에 대한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야 할 책임이 있고, 저도 대법관이 된다면 그러한 책임을 수행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63. 후보자는 존엄사를 찬성/반대하는지? 찬성/반대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존엄사는 환자가 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르렀을 때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하고 질병에 의한 자연적 죽음을 받아들임으로써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품위를 지키면서 죽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안락사는 인위적인 행위에 의하여 죽음을 맞이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죽음의 시기를 앞당기는 적극적 안락사와 생명유지에 필요한 약물투여 등을 중단함으로써 죽음에 이르게 하는 소극적 안락사로 구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적극적 안락사가 허용될 수 없다는 점에 관해서는 대체로 동의하지만, 존엄사나 소극적 안락사의 인정 여부에 관해서는 윤리적·종교적·법적·의학적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찬반양론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 존엄사와 관련하여 대법원이 무의미한 연명치료 장치 제거 등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는데, 후보자는 대법원 판결과 같이 엄격한 요건을 전제로 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른 환자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 기초하여 죽음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64. 각급법원의 장기미제 사건을 해소하기 위한 후보자만의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 장기미제가 증가하는 원인은 다양하고, 사회의 변화에 따라 사건의 난이도가 증가하고 재판의 충실성이 중요시되는 상황에서, 이를 당장 해소하기에 사법부의 인적 자원이 부족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신속한 재판을 통해 사건적체 현상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법관 및 재판연구원의 증원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 다만 이와 같은 인적 충원이 이루어지기 전에, 높은 경력의 법관이 증가한 상황에서 민사 및 가사사건의 단독관할을 확대한 것은 의미 있는 조치라고 볼 수 있고, 회생법원 등 전문법원이 확대됨으로써 전문성을 요하는 사건에 대하여 좀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부터 사무분담을 장기화하여 1심을 전문화하고, 사법행정을 담당하는 법원장이 일정 부분 본안 재판을 담당하는 것도 장기미제 사건 해소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 그 밖에도 장기미제 사건 해결을 위하여 감정절차의 신속화 등 심리방식의 개선을 연구하고, 법관연수 등을 통해 그 연구 성과를 공유하여 재판절차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65. 후보자는 헌법과 법률, 양심과 소신에 따라 판결하지 않고 특정 이념에 기반을 두어 판결한 사실이 있습니까?

○ 기억하는 범위에서는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66. 후보자가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사회적 약자의 보호를 위해 내렸던 판결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 서울고등법원 노동전담부에 근무하면서 헌법과 법에 따른 근로자의 권리가 보장되고 있는지 늘 고민하며 재판하였습니다.

○ 학원강사들의 근로자성이 문제된 사건에서, 해당 강사들이 학원과 수강료를 일정한 비율에 따라 나눠 갖는 소위 '비율제 강사'들이었고, 근로계약의 형식이 강의위수탁계약으로 형식적으로 개인사업자의 성격을 띠고 있기는 하지만, 학원이 교육과정별 통일성 있는 수업 진행을 하도록 하고, 학생 수 및 학생들의 레벨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강사를 지정하였으며, 수강료의 비율을 정하는 점 등 그 실질에 대하여 충실하고 심도 깊게 심리하여 해당 학원강사들이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사업부문별 근로자 수의 차이가 큰데도 각 사업부문을 선거구로 하여 같은 수의 근로자위원을 선출한 선거가 무효라고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노사협의회에 근로자위원의 선출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자율적으로 정할 재량이 있더라도, 그 재량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헌법상 권리가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헌법상의 평등 원칙은 노사협의회의 선거구 획정에 있어서도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 근로자가 파면처분의 무효를 구한 사건이 있었는데, 파면처분 이후 이미 정년 도래로 당연 퇴직되어 파면처분의 무효를 구할 이익

이 있는지가 선결 쟁점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파면처분 이후 당사자의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대한 구제신청,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한 재심신청이 각 기각되고, 위 재심판정에 대한 행정소송도 이미 기각 확정되어 많은 고민을 하였으나, 1심과 달리 파면처분에 대해 제기한 무효확인청구소송 중 정년이 도래하였다고 하더라도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퇴직급여 등이 감액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면 징계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보았고, 나아가 징계재심 절차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협약에서 정한 재심의결기한을 경과하여 근로자의 정년이 도래하기까지 재심의결을 하지 않았다면 당초 징계처분은 무효가 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 근로자의 퇴직일을 그해 말일로 보는 사내 관행이 있는 경우 이를 취업규칙으로 인정하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만 나이가 도래하는 날' 근로자를 정년 퇴직시킨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도 하였습니다.

○ 또한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 정한 해고예고제도는 근로자로 하여금 해고에 대비하여 새로운 직장을 구할 수 있는 시간적·경제적 여유를 주기 위한 것이므로, 해고의 예고는 그 일자를 정하여 확정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피고가 '수습기간 후 업무능력과 업무태도가 개선되지 않으면 정식채용을 하지 않겠다.'라고 불확정한 조건을 붙여 한 해고의 예고는 효력이 없다고 본 사건도 있었습니다.

67. 후보자는 현 대법관의 구성이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 구성을 탈피하지 못했다는 비판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까?

○ 대법원은 사회 구성원의 다양한 이해관계의 통합을 이루어 내고, 이를 통하여 우리 사회의 규범적 가치 기준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대법원이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관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인적 구성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깊이 공감합니다.

○ 다만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은 대법관의 학력, 경력, 성별, 지역을 단순히 안배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쟁점에 관한 가치관이나 사법철학을 다양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그 밖에도 절차적인 면에서, 법원은 대법관 제청절차에서 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피천거인 중 심사동의자의 명단과 정보를 미리 공개하여 후보자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비당연직 위원에 대한 추천절차를 도입하는 한편 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를 비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하며,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에 대하여도 다시 한번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는 것은 대법관 구성에서 다양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68. 후보자는 사법부에 필요한 '외적 다양성'에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또한 이를 충족하기 위한 방안이 있습니까?

○ 서면질의 67번과 관련하여, 법관 구성의 다양성은 사법부에 필요한 외적 다양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원이 재판과 판결에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관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인적 구성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와 법조일원화 제도가 정착되어 감에 따라 법조인뿐 아니라 법관 구성 자체도 다양해지고 있어 향후 사법부의 다양성은 보다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 특히, 법조일원화 제도는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사회경험이 거의 없는 젊은 나이에 바로 법관으로 임용되었던 기존 제도에 대한 반성에서 도입된 것이었습니다. 다양한 경력을 가진 우수인력 확보라는 법조일원화의 취지가 구현되려면, 사회적 비용이 더 투입될 수밖에 없다는 면에서, 우리 사회가 법조일원화 제도를 어떤 방향으로 추진해야 할지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69.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재판에 반영하기 위해 대법관의 자격요건을 완화하여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대법관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완화하는 것은 대법원 인적 구성이 다양화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장점이 있을 수도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대법원의 권리구제 기능이 약화되는 단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그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는 단순히 인적구성의 다양화가 아닌, 사회적 쟁점에 관한 가치관이나 사법철학을 다양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70. 후보자께서는 오랫동안 법원에 몸담은 법관으로서 우리나라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가 하위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71. 후보자께서 생각하는 국민의 사법부 신뢰도 회복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위 질의에 대한 공통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 법관의 1인으로서, 또한 최근까지 법원행정처 차장 등 사법행정업무를 담당했었던 사람으로서,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저하에 대하여 무척 가슴 아프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원인은 다양하겠지만, 이른바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국민의 법감정에 부합하지 않는 판결, 최근 심화된 재판지연 문제 등이 주요한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법원은 이른바 사법행정권 남용사태로 인해 뼈아픈 반성을 한 뒤, 기존에 각급 법원에 설치되어 있던 판사회의, 사무분담위원회 외에도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상설화, 사법행정자문회의 및 그 뒤를 이은 사법정책자문위원회 등 민주적 통제를 할 수 있는 여러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법관인사위원회,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등도 외부의 의견을 사법행정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제도들이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할 수는 없으나, 그 경험을 바탕으로 사법행정 중 어떤 분야에 어느 정도의 법관이 관여하는

것이 적절한지 연구와 논의를 지속하여 재판독립을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효율적인 사법행정을 만들어 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국민의 법감정에 부합하지 않는 판결이 많다는 지적에 대하여 사법부의 모든 구성원은 스스로를 돌아보고 더 낮고 헌신적인 자세로 재판이라는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더 나은 재판으로 그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재판제도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국민 모두가 더 쉽고 효율적으로 사법에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사용자 위주의 전자소송 시스템 개선, 장애인 등을 위한 사법접근센터의 확충,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국민의 신속한 재기를 돕는 개인도산 전문상담센터의 확대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해 법원의 문턱을 낮추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하겠습니다.

○ 최근 재판지연 현상에 대해 국민의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신속한 재판을 구현하기 위해서 우선 재판지연의 원인을 정확히 분석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효율적인 재판제도의 개선, 이에 필요한 법관 및 재판연구원 증원 등 인적·물적 여건의 확충 방안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최근 대법원장 자문기구인 사법정책자문위원회에서도 관련하여 법관인사제도 및 재판절차 개선을 위한 논의에 착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사법부는 재판의 공정성 및 독립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 위에서 존재할 수 있으므로, 국민의 눈높이에서 사법부를 돌아보고 사법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항상 고민하겠습니다.

72. 법관은 다른 어떠한 자리보다도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자리임. 하지만 각종 비리·비위 행위에도 불구하고 판사에 대한 징계나 처벌은 매우 경미한다는 지적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법관 징계에 관한 논의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헌법 제106조 제1항에서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정한 바와 같이 재판의 독립을 위해 법관의 신분은 엄격하게 보장되어야 하고, 징계에 있어서도 그러한 정신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합니다.

○ 한편,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서 법관은 높은 수준의 윤리기준을 준수해야 하고, 이를 어길 시에는 일반 공무원보다 더 엄격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 이렇게 서로 대립되는 가치를 법관징계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관에 대한 징계시도가 법관의 신분보장을 침해하여 재판의 독립을 훼손하는 것은 아닌지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나 비위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엄정한 처리를 통해 그 지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73. 후보자께서는 오랫동안 법원에 몸담은 법관으로서 일부 법관 동료, 선·후배들의 비위 행위가 반복되고 있는 원인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일부 법관의 비위 행위가 완전히 근절되지 않는 것에 대해 한 명의 법관으로서 무거운 마음입니다. 비위 행위가 반복되고 있는 원인을 한 두가지로 손꼽아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 사회의 윤리적 수준이 점점 높아짐에 따라 법관들에 대한 윤리기준이 강화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 다만 법관의 신분보장으로 인해 법관 징계양정 수준이 과거에는 비교적 높지 않았다면, 최근에는 국민의 눈높이에 접근하는 징계양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 그럼에도 법관들에 대한 윤리연수 강화 등을 통해 자체규율 의식을 높이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74. 후보자께서는 퇴임 후에 어떠한 진로를 생각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영리 업무에 종사하지 않고 공익적인 활동을 하고 싶습니다.

75. 후보자께서는 허위사실이 아닌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는 지적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76.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와 조화될 수 있는지에 대해 후보자의 견해는 어떤지?

○ 위 질의에 대한 공통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일반의 평가를 보호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사회구성원의 인격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다만 허위사실이 아닌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것에 대하여,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와 언론·출판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정치적으로 악용될 위험이 있다는 비판과 함께 위헌 논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다만, 헌법재판소는 두 차례에 걸쳐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관한 헌법 제307조 제1항에 대하여 합헌결정을 내린 바 있고, 대법원 역시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개인 사생활의 공개는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한 부작용이 크며 형벌을 대체할 만한 적절하고 효과적인 수단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들어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라도 명예훼손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저는 이러한 헌법재판소 결정과 대법원 판결을 기본적으로 존중하고, 다만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적용 과정에서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을 수 있도록, ①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증명가능성, 문맥, 상황 등을 고려하여 사실의 적시와 의견 표현을 적절히 구별하고(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8도11491 판결 등), ② 적시된 사실의 내용, 공표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명예 침해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진실성과 공익성의 요건을 갖춘 경우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을 부정하는 등의 방법(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도1473 판결 등)을 통하여 신중하게 법률을 해석하여 적용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처벌문제는 개인의 인격권과 국민의 알권리, 표현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를 어떻게 조화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에 대한 폐지 여부도 위와 같은 충돌하는 헌법상의 권리와 자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친 후에 입법적으로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77. 모욕죄의 경우 하급심 판결이 파기되는 사례가 많아 실제로 처벌 대상의 행위여부를 사전에 알기 어려워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헌법재판소는 모욕죄의 보호법익,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볼 때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 감정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금지되는 행위가 무엇인지를 예측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보기 어렵고, 대법원이 모욕의 의미에 대하여 객관적인 해석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헌법재판소 2013. 6. 27. 선고 2012헌바37 전원재판부 결정, 2020. 12. 23. 선고 2017헌바456 등 전원재판부 결정, 2021. 9. 30. 선고 2021헌가2 등 전원재판부 결정). 저 또한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기본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 다만 위 헌법재판소 결정의 반대의견처럼 '모욕'의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여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있으므로, 법 적용 및 처벌에 있어서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78. 후보자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기본권의 최후 보루인 대법원의 재판관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대법관으로서 가장 중요한 능력과 자질은 사람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에 따라 대법관에게는 헌법적 가치에 대한 수호 의지, 함께 살아가는 시민들에 대한 애정, 소수자 보호에 대한 신념,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포용하고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균형 감각 그리고 최종심급 담당자로서 시대적 요구와 가치를 반영하는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통찰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제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법관이 된다면, 사회적 약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와 실질적 평등을 재판 절차에서 구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79. 윤석열 정부 들어서 강경 보수 기조가 뚜렷해지고 있고,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에 사회적 갈등이 커져가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대법원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대법관으로서 어떠한 사회적 인식과 자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대법원은 최고법원으로서 당사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최후의 보루이자, 헌법 원리에 입각하여 법령을 최종적으로 해석 · 적용함으로써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법률적 쟁점에 관하여 규범적 기준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 이러한 대법원의 역할을 올바로 수행하기 위해서, 대법관은 국민의 기본권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법적 기준과 가치를 제시하며, 서로 대립하는 다양한 가치와 이해관계가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80. 법무부는 정부조직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을 개정하여 인사혁신처의 공직후보자 등에 대한 정보 수집 권한을 수탁받아 법무부내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하였음. 그러나, 정부조직법상(제32조) 법무부의 관장사무는 "검찰", "행형", "인권옹호", "출입국관리", "그 밖의 법무에 관한 사무"로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은 법무부의 관장사무에 해당하지 않음. 다만, 제6조제1항이 행정기관의 소관사무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에 위탁·위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조직법 제6조제1항(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과 제32조제1항 해석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법 위반 지적에 대해서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81. 행정 각부에 불과한 법무부가 대법원장 및 대법관의 임명 절차에 개입할 수 있게 되어 삼권분립 원칙 훼손이 우려되고, 공무원의 인사 등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 다음의 상급행정기관인 국무총리실 산하 인사혁신처에 둔 입법취지도 훼손된다고 판단하는데, 후보자는 인사정보관리단 설치에 따른 헌법 위반 여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대법원판례에 따르면 ① 법률의 위임 규정 자체가 의미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여 위임의 한계를 분명히 하고 있는데도 하위 법령이 문언적 의미의 한계를 벗어났다든지, ② 위임 규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의미를 넘어 범위를 확장하거

나 축소함으로써 위임 내용을 구체화하는 단계를 벗어나 새로운 입법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 이는 위임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 행정부의 행정입법은 법원의 명령·규칙 위헌심사의 대상으로서 향후 사건화 되면 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위와 같이 일반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 외에 대법관 후보자로서 개인적인 구체적 의견을 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면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현재 대법관의 임명 절차에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인사검증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2. 과거 대법원 판결 중 가장 아쉬운 판결은 무엇인가요?

83. 과거 대법원 판결 중 가장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판결은 무엇인가요?

○ 위 질의에 대한 공통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 대법원은 그간 외부세력이나 여론의 압력 등에 흔들림 없이 공정한 판결을 내리기 위해 치열하게 노력해왔고, 시대의 규범적 가치를 제시하는 수많은 좋은 판결을 선고하여 왔습니다. 대법관 후보자로서 대법원에서 숙고하여 내린 판결에 대하여 직접적인 평가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4.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고 생각하는지요? 우리나라의 현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우리나라 헌법에서 의미하는 평등은 절대적이고 형식적인 평등이 아니라, 각 사람이 처한 상황이나 여건의 차이에 따라 적절하게 대우하는 상대적이고 실질적인 평등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실질적 평등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는 점을 무겁게 받아드립니다.

○ 법 앞에 평등의 의미를 법원의 관점에서 보자면, 재판의 과정과 결과가 공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관은 양 당사자에게 균등한 주장·입증 기회를 제공하여 절차적 정의를 구현해야 하고, 동시에 공평하고 엄정한 법적용을 통해 당사자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합당한 결과를 도출해야 할 것입니다.

○ 한편, 재판에 참여하는 당사자 중 신체적·경제적 능력 등이 부족한 사회적 약자에게도 실질적 평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국선변호, 소송구조 등 사법접근성을 제고하려는 노력을 지속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85. 후보자에게 사회적 약자의 기준과 정의는 무엇인지요?

○ 법원의 관점에서 사회적 약자의 개념은, 신체적·정신적·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있어 사법절차를 원활히 이용할 수 없는 집단과 민주주의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결정된 정책에서 소외된 사회계층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기본원리인 다수결의 원칙에 따를 경우 다수의 권익은 효과적으로 보장될 수 있으나,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는 배척되거나 침해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법원은 오직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독립하여 판단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86.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아직 우리 사회에 적용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믿는 국민들이 적지 않고,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를 떠나, 재판은 실체와 외관 모두 공정해야 하므로, 이러한 국민들의 우려가 해소되고, 사회적 약자가 동등한 사법접근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법원은 노력해야 합니다.

○ 공정하고 정의로운 형사재판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재판과정 및 결과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재판은 실체와 외관 모두 공정해야 하므로, 법정 외 변론 금지, 수임 제한, 연고관계 재배당, 회피제도 활성화 등이 이와 관련됩니다. 또한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기준을 토대로 공정하고 적정한 양형을 하고, 국민참여재판, 불구속 재판과 국선변호를 적절하게 확대해 나가 국민들에게 재판 과정과 결과에 대하여 정확하게 설명하고 그에 대한 이해를 구하는 데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나아가 2014년 서울남부지방법원과 인천지방법원에 사회적 약자를 위한 편의시설과 사법지원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제공하는 우선지원창구를 설치하고, 2019년 수원법원 종합청사와 전주지방법원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민원상담 외에도 다양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법접근센터를 설치하였습니다. 이후 법원은 지속적으로 우선지원창구와 사법접근센터를 추가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대법원은 장애인의 사법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재판절차에서 통지 및 송달되는 서류에 음성출력용 바코드를 문서의 상단 우측에 삽입하여 각급 법원 민원인용 PC에 설치된 스크린리더 또는 스마트폰 앱 서비스(보이스아이)를 사용하여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장애인사법지원연구반의 연구성과와 시각장애인 판사의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하여 시스템 개선을 하는 등 장애인 사법접근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법치주의의 핵심은 국민의 사법접근성에 있다고 볼 수 있는 만큼 향후에도 사회적 약자의 사법접근성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각종 제도 개선 과제들을 성실히 수행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87.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법원의 역할을 무엇입니까?

○ 법치주의는 법의 지배 즉, 국민의 대표가 사회적 합의를 통해 만든 법에 의해 국가권력이 행사되고 국민의 자유와 평등이 보장되는 헌법상 원리입니다. 특히, 단순히 법의 존재와 적용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닌, 법의 내용과 그 적용의 결과가 실질적으로 정의롭고 평등할 것을 요구하는 실질적 법치주의의 실현은 사법부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 사법부는 단순히 형식적 평등에 그치지 말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배려하고 이들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정책과 제도를 적극적으로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서면질의 86번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은 각급 법원에 장애인 사법접근센터 설치에 더하여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소송구조·국선변호 등 확대는 실질적 법치주의 구현과 사회적 불평등 해소를 위한 중요한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88. 가장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사법개혁 내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사법부는 재판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기관입니다. 그러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최근 재판지연 현상에 대해 국민의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신속한 재판을 구현하기 위해서 우선 재판지연의 원인을 정확히 분석하고, 인적·물적 자원이 확충되기 전에라도 재판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재판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올해부터 법관 사무분담을 장기화하고, 법원장이 직접 재판을 담당하며, 판결서 작성방식을 사건 난이도에 따라 적정화하여 사건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또한 이를 위하여 법관 및 재판연구원 증원 등 인적 여건의 확충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법관증원에 관해서는 21대 국회에서 법관증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무척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법부 구성원은 물론이고 여, 야 가릴 것 없이 모두 법관 증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22대 국회에서는 조속하게 법관증원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아울러 법조일원화가 시행된 지 10년이 되었는바, 풍부한 경력과 실력을 갖춘 법조인이 법관으로 임용되고, 임용된 법관이 열정과

사명감을 가지고 재판에 임할 수 있도록 법관 인사제도 개선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고민을 해야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 최근 대법원장 자문기구인 사법정책자문위원회에서도 관련하여 법관인사제도 및 재판절차 개선을 위한 논의에 착수하였고, 2024. 7. 16.자 회의 결과 '법관임용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법원조직법 개정을 통해 5년 이상 법조경력자를 법관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면서, 재판장이 되기 위한 요건은 법조경력 10년 이상으로 강화하여 법조일원화의 목적과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건의 내용을 잘 반영하여 법관임용제도를 개선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구현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89. 대법관의 업무 부담을 덜고 부실 판결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상고허가제와 대법관의 증원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 방안들에 대한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대법원은 최고법원으로서 당사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최후의 보루이자, 헌법 원리에 입각하여 법령을 최종적으로 해석 · 적용함으로써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법률적 쟁점에 관하여 규범적 기준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러나 대법원에 접수되는 사건 수를 고려할 때 대법관들이 모든 사건에 대하여 하급심 판결과 같이 상세한 논증을 담은 판결서를 작성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 따라서 상고제도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상고이유서 원심법원 제출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고, 장기적으로는 상고심에서 심리할 실질적인 사건을 선별하는 상고허가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비교법적으로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 많은 선진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상고허가제를 도입하더라도, 헌법을 부당하게 해석한 사건,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는 판단을 한 사건, 판결의 이유를 밝히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사건 등 권리구제가 필요한 사건들은 본안판단의 대상이 될 것이므로, 현행 제도 하에서 상고심에서 파기될만한 사건들은 상고허가제 하에서도 본안판단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 대법관 증원 역시 상고제도 개선 방안 중 하나로 검토할 수 있습니

다. 그러나 대법관의 수는 단순히 사건의 수에 비례하여 대법관을 증원하는 것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고, 통일적 법해석을 위하여 대법원 재판의 핵심인 전원합의체를 구성하고 유지할 수 있는 정도여야 하며, 상고제도 자체를 개선하는 방안과 결합하여 논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하는 동시에 법률심인 대법원의 기능도 충분히 발휘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하급심 강화를 통해 재판에 대한 승복률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이와 함께 큰 틀에서의 상고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검토도 지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90. 동성결혼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성소수자 역시 헌법상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누리고 성적 지향이 부당한 편견이나 차별의 이유가 될 수 없음은 명백합니다. 성적 지향성은 지극히 내밀한 사적인 영역이므로 타인에 대한 강요나 위해가 수반되지 않는 한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성소수자에 대하여 어떠한 사회적·법률적 보호를 할 것인지는 입법정책적인 문제로, 공론화 및 폭넓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국민적·사회적 합의를 통하여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양성이 공존하면서도 조화를 이루는 사회가 되기를 바라며, 사법부 역시 재판을 통해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다만, 동성부부의 혼인신고 관련하여서는 현재 대법원에 재판이 계속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법관 후보자로서 구체적인 언급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1.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성범죄 양형에 관하여 과거 법원의 양형이 약하다는 평가를 받았던 때도 있었으나 최근에는 법정형의 상향, 양형기준 상향 설정 등을 바탕으로 과거보다 엄정한 양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성범죄의 엄중한 처벌을 원하는 국민적 요구에 대하여는 개별 형사법관들도 무겁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으나, 법정형을 과도하게 상향한다면 전체 형사법체계의 정합성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물론, 개별적인 사건에서 책임에 비례하는 적정한 양형이 어렵게 될 수도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92. 하급심보다 상급심에서 성범죄 가해자의 형량이 줄어드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93. 92번과 같이 성범죄 재판에 대해 상급심에서 형량이 줄어드는 판결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94. 92번과 같이 성범죄 재판에 대해 상급심에서 형량이 줄어드는 판결이 국민의 지탄을 받을 경우 법관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위 질의에 대한 공통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 하급심에서 충실한 증거조사와 양형심리를 통하여 타당한 결론을 도출하였다면, 상급심은 위와 같은 과정을 거친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 가급적 이를 존중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저는 위 판결의 취지에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 하급심보다 상급심에서 성범죄 가해자의 형량이 낮아진 판결에 대한 국민의 우려는 공감하나, 이는 상급심에서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등의 추가적인 양형인자가 반영되어 달라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 국민의 눈높이와 양형에 대한 여론은 무겁게 받아들이고, 형사사법기관은 적정한 절차를 통하여 성범죄자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을 정하여야 할 것이나, 이는 양형기준과 양형인자에 대한 충실한 심리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95. 최근 법관들이 사회적 이슈 내지 법원을 둘러싼 현안에 대해 개인 SNS를 통해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관의 SNS 활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법관이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면 법관으로서 업무를 하는 것이 무척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물론이고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도 법관이 SNS를 이용할 때 각별히 주의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 특히 정치적 견해의 표명은 아무리 순수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논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법관직의 무거움과 국민의 법관에 대한 신뢰를 항상 유념하여 법관들은 매사 신중하게 처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96. 우리사회에서 '사법부의 정치 중립'은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왔습니다. 후보자는 사법부의 정치 중립이란 기본적으로 무엇이며, 사법부의 정치 중립에 찬성한다면 어떠한 방향으로 확립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헌법은 법관이 독립하여 심판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법부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다른 국가권력 뿐만 아니라, 정치적 단체나 이해집단, 여론으로부터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내는 것도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 우선 법관들 스스로 오직 헌법과 법률, 직업적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판단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고, 사법부의 독자적인 예산편성권을 인정하는 등 사법부가 행정부의 영향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도록 검토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법관 개인에 대한 위협 및 인신공격에 대하여 해당 법관이 오로지 재판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97. 후보자가 가지고 있는 '사법부 독립'의 취지, 목적, 방향, 한계 및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 최근 사법부 독립과 관련하여, 입법부나 행정부 등 다른 국가권력으로부터의 독립뿐만 아니라, 이해관계를 가진 다양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도 점차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해관계에 따라 자극적으로 법원을 비난하면서 법원의 판결이 편향되었다는 부당한 여론을 형성하려고 하거나 법관 개인에 대한 과도한 인신공격을 하는 행위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 사법부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는 것은 우리 헌법에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를 위해 부여한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법관 개개인은 정치권력 등 사회 여러 세력으로부터 재판의 독립을 지켜내려는 확고한 의지와 용기를 가져야합니다. 또한, 오직 법과 양심에 따라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소수자 보호를 위해 충실히 재판을 하여야 하고, 법관 스스로 이념적으로 편향되었다고 보일 여지는 없는지 늘 경계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아울러, 대법원은 법관들이 소신을 가지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도록, 국민으로부터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여 법관 인사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등 재판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여건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법부가 행정부 등 외부로부터 불필요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사법부 등 헌법기관에 독립적인 예산안 편성권을 부여하는 것도 재판의 독립과 관련하여 깊이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98. 우리사회는 법원 내 진보적 성향을 가진 판사들에 대해 '특정이념'을 가진 법관들이라며 이들을 마치 일반 판사들과는 다른 정체성을 지닌 집단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99. 법관의 이념과 지향성(진보, 보수, 중도 등등)이 재판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향을 미친다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위 질의에 대한 공통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 법관들의 이념과 성향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념과 지향성에 상관 없이, 대부분의 법관들은 재판을 함에 있어 관련 법령과 판례에 기초하여 개개 사안에 따라 구체적 사정에 맞는 타당한 결론을 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 어느 연구회에 소속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해당 법관의 이념이나 성향을 단정하고 집단으로 표현하는 것은 오히려 법원 내 갈등을 증대시킬 수 있으므로 삼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00. 후보자는 법원의 사법농단사건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01. 후보자는 법원의 사법농단사건이 잘못되었다고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위 질의에 대한 공통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이른바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는 국민 여러분에게 큰 실망을 드렸고, 이에 대하여 후보자 역시 법원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재판의 독립은 외부로부터 뿐만 아니라, 내부로부터도 지켜져야 합니다. 사법행정권 남용사태는 사법행정이 사법지원의 영역을 넘어 재판의 독립을 위협하면서 발생하였습니다.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법원 구성원 모두 경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법원은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대한 뼈아픈 반성을 한 뒤, 기존에 각급 법원에 설치되어 있던 판사회의, 사무분담위원회 외에도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상설화, 사법행정자문회의 및 그 뒤를 이은 사법정책자문위원회 등 민주적 통제를 할 수 있는 여러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법관인사위원회,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등도 외부의 의견을 재판과 사법행정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법원은 앞으로도 그 경험을 바탕으로 사법행정 중 어떤 분야에 어느 정도의 법관이 관여하는 것이 적절한지 연구와 논의를 지속하여 재판독립을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효율적인 사법행정을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2. 후보자는 사법농단에 관여되어, 기소된 재판관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3. 대부분 재판관이 무죄가 나옴에 따라, '법원 스스로 면죄부를 준 것'이라는 비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위 질의에 대한 공통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므로, 대법관 후보자로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4. 후보자는 법원이 밝힌 사법농단 비위법관 66명에 속해있습니까? 속해있다면, 어디·누구에게로부터 어떻게 전달받았습니까?

○ 해당사항 없습니다.

105. 사법농단은 대법원장의 단독행위가 아니라 여러 법관 엘리트들이 도운 조직적인 사건이며, 피의자나 참고인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법관들이 다수라는 것은 이미 언론을 통해 밝혀진 사실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징계는 불복소송을 통해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이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므로, 대법관 후보자로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6. 구체적으로 후보자는 조희대 대법원체제의 법원개혁 방향, 활동, 방안들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또한 한계와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07. 후보자는 조희대 대법원체제의 법원개혁에 대해 법원 구성원들이 동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위 질의에 대한 공통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조희대 대법원장님은 사법의 본질이자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재판을 어떻게 하면 신속하고 공정하게 할 수 있을 것인지 고민하고 사법부 구성원들이 각자의 재판에 정성과 성의를 다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 사법부는 재판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기관입니다. 그러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재 가장 중요한 사법개혁 현안은 재판지연의 해소, 법관증원, 법조일원화 제도의 정비라고 생각하고, 현 대법원장님의 법원개혁 방향과 일치합니다. 그렇기에 법원 구성원들도 동의하고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 아직 개혁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므로, 문제와 한계점을 논하기엔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대법관으로 임명이 된다면, 이와 같은 노력에 저의 경험과 지식을 보태고, 우리 법원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8. 직권남용죄에 대한 법리를 제시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공직자 부당 행위를 처벌할 '직권남용'이란 법리에서 빠져나갈 구멍은 여전히 커다랗게 남겨놓았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직권남용을 형식적 논리로 엄격히 해석하면 '권력자는 처벌받지 않는다'는 불신이 커지기 때문에 이른바 '법왜곡죄'로 최고 징역 5년까지 처할 수 있습니다. 후보자는 이러한 비판에 대해 어떠한 입장입니까?

○ 직권남용죄에서 말하는 '직권남용'은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그 권한을 위법·부당하게 행사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와 같은 직권남용죄의 적용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등의 이유로 법왜곡죄의 신설이 논의된다고 듣고 있습니다.

○ 법왜곡죄란 판·검사 등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증거나 사실관계를 조작하거나, 적용되어야 할 법령을 적용하지 않거나 부당하게 적용하는 등 법 왜곡 행위를 한 경우 처벌하는 규정으로, 법원과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형사사법절차에서의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자 하는데 그 입법 취지가 있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법왜곡죄는 법왜곡이라는 개념 자체의 추상성, 사건 관계

인들의 고소· 고발 남발 가능성, 수사와 재판의 독립성 침해의 우려도 있습니다.

○ 이에 대하여는 유관기관,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해외 입법 사례에 대한 연구·조사하는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회에서 신중하게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109. 위 108번의 직권남용의 판결로 인해 사법농단과 관련된 법관 대부분이 무죄로 면죄부를 받는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므로, 대법관 후보자로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0. 사법농단에 관여한 재판관이 퇴직 후, 로펌 등 변호사로 재직하고 있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일반론적으로, 고위 공직 퇴임 법관이 퇴임 후 바로 대형로펌에 들어가는 것은 전관예우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고려할 때 사법부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절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 이와 같은 일반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 외에 대법관 후보자로서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면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1.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받고 강제 전역처리가 된 변희수 하사는 재입대를 희망하였습니다. 과거, 국내 한 여대에 합격한 트랜스젠더 여성은 학내반발과 인신공격등으로 등록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법과 제도는 이들의 정체성을 인정하는 추세임에도 당사자들이 실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어 많은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법의 판단과 결정이 사회적 규범으로 자리 잡는데 일면 부족하다는 견해가 있는데,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다양성이 공존하면서도 조화를 이루는 사회가 되기를 바라고, 사법부 역시 재판을 통해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대한민국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 경제적 · 사회적 ·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 왔으나, 여전히 고민하고 개선해야 하는 인권 현안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 현안에는 헌법상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누릴 권리가 있는 성소수자의 인권도 포함됩니다. 성적 지향성은 지극히 내밀한 사적인 영역이므로 타인에 대한 강요나 위해가 수반되지 않는 한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다만 성소수자에 대하여 어떠한 사회적·법률적 보호를 할 것인지는 입법정책적인 문제입니다. 공론화 및 폭넓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국민적·사회적 합의를 통하여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112. 해외 여러 국가는 성전환자의 군복무를 '완전히 허용'하고 있으며 대학 입학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오랜 사회적 논쟁과 많은 진통 속에서 얻게 된 결과물들입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우리사회의 다양한 가치와 사회적 규범이 서로 충돌할 때, 법과 법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기본원리인 다수결의 원칙에 따를 경우 다수의 권익이 효과적으로 보장될 수 있으나, 소수자의 권리는 배척되거나 침해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사법부는 오직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독립하여 판단함으로써 소수자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대법원은 최고법원으로서 대한민국 헌법이 정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최후의 보루이며, 헌법이념과 원리에 입각하여 법령을 통일적으로 해석 · 적용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한 새로운 규범적 가치기준을 제시하여 다양한 이해관계가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사회의 발전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정책법원으로서의 역할도 충실히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우리사회의 다양한 가치와 사회적 규범이 충돌할 때 법과 법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위원님의 말씀에 깊이 공감합니다.

○ 다만, 성소수자에 대하여 어떠한 사회적·법률적 보호를 할 것인지와 같이 우리 사회에서 아직은 방향이 통일되지 않은 쟁점에 대하여는 공론화 및 폭넓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국민적·사회적 합의를 통하여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113. 대법원은 지난 2018년 암호화폐의 대표 격인 비트코인이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자산'으로 판시하였습니다. 암호화폐의 명칭, 소득세 대상 여부 등 세법 개정 관련한 다양한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으며, 국제 암호화폐 시장의 산업발전과 국제 추세도 고려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후보자는 대법원의 판단과 이에 따른 문제제기와 사회적 논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대법원은 피고인이 음란물유포 인터넷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유포)죄와 도박개장방조죄에 의하여 비트코인(Bitcoin)을 취득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유포)죄와 도박개장방조죄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며, 비트코인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이라고 보아야 하고, 몰수의 대상인 비트코인이 특정되어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취득한 비트코인을 몰수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8도3619 판결).

○ 세법 개정 관련 쟁점들을 포함하여 발생되는 다양한 쟁점들에 대해서는, 법조계와 학계 등 전문가의 의견, 해외 사례와 국민의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회에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하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이와 같은 일반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 외에 대법관 후보자로서 앞으로 법적 쟁점화 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면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4. 2009년 야간집회시위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바 있고, 2014년에는 헌법재판소가 한정위헌을 내린바 있음. (2014년 한정위헌 판례 中"'해가 진 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의 시위'에 적용하는 한 헌법에 위반") 그리고 현재 대법원은 헌법재판소 판결 중 '한정위헌' 결정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법원이 2009년에 진행한 헌법재판소에서 야간집회시위 헌법불합치 결정만 인정하게 된다면, 현재 00시~06시까지만 야간집회를 금지하겠다는 입법은 대법원으로써 인정할 수 없는 위헌적 발상이라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누구든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집회의 성격상 부득이하여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미리 신고한 경우에는 관할경찰관서장은 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도 옥외집회를 허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09년 위 법률 중 '옥외집회'부분은 야간옥외집회를 일반적으로 금지하여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아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고, 2014년 '시위'에 대한 부분은 '해가 진 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의 시위'에 적용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한정위헌결정을 하였습니다. 다만 한정위헌결정에 대하여는 서면질의 33번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원에 대하여는 기속력이 없습니다.

○ 이에 따라 입법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해당 법률이 헌법에 반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권한은 헌법재판소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일반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 외에 대법관 후보자로서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면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5. SK최태원회장과 노소영 전 관장과의 이혼소송에 따르면, 노태우의 밝혀지지 않았던 비자금을 노소영 전 관장의 재산으로 인정한 바 있음. 불법으로 승계된 범죄수익이 재산으로 인정된 것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므로, 대법관 후보자로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6.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상황에서 비자금 등 불법 승계되어 형성된 수익을 환수해야한다는 주장에 대해 후보자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 일반론적으로 범죄수익 등의 몰수 및 추징은 공소제기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소시효가 지난 상황에서는 범죄수익 등의 몰수 및 추징을 위한 공소제기의 요건을 갖추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 다만,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에 관한 쟁점이므로, 대법관 후보자로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7. 형사소송과는 달리, 민사/가사소송의 경우에는 법정 증언 등을 통해 증거의 신빙성 여부에 대한 검증 과정이 생략되기도 함. 민사/가사 사건에서도 제출된 증거가 원본인지 사본인지, 작성자에 의해 제대로 작성된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제대로 검증을 해야한다는 주장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 대법원은 상대방이 문서의 진정성립을 적극적으로 다투거나 서증의 진정성립 여부가 쟁점이 된 때는 문서가 어떠한 이유로 증거능력이 있는 것인지, 그 근거에 관하여 설시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 저도 같은 이유로 민사 사건과 가사 사건에서 문서의 진정성립이나 증명력이 다투어 지는 경우 충실한 심리와 증거조사를 통해 이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합니다.

118. 117번 주장과 관련, 법조인이자 재판관으로서 미국식 디스커버리(증거개시) 제도 도입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동의하지 않는다면 이유는 무엇입니까?

○ 현대 사회에서는 기업, 단체가 일상생활의 많은 영역을 주도하고 세부적인 자료를 전산화 하여 저장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과 사이에 증거의 편재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디스커버리 제도는 증거의 편재 현상을 완화하고 증거로 사용될 자료들에 대하여 쌍방 당사자들에게 광범위한 접근을 허용하여 공정한 경쟁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디스커버리 제도를 통해 회사나 단체 내부의 정보가 공개되어 사회의 투명성을 증진하고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 대법원은 미국식 디스커버리 제도에 착안하여 증거수집 절차 개선 방안이 없는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2021. 11. 법관, 변호사, 교수로 디스커버리 연구반을 구성하고, 증언녹취제도 도입, 문서제출명령 제도 개편 등을 내용으로 하는 연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입법적으로 증거수집 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119. 최근 5년간('19년~'23년) 판결 경정 신청 건수는 약 4천건에 달한다고 함. 단순 오류의 경우 경정 대상이나, 판결의 핵심 내용을 수정하는 행위는 법원 신뢰도 저하 초래, 판결문 작성 여건 등을 점검해 제도/시스템적으로 오류를 줄일 수 있는 개선책을 마련해야한다는 의견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120. 판결문의 경정오류를 집계(통계화)시켜 공개하는 것이 법원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법적 신뢰도를 올릴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한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21. 판결문의 경정신청에 대한 인용/기각 사유를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동의한다면, 후보자가 대법관이 될 경우 적용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 것입니까?

○ 판결의 경정이란 판결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에 판결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그 잘못을 바로 잡는 것을 말합니다(민사소송법 제211조).

○ 법원은 소송의 초기 단계부터 보정명령·보정권고 등을 통하여 당사자가 기재해온 서면이나 주장, 별지 등에서의 오기를 바로 잡고,

재판 진행과정에서는 적절한 소송지휘권의 행사와 확인을 통해, 판결문 작성 과정에서는 꼼꼼한 기록 대조의 과정을 거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등을 바로 잡기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송진행 중 당사자의 주소가 변경되었으나 이를 알리지 않아 발생하는 어쩔 수 없는 경정 사안을 제외하고, 발생할 수 있는 경정 사안을 줄이기 위해서는 법원은 더 세심하게 기록을 살피고 확인하는 노력을 해야합니다.

○ 판결문이 소송관계인의, 나아가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보다 정확한 판결문을 작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정확한 판결문 작성을 위한 자동화된 업무 환경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제도 및 시스템에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 나아가 판결 경정과 관련한 각종 통계의 공개가 필요하다는 위원님의 지적에 공감하며, 이를 포함한 통계 시스템 개선을 이룰 수 잇도록 국회 차원에서 도와주시기를 희망합니다.

122. 후보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내린 권고결정을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설립되었습니다.

○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에 관한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조사와 연구 및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을 표명하고, 그 외에 인권침해행위, 차별행위 등에 대하여 조사하고, 구제조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 국가인권위원회가 내린 권고결정에 법적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나,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 목적과 업무에 비추어 이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23.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내린 권고결정을 위반했으나, 이를 무시하고 재판을 진행했을 경우, 위 재판이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24. 위 재판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판결에 대한 절차가 적법하다고 인정되어 수사기관과 사법부에 미칠 영향이 부정적일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25. 위 재판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국가인권위의 권고결정이 형해화 된다는 우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위 질의에 대한 공통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국가인권위원회가 내린 권고결정 자체에는 법적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나, 구체적 사정에 따라 위반 내용이 다른 실체법 및 절차법을 위반하여 이루어지는 경우 이는 법령의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 결국 국가인권위원회가 내린 권고결정의 위반만으로는 재판의 정당성을 부정하거나, 절차 위법이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 그러나 이와 같은 재판이 확정되었다고 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결정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결정은 이후 관련 절차 및 법령 개선안을 마련할 때 충분히 고려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126.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항소심에서의 판사 직권심판은 보다 강력하다고 할 수 있음. 후보자는 위 직권심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27.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의 직권심판은 언제 활용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위 질의에 대한 공통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은 "항소법원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관하여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항소법원의 심판은 소송경제를 고려하여 항소장에 기재되었거나 위 기간 내에 제출된 항소이유서에 포함된 항소이유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나, 다만 적법절차의 원칙이 보장되고, 형사절차규정의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1심의 법령 위반 등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면, 그 주장이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형사소송법 제364조 제1항, 제2항).

○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하여는 결국 구체적 사안에서 판단이 필요할 것이나, 필요적 변호 사건에서 국선변호인 선정 없이 개정하여 유죄판결을 한 경우(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도1721 판결), 간이공판절차로 심판할 대상이 아님에도 간이공판절차로 심판한 경우(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도2297 판

결) 등을 법령의 위반이 결국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의 직권심판은 위와 같은 대법원 판례를 존중하여 법률의 위반의 정도 및 중대성과 해당 위반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정도 등을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128. 아동권리협약을 위반한 수사기관의 수사로, 아동을 수사하는 과정에 보호자에게 즉각 알리지 않고 수사하는 것이 적법한 수사로 보십니까?

○ 유엔 아동권리협약(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은 아동의 권리보호와 권익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조약이며, 우리나라도 비준하여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 동 협약은 제3조에서 아동(18세미만)과 관련된 모든 행동은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9조에서는 아동은 부모와 분리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12조에서 아동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경찰청예규인 '소년업무규칙'에서도, 경찰관이 소년에 대한 출석요구나 조사를 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소년의 보호자에게 연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결국 질의하신 내용대로, 아동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보호자에게 알리지 않고 수사하는 것은 경찰청 업무규정 위반일 뿐만 아니라, 국내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는 아동권리협약 제 규정에 위반될 소지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129. 구치소에 수감 중인 장애인과 아동에 대해 수감 중이지 않은 장애인 및 아동에 비해 그 권리는 보호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는지? 제한할 수 있다면 일반 수감자와 비교했을 때 어느정도 제한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대한민국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 경제적 · 사회적 ·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장애인과 아동의 기본권 또한 수감 여부를 불문하고 헌법상 보호받습니다. 다만 자신의 책임으로 인해 구금되어 있는 장애인과 아동의 권리가 비례원칙에 따라 제한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 다만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장애인과 아동의 특성 상 수감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개별적으로 겪게 되는 불편과 고통이 훨씬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일반 수감자에 비해 더 심한 처벌을 받는 결과가 되지 않도록 섬세한 관심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 특히 아동의 경우에는 자기 책임으로 구금되어 있는 경우에도 미성숙한 아동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최대한 권리가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130. 후보자는 사법부의 높은 압수·수색 영장발부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31. 후보자는 사법부의 높은 압수·수색 영장발부가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위 질의에 대한 공통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과도한 압수·수색으로 인하여 국민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침해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현대사회의 특성상 압수·수색을 통하여 휴대전화, 컴퓨터 등에 저장된 내밀한 사생활 정보까지 무분별하게 압수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사법부가 적절히 통제하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는 점에 공감합니다.

○ 다만 실무상 압수·수색영장 전부를 기각할 만한 사안은 많지 않고, 통상 일부기각의 방법으로 과도한 압수·수색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일부기각까지 포함하면 기각률은 약 10% 내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다만 압수·수색영장의 발부를 신중히 해야 한다는 점에는 깊이 공감하고, 이를 위하여 법관들이 수사의 밀행성과 필요성을 존중하면서도,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조화롭게 고려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심리할 수 있는 수단을 부여하는 등의 제도적 개선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32. 피의자의 압수·수색 영장의 발부 과정에 대면심리절차를 도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압수·수색 관련 임의적 대면심사제도는 압수·수색 영장 발부 여부 및 그 범위를 정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법관이 필요성과 대상의 특정 등 영장발부 요건이 충족되었는지에 대하여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설명을 청취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 기본적인 취지는 수사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선별적인 압수·수색이 이루어지도록 압수·수색실무를 개선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더욱 충실하게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사 밀행성과 신속성 또한 중요한 가치이므로 이를 해하지 않는 제도 운용 방안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한편 이와 같은 제도의 도입은 대법원 규칙보다는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고, 최근 22대 국회에서 관련 법률안이 발의된 만큼, 국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지혜로운 결론을 도출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133. 수사기관이 휴대폰, 노트북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전자정보 전체를 통째로 보관하고 있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34. 위 133번이 기본권 침해라는 주장에 대해 후보자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 위 질의에 대한 공통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오늘날 각종 정보와 의사소통 자료가 휴대전화나 컴퓨터 등을 통해 전자적으로 생성 및 유통되고, 공적인 정보는 물론 극히 내밀한 사적인 정보까지도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전자기기에 대량으로 저장되고 있습니다. 전자정보 저장매체에는 위와 같은 특성상 범죄와 관련된 정보와 그렇지 않은 정보들이 혼재되어 있으므로, 선별압수의 원칙이 철저하게 준수될 필요가 있습니다.

○ 압수·수색영장 발부 단계에서 압수 대상 정보를 최대한 선별할 수 있도록 심리 여건을 보장하여야 하고,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도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도입 여부가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또한 광범위한 압수·수색을 통하여 확보된 무관정보들이 피의자에 대한 부당한 압박수단으로 활용되거나 위법한 별건 수사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에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압수된 정보의 폐기가 수사 및 재판 절차 종료 후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관하여 외부적 통제수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관하여 적절한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35. 중소기업의 기술침해 손해배상 소송에서 입증의 어려움으로 피해구제를 받는 것이 쉽지 않음. 이를 개선하기 위해 법원이 지정하는 전문가가 침해기업에 대한 사실조사를 할 수 있는 '전문가 사실조사제도'를 도입하고, 특허침해 자료를 특정하기 위한 '자료 목록제출제도' 등을 도입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이 기술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기술침해 여부, 그로 인한 손해의 범위 등의 입증 곤란으로 피해구제를 받지 못한다는 의견에 대해 공감합니다.

○ 그 대안으로 '전문가 사실조사제도'와 '자료목록제출제도'는 증거의 구조적 편재에서 비롯된 실질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실체적 진실발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들로서 현재 다소 침체되어 있는 우리나라 특허소송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향후 관계분야 전문가와 학계 등이 참여하여 위 제도가 실효성 있으면서도 공정성을 과도하게 훼손하지 않도록 심도 깊은 연구와 논의를 통해 현실화되기를 기대합니다.

136. 법원은 중소기업 기술침해 소송에서 징벌적손해배액에 인정에 대해 보수적 입장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고의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억제할 정도의 위하적 효과를 가지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취지와 목적 달성을 위하여 대법원 규칙이나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고의 또는 악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가해자에게 실제 피해액보다 많은 금액의 손해배상을 하도록 함으로써 사회 일반에 대한 불법억제 효과를 도모하고, 광범위한 피해 발생을 예방하려는 점에서 긍정적인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 다만, 대법원 규칙이나 가이드라인의 제정은 재판사항에 해당하여 자칫 하면 법관의 독립을 침해할 수도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37. 노동조합 쟁의행위에 대한 업무방해죄 적용에 대해 후보자는 어떤 입장인가요?

○ 대법원은 2011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파업이 이뤄져 사업 운영에 손해가 초래됐을 경우에만 업무방해죄가 성립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위 판결의 소수의견은 나아가 폭행 · 협박 · 강요 등의 수단이 수반되지 아니한 채 노동자들이 단순히 근로제공을 거부한 행위를 업무방해죄의 '위력'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는데, 다수의견이나 소수의견 모두 업무방해죄의 성립을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관점에 기초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 근로자의 근로3권, 노동권 등은 국민의 행복과 생존을 좌우하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 존중의 척도가 되는 기본권이므로, 합법적인 파업의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 사용자의 경영권이나 공동체의 경제질서를 부당하게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의 권리가 두텁게 보호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다만 단체행동권이 헌법이 근로자에게 보장하는 기본권이지만 다른 상충하는 기본권과의 관계를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용자의 재산권과도 적절히 조화를 이루어야 하고, 폭력적인 방식이 허용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138. 포괄일죄 법리에 의하면 동일한 범의를 가지고 일련의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 공소시효 계산은 마지막 범행일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1심 법원이 검찰의 포괄일죄 주장을 일부만 인용한 것이 포괄일죄에 대한 일반적인 판례 법리와 다르다는 지적에 대해 후보자는 어떤 입장인가요?

○ 대법관 후보자로서 현재 진행 중인 구체적인 사건의 당부에 관한 견해를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9. 이사의 충실의무는 회사와 주주 모두에게 미친다는 것이 미국 등에서 판례 법리로 정립되어 있는데, 우리 법원은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사건에서 이사의 충실의무가 주주에게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독 삼성 관련 사건에서 일반적인 판례 법리와 다른 특별한 논리들이 등장하는 이유에 대해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 상법 제382조의3은 “이사의 충실의무”라는 제목 하에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어, 이사의 충실의무의 대상으로 회사만을 특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총주주’를 포함하는 상법개정안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것처럼, 법원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대해 판단한 것은 법에 따른 해석일 뿐 유독 특정 기업에 관한 사건에서 달리 판단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그러나 재벌 그룹과 관련된 사건에서 일반 사건과 달리 재판이 진행되거나 독자적 논리에 따른 결론이 내려진다는 비난에 대해 무겁게 받아들이고, 그러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더욱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40. 재벌총수 재판에 대한 비판으로 제기되는 '3.5정찰제'를 극복하기 위해 후보자는 법원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 과거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 최고한도의 형량으로 여겨지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재벌총수에게 자주 선고하여 '3.5정찰제'라는 비판이 있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를 반영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는 횡령·배임, 증권·금융, 조세범죄 등 대표적 경제범죄에 관하여 객관적이고 엄정한 양형기준을 설정하여 시행해 왔습니다.

○ 그로 인해 법원에서도 재벌총수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등 과거보다 강화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속으로 인한 기업의 경영공백 우려나 과거 경제발전에 막연히 기여한 점만을 들어 기업인에 대하여 관대한 처벌을 하는 경우도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양형기준을 세밀하게 조정하고, 다수가 수긍할 수 있는 양형사유를 정하여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한 재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41. 2016년 12월 사법정책연구원에서 발표한 학술대회 자료집에 따르면, 법원의 불리한 보도를 취재 및 게재했다는 이유로 취재원 색출시도가 있었다고 함. 이와 같은 법원의 행동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42. 141번과 같은 취재원 색출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당한 행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43. 후보자는 이러한 취재원 색출시도에 대해 동의합니까? 동의한다면 이유는 무엇입니까? 후보자라면 어떻게 행동하셨을 것입니까?

144. 대법관이 된다면, 이러한 부당한 시도를 막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까?

○ 위 질의에 대한 공통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언론매체의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권력을 견제하고 국민의 여론을 형성하는 역할을 하므로 헌법과 관련법에 따라 최대한 보장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질문에서 제기한 상황은 기자에게 제보한 취재원의 신분을 비공개할 권리인 이른바 '취재원 비닉권'의 침해 문제로 귀결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취재원 비닉권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이 가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나 취재원 비닉권의 도입을 위해서는 더욱 면밀한 연구와 토론을 통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희승 위원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

《박희승 위원 서면질의》

1. 대법관 구성이 다양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현재 대법관 구성이 다양성을 추구하고 있다고 보는지, 그렇지 않다면 개선책은 무엇입니까?

○ 대법원은 사회 구성원의 다양한 이해관계의 통합을 이루어 내고, 이를 통하여 우리 사회의 규범적 가치 기준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대법원이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관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인적 구성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깊이 공감합니다.

○ 우리나라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대법관의 학력, 경력, 성별, 지역을 안배하는 방향으로 구성을 다양화 하여야 한다는 요구가 크고, 이러한 방안도 대법원 인적 구성 다양화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궁극적으로는 사회적 쟁점에 관한 가치관이나 사법철학을 다양화하는 방향이 강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대법관 제청절차에서 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피천거인 중 심사동의자의 명단과 정보를 미리 공개하여 후보자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비당연직 위원에 대한 추천절차를 도입하는 한편 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를 비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하며,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에 대하여도 다시 한번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는 것은 대법관 구성에서 다양성을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 아직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이 국민의 눈높이에 충분하지 않을 수 있으나, 위와 같은 노력에 더하여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와 법조일원화 제도가 정착되어 감에 따라 법관 구성 자체가 다양해지고 있어 향후 대법원의 다양성이 더욱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2. 일본은 최고법원 구성의 다양화를 위해 직역할당제를 운영하고 있고, 영국, 독일, 프랑스의 경우에는 추천위원회 구성에 있어 법원 인사가 없거나 과반수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구성의 민주적 정당성 강화 및 바람직한 대법원 구성 방향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서면질의 번호 1번에서 말씀드렸듯이, 대법원 구성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고,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관이 반영되도록, 먼저 대법관 제청절차에서 피천거인 중 심사동의자의 명단과 정보를 공개하여 후보자에 대한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 또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1. 선임대법관, 2. 법원행정처장, 3. 법무부장관, 4. 대한변호사협회장, 5.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6.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7. 대법관이 아닌 법관 1명, 8.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변호사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3명으로 이 중 비법관은 10명중 7명입니다(법원조직법 제41조의2 제3항). 또한 위 8. 비당연직 위원 중 1명 이상은 여성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법원조직법 제41조의2 제3항 제8호 단서).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사회의 다양한 구성원의 의견이 대법관 후보 추천에 반영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대법원이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관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인적 구성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깊이 공감하고, 나아가 대법관 구성원의 다양화를 위해서는, 대법관의 학력, 경력, 성별, 지역을 단순히 안배하는 것을 넘어서, 사회적 쟁점에 관한 가치관이나 사법철학을 다양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현재의 제도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개선해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 사법부의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헌법은 법관이 독립하여 심판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법부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다른 국가권력 뿐만 아니라, 정치적 단체나 이해집단, 여론으로부터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내는 것도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 우선 법관들 스스로 오직 헌법과 법률, 직업적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판단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고, 아울러 법관 개인에 대한 위협 및 인신공격에 대하여 해당 법관이 오로지 재판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아가 사법부의 독자적인 예산편성권을 인정하는 등 사법부가 행정부의 영향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도록 검토해 나갈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4. 특정 판결에 대해 해당 판사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법원은 재판을 통하여 법을 해석하여 적용하는 기관으로, 다른 권력으로부터 독립하여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보장하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기본원리인 다수결의 원칙에 따를 경우 다수의 권익이 효과적으로 보장될 수 있으나, 소수자의 권리는 배척되거나 침해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법원은 오직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독립하여 판단함으로써 소수자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 한편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여론의 자유로운 형성과 전달에 의하여 민주적 정치질서를 생성·유지시켜 나가야 하므로 표현의 자유, 특히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헌법상 권리로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판결에 대한 합리적인 비판과 의견의 표현은 표현의 자유로서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 그러나 표현의 자유라 하더라도 모욕적 표현, 혐오표현까지 제한 없이 보호되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한계를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판결에 대한 건전한 비판을 넘어, 판결 주체인 법관에 대한 과도한 공개 비난과 이른바 '개인 신상 털기'는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 사법부의 독립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고, 이러한 부당한 외부 공격에 대하여는 법관을 보호하는 효과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5. ‘손해배상 시효 범위를 3년에서 6개월로 축소’한 판례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거래 대상이 된 판례입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대법관 후보자로서 현재 계속 중인 전 전대법원장 사건의 쟁점에 관하여 어떠한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면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후보자가 생각하는 법원의 개혁 과제는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그 개선 방안은?

○ 사법부는 재판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기관입니다. 그러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최근 재판지연 현상에 대해 국민의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신속한 재판을 구현하기 위해서 우선 재판지연의 원인을 정확히 분석하고, 인적·물적 자원이 확충되기 전에라도 재판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재판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올해부터 법관 사무분담을 장기화하고, 법원장이 직접 재판을 담당하며, 판결서 작성방식을 사건 난이도에 따라 적정화하여 사건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또한 이를 위하여 법관 및 재판연구원 증원 등 인적 여건의 확충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법관증원에 관해서는 21대 국회에서 법관증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무척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법부 구성원은 물론이고 여, 야 가릴 것 없이 모두 법관 증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22대 국회에서는 조속하게 법관증원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아울러 법조일원화가 시행된 지 10년이 되었는바, 풍부한 경력과 실력을 갖춘 법조인이 법관으로 임용되고, 임용된 법관이 열정과

사명감을 가지고 재판에 임할 수 있도록 법관 인사제도 개선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고민을 해야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 최근 대법원장 자문기구인 사법정책자문위원회에서도 관련하여 법관인사제도 및 재판절차 개선을 위한 논의에 착수하였고, 2024. 7. 16.자 회의 결과 '법관임용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법원조직법 개정을 통해 5년 이상 법조경력자를 법관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면서, 재판장이 되기 위한 요건은 법조경력 10년 이상으로 강화하여 법조일원화의 목적과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건의 내용을 잘 반영하여 법관임용제도를 개선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구현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7. 법조일원화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법원행정처에서 법관인사와 기획업무를 담당하였던 경험으로 인해 법조일원화 제도의 도입 배경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사회경험이 거의 없는 비교적 젊은 나이에 바로 법관으로 임용되었던 경력법관제에 대한 반성에서 법조일원화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따라서 사회적 경험과 연륜을 갖춘 법조인 중에서 법관을 선발하자는 법조일원화 제도의 취지와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모든 제도에는 명암(明暗)이 존재합니다. 법조일원화 제도 또한 그러합니다. 특히 법관의 고령화로 인해 과거보다 재판의 속도가 늦어지는 것은 불가피한 것 같습니다. 우수한 법조인이 법관을 지망할 수 있도록 처우개선 또한 필요합니다.

○ 결국 성공적인 법조일원화 제도를 정착시키려면 사회적 비용이 더 투입될 수밖에 없다는 면에서 법조계는 물론이고 우리 사회가 법조일원화 제도를 어떤 방향으로 추진해야 할지 충분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8. 현 법관임용시스템에서 개선되어야 할 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법조일원화 제도는 사법연수원을 마치고 바로 법관으로 임용되는 경력법관제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서 도입된 것으로서 다양한 사회경험과 연륜을 갖춘 법조인 중에서 법관을 선발하는 것을 핵심적인 요소로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과거 경력법관제가 향후 훌륭한 법관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자질을 확인하기 위해 사법연수원 성적과 같은 정량적인 평가를 할 수밖에 없었다면, 법조일원화 제도에서는 다양한 사회경험, 연륜과 같이 법관으로 임명함이 마땅한 정성적인 부분에 대한 평가에 더욱 중점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 다만, 현행 법원조직법이 시행을 예정하고 있는 10년의 법조경력은 세계적으로도 상당히 높은 수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력이 높은 경우 다양한 경험과 연륜이 풍부하다는 장점이 있을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다른 법조직역에서 그 정도의 경력을 쌓은 우수한 법조인이 법관직에 지망하기에는 법관의 처우가 열악한 상황입니다. 또한 10년의 사회생활 동안 여러 이해관계에 노출되어 공정성 시비에서 자유롭지 못할 우려도 있습니다.

○ 그러한 상황에서 5년의 법조경력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법조인으로서의 초반 5년 동안 상당한 정도의 경험을 쌓을 수 있고, 법조경력 10년에 비해 이해관계에서 좀 더 자유로울 수 있기도

합니다. 게다가 사건이 점점 복잡해지고 파악해야 할 기록도 많아지는 상황에서 조금 더 젊은 나이의 법관이 임용된다면 신속한 재판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법조경력을 5년으로 하향하는 것이 5년차 법조인만을 법관으로 선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5년차의 비교적 젊은 법관과 함께 10년차, 15년차 등 다양한 경력의 법관을 선발하게 된다면 연령적인 측면에서 법관의 다양화, 즉 여러 세대를 대표할 수 있는 법관의 다양화로 발전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최근 사법부에서 법원조직법의 개정을 추진한 것은 법조일원화 제도를 경력법관제로 되돌리기 위한 것이 아닌, 현재 우리의 상황에서 더 적합한 법조일원화 제도를 정착하기 위한 노력으로 이해해주셨으면 합니다.

9. 후보자는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관을 탄핵할만한 '헌법·법률위반'이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라고 생각하십니까?

○ 헌법 제65조는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 등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헌법재판소법 제53조는 헌법재판소로 하여금 '탄핵심판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에는 피청구인을 해당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탄핵심판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란 피청구인의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헌법재판소 2023. 7. 25. 결정 2023헌나1).

○ 이와 같은 헌법 규정에 관한 일반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 외에 대법관 후보자로서 이에 관하여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면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우리법연구회, 국제법연구회 출신들에 대한 비판적 시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같은 특정 성향 연구단체가 정치화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던 점은 알고 있습니다.

○ 그러나 법원내 학술 모임은 자발적인 모임이고, 법관이 어느 연구회에 소속되어 활동하는지에 따라 해당 법관의 이념이나 성향을 단정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 법관 개개인이 생활에서 절제하여 자신의 재판에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활동을 삼가야 하지만, 특정 모임에 가입하고 있다는 이유로 해당 법관의 이념이나 성향을 단정하는 것이 법원내 갈등을 오히려 증대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1. 과거 아우디, 폭스바겐 사건처럼 집단적 피해를 수반하면서도 증명이 어려운 분야가 증가하고 있는데, 민법상 개별적 분쟁해결은 절차가 복잡하고 피해구제 또한 충분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집단소송제도와 미국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있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글로벌 기업의 등장과 인터넷 판매의 발달 등으로 특정 기업의 위법행위가 다수인에게 광범위한 피해를 입혔음에도 증거의 구조적 편재 등으로 인해 개별적 권리구제가 쉽지 않다는 비판을 언론 등을 통해 종종 접한 적이 있습니다. 그 해결책으로 집단소송제도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공감이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 다만, 집단소송제도의 특징 중의 하나는 해당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판결의 효력을 받지 않겠다는 '제외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피해자 전원에게 판결의 효력이 미친다는 것입니다. 이는 해당 집단의 개인이 별도의 소 제기를 하지 않아도 권리 구제를 비교적 용이하게 받을 수 있는 순기능이 있으나, 예상치 못하게 기판력의 영향을 받아 권리 행사를 할 수 없는 사람이 생길 수 있는 문제도 있습니다. 따라서 2013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증권관련집단소송의 경과 등도 함께 살펴보면서, 집단소송 제도의 장점과 부작용을 면밀하게 검토한 이후에 확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고의 또는 악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가해자에게 실제 피해액보다 많은 금액의 손해배상을 하도록 함으로써 사회 일반에 대해 광범위한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위법한 행위를 실질적으로 억제하여 피해를 예방하는 점에서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제도 역시 과도한 배상으로 인해 기업의 활동을 위축시켜 결과적으로 경제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거나, 대규모 배상액을 노리고 소송을 남발하는 등의 부정적 측면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등의 시행 사례 등을 참고하여 다른 분야의 확대 적용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아울러 사법부도 기존에 도입된 집단소송제도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그 취지에 맞게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연구와 논의를 해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12.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 시 검찰은 내부 규정을 들어 변호사의 발언권 등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 시 변호인의 참여권을 확대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수사단계에서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실체진실의 발견'과 그 과정에서의 '피의자의 인권과 방어권 보호'라는 두 가지의 가치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합니다. 2007년 형사소송법의 개정으로 수사단계에서의 변호인의 참여권을 규정한 제243조의2가 신설되었으나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변호인 참여권을 제한할 수 있어 변호인 참여권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변호인의 좌석을 피의자 후방에 두도록 한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운영지침(대검찰청 지침) 제5조 제1항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내용의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기도 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2017. 11. 30. 결정 2016헌마503).

○ 헌법상 기본권인 피의자 및 피고인이 가지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서 '변호인의 조력'이란 변호인의 충분한 조력을 의미합니다. 피의자신문의 결과는 수사의 방향을 결정하고, 피의자의 기소 및 유죄 입증에 중요한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형사절차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변호인이 피의자신문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없다면, 변호인은 피의자가 조언과 상담을 요청할 때 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할 수 없고, 나아가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의견을 진술하거나 수사기관의 부당한 신문방법 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게 됩니다. 그 결과 피의자는 형사절차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피의자신문의 시기에 변호인으로부터 충분한 조력을 받을 수 없게 되어 피의자가 가지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형해화될 수 있으므로, 피의자 신문시 변호인의 참여권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합니다.

○ 한편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를 제한하는 근거로 변호인의 수사방해 등을 배제함으로써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형사소추의 효율성을 달성하는 공익과, 수사기밀의 유출을 막아 공범 기타 사건관계인의 도주나 증거인멸을 방지하고 피해자나 참고인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는 공익을 들 수 있습니다. 변호인의 참여권을 제한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는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엄격하게 해석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3. 대통령의 사면권이 남용되고 있고 편파적이라는 평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현행 사면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고, 어떤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대통령의 사면권은 헌법에 규정된 제도로, 국민 통합, 국가의 이익, 인권 존중 등 다양한 목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다만,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헌법 이념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가이익과 국민통합이라는 제도의 취지에 맞게 투명한 절차를 거쳐 보충적·예외적으로 행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다만, 대통령의 구체적인 사면권 행사에 대한 평가는 대법관 후보자로서 의견을 드리기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대학교수, 변호사 등 일반 국민이 판결 정보, 특히 하급심판결을 공개하라는 요구가 많은데, 이러한 요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대법원 홈페이지 '종합법률정보'를 통한 판결문 공개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있으나, '종합법률정보'는 주로 선례적 가치를 고려하여 선정된 판결을 제공하는 곳입니다.

○ 현행법에 따라 일반 국민에게 공개되어야 하는 2023. 1. 1. 이후 확정된 형사사건, 2015. 1. 1. 이후 확정되었거나 2023. 1. 1. 이후 선고된 민사(행정·특허 포함) 사건의 판결문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서 100% 가까운 비율로 공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판결서에 기재된 문자열, 숫자열이 검색어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면서 소송관계인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기 위한 고안된 검색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원론적으로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판결 공개의 범위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를 위한 인적·물적 자원이 필요하다는 점 외에도, 형사 미확정 판결서의 전면 공개에 대하여는 무죄추정의 원칙이나 소송관계인의 개인정보 보호 문제 등에 대한 우려가 있어,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통하여 균형점을 찾아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5. 법원이 국선전담변호인을 관리·감독하는 현행 체제 하에서 국선전담변호인이 법원에 맞서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제대로 변론하기 어렵기 때문에 국선전담변호인제도를 법원으로부터 독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이도록 규정되어 있고(헌법 제12조 제4항), 형사소송법은 일정한 경우 법원으로 하여금 직권 또는 피고인의 청구 등에 의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3조). 이중 국선전담변호사는 법원의 위촉을 받아 다른 사건을 수임하지 않고 법원에서 지정하는 일정 수의 국선변호 사건만을 전담하여 처리하는 변호사를 의미합니다(형사소송규칙 제15조의2).

○ 국선변호제도는 형사재판을 받게 된 국민들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 주는 제도로 법원은 2006년 국선전담변호사 제도를 시행한 이후 보다 나은 국선변호제도를 만들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후 국선변호의 질적 수준이 상당히 높아졌고, 특히 국선전담변호사 제도에 대한 피고인들의 만족도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국선전담변호인을 선정, 관리, 평가하는 현행 체제에 대하여 국선전담변호인이 법원에 맞서 피고인의 이익을 제대로 변론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일부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 대법원 2012. 2. 16.자 2009모1044 전원합의체 결정에서 ‘일정한 경우 피고인에게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여야 할 국가의 의무에는 형사소송절차에서 단순히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주는 데 그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의 실질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업무 감독과 절차적 조치를 취할 책무까지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 국선전담변호인제도는 현행 관련 법령 및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국가가 법원으로 하여금 국선전담변호인을 선정 및 관리·감독하게 하여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국선변호인제도를 법원과 분리하여 운영하는 것은 오히려 피고인의 재판상 권리 보호에 충분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국선전담변호인이 피고인의 이익을 제대로 대변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과 관련하여, 국선변호 선정에 있어 피고인의 의사가 반영이 되도록,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에 따라, ① 각급 법원은 피고인에게 국선변호인을 선택할 기회를 주고, 피고인의 의사를 참작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② 재판부별 전속 국선변호인을 지정하는 법원의 경우에 피고인은 당해 재판부의 전속 국선변호인 중에서 선택하여 선정청구를 할 수 있으며, ③ 재판부별 전속 국선변호인을 지정하지 않는 법원의 경우에 피고인은 명부에 등재된

변호사 중에서 국선변호를 원하는 변호사를 선택하여 선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특정 변호사에 대하여 우선순위를 정하여 선정청구를 한 경우에 재판장은 국선변호인 선정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최우선적으로 선택한 변호사를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국선변호에 관한 예규 제10조 제1항 내지 제4항).

○ 이에 더하여 피고인에게 국선변호인에 대한 평가의 기회도 부여하고 있습니다. 전국 법원에서 시행 중인 국선변호인에 대한 설문조사는 2017년부터 매년 상·하반기로 나누어 각 4주간, 변론종결 시점에 피고인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국선변호인 선정 등에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선변호인 제도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피고인의 형사재판상 권리가 실질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6. (1) 재판헌법소원, (2) 변형결정의 기속력, (3) 명령, 규칙에 대한 위헌심사권 관련, (4) 관습법 등과 관련 대법원과 헌재의 헌법해석, 적용에 있어서의 불일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후보자가 생각하는 방안은 무엇입니까?

○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재판소원의 인정여부, 한정위헌 결정의 기속력, 명령·규칙에 대한 위헌심사권, 관습법·긴급조치에 대한 위헌심사권 등에 관하여 다소 입장의 차이가 있어 왔습니다.

○ 우리 헌법은 제5장에서 법원을 사법권의 담당기관으로 규정하고, 제6장에서는 헌법재판소를 위헌법률심판 등을 관장하는 헌법기관으로 규정하여, 담당하는 사법권의 영역이 서로 상이하지만 대등한 사법기관으로서 지위와 권한이 분배되어 있습니다.

○ 양 기관이 헌법의 취지에 따라 서로의 역할과 기능을 존중하여 각자의 영역 내에서 헌법질서의 유지 및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사명에 충실한다면, 위와 같은 입장의 차이를 점차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7. 사법부에 독자적인 예산편성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최근 사법부 독립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다양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 뿐만 아니라 입법부나 행정부 등 다른 국가권력으로부터의 독립도 점차 강조되고 있습니다.

○ 사법부가 행정부로부터 실질적으로 독립하기 위하여 사법부에 독자적 예산편성권을 인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8. 사법부에 독자적인 법률안제출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현행 헌법상 국회의원과 정부만이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대법원에 법률안 제출권을 부여하는 것은 헌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 법원조직법상 대법원장은 법원의 조직, 인사, 운영, 재판절차, 등기, 가족관계등록, 그 밖의 법원 업무와 관련된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회에 서면으로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무상 대법원에서 의견을 제출하더라도 국회의 심사가 필수적인 것은 아니어서, 국회에서 그에 관한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헌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기는 하나, 사법부의 독립성 확보, 소송절차 등에서의 전문적인 입법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제한된 범위에서 긍정적으로 고려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9. 2008년 도입된 국민참여재판이 공판중심주의 정착을 위해 거둔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국민참여재판은 일반 국민으로 하여금 형사재판에 배심원으로 참여하게 함으로서, 국민들이 현행 사법제도를 경험하고 상식과 경험에 맞춰 평결을 함으로써, 사법의 민주화를 실현하고 국민의 사법 참여를 증진시켰을 뿐 아니라 배심원들이 공개된 법정에서 피고사건에 대한 증인신문 등 사실심리의 과정에 참여하고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등 증거의 취사 및 사실의 인정을 하도록 하여 공판중심주의를 정착시킨 제도입니다.

○ 국민참여재판과 관련하여 향후 과제는 현재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과 이에 대한 개선 방안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먼저, 최근 특정 사건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고, 이에 대하여 반복적인 항고, 재항고를 하여 재판지연이 초래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참여재판은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도입된 것이어서, 재판지연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신청권 또는 항고권을 제한하는 것은 정당한 법적 권리인 국민참여재판 신청권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나, 재판부로서는 목적이 의심되는 국민참여재판 신청 및 그에 대한 항고에 관하여는 그로 인하여 재판 지연이 야기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결론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 또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율이 높고, 양형이 가볍다는 비판이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특히 다른 범죄유형과 비교하였을 때 성범죄 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의 신청 건수와 실시 건수가 많고 이러한 지적은 성범죄의 국민참여재판에서 많이 지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상 무죄판결이 나올 확률이 높다고 판단한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아 일반 재판에 비해 무죄율이 높게 나오는 측면이 있고, 국민참여재판에서의 양형이 일반 재판보다 가볍다는 통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원이 국민참여재판 진행 전 대면설명 등을 통하여 배심원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안내를 실시하는 등 국민참여재판에서도 성범죄 사건이 공정하고 적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 마지막으로, 현행 국민참여재판제도는 피고인 신청주의로 인한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는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을 현행보다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국민참여재판의 개선을 위하여, 법원은 국민참여재판 개선 및 활성화 방안을 연구·검토하기 위하여 법관, 검사, 변호사, 대학교수 등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사법참여기획단을 구성하고, 매년 2회 이상 회의를 진행하여 개선 방안에 대한 아이디어를 발굴,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 국민참여재판의 취지상 평결에 구속력이 없이 권고적 효력만을 가지는 점이 문제로 제기되는데, 배심원의 평결을 판결에 반영하는 것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국민참여재판제도는 사법의 민주화를 실현하고 국민의 사법 참여를 증진시키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헌법 제27조 제1항은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명문으로 보장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5항은 '배심원의 평결과 의견은 법원을 기속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다만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원칙적으로 배심원의 평결을 존중하되 평결결과가 헌법 등에 위반되거나 명백히 부당한 경우에는 평결과 달리 판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현재 대법원 판례도 배심원 전원일치 무죄평결에 관하여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실무상으로도 2008년부터 현재까지 배심원 평결과 법원의 최종 판결은 90% 이상의 높은 일치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1.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의 평결에 대해 기속력을 부여하는 것의 위헌성 여부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국민참여재판제도는 사법의 민주화를 실현하고 국민의 사법 참여를 증진시키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헌법 제27조 제1항은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명문으로 보장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5항은 '배심원의 평결과 의견은 법원을 기속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배심원 평결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공감하지만, 배심원 평결에 원칙적 기속력을 부여하는 것은 헌법상 국민에게는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충분한 헌법적 검토를 토대로 논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2. 전자소송 현황 및 이용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2010년 특허소송을 시작으로 현재 형사소송을 제외한 대부분의 분야에서 전자소송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형사전자소송도 2025. 6. 9.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 전자소송을 처음 시작했을 때는 시스템 불안정을 비롯하여 여러 불편한 점이 있었으나, 이제는 소송관계인들이 종이로 진행되는 소송을 오히려 더 불편하게 여기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 결국 전자소송이용률은 자연스럽게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전자소송시스템의 노후화, 로그인 방식의 불편 호소, 업로드 용량 제한, 모바일 앱 서비스 활성화 등 이용자들의 편의개선을 위한 재원 투자와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 또한 최근 해킹 사건의 교훈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조치가 있어야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전자소송을 더욱 활발하게 이용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23. 공정한 재판을 담보하는 법관 기피신청 활성화 방안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재판에서 법관에게 제척 사유가 있거나,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 해당 법관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 실무상 기피신청이 인용되는 사례가 거의 없는 탓에, 실제 재판의 공정성이 의심되는 상황에서도 이를 시정할 방법이 없는 것처럼 보일 우려가 있다는 위원님의 문제의식에 공감합니다.

○ 다만 실무상 재판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사정이 있는 경우 담당 법관이 스스로 재판부 교체를 요청하여 기피신청이 인용되는 사례가 희박한 것일 뿐, 실제 재판의 공정성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기피 제도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의 요건을 국민의 시각에 맞게 적극적으로 해석함과 아울러, 기피결정이 있더라도 이를 당해 법관의 공정성과 연관시키지 않는 문화 정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4. 우리나라 대법관 1인당 처리하는 상고심 사건이 많습니다. 상고사건이 증가하는 근본적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대법원은 최고법원으로서 당사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최후의 보루이자, 헌법 원리에 입각하여 법령을 최종적으로 해석 · 적용함으로써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법률적 쟁점에 관하여 규범적 기준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 상고사건이 증가하는 원인으로는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최종심까지 판단을 받아보고 싶어 하는 오래된 관념을 가지고 있는데다, 최근 사실관계가 복잡하고 쟁점이 어려운 사건이 증가하여 하급심의 결론에 쉽게 수긍하지 못하는 분위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조정·화해와 같은 대체적 분쟁해결수단으로 종국 되는 사건 수가 접수되는 사건 수와 비교하여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기도 합니다. 대법원에서 구체적 타당성 있는 결론을 내기 위해 채증법칙 위반 등의 사유로 사실인정 문제를 다루는 것 또한 사건당사자들에게 기대감을 심어주어 상고를 하게 만드는 이유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상고허가제와 같이 상고를 제한하거나 상고법원과 같이 상고심의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결국 이러한 사정이 모두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상고사건이 증가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러한 사건 수의 증가로 사건 처리에 대한 부담이 매우 과중하여, 결국 최종심이자 법률심으로서 사회의 규범적 가치기준을 제시하

는 대법원의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에 상당한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고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25. 매년 증가하는 재판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대법관을 포함한 법관의 증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관 수 증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현재보다 몇 명(또는 몇 배)을 증원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대법원은 최고법원으로서 당사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최후의 보루이자, 헌법 원리에 입각하여 법령을 최종적으로 해석 · 적용함으로써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법률적 쟁점에 관하여 규범적 기준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러나 대법원에 접수되는 사건 수를 고려할 때 대법관들이 모든 사건에 대하여 하급심 판결과 같이 상세한 논증을 담은 판결서를 작성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 따라서 상고제도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대법관 증원 역시 상고제도 개선 방안 중 하나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관의 수는 단순히 사건의 수에 비례하여 대법관을 증원하는 것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고, 통일적 법해석을 위하여 대법원 재판의 핵심인 전원합의체를 구성하고 유지할 수 있는 정도여야 하며, 상고제도 자체를 개선하는 방안과 결합하여 논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다만 법관증원에 관해서는 21대 국회에서 법관증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무척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법부 구성원은 물론이고 여, 야 가릴 것 없이 모두 법관 증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관의 업무 부담이 다른 나라

와 비교하여 과도한 상황에서 우수한 법조인이 법관직을 지망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도 필요하고, 특히 심화된 재판지연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법관증원이 꼭 필요합니다. 22대 국회에서는 조속하게 법관증원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6. 상고제도 개선을 위한 도입되어야 할 제도 중 가장 합리적인 제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대법원은 최고법원으로서 당사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최후의 보루이자, 헌법 원리에 입각하여 법령을 최종적으로 해석 · 적용함으로써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법률적 쟁점에 관하여 규범적 기준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러나 대법원에 접수되는 사건 수를 고려할 때 대법관들이 모든 사건에 대하여 하급심 판결과 같이 상세한 논증을 담은 판결서를 작성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 따라서 상고제도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상고이유서 원심법원 제출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고, 장기적으로는 상고심에서 심리할 실질적인 사건을 선별하는 상고심사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비교법적으로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 많은 선진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 상고심사제를 도입하더라도, 헌법을 부당하게 해석한 사건,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는 판단을 한 사건, 판결의 이유를 밝히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사건 등 권리구제가 필요한 사건들은 본안판단의 대상이 될 것이므로, 현행 제도 하에서 상고심에서 파기될만한 사건들은 상고심사제 하에서도 본안판단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하는 동시에 법률심인 대법원

의 기능도 충분히 발휘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하급심 강화를 통해 재판에 대한 승복률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이와 함께 큰 틀에서의 상고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검토도 지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7. 장기미제사건의 신속처리 요청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장기 미제 사건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 장기미제가 증가하는 원인은 다양하나, 사회의 변화에 따라 사건의 난이도가 증가하고 재판의 충실성이 중요시되는 상황에서, 이를 당장 해소하기에 사법부의 인적 자원이 부족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신속한 재판을 통해 사건적체 현상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법관 및 재판연구원의 증원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 다만 이와 같은 인적 충원이 이루어지기 전에, 높은 경력의 법관이 증가한 상황에서 민사 및 가사사건의 단독관할을 확대한 것은 의미 있는 조치라고 볼 수 있고, 회생법원 등 전문법원이 확대됨으로써 전문성을 요하는 사건에 대하여 좀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부터 사무분담을 장기화하여 1심을 전문화하고, 사법행정을 담당하는 법원장이 일정 부분 본안 재판을 담당하는 것도 장기미제 사건 해소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28. 근로자에 대한 과도한 손배가압류 문제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이와 관련하여 전략적 봉쇄소송을 방지하는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는데, 이 법안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전략적 봉쇄소송은 사회적 중요성이 있는 문제에 관한 일반 대중의 공적 참여 및 공적 의제에 관한 비판이나 반대 여론을 위축시킬 목적으로 일반 대중의 공적 참여에 의하여 불이익을 받는 자가 제기하는 소송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 전략적 봉쇄소송은 사회적 약자의 정당한 의견 제시와 권리 주장을 제한하고, 사법부의 부담을 증가시켜 사회적 비용을 늘릴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실무에서 전략적 봉쇄소송과 정당한 소송을 구분하기는 어렵겠지만, 전략적 봉쇄소송으로써 과도한 청구금액의가압류 신청이 제기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법원은 엄격한 심사를 통하여 결정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미국은 전략적 봉쇄소송으로 판단되는 경우 원고 측이 승소가능성을 사전에 입증하지 못하면 소송을 각하하도록 하는 전략적 봉쇄소송 제한 법률이 있고, 21대 국회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전략적 봉쇄소송으로 인정되는 범위, 판단 요건,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법조계와 학계 등 전문가의 의견, 해외 사례와 국민의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회에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하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29. 과거사 관련, 국가의 시효소멸 항변에 대해 민법상 시효정지기간인 6월을 적용하여 과거사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상당히 제한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대법원은 국가기관이 수사과정에서 한 위법행위로 유죄의 확정판결까지 받았으나 이후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되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채권자가 손해배상청구를 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객관적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보고, 이때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나아가 대법원은 채권자가 그러한 장애가 해소된 재심무죄판결 확정일부터 상당한 기간 내 권리를 행사하여야 하는데, 이때 민법상 시효정지의 경우에 준하는 6개월의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여야 하고, 다만, 그 기간 내에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사보상청구를 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도 그 기간은 권리행사의 장애사유가 객관적으로 소멸된 재심무죄판결 확정일부터 민법 제766조 제1항이 규정한 단기소멸시효기간인 3년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 이 판결에 대해 다양한 논란이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관 후보자로서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30. 일부에서는 대법관의 정치적 성향을 '보수, 중도, 진보'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저는 보수, 중도, 진보 등 특정한 성향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법관들이 그러하듯 저 또한 재판을 함에 있어서는 관련 법령과 판례에 기초하여 개개 사안에 따라 구체적 사정에 맞는 타당한 결론을 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31. 후보자는 법원행정처 주요 보직에서 경험한 적 있습니다. 최근 법원행정처를 폐지하는 대신 새로운 개방형 회의체 사법행정기구인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하자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는 국민 여러분에게 큰 실망을 드렸고, 이에 대하여 후보자 역시 법원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반성으로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대법원장의 권한을 분산 및 견제하기 위해 과반 이상의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합의제 사법행정기구가 사법행정권을 담당하게 하자는 논의가 있었던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 사법행정을 투명하게 하고 민주적으로 통제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 자칫 사법부가 정치적 논쟁의 대상이 될 우려가 있고, 그러한 경우 사법부의 핵심 가치인 재판의 독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습니다.

○ 법원은 법원행정처를 존치하면서, 사법행정자문회의를 2019. 9. 출범하여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을 분산하고 일반 법관과 외부인사가 참여하여 사법행정사무를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기능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사법행정의 투명성과 민주성 제고에 기여한 장점이 있었으나, 한편 사법행정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대법관회의나 전국법원장회의 등 기존 기구와의 관계가 모호한 면이 있는 등의 단점도 지적되었습니다.

○ 새로운 대법원장의 취임 이후 사법행정자문회의의 장단점을 분석하여 결국 사법행정자문회의의 중단과 법원조직법 제25조에 규정된 사법정책자문위원회의 운영이 결정되었습니다. 새롭게 시작된 사법정책자문위원회가 잘 운영되어 사법행정자문회의의 성과를 계승하고 그 단점을 보완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32. 능력 있는 법관들이 재판 업무에 전념하도록 법원행정처에 근무하는 법관을 최소화하고 행정업무는 일반직이 책임지고 처리하도록 하자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과거 이른바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서 법원행정처에서 근무하는 법관의 관료화가 심화되어 결국 재판에 대한 내부적 독립 침해의 원인이 되었다는 반성이 법원행정처 탈판사화의 주요한 논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전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에서 근무하는 법관의 수를 최소화 하였습니다.

○ 그러나 급격한 비법관화 과정에서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 역량 약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고, 각종 제도개선 과제들을 추진해나감에 있어 여전히 법관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특히 법원의 본질적인 기능은 재판업무이고, 사법행정의 중요한 역할이 재판업무를 지원하는 것인데, 재판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법관을 배제한 상태에서는 재판제도개선을 비롯한 재판지원, 사법정보화 등의 업무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사법행정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한 지원도 어렵게 됩니다.

○ 결국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법행정 중 어떤 분야에 어느 정도의 법관이 관여하는 것이 적절한지 연구와 논의를 지속하여 노력을 통해 올해 법관과 재판업무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인 인사실, 사법지원실, 사법정보화실 등에 법관의 수가 다시 일부 증원되었

습니다. 앞으로도 사법행정 본연의 임무와 역할, 한계에 대하여 항상 성찰하고 경계하면서, 재판독립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효율적인 사법행정을 만들어 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33. 법원행정처가 김명수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설치된 사법행정자문회의를 폐지하는 대신 사법정책자문위원회를 운영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했습니다. 현재까지 진행상황과 이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사법행정자문회의는 2019. 9.경 출범하여 올해까지 운영되었고,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을 분산하여 일선 법관과 외부인사가 참여하여 사법행정사무를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기능을 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사법행정의 투명성과 민주성 제고에 기여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법행정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대법관회의나 전국법원장회의 등 기존 기구와의 관계가 모호한 면이 있는 등의 단점도 지적되었습니다.

○ 새로운 대법원장의 취임 이후 사법행정자문회의의 장단점을 분석하여 사법행정자문회의의 중단과 법원조직법에 규정된 사법정책자문위원회의 운영이 결정되었습니다. 새롭게 시작된 사법정책자문위원회가 잘 운영되어 사법행정자문회의의 성과를 계승하고 그 단점을 보완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34. 후보자가 생각하는 사법행정권의 정의와 범위, 적정 행사 방법, 향후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과 관련 개선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법행정이란 법원의 조직, 인사, 예산, 회계, 시설관리 등과 같이 사법부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행정작용을 의미합니다. 대법원장은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며, 사법행정사무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을 지휘·감독합니다.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법원행정처의 사무를 관장하고, 법원의 사법행정사무를 감독합니다. 헌법이 대법원장에게 인사권 등 사법행정권을 부여한 것은 삼권분립의 정신에 따라, 사법권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성, 사법부의 안정적 운영을 바라는 주권자인 국민의 의지와 결단의 산물이라고 생각합니다.

○ 대법원장은 헌법과 법률에서 부여받은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므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원칙과 기준에 따라야 함은 물론, 절차에 있어서도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는 국민 여러분에게 큰 실망을 드렸고, 이에 대하여 후보자 역시 법원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재판의 독립은 외부로부터 뿐만 아니라, 내부로부터도 지켜져야 하므로 사법행정이 사법지원의 영역을 넘어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 법원은 사법행정권 남용사태로 인해 뼈아픈 반성을 한 뒤, 기존에

각급 법원에 설치되어 있던 판사회의, 사무분담위원회 외에도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상설화, 사법행정자문회의 및 그 뒤를 이은 사법정책자문위원회 등 민주적 통제를 할 수 있는 여러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법관인사위원회,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등도 외부의 의견을 재판과 사법행정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제도들이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할 수는 없으나, 그 경험을 바탕으로 사법행정 중 어떤 분야에 어느 정도의 법관이 관여하는 것이 적절한지 연구와 논의를 지속하여 재판독립을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효율적인 사법행정을 만들어 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백혜련 위원서면질의에 대한 답변

《백혜련 위원 서면질의》

1. 대법관이 갖추어야 할 능력과 자질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대법관으로서 가장 중요한 능력과 자질은 사람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에 따라 대법관에게는 헌법적 가치에 대한 수호 의지, 함께 살아가는 시민들에 대한 애정, 소수자 보호에 대한 신념,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포용하고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균형 감각 그리고 최종심급 담당자로서 시대적 요구와 가치를 반영하는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통찰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 대법관으로서 후보자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덕목과 원칙은?

○ 대법원은 최고법원으로서 당사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최후의 보루이자, 헌법 원리에 입각하여 법령을 최종적으로 해석 · 적용함으로써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법률적 쟁점에 관하여 규범적 기준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 이러한 대법원의 역할을 올바로 수행하기 위해서, 대법관은 국민의 기본권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법적 기준과 가치를 제시하며, 서로 대립하는 다양한 가치와 이해관계가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3. 후보자가 생각하는 대법원이 지금까지 했던 판결 중 가장 좋은 판결 5건과 가장 아쉬운 판결 5건을 꼽는다면 어떤 것이고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인지?

○ 대법원은 그간 외부세력이나 여론의 압력 등에 흔들림 없이 공정한 판결을 내리기 위해 치열하게 노력해왔고, 시대의 규범적 가치를 제시하는 수많은 좋은 판결을 선고하여 왔습니다. 대법관 후보자로서 대법원에서 숙고하여 내린 판결에 대하여 직접적인 평가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 후보자의 판결 중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판결 5건을 꼽는다면 어떤 것이고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인지?

○ 제가 있는 재판부에서 판결을 선고한 사건은 약 11,887건 정도이며, 헌법과 법에 따른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되고 있는지 늘 고민하면서 재판하였습니다. 특별히 보완이 필요하거나 아쉽다고 생각되는 판결은 다행히 없으나,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과 가장 어려웠던 사건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 기억에 남는 사건: 서울고등법원에서 근로자가 파면처분의 무효를 구한 사건이 있었는데, 파면처분 이후 이미 정년 도래로 당연 퇴직되어 파면처분의 무효를 구할 이익이 있는지가 선결 쟁점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파면처분 이후 당사자의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대한 구제신청,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한 재심신청이 각 기각되고,

위 재심판정에 대한 행정소송도 이미 기각 확정되어 많은 고민을 하였으나, 1심과 달리 파면처분에 대해 제기한 무효확인청구소송 중 정년이 도래하였다고 하더라도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퇴직급여 등이 감액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면 징계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보았고, 나아가 징계 재심 절차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협약에서 정한 재심의결기한을 경과하여 근로자의 정년이 도래하기까지 재심의결을 하지 않았다면 당초 징계처분은 무효가 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 어려웠던 사건: 가장 판결 내리기 어려웠던 사건으로는 부산고등법원에서 담당하였던 '발달장애인의 영아 투기 살인 사건'이 기억납니다. 1세에 불과한 어린 피해자를 난간 아래로 집어던져 살해하였다는 사실로 발달장애 1급의 18세 피고인이 기소가 되었던 사건입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심신상실 상태를 인정하여 무죄판결을 하고, 치료를 받을 필요와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치료감호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항소심 재판장으로서 관여하였던 저는 결과의 참담함과 자신의 행위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발달장애인인 피고인의 특성 사이에서 깊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무죄판결은 유지하고, 항소심에서의 추가적인 감정결과 등을 종합하며 치료감호는 받아들였습니다. 정신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처우에 대해 우리 사회가 깊이 고민해야 할 숙제를 던져준 사건이었습니다.

4. 검찰의 악의적 분리기소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법원의 법관 사건배당 예규에 공동피고인 1인에 대한 사실심선고 이후에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분리기소를 재배당 사유에 추가하는 것에 대한 생각은?

○ 검찰이 공동피고인들을 분리기소하여 공동피고인 1인에 대한 판결이 선고된 후 그 재판을 담당한 재판부에 다른 공동피고인의 사건이 배당된다면, 이미 결론이 정해진 상태에서 재판에 임할 수 있는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재배당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법관의 편견을 막기 위한 공소장일본주의 등의 취지에 비추어 그러한 의견에 대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 그러나 대법관 후보자로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구체적 사건과 연관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단정적인 의견을 밝히는 것이 조심스러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현재로서도 기피, 회피제도 및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에 따른 재배당 제도를 통해 공정성이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있습니다. 공동피고인들이 자백하는 사건은 동일한 재판부가 모두 담당하더라도 공정성 문제가 크지 않을 수 있고, 오히려 공동피고인간에 양형의 균형을 꾀할 수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공동피고인들 사건마다 쟁점이 다른 경우에도 같은 재판부가 나중에 기소된 사건을 담당한다고 하더라도

공정성 문제가 제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형사 합의부가 2개 이상 있는 법원이 많지 않은데, 그러한 법원에서는 공동피고인 1인에 대한 선고가 있다고 하여 관련 사건을 모두 재배당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 그렇지만 이번 기회를 계기로 현실적인 여러 한계 내에서 그러한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소하여 좀 더 공정한 재판이 가능하도록 예규를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 중대비위를 저지른 판검사, 기타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공직자가 비위를 저지르고 퇴직을 했음에도 변호사법 8조상 '재직 중 위법행위'에 대한 변호사협회의 적용이 사실상 사문화되어 적용에 협회의 재량이 크게 작용하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 대법관 후보자로서 다른 기관인 변호사협회의 심사 기준에 대해 함부로 평가하는 것이 조심스럽습니다.

○ 다만, 변호사협회에서도 심사에 있어 법조인에 대한 국민의 높아진 윤리기준을 잘 반영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6. 초범, 반성, 음주 등 범죄사실과 무관한 양형기준으로 인해 범죄자 형량 감형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피해자는 이 과정에서 2차 피해를 입고 있음. 직접적 범죄사실과 무관한 양형기준이 감형요소에 포함된 점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과 개선점을 제시한다면 어떤 것이 있을지?

○ 형법은 양형을 정할 때 범죄행위와 관련된 양형인자 뿐 아니라 '행위자'에 관한 인자 역시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범, 반성, 음주 등으로 감형이 되는 것이 범죄사실과 무관한 양형기준이라는 지적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 먼저 '범죄 전력'은 형법 제51조에 따라 '범인의 성행'으로서 양형에 참작되고, '진지한 반성'도 '범행 후의 정황'으로서 양형을 정함에 있어 고려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양형위원회는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진지한 반성'이라는 양형인자의 남용 우려를 고려하여, 최근 다음과 같은 정의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 정의규정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고인이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제외한다.
진지한 반성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 피해 회복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여부 등을 조사, 판단한 결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또한 형법 제10조 제2항은 심신미약을 임의적 감경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양형기준은 '심신미약'이 남용되지 않도록 서술식 기준

을 두고 있습니다. 위 서술식 기준에 의하면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상태에서 범죄를 범하였을 때에도 일정한 경우(범행을 예견한 상태에서 자의로 음주한 경우 등)에는 아예 감경 하지 않도록 하거나 오히려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법원은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진지한 반성' 및 '심신미약'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여 피고인의 책임에 맞는 합리적인 양형을 구현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7. 피해자가 합의의사가 없고 가해자의 엄벌을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기습공탁으로 인해 가해자가 감형이 되는 경우가 있음. 공탁이 감경사유가 되는 것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개선점을 제시한다면 어떤 것이 있을지?

○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형사공탁을 하고, 이와 같은 공탁 사실이 양형에 반영되어 피고인이 가벼운 형을 받게 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 양형기준은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의 정의 규정에서 합의에 준할 정도의 피해 회복에 더하여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요구함으로써, 피고인의 반성·뉘우침이나 합의 노력 없는 공탁 등 단순히 경제적 보상만 이루어진 경우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에 해당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단순히 형사공탁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양형기준상 감경요소로 인정하지 않고, 피고인의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이 있었는지를 살피고, 이때 피해자의 의사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저는 이른바 기습공탁의 경우 구속기간에 여유가 있는 등 여건이 허락한다면 선고기일을 변경하여 피해자의 공탁금 수령의사나 처벌희망의사를 확인하기도 하였습니다.

○ 최근 법원은 형사공탁사실통지서를 송부하는 방식과 관련하여 검찰에 대한 통지가 형사재판부에 대한 통지보다 늦는 경우가 많았

고, 이에 선고기일에 임박하여 형사공탁이 이루어진 사건의 경우에는 검찰이 선고 전에 피해자의 의사 확인 등을 확인하여 재판부에 의견을 개진하기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해소하고자 각급 법원 공탁소에 공문을 통하여 형사공탁이 있는 경우 공탁소가 검찰에 형사공탁사실통지서 원본을 우편으로 송부하기 전 팩스(FAX)를 통하여 먼저 송부하도록 업무 방식을 개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원은 국민의 법 감정과 눈높이에 맞는 재판 실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8. 촉법소년 연령을 조정하여 중대범죄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 형법은 14세 미만을 형사미성년자로 처벌하지 아니하고, 소년법은 형사책임연령이 아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을 이른바 촉법소년으로 보호처분의 대상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 최근 미디어의 발달, 경제성장 등의 영향으로 청소년들의 범죄가 늘어나거나 흉폭해지는 경향에 대하여 형사책임연령을 낮추는 방법 등으로 처벌을 강화하자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한 의견에 경청할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다만, 개별적인 책임능력과 달리 형사책임연령을 일괄하여 조정하면 책임능력이 갖추어졌다고 보기 힘든 소년까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우려가 있고, 아직은 어린 나이의 소년들에게 사회적 낙인 효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촉법소년 연령 하향은 사회 환경의 변화, 범죄 예방의 필요성 및 방법, 해외 국가들의 사례, 청소년 처벌에 대한 재범방지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9. 대통령의 사면권으로 인해 사법권의 독립성이 해쳐질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 대통령의 사면권은 헌법에 규정된 제도로, 국민 통합, 국가의 이익, 인권 존중 등 다양한 목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다만, 권력분립과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헌법 이념의 본질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가이익과 국민통합이라는 제도의 취지에 맞게 투명한 절차를 거쳐 보충적·예외적으로 행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0. 대법관으로서 사회적 비주류와 소수자의 권익을 대변하기 위해 후보자는 어떤 각오를 하고 있는가?

○ 법원은 재판을 통하여 법을 해석하여 적용하는 기관으로, 다른 권력으로부터 독립하여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보장하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기본원리인 다수결의 원칙에 따를 경우 다수의 권익이 효과적으로 보장될 수 있으나, 소수자의 권리는 배척되거나 침해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법원은 오직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독립하여 판단함으로써 소수자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법관으로 지내면서 항상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잘 듣고 있는지 고민하여 왔고, 특히 서울고등법원 노동전담부에 근무하는 동안 헌법과 법에 따른 근로자의 권리가 보장되고 있는지 세심하게 살펴보며 재판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 제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법관이 된다면, 사법절차에 있어 사회적 약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실질적 평등, 재판청구권 등을 구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1. 퇴임한 대법관들이 변호사로 개업하여 과거 함께 근무했을 수 있는 대법관들의 상고심 사건을 수임하는 행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전관예우 관행이 존재한다고 믿는 국민들이 적지 않고,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를 떠나, 재판은 실체와 외관 모두 공정해야 하므로, 이러한 국민들의 우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법원은 부단히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 현재 대법원 내규 등에 따라 법관 주심배당은 상고이유서에 대한 답변서 제출기한이 도과된 후에 실시하고, 전직 대법관이 상고심 사건의 소송대리인, 변호인인 경우 그와 함께 근무했던 대법관은 주심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비롯하여 전관예우에 대한 의혹을 사전에 방지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나아가, 사법부 독립과 공정한 재판에 대한 오해를 받지 않도록 대법관이 퇴임 후에 상고심 사건을 수임하는 것은 국민의 사법신뢰의 측면에서 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위직 법관이 퇴직 후 공익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 경륜에 걸맞은 처우를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12. 고위직 판검사 출신의 변호사 개업이 전관비리로 연결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으로 어떤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 전관예우 관행이 존재한다고 믿는 국민들이 적지 않고,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를 떠나, 재판은 실체와 외관 모두 공정해야 하므로, 이러한 국민들의 우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법원은 부단히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 정원 외 법관인 원로법관제도 도입 및 법관의 직무환경 개선 등을 통해 법관이 정년에 이르기까지 근무하는 평생법관제도가 정착되어, 전관변호사의 발생을 근본적으로 차단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더불어 재판과정 및 결과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형사사건에 있어서는 법정 외 변론 금지, 수임 제한, 연고관계 재배당, 회피제도 활성화 등이 전관예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기준을 토대로 공정하고 적정한 양형을 하고, 국민참여재판, 불구속재판과 국선변호를 적절하게 확대해 나가 국민들에게 재판 과정과 결과에 대하여 정확하게 설명하고 그에 대한 이해를 구하는 데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13. 사형제도 존치에 대한 후보자 입장은?

○ 사형제에 관하여 찬·반 양론이 대립하고 있고, 양 주장 나름대로 타당한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다만 법정형에 사형이 존치되고 있는 현 상황을 전제로 말씀드리면, 사형제도는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형벌로서 일단 집행된 경우에는 오판이라 해도 돌이킬 수가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범행에 대한 책임의 정도와 형벌의 목적에 비추어 누구라도 그것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사형이 선고되는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14. 집단소송제도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집단소송제도의 특징 중의 하나는 해당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판결의 효력을 받지 않겠다는 '제외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피해자 전원에게 판결의 효력이 미친다는 것입니다. 이는 해당 집단의 개인이 별도의 소 제기를 하지 않아도 권리 구제를 비교적 용이하게 받을 수 있는 순기능이 있으나, 예상치 못하게 기판력의 영향을 받아 권리 행사를 할 수 없는 사람이 생길 수 있는 문제도 있습니다. 따라서 2013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증권관련집단소송의 경과 등도 함께 살펴보면서, 집단소송 제도의 장점과 부작용이 면밀히 검토된 이후에 확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5. 국민의 사법부 불신 및 법관의 정치재판 논란과 관련하여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면?

○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재판하여야 하고, 정치적·이념적으로 편향되어서는 안 된다는 데 이견이 있을 수 없습니다. 다만, 법관은 자신에게 맡겨진 개별 사건을 해결함에 있어 그 사안에 맞는 법리를 적용해서 법률적 양심에 따라 결론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판결의 결론만을 가지고 법관의 성향을 단정하거나 이념적인 잣대로 비난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한편, 법관의 정치적 중립은 국민의 사법부 신뢰에 필수적인 전제요건이라고 할 수 있는바, 법관 개개인은 불필요한 논란이 제기되지 않도록 법정 외에서도 자기절제를 통해 불공정 재판에 대한 외관을 형성하지 않도록 신중히 행동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아울러 재판에 대한 합리적 비판이 아닌 법관 개인에 대한 부당한 정치적 비판에 대하여 해당 법관이 오로지 재판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실질적인 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6.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배우자가 인사청탁을 이유로 명품백을 받는 것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

○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를 용인하지 않는 공직문화가 형성되어야 함에는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 다만, 현재 논란이 되는 특정 사안에 관하여 대법관 후보자가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 민사 본안 사건 10건 중 7건 꼴로 대법서 심리 불속행이 기각돼 당사자들이 이유도 모른채 상고를 기각당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2014년 54.5%에 그치던 심리불속행 기각률은 작년 70.5%로 10년 새 16%나 증가하였음.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있다면?

○ 심리불속행제도에 대하여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이유의 기재가 없다는 외부의 비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 대법원에 접수되는 사건 수를 고려할 때 대법관들이 모든 사건에 대하여 하급심 판결과 같은 상세한 논증을 기재한 판결서를 작성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고, 현재의 심리불속행제도는 대법원의 법률심 기능을 확보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개인적으로는 심리불속행제도의 긍정적인 역할을 유지하도록 하면서도, 심리불속행 기준을 마련하는 등으로 보다 합리적으로 제도를 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8. 체액 테러 가해자에게 대부분 벌금형이 선고되는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19. 본 위원이 발의한 체액테러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 위 질의에 대한 공통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이른바 '체액테러' 사건 가해자에게 대부분 재물손괴나 주거침입 등 혐의가 적용되고 있으나, 성적 의도가 있고 상대방에게 성적 불쾌감을 일으킨다는 점에서 성범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 관련하여 체액테러를 성범죄로 분류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최근 국회에 발의(백혜련 의원 대표발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롭고 다양한 형태의 성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서 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는 취지에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 입법정책적으로 결정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20. 현재 음주운전 양형기준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21.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여러번 낸 피고인에 대해 유족에게 합의금을 지급했고 용서를 받았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벌금형에 처해진 경우가 있음. 음주운전에 대한 사법부의 솜방망이 처벌이 항상 논란이 되고 있는데 양형기준 및 관련 법 강화 등 법이 범죄 억제라는 제 기능을 하기 위한 방안은 어떤 것이 있다고 보는지?

○ 위 질의에 대한 공통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음주운전으로 인한 안타까운 사건들이 보도가 되고, 이에 대하여 그 책임에 비례하는 엄정한 양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양형위원회는 122차 회의에서 교통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전면 수정하면서, 벌금형 양형기준을 설정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어린이 치사상에 대한 양형기준과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에 대한 양형 기준을 추가 설정하였으며, 특히 음주운전 교통사고 및 교통사고 후 도주에 대한 권고 형량 범위를 대폭 상향하여 2023. 4. 24. 의결하였습니다.

○ 향후 개별 재판에서 이와 같은 양형기준의 설정 취지와 형량 범위를 반영하여 피고인의 책임에 부합하는 양형을 형성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2. 개인회생에 대한 처분 기준이 지역 회생법원마다 상이해 채무자들이 관대한 처분을 하는 법원의 지역으로 이주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음. 이는 법원에 따라 실무준칙이 모두 달라 발생하는 것으로 보임. 이에 대해서 후보자는 어떤 복안이 있는지?

○ 서울회생법원은 2022년 주식 및 가상화폐 투자 손실을 입은 채무자들이 개인회생 신청을 한 경우 변제금 총액을 정할 때 손실금의 액수와 규모를 고려하지 않는 내용(다만, 채무자가 투자 실패를 가장해 재산을 은닉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의 실무준칙을 제정하였고, 현재는 수원회생법원, 부산회생법원도 동일한 내용의 실무준칙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투자 실패로 경제적 고통을 받는 젊은 채무자들의 경제 복귀를 한층 빨라지게 하려는 취지이므로 공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 다만, 이러한 실무준칙의 내용은 투자 손실로 인한 채무를 탕감해 주려는 취지가 아니며, 각 채무자는 소득·생계비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인가된 변제계획안을 바탕으로 성실하게 변제를 이행해 나가야 합니다. 아울러 각 법원의 실무준칙은 업무에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으로 구체적인 변제계획은 각 재판부에서 개별 채무자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재판사항에 해당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4조). 각 재판부는 채무자가 투자 실패를 가장해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가 아닌지 면밀히 조사하여 채무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23. 경찰 수사심의위원회 위원 명단을 공개하라는 취지의 법원 판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24. '채 상병 순직사건'의 수사심의위원회 명단이 공개되어야 한다고 보는지?

○ 위 질의에 대한 공통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 경찰 수사심의위원회는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수사정책에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구로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에 설치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서 정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 중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 사건에서 각 재판부가 판단해야 할 사안으로, 대법관 후보자로서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25. 법원행정처는 AI를 활용한 재판 업무 보조 시스템을 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에 도입할 것이라 밝혀. 사법부가 어떤 식으로 AI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 보는지?

○ 법관은 재판연구원의 보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판 및 판결서 작성 과정 전체를 혼자 수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하여 관련 법률과 판례를 검색하고, 간단한 사건의 판결문 작성 보조로 AI를 활용한다면, 업무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다만, 인공지능과 관련하여 여러 문제들, 즉 학습데이터의 편견으로 인해 편향된 알고리즘이 생성되는 '데이터 편향성', 거짓 정보를 마치 사실인 것처럼 생성하는 '환각현상', 알고리즘의 작동원리를 설명할 수 없는 '블랙박스', 대량의 데이터 학습과정에서 '개인정보 수집 우려'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까지는 인공지능을 통한 판단을 충분히 신뢰할 수는 없고, 그 결과물에 대한 최종점검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 결국 현재로서는 법관이 핵심쟁점의 판단에 집중할 수 있도록 반복적인 사무처리나 검색의 편리 등의 보조업무에 AI를 활용하는 것은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대법원도 최근 발족한 사법정책자문위원회 회부 안건에 '사법절차에서의 인공지능 활용과 그 법적·윤리적 기준'을 포함시켰고, '재

판지원을 위한 인공지능 활용 방안'을 논하기 전에 전자에 대해 우선적인 기준을 마련키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 논의를 통해 우리 사법부의 인공지능 활용을 위한 기준이 적절하게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6. 법관은 고도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성매매 등 각종 성비리를 저지르고도 파면·해임 등의 징계를 하지 않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논란이 있음.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법관 징계에 관한 논의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헌법 제106조 제1항에서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정한 바와 같이 재판의 독립을 위해 법관의 신분은 엄격하게 보장되어야 하고, 징계에 있어서도 그러한 정신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합니다.

○ 한편,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서 법관은 높은 수준의 윤리기준을 준수해야 하고, 이를 어길 시에는 일반 공무원보다 더 엄격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 이렇게 서로 대립되는 가치를 법관징계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관에 대한 징계시도가 법관의 신분보장을 침해하여 재판의 독립을 훼손하는 것은 아닌지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나 비위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엄정한 처리를 통해 그 지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한편, 제21대 국회에서 법관의 중대비위에 대한 면직이 가능하게

하는 등의 내용의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다가 임기만료로 폐기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징계처분으로 파면과 유사한 효력이 있는 면직을 할 수 있는지는 검토가 필요하나, 그러한 법률이 발의된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하며, 우리 사회가 법관에게 기대하는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충족할 수 있도록 저부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 법원 내 연구단체의 순기능과 역기능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28. 법원 내 연구단체가 법조계 카르텔을 조장한다는 국민들의 우려가 있음.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 위 질의에 대한 공통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 법원 내 학술 모임은 자발적인 모임으로, 실무례에 대한 논의를 통해 법원별 업무 편차를 줄이고, 업무처리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긍정적 기능이 있습니다.

○ 한편, 특정 연구회 가입 여부, 사법부 코드화 등의 논란으로 한동안 사법부가 홍역을 치른 바 있습니다. 담당 판사가 어떤 연구회 소속이라 그 판결을 신뢰할 수 없다는 등 재판실무에도 영향을 끼치기도 했습니다. 물론 사법부로서는 학술 연구 모임을 통해 그러한 논란이 생겼다는 것이 다소 억울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정한 재판을 위협하는 어떠한 요인도 제거하는 것이 국민의 재판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는 최선의 길임을 인식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9. 언론보도에 따르면 2023년 5월부터 2024년 5월까지 발생한 집단성폭력 사건 26건 중 절반 이상인 16건의 사건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사건이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셋 중 하나는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음. 의제 강간 적용 연령이 상향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처단형 범위와 선고형 간 간극이 크다는 지적이 있음. 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후보자의 의견은?

○ N번방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사건을 계기로, 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 연령을 16세 미만으로 높이는 개정 형법이 2020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미성년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의제강간죄로 처벌하는 연령기준을 상향한 개정법의 취지에 공감합니다.

○ 성범죄 양형에 관하여 과거 법원의 양형이 약하다는 평가를 받았으나 최근에는 법정형의 상향, 양형기준 상향 설정 등을 바탕으로 과거보다 엄정한 양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성범죄의 엄중한 처벌을 원하는 국민적 요구에 대하여 형사법관들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어, 앞으로 개별적인 사건에서 책임에 비례하는 적정한 양형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30. 최근 법원은 데이트 폭력으로 전 남친을 고소한 여성이 다시 가해자로부터 무고죄로 역고소 당해 재판을 받은 사례가 있음. 해당 사건의 2심 재판부는"수사기관의 무고죄 인지는 또 다른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성인지 감수성에 유의하면서, 개별적·구체적인 사건에서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처했던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해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명시한 바 있음. 이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은?

○ 법관은 재판과 일상에서도 늘 성인지 감수성을 잃거나 부당한 성차별적 고정관념을 갖는 것을 경계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2016년 젠더법연구회의 참여 하에 법원행정처에 설치된 양성평등연구반의 반장을 맡아 경력별 연수 등 법관연수에 성인지 교육을 도입하는 한편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성희롱 등 처리절차와 양성평등상담위원 제도를 포함한 피해회복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양성평등 가이드북을 제작하는 등 법원 내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 재판을 함에 있어서도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늘 유의했습니다. 특히 성범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 피해자가 처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단해왔습니다. 사건 당시 피해자(13세)의 모친과 사실혼 관계였던 피고인이 수차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강간 미수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일부 일관되지 않거나, 뒤늦게 신고하였다 하더

라도 성범죄 피해자가 처한 상황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그 신빙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유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유지한 바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4. 4. 19. 선고 2024노76 판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 저는 성인지 감수성의 중요성을 늘 인식하여 왔고, 앞으로도 성차별적 고정관념으로 인하여 실체진실 발견이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늘 주의를 기울일 예정입니다.

31. 사이버렉카, 배드파더스와 같은 사적 제재가 횡행하는 것은 사법부의 솜방망이 처벌로 인한 국민들의 실망과 분노가 그 원인이라 할 수 있음.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떤 것이 있다고 보는지?

○ 최근 SNS에서 성폭력범죄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여 사적제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 긍정적인 여론의 반응이 있으나,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여 관련 사건이 공론화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사건을 상기시켜 고통을 가중시키는 2차 가해의 우려도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동안 양형위원회는 47개의 범죄군에 관한 양형기준을 만들어 시행하여 왔고, 법관들의 양형기준 준수율도 매우 높은 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양형기준을 설정, 변경할 때 법원 내·외부의 다양한 인사를 위원회에 참여시키고, 공청회 등을 통하여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함은 물론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양형기준이 국민의 상식과 법 감정에 부합된 믿을 만한 기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급변하는 사회적·경제적 질서, 다양화·고도화되는 범행 양상, 변화하는 국민들의 의식 등을 적시에 양형기준에 반영하고, 각 재판부는 개별적인 사건에서 책임에 비례하는 적정한 양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2. 법관들이 「공직자윤리법」과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은 물론, 법률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도 높은 수준의 윤리 의식과 소명감, 공정성과 청렴성을 가지고 공직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는지?

○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법관이 법률에서 정한 것 외에도 높은 수준의 윤리 의식, 소명감, 공정성, 청렴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33. 행정부가 시행령 통치를 통해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고 입법 취지를 훼손하는 것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 행정부가 제정하는 시행령이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여서는 안된다는 지적에 원론적으로 동의합니다.

○ 다만 행정부의 행정입법은 법원의 명령·규칙 위헌심사의 대상으로서 향후 사건화 되면 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법관 후보자로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면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 윤석열 정부 2023년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영장청구는 45만 7천여건으로 2021년 34만 7천여건보다 11만건이 증가했고, 2012년 12만 2천여건에 비하면 무려 3.7배 증가하였음. 그러나 지난 11년 법원의 압수 수색영장 발부율은 최저 98.7%, 최고 99.2%를 기록하며 사실상 통제기능이 전혀 작동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생각하는 해결방안이 있는지?

35. 과도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로 인한 개인의 기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어떤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 위 질의에 대한 공통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과도한 압수·수색으로 인하여 국민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침해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사회의 특성상 압수·수색을 통하여 휴대전화, 컴퓨터 등에 저장된 내밀한 사생활 정보까지 무분별하게 압수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사법부가 적절히 통제하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는 점에 공감합니다.

○ 다만 실무상 압수·수색영장 전부를 기각할 만한 사안은 많지 않고, 통상 일부기각의 방법으로 과도한 압수·수색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압수·수색영장의 발부를 신중히 해야 한다는 점에는 깊이 공감하

고, 이를 위하여 법관들이 수사의 밀행성과 필요성을 존중하면서도,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조화롭게 고려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심리할 수 있는 수단을 부여하는 등의 제도적 개선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먼저 무분별한 압수수색영장의 발부를 제한하기 위하여, 압수·수색영장 발부 단계에서 압수 대상 정보를 최대한 선별할 수 있도록 심리 여건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도도 이러한 취지에서 압수·수색 영장 발부 여부 및 그 범위를 정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법관이 필요성과 대상의 특정 등 영장발부 요건이 충족되었는지에 대하여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설명을 청취할 수 있게 함으로써, 선별적인 압수·수색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도입 여부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나아가 압수된 정보가 수사 및 재판절차 종료 후 확실히 폐기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 역시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36. 검찰이 과도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정보를 바탕으로 당초 사건과 관련없는 사안까지 수사하는 이른바 '별건 수사'에 대해 후보자의 입장은? 또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은?

○ 형사소송법 제198조 제4항이 2022. 5. 신설되어, '수사기관은 수사 중인 사건의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합리적인 근거 없이 별개의 사건을 부당하게 수사하여서는 아니 되고, 다른 사건의 수사를 통하여 확보된 증거 또는 자료를 내세워 관련 없는 사건에 대한 자백이나 진술을 강요하여서도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규정이 신설된 이유는, 현대사회의 특성을 고려하였을 때, 전자정보에 근거한 별건 수사 우려가 높아졌고,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중대하게 제한하고 실체진실 발견을 왜곡하는 부작용이 크기 때문입니다.

○ 법원은 전자정보에 대한 영장의 발부 여부를 심리할 때 범죄 혐의와 관련된 정보만이 압수·수색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압수·수색의 범위를 적절히 제한하여야 하고, 위법한 별건 수사로 취득한 증거의 증거능력을 적극적으로 부정하여야 합니다. 나아가 압수된 전자정보의 관리 및 폐기를 적절히 입법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37.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법원 재판 과정에서 영상을 재생하는 등 2차 가해를 하여 재판 절차상 문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 형사재판절차 전반에 걸쳐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 특히 성범죄의 경우 그와 같은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상 영상을 재생하는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심리 비공개결정을 하는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필요하다면 입법적인 개선 방안도 고민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 또한 법관들은 증인신문 시 적절한 소송지휘를 통하여 사건과 무관한 사생활에 관한 질문이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질문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차폐시설의 활용, 증인지원제도나 진술조력인 제도, 영상증인신문 제도의 활용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배려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 위와 같은 법률과 제도의 개선 못지않게, 사법부의 인식과 태도도 중요합니다.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의 입장과 감정을 사려 깊게 살피고 피해자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8. 최근 마약범죄 건수가 급증하고 있고 청소년들도 마약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어 그 문제가 매우 심각함. 그러나 법원은 기소유예, 집행유예 처분을 하는 등 엄벌에 처하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음. 마약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 마약범죄의 양상이 변화하고 있고, 청소년을 상대로 한 마약 음료 사건도 발생하면서 마약사범의 회복과 재활을 도울 수 있는 치료명령이나 정신감정 등을 적극 활용함과 아울러 이미 저지른 마약범죄에 대한 엄정한 양형이 필요하다는 점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 이에 양형위원회에서는 지난 3월 25일 미성년자에 대한 마약범죄, 대량범 및 대마범죄에 대한 양형을 대폭 강화하는 마약범죄 수정 양형기준을 의결하였고, 2024. 7. 1. 이후 공소 제기된 범죄에 대하여 적용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마약범죄에 대하여 보다 엄정한 양형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39. 청문회 대상자인 국무위원 후보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청문회에서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행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 인사청문회는 국민의 대표이자 삼권분립의 한 축인 입법부가 공직후보자의 도덕성, 역량, 사법철학 등에 대한 검증을 하는 자리로서,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이 구현된 중요한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해당 절차에 임하는 공직후보자는 국회의 자료제출요구에 성실히 협조할 책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40. 국토균형발전 측면에서 서울에 집중돼있는 사법기관을 분산시켜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견해는?

○ 공공기관의 효율적 분산을 통해 지역별 편차가 없는 국민 생활의 향상과 이를 통해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취지에 공감합니다.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사법기관을 분산시키거나 새로운 법원이 신설되면, 지역 주민들의 사법접근성이 제고될 수 있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어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됩니다.

○ 다만 법원의 이동과 신설에는 많은 인적·물적 자원이 확충되어야 하고, 국가의 예산이 상당히 투입되어야 합니다. 또한 지역간 이해관계가 대립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합리적인 방향으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1. 배우자가 사랑의 홈케어에서 일을 시작하게 된 경위와 맡은 업무는?

○ 배우자의 부모님이 편찮아지신 것을 계기로 요양보호사에 관심을 갖게 되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였고, 이후 요양보호사로서 3개월 남짓 근무를 하였습니다.

42. 2020년과 2021년 배우자에게 증여세 발생하게 된 사유와 이를 2024년이 되어서 납부한 이유는?

○ 2020년 후보자의 모친으로부터 약 6,000만 원을 수증받아 증여세 면세한도(1,000만원)를 초과한 5,000만 원에 대한 증여세 7,436,350원을 납부하였습니다. 그리고 2021년 후보자의 모친으로부터 약 3,000만 원을 수증받아 이에 대한 증여세 4,198,410원을 납부하였습니다.

○ 올해 대법관 후보로 거론되는 과정에서, 당시 증여에 관한 검토가 이루어졌고, 일부 증여세가 납부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배우자가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하였습니다.

43. 최근 5년간 소득이 없는 장녀가 재산을 증식하게 된 과정과 증빙할 만한 자료가 있는지?

○ 딸의 재산은 어릴 때부터 모은 용돈, 장학금(학비 제외한 금액), 변호사가 되어 받은 보수 등으로 형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철현 위원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

《주철현 위원 서면질의》

1. 후보자의 자녀 1인의 금융채무(중소기업금융채권 49,838천원)의 사유 및 사용 현황은?

○ 중소기업금융채권 43,838천 원은 회사채로서 금융채무가 아닌 증권에 해당합니다.

○ 2021년 이후 기존 예금 등으로 기업은행 채권상품에 투자하여 현재 가액은 43,838천원입니다.

2. 후보자의 자녀가 2024년 3월부터 근무한 '변호사 신광렬 법률사무소'관련, 해당 직장의 후보자 자녀의 직책 및 직급, 입사시험(시험절차, 입사 시 지원자 숫자 등 지원률) 등의 절차 여부 그리고 후보자와 신광렬 변호사와의 학연, 지연 여부 및 신광렬 변호사 법관 재직 시 업무 관계는?

○ 저의 딸은 변호사 신광렬 사무소에 지원서를 접수하고 면접절차 등을 거쳐 입사하여, 소속변호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당시 구체적인 지원자 숫자 등 지원률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 못합니다.

○ 저와 신광렬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한 선후배로, 사법연수원과 서울고등법원에서 근무한 기간이 일부 겹쳐 서로 알던 사이입니다.

○ 다만, 딸의 채용에 있어 저와 신광렬 변호사의 관계보다는, 서울대 경제학부를 거쳐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딸의 학력을 고려하여 신광렬 변호사 사무실에서 채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 후보자가 2001.06.30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동 312-1 진달래아파트 105-1304로 전입했다가, 2002.04.06.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92 현대아파트 425-1203 및 2002.08.01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12 둥지아파트 101-1105로 순서대로 전입한 이유는?

○ 저는 2001 6. 30. 대전 서구 월평동 진달래아파트 105동 1304호로 전입한 바 있습니다. 당시 대전지법에 근무 중이었는데, 근무지에 가까운 아파트를 임차하여 전입한 것입니다.

○ 이후 2002. 4. 6.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현대아파트 425동 1304호에 전입하였는데, 위 대전 진달래아파트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가족의 주민등록지에 합가하였습니다. 그리고 2002. 8. 1. 전입한 대전 서구 둔산동 둥지아파트 101동 1105호는 대전고법 관사로 가족들과 함께 입주하였습니다.

4. 또한, 2001.06.30. 전입한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동 312-1 진달래아파트 105-1304 및 2002.08.01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12 둥지아파트 101-1105의 세대주는 누구며, 세대주와의 관계는?

○ 2001. 6. 30. 전입한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동 진달래아파트 및 2002. 8. 1. 전입한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12 둥지아파트의 세대주는 모두 후보자 본인이었습니다.

5. 대법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 대법관으로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사람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에 따라 대법관에게는 헌법적 가치에 대한 수호 의지, 함께 살아가는 시민들에 대한 애정, 소수자 보호에 대한 신념, 계층별·연령별·세대별 대립하는 가치의 충돌에 대한 균형 감각 그리고 최종심급 담당자로서 시대적 요구와 가치를 반영하는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통찰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6. 대법관 제청을 수락한 이유는?

○ 저는 1996년 판사로 임관한 이래 전국 각지의 법원에서 다양한 재판업무를 경험하였습니다. 지난 28년 동안, 타당한 결론을 선언하기 위해 내내 연구하고 고민하는 판사, 당사자와 잘 소통하는 판사가 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 기회가 주어진다면, 법관으로서 오랜 기간 고민하면서 축적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가 보다 자유롭고 정의로운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 기여하고 싶다는 저의 소망을 밝히는 것으로 답변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7. 소위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이 발생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는지?

8. 소위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의 파장이 모두 해소됐다고 생각하는지?

○ 위 질의에 대한 공통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는 국민 여러분에게 큰 실망을 드렸고, 이에 대하여 후보자 역시 법원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재판의 독립은 외부로부터 뿐만 아니라, 내부로부터도 지켜져야 합니다. 사법행정권 남용사태는 사법행정이 사법지원의 영역을 넘어 재판의 독립을 위협하면서 발생하였고,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법원 구성원 모두 경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법원은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대한 뼈아픈 반성을 한 뒤, 기존에 각급 법원에 설치되어 있던 판사회의, 사무분담위원회 외에도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상설화, 사법행정자문회의 및 그 뒤를 이은 사법정책자문위원회 등 민주적 통제를 할 수 있는 여러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법관인사위원회,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등도 외부의 의견을 재판과 사법행정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모든 제도들이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할 수는 없을 것이고, 현재의 재판과 사법행정이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법원은 앞으로도 그 경험을 바탕으로 사법행정 중 어떤 분야에 어느 정도의 법관이 관여하는 것이 적절한지 연구와 논의를 지속하여 재판독립을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효율적인 사법행정을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9. 현재의 대법원 판결이나 운영 방식에서 드러난 개선 과제 3가지를 뽑는다면?

○ 대법원은 최고법원으로서 당사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최후의 보루이자, 헌법 원리에 입각하여 법령을 최종적으로 해석 · 적용함으로써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법률적 쟁점에 관하여 규범적 기준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러나 대법원에 접수되는 사건 수를 고려할 때 대법관들이 모든 사건에 대하여 하급심 판결과 같이 상세한 논증을 담은 판결서를 작성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상고제도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상고제도의 개선과 관련하여 두 가지 방안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 단기적으로는 상고이유서 원심법원 제출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고, 장기적으로는 상고심에서 심리할 실질적인 사건을 선별하는 상고심사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고심사제를 도입하더라도, 헌법을 부당하게 해석한 사건,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는 판단을 한 사건, 판결의 이유를 밝히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사건 등 권리구제가 필요한 사건들은 본안판단의 대상이 될 것이므로, 현행 제도 하에서 상고심에서 파기될만한 사건들은 상고심사제 하에서도 본안판단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 이에 더하여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대법관 제청절차에서 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피천거인 중 심사동의자의 명단과 정보를 미리 공개하여 후

보자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비당연직 위원에 대한 추천절차를 도입하는 한편 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를 비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하며,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에 대하여도 다시 한 번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는 것은 대법관 구성에서 다양성을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법원이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관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인적 구성이 다양한지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개선이 가능한 부분은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0. 광주 5.18민주항쟁의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은?

○ 대한민국 헌법 전문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한다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 광주 5.18민주항쟁은 1980년 5월 광주 관련 지역에서 군부 등에 의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대해 시민들이 전개한 민주항쟁(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으로,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 과정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 사건입니다. 다만 이를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것은 헌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므로 국민적 합의를 통해 대한민국 헌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11.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배제하거나 그 국가배상에 대한 소멸시효를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은?

○ 반인륜적 국가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내지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폐지·축소하는 것이 사법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 기본적으로 반인륜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 내지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배제 취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시효제도가 갖는 법적 안정성의 가치 또한 그 의미를 부정할 수 없으므로, 여러 가치를 종합적으로 비교 형량하여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구체적인 범죄 유형 등에 따라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하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12. 국민참여재판의 범위를 확대하고 평결 효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 국민참여재판제도는 사법의 민주화를 실현하고 국민의 사법 참여를 증진시키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국민참여재판이 피고인 신청주의로 인한 한계가 있다는 이유로, 합의부 형사사건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시행해야한다는 견해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 다만, 합의부 형사사건이라고 하더라도 단순히 자백하는 사건, 쟁점이 복잡하지 않은 사건 등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불필요하거나 실익이 적은 사건도 있는 점, 현재 법원이나 검찰의 인적·물적 여건이 충분하게 마련되어 있지 못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현 시점에서 합의부 형사사건 전부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국민참여재판을 시행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아울러, 헌법 제27조 제1항은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명문으로 보장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은 배심원의 평결과 의견은 법원을 기속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제46조 제5항). 배심원 평결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공감하지만, 배심원 평결에 원칙적 기속력을 부여하는 것은 충분한 헌법적 검토를 토대로 논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3. 음주운전 사망사고 가해자에 대한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오랜 비판에도 전혀 변화가 없다는 지적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은?

○ 음주운전으로 인한 안타까운 사건들이 보도가 되고, 이에 대하여 그 책임에 비례하는 엄정한 양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양형위원회는 122차 회의에서 교통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전면 수정하면서, 벌금형 양형기준을 설정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어린이 치사상에 대한 양형기준과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에 대한 양형 기준을 추가 설정하였으며, 특히 음주운전 교통사고 및 교통사고 후 도주에 대한 권고 형량 범위를 대폭 상향하여 2023. 4. 24. 의결하였습니다.

○ 향후 개별 재판에서 이와 같은 양형기준의 설정 취지와 형량 범위를 반영하여 피고인의 책임에 부합하는 양형을 형성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4. 사형제 폐지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은?

○ 사형제에 관하여 찬·반 양론이 대립하고 있고, 양 주장 나름대로 타당한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다만 사형제도는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형벌로서 일단 집행된 경우에는 오판이라 해도 돌이킬 수가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범행에 대한 책임의 정도와 형벌의 목적에 비추어 누구라도 그것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사형이 선고되는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15. 소년범들의 흉악 범죄 증가에 따라 소년법 폐지 또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 주장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은?

○ 최근 미디어의 발달, 경제성장 등의 영향으로 청소년들의 범죄가 늘어나거나 흉폭해지는 경향에 대하여 형사책임연령을 낮추고, 더 나아가 소년법 폐지와 같은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 소년은 정신적·육체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에 있는 자로서 사회적, 법적 책임 외에도 소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양한 보호처분의 활용을 통하여 교육과 치료를 병행함으로써 사회의 건실한 구성원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방안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견지에서 소년법은 존치하면서 필요한 부분은 개선해 나가는 것이 옳다는 입장입니다.

○ 또한, 개별적인 책임능력과 달리 형사책임연령을 일괄하여 조정하면 책임능력이 갖추어졌다고 보기 힘든 소년까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우려가 있고, 아직은 어린 나이의 소년들에게 사회적 낙인 효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촉법소년 연령 하향은 사회 환경의 변화, 범죄 예방의 필요성 및 방법, 해외 국가 사례, 청소년 처벌에 대한 재범방지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6. 후보자의 판결 중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판결로 기억에 남는 3가지는?

○ 서울고등법원 노동전담부에 근무하면서 헌법과 법에 따른 근로자의 권리가 보장되고 있는지 늘 고민하며 재판하였습니다.

○ 학원강사들의 근로자성이 문제된 사건에서, 해당 강사들이 학원과 수강료를 일정한 비율에 따라 나눠 갖는 소위 '비율제 강사'들이었고, 근로계약의 형식이 강의위수탁계약으로 형식적으로 개인사업자의 성격을 띠고 있기는 하지만, 학원이 교육과정별 통일성 있는 수업 진행을 하도록 하고, 학생 수 및 학생들의 레벨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강사를 지정하였으며, 수강료의 비율을 정하는 점 등 그 실질에 대하여 충실하고 심도 깊게 심리하여 해당 학원강사들이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사업부문별 근로자 수의 차이가 큰데도 각 사업부문을 선거구로 하여 같은 수의 근로자위원을 선출한 선거가 무효라고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노사협의회에 근로자위원의 선출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자율적으로 정할 재량이 있더라도, 그 재량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헌법상 권리가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헌법상의 평등 원칙은 노사협의회의 선거구 획정에 있어서도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 근로자가 파면처분의 무효를 구한 사건이 있었는데, 파면처분 이후 이미 정년 도래로 당연 퇴직되어 파면처분의 무효를 구할 이익

이 있는지가 선결 쟁점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파면처분 이후 당사자의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대한 구제신청,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한 재심신청이 각 기각되고, 위 재심판정에 대한 행정소송도 이미 기각 확정되어 많은 고민을 하였으나, 1심과 달리 파면처분에 대해 제기한 무효확인청구소송 중 정년이 도래하였다고 하더라도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퇴직급여 등이 감액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면 징계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보았고, 나아가 징계재심 절차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협약에서 정한 재심의결기한을 경과하여 근로자의 정년이 도래하기까지 재심의결을 하지 않았다면 당초 징계처분은 무효가 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17. 시대 변화와 이에 부응하지 못하는 법률 간의 괴리로 고뇌한 경험이 있다면, 어떤 사건이었고 어떤 판결을 내렸는지?

○ 시대 변화와 이에 부응하지 못하는 법률 간의 괴리로 고뇌한 사건으로 특별히 기억이 나는 사건은 없습니다.

○ 심리가 가장 어려웠던 사건으로 답변을 갈음하자면, 부산고등법원에서 담당하였던 '발달장애인의 영아 투기 살인 사건'이 기억납니다. 1세에 불과한 어린 피해자를 난간 아래로 집어던져 살해하였다는 사실로 발달장애 1급의 18세 피고인이 기소가 되었던 사건입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심신상실 상태를 인정하여 무죄판결을 하고, 치료를 받을 필요와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치료감호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항소심 재판장으로서 관여하였던 저는 결과의 참담함과 자신의 행위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발달장애인인 피고인의 특성 사이에서 깊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무죄판결은 유지하고, 항소심에서의 추가적인 감정결과 등을 종합하며 치료감호는 받아들였습니다. 정신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처우에 대해 우리 사회가 깊이 고민해야 할 숙제를 던져준 사건이었습니다.

18.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전부)기각률이 1%에도 미치지 않아 '영장 자판기'라는 비판까지 받고 있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과 후보자가 생각하는 개선 방안은?

○ 과도한 압수·수색으로 인하여 국민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침해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사회의 특성상 압수·수색을 통하여 휴대전화, 컴퓨터 등에 저장된 내밀한 사생활 정보까지 무분별하게 압수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사법부가 적절히 통제하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는 점에 공감합니다.

○ 다만 실무상 압수·수색영장 전부를 기각할 만한 사안은 많지 않고, 통상 일부기각의 방법으로 과도한 압수·수색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압수·수색영장의 발부를 신중히 해야 한다는 점에는 깊이 공감하고, 이를 위하여 법관들이 수사의 밀행성과 필요성을 존중하면서도,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조화롭게 고려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심리할 수 있는 수단을 부여하는 등의 제도적 개선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먼저 무분별한 압수수색영장의 발부를 제한하기 위하여, 압수·수색영장 발부 단계에서 압수 대상 정보를 최대한 선별할 수 있도록 심리 여건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도도 이

러한 취지에서 압수·수색 영장 발부 여부 및 그 범위를 정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법관이 필요성과 대상의 특정 등 영장발부 요건이 충족되었는지에 대하여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설명을 청취할 수 있게 함으로써, 선별적인 압수·수색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도입 여부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나아가 압수된 정보가 수사 및 재판절차 종료 후 확실히 폐기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 역시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9.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회복 가능성 없는 환자에 대한 의료 조력 사망을 허용하는 '조력존엄사법'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은?

○ 존엄사는 환자가 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르렀을 때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하고 질병에 의한 자연적 죽음을 받아들임으로써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품위를 지키면서 죽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안락사는 인위적인 행위에 의하여 죽음을 맞이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죽음의 시기를 앞당기는 적극적 안락사와 생명유지에 필요한 약물투여 등을 중단함으로써 죽음에 이르게 하는 소극적 안락사로 구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적극적 안락사가 허용될 수 없다는 점에 관해서는 대체로 동의하지만, 존엄사나 소극적 안락사의 인정 여부에 관해서는 윤리적·종교적·법적·의학적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찬반양론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 존엄사와 관련하여 대법원이 무의미한 연명치료 장치 제거 등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는데, 후보자는 대법원 판결과 같이 엄격한 요건을 전제로 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른 환자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 기초하여 죽음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 최근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고령 운전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급발진 및 부주의 사고들도 급증하고 있어, 고령 운전자 면허 제한(반납)등 제도 도입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후보자의 의견은?

○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해마다 만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비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고령 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자진반납 하는 제도가 생겼고, 각 지자체에서는 자진반납을 독려하기 위해 반납자에 대한 혜택을 강화하고, 고령자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 고령 운전자에 의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고령 운전자 면허 제한 등 제도를 도입할지 여부와 그 대상이 되는 고령 운전자의 범위 등은, 고령자의 대중교통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적 합의를 통해 입법정책적으로 결정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1. 전 세계적으로 주4일제 시행이 화두가 되면서 국내 또한, 7월 충남도가 시군 공공기관 471명을 대상으로 주4일제 의무화를 시행하는 등 일부 기업에서도 동참하고 있는 와중 생산성 저하 대 휴식권 확충 등 찬반이 첨예하게 나뉘고 있는데, 후보자의 의견은?

○ 헌법에서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의 일환인 휴식권은 원칙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보장되어야 하며, 관공서·기업에 주4일제 적용을 확대하면 근로 생산성 향상 및 내수 진작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로 인하여 민간의 자율성 침해나 기업의 영업손실 발생 등이 우려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 결국 주4일제를 적용하여 국민의 휴식권을 확대할지 여부는 국민의 행복추구권, 평등권 보장이라는 측면과 민간의 자율성 및 근로기준법상 휴일 제도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22.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죄에 대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직권의 남용'이란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불법하게 행사하는 것을 말하므로, 소위 '월권행위'처럼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지 않는 사항에 대한 불법 부당한 지시는 직권남용죄를 적용할 수 없음. 그러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지 않음에도 실질적인 위력과 지위를 이용한 '월권행위'의 비난 가능성은 오히려 직권남용보다 크다고 할 것인데, 그와 같은 지시에 폭행 또는 협박이 수반되지 않을 경우 현행법으로는 이를 처벌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사법적 제재 수단이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다면, 후보자가 생각하는 제도 개선 방안은?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직권남용'은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그 권한을 위법·부당하게 행사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지 않음에도 실질적인 위력과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행위를 하였다면 국가공무원법 제78조에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는지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공무원이 다른 공무원의 자격을 가진 것처럼 오인케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 그 직권을 행사한다면 공무원자격사칭죄(형법 제118조)에 해당할 여지도 있습니다.

23. 대법원이 재판 외에 등기 등 일반 행정에 속하는 업무까지 관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지?

○ 우리나라는 대법원이 등기·가족관계등록·공탁 등 비송영역에 해당하는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는 국민의 기본권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업무로서 재판 절차와도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중립적이고 공신력 있는 기관인 사법부가 맡도록 입법정책적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사법행정과 사법제도는 그 나라의 역사, 다른 국가권력 기관과의 상호관계,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인식과 기대 등 여러 요소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사법부가 비송영역의 업무를 그동안 국민의 신뢰를 받으며 충실히 수행했는지 여부 및 전문성 유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대법원은 국민의 기본권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치열한 연구와 제도개선 노력을 통해 관련 분야의 발전을 지속적으로 이루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4. 현재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등 대부분의 공적 증명과 장부는 온라인으로 열람할 경우에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나, 유독 대법원(법원행정처)이 관리하는 등기부등본은 온라인 열람에도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대법원은 연간 약 700억원에 달하는 수입을 벌어들이고 있음. 기실 등기부등본의 온라인 열람·발급 무료화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는데, 집을 구하는 세입자들을 위해 '건물 등기사항의 열람'만이라도 무료화하여 국민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은?

○ 법원에서는 각종 제증명서의 온라인 열람·발급에 대한 국민들의 무료화 요구에 대해 잘 인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13년에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해 무료화를 결정한바 있습니다.

○ 다만, 등기는 가족관계, 주민등록 등과 달리 그 이용자가 한정된 제도입니다. 이러한 등기의 특징을 반영하여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등기열람·발급 수수료 등을 재원으로 특별회계를 운용하여 등기전산화 등 등기제도 운영에 사용하고 있고, 영국, 프랑스 등 주요 등기선진국에서도 수수료를 기반으로 등기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또한, 등기기록에는 모든 명의인의 권리관계가 기재될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나 공개된 정보로서, 수수료를 무료로 하여 대량의 등

기기록이 무분별하게 열람·발급된다면 개인정보 침해와 거래질서에 악용될 우려도 있습니다.

○ 한편, 등기부 열람/발급수수료는 등기소에 방문하여 발급받는 경우 1997년부터 현재까지 1,200원을 유지하고 있고, 인터넷등기소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열람하는 경우에는 1,000원이었던 수수료를 700원으로 인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대법원은 인터넷등기소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하여 수요에 부합하는 등기정보시스템을 운영할 예정이며, 부동산등기에 대한 열람·발급 수수료 인하 등 국민들의 요구에도 계속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참고로, 전자문서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미래등기시스템 시행 이후에 도래할 모바일 등기업무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하여 2023. 12. 1.부터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해당 부동산의 전자등기사항증명서를 전자지갑을 통해 발급받는 경우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25. 법조계의 전관예우 폐해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개선할 방안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은?

○ 전관예우 관행이 존재한다고 믿는 국민들이 적지 않고,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를 떠나, 재판은 실체와 외관 모두 공정해야 하므로, 이러한 국민들의 우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법원은 부단히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 정원 외 법관으로서 원로법관제도 도입 및 법관의 직무환경 개선 등을 통해 법관이 정년에 이르기까지 근무하는 평생법관제도가 정착되어, 전관변호사의 발생을 근본적으로 차단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더불어 재판과정 및 결과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형사사건에 있어서는 법정 외 변론 금지, 수임 제한, 연고관계 재배당, 회피제도 활성화 등이 전관예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기준을 토대로 공정하고 적정한 양형을 하고, 국민참여재판, 불구속 재판과 국선변호를 적절하게 확대해 나가 국민들에게 재판 과정과 결과에 대하여 정확하게 설명하고 그에 대한 이해를 구하는 데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26. 대법원 전원합의체 재판 변론 공개를 확대하고, 공개변론은 인터넷을 통해 중계 의무화하도록 하는 것에 대한 후보자 의견은?

○ 헌법상 공개재판 원칙의 충실한 구현과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측면에서 재판중계를 확대하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대법원은 열린 사법, 국민의 신뢰 제고, 알 권리 보장 등을 위한 재판방송의 실시·확대에 관하여 꾸준히 노력해 왔고, 2021. 11. 영상재판 확대 실시와 관련하여 민사소송규칙을 개정하여 영상재판 심리의 공개에 필요한 조치의 하나로 '인터넷 중계'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하급심 재판중계 확대 및 재판중계 활성화와 영상재판에 대한 중계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재판중계연구반을 구성하여 2023. 2.경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였고, 사법행정자문회의에서는 2023. 9. 6. 하급심 재판중계의 시범실시를 건의함에 따라, 법원행정처는 시범실시의 세부내용에 대한 연구·검토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다만, 재판중계 확대는 사법부 뿐 아니라 법조계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고, 재판중계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 등 침해의 우려 등도 있습니다.

○ 재판중계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도 국민의 알 권리가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세심하고 면밀한 검토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7. 재판 지연 해소를 위한 대법관 포함 판사 증원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은?

○ 사법부는 재판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기관입니다. 그러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최근 재판지연 현상에 대해 국민의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법원의 사건적체 현상이 발생한 원인은 한가지로 설명하기는 어려우나, 사회의 변화에 따라 사건의 난이도가 증가하고 재판의 충실성이 중요시되는 상황에서, 이를 당장 해소하기에 사법부의 인적 자원 부족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신속한 재판을 통해 사건적체 현상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법관 등 사법부 인력의 증원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 아울러, 대법원에 접수되는 사건 수를 고려할 때 대법관들이 모든 사건에 대하여 하급심 판결과 같이 상세한 논증을 담은 판결서를 작성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대법관 증원 역시 상고제도 개선 방안 중 하나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관의 수는 단순히 사건의 수에 비례하여 증원하는 것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고, 통일적 법해석을 위하여 대법원 재판의 핵심인 전원합의체를 구성하고 유지할 수 있는 정도여야 하며, 상고제도 자체를 개선하는 방안과 결합하여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8. 도입 약 15년이 지난 로스쿨 및 변호사시험제도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를 시행한지 약 17년이 되었고, 법학전문대학원을 거쳐 법조인이 된 분들이 법조직역에서 다양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로스쿨의 높은 학비 등 이유로 사법시험을 부활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 그러나 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법조인 양성제도로 상당한 기간 시행되어 정착 단계에 있음을 고려할 때, 사법시험 제도의 부활보다는 현재 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과 원인을 제대로 진단하고 개선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아울러, 법학전문대학원·변호사시험 제도를 도입했을 때 우리가 기대했던 핵심은 '다양한 법조인'이었습니다. 변호사시험 준비에 투입되는 노력을 다소 완화하여 본래 추구하려고 하였던 다양성을 북돋을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29. '법조일원화'의 장단점과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은?

○ 저는 여러 사법행정업무를 담당해 보았고, 사법연수원 교수로서 신규 법조인 교육도 경험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느낀 바에 따르면, 과거 경력법관제의 장단점이 있듯 법조일원화 제도도 장단점이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과거 제도의 장점이 크게 보이는 분도 있고, 현재 제도의 단점을 심각하게 느끼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 다만, 경력법관제와 법조일원화 제도가 완전히 배치되는 것은 아니어서, 서로의 장점을 잘 살리는 절충적인 방안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내년부터 법관 임용 시 요구되는 법조경력이 5년에서 7년으로 상향됩니다. 제대로 된 법조일원화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법조인이 법관이 될 수 있는 처우개선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우리 여건상 그렇지 못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현행 법원조직법에 따른 법조일원화 제도를 그대로 밀어붙이는 경우에는 제도의 단점이 부각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이라도 현재의 여건에 맞도록 법조경력 요건을 재조정하거나 다양화하는 등의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0. 국가균형발전 차원의 대법원의 지방 이전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주요 국가기관의 지방 이전에 대한 사회적 논의의 배경은 지역균형발전이고, 그러한 차원에서 대법원의 지방이전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 다만 이전에 따른 현재 지적되는 효율성 저하, 국민의 사법접근성, 이전으로 드는 비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충실한 논의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1.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에도 헌법상의 내재적 한계가 존재한다고 보는지? 만약 그렇다고 본다면, '이해충돌금지원칙'도 대표적인 내재적 한계라고 보는지?

○ 대통령은 헌법 제53조에 따라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이를 다시 국회에 환부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본래 미국의 대통령제에서 의회의 입법권에 대한 대통령의 견제수단으로 인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우리 헌법 상 재의요구 사유에는 제한이 없지만, 권력분립의 원칙 상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위헌인 법률안이나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위태롭게 할 정도로 비용이 소요되는 법률안 등 경우에 예외적으로 행사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 행사에 관하여 대법관 후보자로서 더 이상 구체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32. 동일 법원에 속한 재판부가 관련 사건에 대한 동일 심급에서 상충하는 판결을 내릴 경우 법원에 대한 신뢰도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과 개선 방안은?

○ 관련 사건이라 하더라도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서로 동일하지 않은 경우가 있고, 개개의 법관이 각자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자신의 양심에 따라 해석하고 판단을 내리기 때문에, 유사한 사건에서도 서로 다른 해석과 결론이 나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다만 법원도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예측가능성과 법적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고, 이를 위하여 심리의 자의적인 편차는 줄이고, 재판 실무를 개선하기 위하여 부단하게 노력해 왔습니다. 법관들에 대한 교육 및 사무분담별 법관들의 간담회 등을 통하여 심리 방법과 심리 기준 등을 함께 연구하고 토론하며 그 성과를 공유하고, 이와 같은 성과를 담은 실무제요 등을 편찬하여 법관들에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 법령의 해석·적용이 통일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헌법 원리에 입각하여 법령을 최종적으로 해석 · 적용함으로써,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법률적 쟁점에 관하여 규범적 기준을 제시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3. A피고인에게 유죄 판결을 내려 단정적인 예단을 갖고 있는 재판부에, 해당 판결이 유무죄 또는 양형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B피고인의 사건이 배당된다면, 이는 공소장일본주의나 공판중심주의에 역행하는 조치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과 개선 방안은?

○ 대법관 후보자로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구체적 사건과 연관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일반론으로 말씀드리면, 검찰이 공동피고인들을 분리기소하여 공동피고인 1인에 대한 사실심 선고가 난 경우 그 재판을 담당한 재판부에 다른 공동피고인의 사건이 배당되는 경우, 이미 심증이 정해진 상태에서 재판에 임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는 주장에 경청할 만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다만, 현재로서도 기피, 회피제도 및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에 따른 재배당 제도가 마련되어있고, 합의부가 2개 이상 있는 법원이 많지 않은 각급 법원의 여건상 현실적으로 공동피고인 1인에 대한 선고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관련 사건을 모두 재배당하는 것은 어려운 측면도 있음은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34. 후보자의 배우자나 자녀가 지인으로부터 후보자가 담당하는 업무와는 별개로 고가의 선물을 받았다면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 배우자가 공직자의 직무 관련 청탁을 부탁받으면서 일정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합니다)은 해당 공직자에 대하여 신고의무 및 반환의무 등을 부여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9조 제1항, 제6항, 제22조 제1항 제2호). 자녀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만, 제가 이를 알았다면 위 법률에 따라 반환하고 신고하겠습니다.

35.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 법원은 본인이 참여한 대화나 통화는 "타인간의 대화"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대방의 동의없이 녹음하더라도 형사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을 유지하고 있음. 그러나, 대화 당사자의 녹음이라고 하더라도 헌법상 보장되는 상대방의 음성권 및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미국이나 독일처럼 상대방의 동의 없는 녹음도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은?

○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에 관하여,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하지 못하고(제3조 제1항), 위와 같이 금지하는 청취행위는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한 경우로 제한된다(제14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참여한 대화나 통화는 위 조항의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헌법 제10조, 제17조에 따라 오늘날 고도로 정보화된 현대사회에서 자신에 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를 가진다는 점에서 일정한 경우 상대방의 동의 없는 녹음도 처벌되어야 한다는 주장의 취지에 공감합니다.

○ 다만 이는 자기정보의 결정권의 범위 및 내용에 대한 깊은 논의를 기초로, 상대방의 동의 없는 녹음에 대한 형사처벌의 필요성 및 그 요건 등에 대하여 법조계와 학계 등 전문가의 의견, 해외 사례와 국민의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회에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하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36. 본인이 참여한 대화의 녹음은 처벌하지 못한다는 형사법원 판례와 달리, 본인이 참여한 대화도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한 행위가 민사상 손해배상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판례(2013나8981)가 존재하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은?

○ 헌법 제10조는 헌법 제17조와 함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는데, 이에 따라 개인은 사생활 활동이 타인으로부터 침해되거나 사생활이 함부로 공개되지 아니할 소극적인 권리는 물론, 오늘날 고도로 정보화된 현대사회에서 자신에 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도 가집니다(대법원 1998. 7. 24. 선고 96다42789 판결,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16280 판결 참조).

○ 해당 하급심 판례는 음성권이 헌법 제10조에 의하여 헌법적으로 보장되고 있는 인격권에 속하는 권리라고 보고, 피녹음자의 동의 없이 전화통화 상대방의 통화내용을 비밀리에 녹음하고 이를 재생하여 녹취서를 작성하는 것은 피녹음자의 승낙이 추정되거나 정당방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는 한 헌법 제10조 제1문과 제17조에서 보장하는 음성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단하고,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 확정된 하급심 판례에 관하여 이와 같은 일반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 외에 대법관 후보자로서 판단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면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 국민 다수가 본인 참여 대화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도 (민사상으로도) 얼마든지 녹음할 수 있다고 오인하고 있고, IT 기술의 발달로 '자동녹음 기능' 등 대화와 통화 녹음이 일상화된 상황을 감안하면 무차별 다수가 언제든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이와 완전히 동일한 행위에 대한 형사법원과 민사법원의 판단을 통일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은?

○ 먼저 위원님의 질의가 상대방의 동의 없는 녹음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반면, 형사처벌은 아니므로 상대방의 동의 없는 녹음행위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시라면, 서면질의 35번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헌법 제10조, 제17조에 따라 오늘날 고도로 정보화된 현대사회에서 자신에 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를 가진다는 점에서 일정한 경우 상대방의 동의 없는 녹음도 처벌되어야 한다는 주장의 취지에 공감합니다. 다만 이는 자기정보의 결정권의 범위 및 내용에 대한 깊은 논의를 기초로, 상대방의 동의 없는 녹음에 대한 형사처벌의 필요성 및 그 요건 등에 대하여 법조계와 학계 등 전문가의 의견, 해외 사례와 국민의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회에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하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참고로, 동의 없는 녹음의 증거능력이 형사법원과 민사법원에서 차이가 나는 부분에 관하여는, 형사소송과 달리 민사소송과 가사

소송에서는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의 제한이 없습니다. 형사소송에서는 엄격한 증거법칙을 통해 수사기관의 인권침해 등을 막기 위한 필요성이 있는 반면, 민사소송과 가사소송에서는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도 그 이유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 그러다보니 통신비밀보호법 등에서 금지하고 있는 방식으로 수집한 증거를 민사소송이나 가사소송에서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 이 경우 전체 법질서가 일관된 기준으로 사안을 바라보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민사소송이나 가사소송에서의 증거도 무제한 허용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다만, 형사소송에서와 같은 엄격한 증거법칙을 민사, 가사소송에서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재판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민사소송과 가사소송에서 증거능력을 어느 정도로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와 논의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38. 제3자뇌물제공죄에 대한 대법원 판례(2010도12313 등)에 따르면, '부정한 청탁'이란 "직무집행 자체는 적법하더라도 어떤 대가관계와 연결시켜 이에 대한 대가의 교부를 내용으로 하는 청탁"이면 되고,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도 제3자뇌물제공죄의 제3자가 될 수 있음. 예를 들면, A구청장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건축 허가 등의 직무집행을 했더라도, 그 과정에서 해당 A구청 소속 동주민센터의 화장실 보수나 관할 경로당의 에어컨 설치를 요구했다면, 그 요구 자체만으로도 A구청장에게 '제3자뇌물제공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게 대법원의 입장임. 그러나, 이와 같은 판단은 개발 이익의 공익 환원 등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지자체의 적극행정을 제약하는 과도한 해석이라는 비판이 있는데, 이런 지적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 대법원은 그동안 공정한 판결을 내리기 위해 치열하게 노력해왔고, 규범적 가치를 제시하는 수많은 판결을 선고하여 왔습니다. 대법관 후보자로서 대법원에서 숙고하여 내린 판결에 대하여 직접적인 평가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 헌법기관이자 독립기관인 대법원의 법원행정처장이나 헌법재판소의 사무처장이 직접 국회에 출석하여 업무현황을 보고하고, 예결산 심사를 받는 것이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한다는 지적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은?

○ 헌법은 법관이 독립하여 심판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법부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국회법 제121조 제5항은 본회의나 위원회는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질문하기 위하여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등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기관에 대한 국회의 출석요구권을 헌법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국회법에 의하여 국민의 대표기관이며 국민주권주의의 실질적 실현을 위한 것이라면 특정 사안에 대한 질문을 위해 헌법기관에 출석을 요구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 아울러, 국회의 예산안 심의권은 헌법 제54조에 근거한 것으로, 국가 예산회계 및 공권력 작용의 정당성·합리성을 국민의 대표기관이 국회법이 정한 절차와 한계에 따라 검증하는 것은 중요한 작용이라고 생각합니다.

40. 국가 예산의 편성 절차 등을 규정한 「국가재정법」에 따라, 대법원을 비롯한 모든 중앙관서의 장은 소관 예산요구서를 작성해 기재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기재부장관은 예산요구서에 따라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정부는 이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함. 만약 「국가재정법」의 명시 규정에도 불구하고, A중앙관서의 장이 소관이 아닌 B중앙관서의 예산요구서까지 작성해 기재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대로 최종 반영된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면, 해당 예산안의 법적 효력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41. 만약 위와 같이 「국가재정법」에 따른 의무와 절차를 위반해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을 국회에서 의결한다면, 그 하자가 치유된다고 보는지?

○ 위 질의에 대한 공통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재정법」 제6조 및 제31조에 따라 매년 5월 말까지 차년도 예산요구서를 기재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있습니다.

○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가정적 질문에 대해 대법관 후보자로서 답변하는 것이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 수원지법 형사 15부는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에게 대한 1심 판결문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대북송금을 "쌍방울 주가 상승 목적"이라고 판시했으나, 같은 수원지법의 형사 11부는 동일한 대북송금에 대해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방북비용 대납"이라고 적시하며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중형을 선고하였음. 아무리 재판부가 다르더라도 같은 법원의 형사재판에서 불과 1년 여만에 이처럼 완전히 상충되는 판결이 나온 것에 대해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므로, 대법관 후보자로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 동시적 경합범의 경우에는 피고인의 '동시 심판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서 부득이한 이유가 없다면 재판의 이송과 변론 병합 등으로 하나의 재판부에서 같이 재판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은?

○ 토지관할이 다른 여러 개의 관련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공통되는 바로 위의 상급법원은 검사나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한 개 법원으로 하여금 병합심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6조).

○ 상급법원은 신청을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련사건을 병합심리할 법원을 지정하여 병합심리하게 하는 취지의 결정을 하는데(형사소송규칙 제3조), 공소사실의 내용, 공동피고인 유무, 재판진행 상황, 효율적인 심리 가능성, 피고인의 동시 심판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병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4. 최근 대법원이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에 대해 검찰의 병합 반대 의견서만 일방적으로 받아들이면서 기각 결정을 내렸는데, 이는 명백히 '동시 심판의 이익'에 어긋나는 결정이 아닌지?

○ 토지관할이 다른 여러 개의 관련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공통되는 바로 위의 상급법원은 검사나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한 개 법원으로 하여금 병합심리하게 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6조), 이때 공소사실의 내용, 공동피고인 유무, 재판 진행 상황, 효율적인 심리 가능성, 피고인의 동시 심판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병합 여부를 판단합니다.

○ 다만, 대법원의 결정에 대해 대법관 후보자로서 구체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 법원행정처장은 최근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 해당 사안에 대해 "기피 신청이라든지 아니면 토지관할 병합 이송 신청이라든지 이런 것은 가능"이라고 답했음에도 대법원이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을 기각한 이상, 해당 재판부(수원지법 형사11부)에 대한 기피를 신청한다면, 당연히 인용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은?

○ 개별 사건의 재판 진행에 관하여 대법관 후보자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범 위원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

《유상범 위원 서면질의》

1. 후보자가 생각하는 대법관 후보 지명 이유 및 대법관이 갖추어야 할 능력과 자질, 스스로에 대한 평가

○ 대법관으로서 가장 중요한 능력과 자질은 사람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에 따라 대법관에게는 헌법적 가치에 대한 수호 의지, 함께 살아가는 시민들에 대한 애정, 소수자 보호에 대한 신념,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포용하고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균형 감각 그리고 최종심급 담당자로서 시대적 요구와 가치를 반영하는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통찰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대법관 후보자로 저를 추천하신 분들이나 임명 제청 및 지명하신 분의 뜻을 추측하는 것은 무척 조심스럽습니다.

○ 다만, 언론보도 등을 통해 언급된 바와 같이 제가 그동안 해온 재판과 여러 사법행정에서의 성과를 좋게 평가해주시고, 제 주변의 저에 대한 평판이 나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 추측할 뿐입니다.

2. 후보자의 좌우명

○ 좌우명은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입니다. 큰일을 앞두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한 후에(盡人事) 하늘에 결과를 맡기고 기다린다(待天命)는 뜻입니다.

○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 임하자고 스스로 다짐하는 의미와 그 후에 따라오는 결과에 대해서는 평정심을 가지자는 의미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담당해온 재판과 사법행정 업무 모두 어렵고 부담스러운 일이었는데, 매번 좌우명이 큰 도움과 위로가 되었습니다.

3. 존경하는 법조인

○ 제가 존경하는 법조인은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님입니다. 광복 이후 사법부의 기틀을 세우신 것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법제, 입법, 법조윤리에도 큰 영향을 끼치셨습니다.

○ 특히 발췌개헌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법원판결에 이승만 대통령이 불만을 표시하자 김병로 대법원장이 대답하였다는 발언인 “이의 있으면 항소하시오!”라고 한 일화는, 김병로 대법원장님의 사법부 독립에 대한 의지가 그 누구보다 강하셨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 김병로 대법원장님의 그러한 의지와 용기는 사법부 구성원에게 큰 힘과 위안이 된다는 면에서 무척 존경스럽습니다.

4. 가장 좋아하는 법언

○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in dubio pro reo)가 떠오릅니다. 형법 강의에서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기초적인 법언이면서도, 실제 형사재판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중요한 법언이기도 합니다.

○ 우리나라 헌법(제27조 제4항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과 세계인권선언(제11조 제1항 "모든 형사피의자는 자신의 변호에 필요한 모든 것이 보장된 공개 재판에서 법률에 따라 유죄로 입증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받을 권리를 가진다.")은 물론이고 대부분 국가에서 형사법의 대원칙으로 자리잡은 무죄추정 원칙을 법관의 입장에서 재판에 반영하는 데 실질적인 역할을 하는 법언입니다.

○ 특히 대부분 유죄판결이 내려지는 형사재판 현실에서 증거에 기초하지 않고 쉽게 유죄심증을 가지게 되는 것에 대한 경각심을 주는 간단하면서도 명료한 법언입니다. 저도 형사재판을 하면서 이 법언에 따라 피고인에게 억울한 사정이 없는지 다시 한 번 살펴보기도 하였습니다.

5. 공직생활 하면서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점

○ 저는 2012년, 2013년 법원행정처에서 기획총괄심의관을 담당하면서, 법정언행 컨설팅을 기획하고 전국 법원에서 시행하였습니다.

○ 법정언행 컨설팅은 커뮤니케이션 전문가가 법관의 재판 진행을 관찰한 후 개별적으로 맞춤형 개선책을 제시하는 제도입니다. 이른바 '막말 판사'에 대한 사회적 비판을 무겁게 받아들이면서 기존에 해오던 '강의형 연수'만으로는 부족하던 차에 1:1 컨설팅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법원행정처 기획총괄심의관으로서 컨설팅 전문가들에게는 법원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시키고, 법관들에게는 제도의 필요성을 설득하는데 노력을 기울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2012년부터 기초작업을 시작해서 2013년에 시범실시, 전국법원 확대실시를 하였습니다. 결과의 공정성과 아울러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기에 지금도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시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보람을 느낍니다.

6. 공직생활 하면서 가장 아쉽거나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점

○ 재판업무와 사법행정업무를 하면서 제가 내린 결정이나 처리한 업무가 항상 옳다고 자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당시 상황에 맞춰 제 주위에 있었던 훌륭한 법관 및 직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 업무에 임했기에 잘못했다고 아쉬운 마음이 남아 있지는 않은 점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7. 법관 재직중 가장 의미있게 생각하는 판결, 그 이유

○ 서울고등법원 노동전담부에 근무하면서 헌법과 법에 따른 근로자의 권리가 보장되고 있는지 늘 고민하며 재판하였습니다.

○ 노동전담부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은, 근로자가 파면처분의 무효를 구한 사건에서 파면처분 이후 이미 정년 도래로 당연 퇴직되었는데 파면처분의 무효를 구할 이익이 있는지가 선결 쟁점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파면처분 이후 당사자의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대한 구제신청,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한 재심신청이 각 기각되고, 위 재심판정에 대한 행정소송도 이미 기각 확정되어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장으로서 저는, 1심과 달리 파면처분에 대해 제기한 무효확인청구소송 중 정년이 도래하였다고 하더라도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퇴직급여 등이 감액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면 징계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보았고, 나아가 징계 재심 절차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협약에서 정한 재심의결 기한을 경과하여 근로자의 정년이 도래하기까지 재심의결을 하지 않았다면 당초 징계처분은 무효가 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위 판결로 근로자가 징계처분의 효력을 다툴 소의 이익을 폭넓게 인정하고, 징계 재심에서의 근로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였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8. 법관 재직중 가장 아쉬웠던 판결, 그 이유

○ 가장 아쉬웠던 판결로 특별히 기억이 나는 사건은 다행히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가장 판결 내리기 어려웠던 사건으로는 부산고등법원에서 담당하였던 '발달장애인의 영아 투기 살인 사건'이 기억납니다.

○ 1세에 불과한 어린 피해자를 난간 아래로 집어던져 살해하였다는 사실로 발달장애 1급의 18세 피고인이 기소가 되었던 사건입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심신상실 상태를 인정하여 무죄판결을 하고, 치료를 받을 필요와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치료감호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항소심 재판장으로서 관여하였던 저는 결과의 참담함과 자신의 행위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발달장애인인 피고인의 특성 사이에서 깊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무죄판결은 유지하고, 항소심에서의 추가적인 감정결과 등을 종합하며 치료감호는 받아들였습니다. 정신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처우에 대해 우리 사회가 고민해야 할 숙제를 던져준 사건이었습니다.

9. 과거에 참여했거나, 현재 참여하고 있는 연구모임 또는 동호회

○ 후보자의 현재 활동 중인 모임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성명	커뮤니티 명칭	가입일	구분
박영재	로스쿨실무교육커뮤니티	2010-06-17	정회원
	법원관련보도자료	2012-02-17	정회원
	전자소송전담법관	2014-03-17	정회원
	민사재판커뮤니티	2014-07-10	정회원
	기업법분야연구회	2014-07-10	정회원
	형사법연구회	2015-05-15	정회원
	노동법분야연구회	2017-03-28	정회원
	보안관련주요뉴스	2021-02-25	정회원
	정책연구용역	2021-09-09	정회원
	판례공보스터디	2022-06-27	정회원

○ 과거 연구반활동 중에 양성평등연구반의 반장을 맡아 활동하던 것이 특히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저는 2016년 젠더법연구회의 참여 하에 법원행정처에 설치된 양성평등연구반에 참여하여, 경력별 연수 등 법관연수에 성인지 교육을 도입하는 한편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성희롱 등 처리절차와 양성평등상담위원 제도를 포함한 피해회복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양성평등 가이드북을 제작하는 등 법원 내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나아가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해 신설된 법관연수 성인지 교육과정에 강사로 참여하기도 하였습니다. 양성평등연구반 반장으로서 하였던 위와 같은 활동이 법원 내 성평등을 실현에 작은 보탬이 되었던 것 같아서 보람되게 생각합니다.

○ 저는 2023. 2. 20. ~ 2024. 2. 4. ’대법원 사랑나눔 자원봉사단‘의 단장으로 활동한 바도 있습니다. 해당 봉사단은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불우한 이웃들과 고통을 함께하고 국민들에게 ‘봉사하는 법원’, ‘따뜻한 법원’이라는 이미지 제고를 목표로 활동하였으며, 2023. 11 .28.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 봉사활동 진행, 장애인 보호시설 모랫말꿈터 등에 김장김치 및 라면 등 기부물품을 전달하였습니다.

10. 전관예우 관련 퇴직 후 거취에 대한 견해

○ 전관예우 관행이 존재한다고 믿는 국민들이 적지 않고,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를 떠나, 재판은 실체와 외관 모두 공정해야 하므로, 이러한 국민들의 우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법원은 부단히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 사법부 독립과 공정한 재판에 대한 오해를 받지 않도록 저는 퇴직한 이후에는 영리 업무에 종사하지 않고 공익적인 활동을 하고 싶습니다.

11. 사형제에 대한 견해

○ 사형제에 관하여 찬·반 양론이 대립하고 있고, 양 주장 나름대로 타당한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다만 법정형에 사형이 존치되고 있는 상황을 전제로 말씀드리면, 사형제도는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형벌로서 일단 집행된 경우에는 오판이라 해도 돌이킬 수가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범행에 대한 책임의 정도와 형벌의 목적에 비추어 누구라도 그것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사형이 선고되는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12. 가석방없는 종신형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

○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에 대하여는 기본적으로 국회에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 다만 가석방 없는 종신형의 도입은 사형제도의 폐지를 전제로 논의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1대 국회에서 사형제도를 존치한 채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도입하는 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석방 없는 종신형의 논의가 사형 폐지 이후의 대체형벌에 대한 고민에서 시작된 것이고,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사형제에 비하여 기본권 침해가 덜한 형벌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견해도 있는데, 사형제도가 존치된 상태에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도입하게 되면 중한 형벌이 추가되는 것이어서 그 도입에 대하여는 사형선고 및 집행 실태, 국제적 기준, 교도행정의 현황 등 종합적인 측면에서 광범위한 의견수렴 및 제도의 장단점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3. 플리바게닝 제도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

○ 유죄협상제도는 사법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공판심리의 충실화를 위한 방안으로 미국 등 외국에서 활용되고 있기는 하지만, 헌법상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와 실체진실주의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있고, 자백에 의존하는 기존의 형사사법 실무 관행으로 회귀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 유죄협상제도를 도입함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형사법 체계나 국민의 법감정에 부합하는지, 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사법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공판심리의 충실화를 위하여는 그 밖에도 현행 형사소송법상의 약식명령제도와 간이공판절차를 더욱 활성화하거나, 경범죄에 대한 신속처리절차 도입 등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14. 촉법 연령 하향 및 처벌 강화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

○ 형법은 14세 미만을 형사미성년자로 처벌하지 아니하고, 소년법은 형사책임연령이 아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을 이른바 촉법소년으로 보호처분의 대상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 최근 미디어의 발달, 경제성장 등의 영향으로 청소년들의 범죄가 늘어나거나 흉폭해지는 경향에 대하여 형사책임연령을 낮추고, 처벌을 강화하자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한 의견에 경청할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다만, 개별적인 책임능력과 달리 형사책임연령을 일괄하여 조정하면 책임능력이 갖추어졌다고 보기 힘든 소년까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우려가 있고, 아직은 어린 나이의 소년들에게 사회적 낙인 효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은 사회 환경의 변화, 범죄 예방의 필요성 및 방법, 해외 국가들의 사례, 청소년 처벌에 대한 재범방지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또한 처벌 강화와 관련하여, 소년은 정신적·육체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에 있는 자로서 응보적 관점에서 성인과 동일한 사회적, 법적 책임을 묻는 것 외에, 소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양한 보호처분의 활용을 통하여 교육과 치료를 병행함으로써 사회의 건실한 구성원으로서 성장시키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5. 정치의 사법화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

○ ‘정치의 사법화’의 개념이 명확한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정치적 문제가 사건화 되어 법원으로 접수되는 경우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문제와 사법적 판단은 그 기준과 작동 원리가 다르므로, 정치적 문제는 대의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한 정치의 영역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원만하게 해결되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법원으로 사건화 되어 오게 되는 경우에는 다른 사건들과 마찬가지로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6. 사법의 정치화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

○ 한편 '사법의 정치화' 는 삼권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위협하고 결국 국민의 사법신뢰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각종 정치적 사안에 대하여 사법적 판단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법부와 구성원들이 정치화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법관은 법정에서 뿐만 아니라 법정 외의 장소에서도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행동이나 발언을 자제해야 하며, 오로지 공정한 재판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주는 역할에 충실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17. 2019년, 순천지원 민사2부에서 소수의견을 기재한 판결문이 나왔음(2018가합12187). 3심이나 헌법재판소가 아닌 하급심(1,2심)에서 소수의견이 기재된 판결문이 작성되는 것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 (해당 질의는 관련 재판에 대한 질의가 아니라 하급심에서 '소수의견'이 기재된 판결이 이뤄지는 것 자체에 대한 질의임)

○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같이 하급심 판결문에도 소수의견을 기재하는 것이 헌법, 법원조직법 등에 비추어 적법한지에 대하여 여러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판결문의 항소심에서는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소수의견 부분을 제외하고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하였고, 피고들의 상고도 기각되어 확정되었습니다.

○ 대법원의 재판과 관련하여 법원조직법 제15조가 있는 반면 하급심의 재판과 관련하여 그와 같은 규정이 별도로 없으므로, 법원조직법 제15조에 비추어 하급심에서 소수의견의 기재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18. 현재 사법부의 가장 시급한 현안은 무엇이라고 보는지?

○ 사법부는 재판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기관입니다. 그러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최근 재판지연 현상에 대해 국민의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신속한 재판을 구현하기 위해서 우선 재판지연의 원인을 정확히 분석하고, 인적·물적 자원이 확충되기 전에라도 재판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재판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올해부터 법관 사무분담을 장기화하고, 법원장이 직접 재판을 담당하며, 판결서 작성방식을 사건 난이도에 따라 적정화하여 사건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또한 이를 위하여 법관 및 재판연구원 증원 등 인적 여건의 확충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법관증원에 관해서는 21대 국회에서 법관증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무척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법부 구성원은 물론이고 여, 야 가릴 것 없이 모두 법관 증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22대 국회에서는 조속하게 법관증원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아울러 법조일원화가 시행된 지 10년이 되었는바, 풍부한 경력과 실력을 갖춘 법조인이 법관으로 임용되고, 임용된 법관이 열정과 사명감을 가지고 재판에 임할 수 있도록 법관 인사제도 개선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고민을 해야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 최근 대법원장 자문기구인 사법정책자문위원회에서도 관련하여 법관인사제도 및 재판절차 개선을 위한 논의에 착수하였고, 2024. 7. 16.자 회의 결과 '법관임용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법원조직법 개정을 통해 5년 이상 법조경력자를 법관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면서, 재판장이 되기 위한 요건은 법조경력 10년 이상으로 강화하여 법조일원화의 목적과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건의 내용을 잘 반영하여 법관임용제도를 개선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구현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19. 법관이 SNS를 통해 정치적 의견을 내는 일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음.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법관이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면 법관으로서 업무를 하는 것이 무척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물론이고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도 법관이 SNS를 이용할 때 각별히 주의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 특히 정치적 견해의 표명은 아무리 순수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논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법관직의 무거움과 국민의 법관에 대한 신뢰를 항상 유념하여 법관들은 매사 신중하게 처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 법조일원화 제도를 직접 경험한바, 해당 제도에 대한 후보자의 평가는?

○ 법원행정처에서 법관인사와 기획업무를 담당하였던 경험으로 인해 법조일원화 제도의 도입 배경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사회경험이 거의 없는 비교적 젊은 나이에 바로 법관으로 임용되었던 경력법관제에 대한 반성에서 법조일원화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따라서 사회적 경험과 연륜을 갖춘 법조인 중에서 법관을 선발하자는 법조일원화 제도의 취지와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 현행 법원조직법에 따르면 내년부터 법관임용 시 요구되는 법조경력이 5년에서 7년으로 상향되는데, 그로 인해 법관임용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걱정이 사법부 내외에서 많다고 들었습니다. 또한 현재 법원조직법이 시행을 예정하고 있는 10년의 법조경력은 세계적으로도 상당히 높은 수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력이 높은 경우 다양한 경험과 연륜이 풍부하다는 장점이 있을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다른 법조직역에서 그 정도의 경력을 쌓은 우수한 법조인이 법관직에 지망하기에는 법관의 처우가 열악한 상황입니다. 또한 7년, 10년의 사회생활 동안 여러 이해관계에 노출되어 공정성 시비에서 자유롭지 못할 우려도 있습니다.

○ 그러한 상황에서 5년의 법조경력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법조인으로서의 초반 5년 동안 상당한 정도의 경험을 쌓을 수 있

고, 법조경력 10년에 비해 이해관계에서 좀 더 자유로울 수 있기도 합니다. 게다가 사건이 점점 복잡해지고 파악해야 할 기록도 많아지는 상황에서 조금 더 젊은 나이의 법관이 임용된다면 신속한 재판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법조경력을 5년으로 하향하는 것이 5년차 법조인만을 법관으로 선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5년차의 비교적 젊은 법관과 함께 10년차, 15년차 등 다양한 경력의 법관을 선발하게 된다면 연령적인 측면에서 법관의 다양화, 즉 여러 세대를 대표할 수 있는 법관의 다양화로 발전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최근 사법부에서 법원조직법의 개정을 추진한 것은 법조일원화 제도를 경력법관제로 되돌리기 위한 것이 아닌, 현재 우리의 상황에서 더 적합한 법조일원화 제도를 정착하기 위한 노력으로 이해해주셨으면 합니다.

21. 고등법원 판사 퇴직자 증가 원인 및 대책

○ 2023년 서울고등법원에서 고등법원 판사들 및 고등법원 판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전직 판사들에 대하여 고등법원 판사 퇴직자 증가 원인에 대하여 순위를 정해 중복 선택할 수 있도록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 현직 고등법원 판사들의 경우 퇴직 고려 사유로 '지방권역 순환 근무 부담'을 1순위로 선택한 답변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우선 순위와 무관하게 '경제적 이유'와 '업무부담'을 각 선택한 답변이 많았습니다. 외부 설문조사 결과에는 '경제적 이유'를 1순위로 선택한 답변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우선순위와 무관하게 '지방권역 순환 근무 부담', '당초 기대와 다른 고법판사 근무여건', '이직할 수 있는 기수·연차의 한정'을 선택한 답변이 비슷하게 높은 비중을 보였다고 알고 있습니다.

○ 위 설문조사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판사들의 퇴직 사유는 복합적이고, 우수한 법관의 사직을 막기 위해서는 이를 분석하여 그에 맞는 대책을 마련하고, 먼저 시행될 수 있는 대책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사건 처리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재판연구원 등의 보조 인력을 확충하는 방안, 업무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재판제도의 개선, 일과 가정의 균형을 유지시켜줄 수 있도록 지역순환 근무의 축소 및 스마트워크 기회 확대, 장기적으로 법관직의 중요성에 걸맞은 급여인상 등 여러 방면에서 법관직이 선호될 수 있는 처우개선이 필요합니다.

○ 그와 함께 저와 같은 선배 법관들이 흔들림 없이 정의를 추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국민들께서 재판독립과 법관의 판결을 존중해 주신다면, 법관직의 자긍심이 커질 수 있고, 그에 따라 법관들의 사직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22. '변시 응시기간 5년 제한'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 및 견해?

○ 현행 변호사 시험은 로스쿨 졸업 후 5년 안에 다섯 차례 응시할 수 있고, 위 5년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은 병역 의무 이행 기간입니다. 이런 예외 인정범위가 너무 좁아 불합리 하다는 지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근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 시험 응시 기간 제한과 관련하여 소속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호사 시험 응시 기간 제한 여부, 기간, 예외 인정의 문제는 이와 같은 법조계와 학계 등 전문가의 의견, 해외 사례와 국민의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회에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하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23. 관행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대법관 중 1인이 겸임하는 것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선거관리의 공정성 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법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호선을 거쳐 위원장 직을 맡는 관행이 형성되어 온 것으로 이해합니다. 다만 비상근 직으로 겸임하고 있어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를 감독하고 통솔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독립된 헌법기관으로서 대의민주주의의 핵심인 선거와 투표에 관한 헌법적 책무를 부여받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상을 유지하면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보장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이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정함에 있어서도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4. 최근 통과된 출생통보제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의료기관이 출생정보 통보(의료기관⇨건보심평원⇨시·읍·면장)를 하도록 하여 아동의 출생신고 누락을 막고, 출생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아동이 유기·학대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정「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2024. 7. 19.부터 시행되었습니다.

○ 개정법률의 시행으로 아동의 헌법상 기본권(2021헌마975)인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가 보장되고, 모든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25. 법률의 한글화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가능한 쉬운 법률용어를 사용하여 재판을 진행하고 판결서도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게 쉽고 간결하게 작성하는 것은 결국 재판에 대한 이해를 높여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증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취지로 법률의 한글화에 대하여도 지지하는 입장입니다.

26. 상고법원 설치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대법원은 최고법원으로서 당사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최후의 보루이자, 헌법 원리에 입각하여 법령을 최종적으로 해석 · 적용함으로써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법률적 쟁점에 관하여 규범적 기준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러나 대법원에 접수되는 사건 수를 고려할 때 대법관들이 모든 사건에 대하여 하급심 판결과 같이 상세한 논증을 담은 판결서를 작성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 따라서 상고제도의 개선이 필요하고, 상고법원 도입도 그중 하나의 방안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상고법원 도입 방안은, 상고심의 법령해석 통일 기능(대법원)과 권리구제 기능(상고법원)을 분리함으로써 대법원의 역할을 회복하고, 국민은 충실한 권리구제의 기회를 얻게 된다는 장점은 있으나, 대법원이 담당하는 사건과 상고법원이 담당하는 사건 사이의 분류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대법원의 판단을 받을 기회를 제한한다는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하는 동시에 법률심인 대법원의 기능도 충분히 발휘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하급심 강화를 통해 재판에 대한 승복률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이와 함께 큰 틀에서의 상고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검토도 지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7. '존엄사 등 적극적 안락사'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

○ 존엄사는 환자가 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르렀을 때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하고 질병에 의한 자연적 죽음을 받아들임으로써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품위를 지키면서 죽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안락사는 인위적인 행위에 의하여 죽음을 맞이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죽음의 시기를 앞당기는 적극적 안락사와 생명유지에 필요한 약물투여 등을 중단함으로써 죽음에 이르게 하는 소극적 안락사로 구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적극적 안락사가 허용될 수 없다는 점에 관해서는 대체로 동의하지만, 존엄사나 소극적 안락사의 인정 여부에 관해서는 윤리적·종교적·법적·의학적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찬반양론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 존엄사와 관련하여 대법원이 무의미한 연명치료 장치 제거 등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는데, 후보자는 대법원 판결과 같이 엄격한 요건을 전제로 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른 환자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 기초하여 죽음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8. 후일 언젠가 개헌이 이루어진다면, 법원 관련해서 헌법에서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 헌법 개정 여부와 그 방향은 국민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국민적 합의를 통해 매우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문제로서, 대법관 후보자의 입장에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는 것은 조심스럽습니다.

○ 다만, 저 개인적으로는,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여 정보기본권을 기본권 조항에 추가하는 방안과, 법원의 조직·인사·시설 등 사법행정과 재판절차·제도에 관한 사법부의 독자적 법률안제출권, 독자적 예산편성권을 인정하여 사법부 독립의 여건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9. 최근 탄핵안 발의 권한이 없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탄핵 청원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하려는 불법적인 일이 진행되고 있음. 이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은?

○ 대법관 후보자로서 향후 사건화가 될 수도 있는 구체적 문제에 대해 언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0. 판사 증원 및 검사 증원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은?

○ 구술심리주의와 공판중심주의의 강화 및 다수 당사자 사건 등의 증가로 판사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이러한 업무 부담의 가중은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는데 장해요소가 되어 재판지연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학대나 성폭력범죄 등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각종 제도들의 시행으로 법원의 후견적 역할에 대한 요청이 높아지고 있는바, 변화하는 사법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충분한 심리와 신속한 재판을 통하여 국민들에게 더 나은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적정한 규모의 법관 증원이 필수적입니다.

○ 그런데「법원조직법」제5조 제3항은 “판사의 수는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제1조는 각급 법원 판사의 수에 관하여 “법원조직법 제5조제3항 본문에 따른 각급 법원 판사의 수는 3,214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판사가 증원되기 위해서는 법률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법관증원에 관해서는 21대 국회에서 법관 정원을 기존 3,214명에서 3,584명으로 증원하는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되어 법관증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무척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법부 구성원은 물론이고 여, 야 가릴 것 없이 모두 법관 증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22대 국회에서는 조속하게 법관증원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검사 수의 증원에 관하여도 검찰, 법조계와 국민의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회에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하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31. 사법부 당면 과제로 꼽히는 재판 지연 해소방안에 대해 장기적 법관 증원과 더불어 법률AI가 하루가 달리 발전하는 가운데 일명 'AI 판사' 등 인공지능(AI) 기술을 우리 사법부에도 보다 적극적으로 접목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후보자는 오랜 기간 법관으로 재직한바, 법관 업무에 인공지능 활용이 접목되는 것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은?

○ 법관은 재판연구원의 보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판 및 판결서 작성 과정 전체를 혼자 수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하여 관련 법률과 판례를 검색하고, 간단한 사건의 판결문 작성 보조로 AI를 활용한다면, 업무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다만 인공지능과 관련하여 여러 문제들, 즉 학습데이터의 편견으로 인해 편향된 알고리즘이 생성되는 '데이터 편향성', 거짓 정보를 마치 사실인 것처럼 생성하는 '환각현상', 알고리즘의 작동원리를 설명할 수 없는 '블랙박스', 대량의 데이터 학습과정에서 '개인정보 수집 우려'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 앞서 언급한 여러 문제들로 인해 AI가 도출한 결과물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이미 유럽과 주요국에서는 사법의 영역에서 인공지능 사용에 있어 준수해야 할 법적·윤리적 기준 등을 논의하여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기준이 있어야 인공지능 활용에서 생길 수 있는 여러 법적·윤리적 문제를

판단할 수 있고, 그 결과물에 대해 신뢰할 수도 있게 됩니다.

○ 사법부에서도 그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최근 발족한 사법정책자문위원회 회부 안건에 '사법절차에서의 인공지능 활용과 그 법적·윤리적 기준'을 포함시켰고, '재판지원을 위한 인공지능 활용 방안'을 논하기 전에 전자에 대해 우선적인 기준을 마련키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 논의를 통해 우리 사법부의 인공지능 활용을 위한 기준이 적절하게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곽규택 위원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

《곽규택 위원 서면질의》

1. 대법관이 갖추어야 할 능력과 자질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

○ 대법관으로서 가장 중요한 능력과 자질은 사람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에 따라 대법관에게는 헌법적 가치에 대한 수호 의지, 함께 살아가는 시민들에 대한 애정, 소수자 보호에 대한 신념,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포용하고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균형 감각 그리고 최종심급 담당자로서 시대적 요구와 가치를 반영하는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통찰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 평소 마음에 두고 있는 법언이나 좌우명

○ 좌우명은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입니다. 큰일을 앞두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한 후에(盡人事) 하늘에 결과를 맡기고 기다린다(待天命)는 뜻입니다.

○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 임하자고 스스로 다짐하는 의미와 그 후에 따라오는 결과에 대해서는 평정심을 가지자는 의미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담당해온 재판과 사법행정 업무 모두 어렵고 부담스러운 일이었는데, 매번 좌우명이 큰 도움과 위로가 되었습니다.

3. 이제까지 판결 중 가장 의미 있었다고 생각하는 판결, 이유

○ 서울고등법원 노동전담부에 근무하면서 헌법과 법에 따른 근로자의 권리가 보장되고 있는지 늘 고민하며 재판하였습니다.

○ 노동전담부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은, 근로자가 파면처분의 무효를 구한 사건에서 파면처분 이후 이미 정년 도래로 당연 퇴직되었는데 파면처분의 무효를 구할 이익이 있는지가 선결 쟁점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파면처분 이후 당사자의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대한 구제신청,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한 재심신청이 각 기각되고, 위 재심판정에 대한 행정소송도 이미 기각 확정되어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장으로서 저는, 1심과 달리 파면처분에 대해 제기한 무효확인청구소송 중 정년이 도래하였다고 하더라도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퇴직급여 등이 감액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면 징계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보았고, 나아가 징계 재심 절차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협약에서 정한 재심의결 기한을 경과하여 근로자의 정년이 도래하기까지 재심의결을 하지 않았다면 당초 징계처분은 무효가 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위 사건에서 저는 근로자가 징계처분의 효력을 다툴 소의 이익을 폭넓게 인정하고, 징계 재심에서의 근로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4. 이제까지 판결 중 가장 아쉬웠던 판결, 이유

○ 가장 아쉬웠던 판결로 특별히 기억이 나는 사건은 다행히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가장 판결 내리기 어려웠던 사건으로는 부산고등법원에서 담당하였던 '발달장애인의 영아 투기 살인 사건'이 기억납니다.

○ 1세에 불과한 어린 피해자를 난간 아래로 집어던져 살해하였다는 사실로 발달장애 1급의 18세 피고인이 기소가 되었던 사건입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심신상실 상태를 인정하여 무죄판결을 하고, 치료를 받을 필요와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치료감호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항소심 재판장으로서 관여하였던 저는 결과의 참담함과 자신의 행위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발달장애인인 피고인의 특성 사이에서 깊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무죄판결은 유지하고, 항소심에서의 추가적인 감정결과 등을 종합하며 치료감호는 받아들였습니다. 정신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처우에 대해 우리 사회가 깊이 고민해야 할 숙제를 던져준 사건이었습니다.

5. 판결 이외에 이제까지 법관 재직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 이유

○ 저는 2012년, 2013년 법원행정처에서 기획총괄심의관을 담당하면서, 법정언행 컨설팅을 기획하고 전국 법원에서 시행하였습니다.

○ 법정언행 컨설팅은 커뮤니케이션 전문가가 법관의 재판 진행을 관찰한 후 개별적으로 맞춤형 개선책을 제시하는 제도입니다. 이른바 '막말 판사'에 대한 사회적 비판을 무겁게 받아들이면서 기존에 해오던 '강의형 연수'만으로는 부족하던 차에 1:1 컨설팅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법원행정처 기획총괄심의관으로서 컨설팅 전문가들에게는 법원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시키고, 법관들에게는 제도의 필요성을 설득하는데 노력을 기울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2012년부터 기초작업을 시작해서 2013년에 시범실시, 전국법원 확대실시를 하였습니다. 결과의 공정성과 아울러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기에 지금도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시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보람을 느낍니다.

6. 기억에 남는 연구모임이나 동호회, 이유

○ 우리 사회가 사회구조적인 성차별을 개선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에 성차별적 요소는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양성평등연구반의 반장을 맡아 활동하던 것이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 저는 2016년 젠더법연구회의 참여 하에 법원행정처에 설치된 양성평등연구반의 반장을 맡아 경력별 연수 등 법관연수에 성인지 교육을 도입하는 한편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성희롱 등 처리절차와 양성평등상담위원 제도를 포함한 피해회복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양성평등 가이드북을 제작하는 등 법원 내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나아가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해 신설된 법관연수 성인지 교육과정에 강사로 참여하기도 하였습니다.

○ 양성평등연구반 반장으로서 제가 하였던 활동이 법원 내 성평등을 실현에 작은 보탬이 되었던 것 같아서 보람되게 생각합니다.

7. 후보자가 집필한 저서, 논문, 판례평석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 이유

○ 범죄피해자의 인권보장을 위한 개선의 노력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왔고, 앞으로도 다양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찾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범죄피해자 보호제도에 관한 연구」(공군본부 법무감실, 1995)는 군법무관 시절 당시 전통적인 형사사법체계는 응보적 관점을 중시하여 피해자가 가벌성 판단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점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형사사법절차에서의 피해자 지위를 검토하고, 피해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절차적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한 논문입니다. 위 논문에서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도입되어야 한다고 검토하였던 증인보호제도(증인지원제도), 비공개심리 등은 이후 중요 피해자 보호제도로서 제도화되어 현재 활용되고 있습니다. 아직 임관하기 전인 군법무관 시절이었으나, 그때 깊이 고민하였던 범죄 피해자 보호방안이 현형 제도화 되어 활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저에게 의미 있는 논문입니다.

8. 대법관으로 퇴직하게 되면, 퇴직 후에 하고 싶은 일, 이유.

○ 전관예우 관행이 존재한다고 믿는 국민들이 적지 않고,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를 떠나, 재판은 실체와 외관 모두 공정해야 하므로, 이러한 국민들의 우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법원은 부단히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 사법부 독립과 공정한 재판에 대한 오해를 받지 않도록 저는 퇴직한 이후에는 영리 업무에 종사하지 않고 공익적인 활동을 하고 싶습니다.

9. 후보자는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차장을 역임하였는데, 최근 언론보도 등에서 지적하고 있는 '재판지연'의 주요원인과 해결방안에 관한 견해

○ 사법부는 재판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기관입니다. 그러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재의 재판지연 문제에 대해서는 저를 포함한 사법부의 구성원 모두가 매우 무겁게 받아드리고, 그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다만 재판지연의 원인은 법원 내외부의 다양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고 어느 한가지의 원인을 주요원인으로 꼽기는 어렵습니다. 법관의 고령화, 사건의 복잡화, 법관 수의 부족, 일과 가정의 균형을 추구하는 사회의 변화 등 쉽게 꼽아볼 수 있는 원인만 해도 여러 가지입니다. 거기에다가 최근 코로나 사태도 재판지연 현상을 심화시켰다고 생각합니다.

○ 기본적으로 법관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정성을 다해야 하고, 이러한 소명을 다하기 위해 어느 정도 자신의 자유시간도 희생하려는 자세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관의 사명감만을 강조하여 개인의 희생을 강요할 수는 없고, 근본적인 해결책도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우리가 처한 상황에 맞는 제도개선이 전반적으로 이루어져야 재판지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여러 방면에 걸친 다양한 재판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올해부터 사무분담을 장기화하여 1심을 전문화하고, 사법행정을 담당하는 법원장이 일정 부분 본안재판을 담당하는 것도 재판지연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우리나라 법관의 업무 부담이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과도한 상황에서 근본적으로는 법관 및 재판연구원 증원 등 인적 여건의 확충이 절실합니다. 법관증원에 관해서는 21대 국회에서 법관증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무척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법부 구성원은 물론이고 여, 야 가릴 것 없이 모두 법관 증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22대 국회에서는 조속하게 법관증원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10. 법조일원화 제도에 따라 올해까지 최소 법조경력 5년이상, 내년부터는 최소 법조경력 7년 이상 경력 법조인 중에 판사를 선발하게 되는데, 경력기간 확대에 대한 견해, 대안이 있다면 그에 대한 견해

○ 법원행정처에서 법관인사와 기획업무를 담당하였던 경험으로 인해 법조일원화 제도의 도입 배경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사회경험이 거의 없는 비교적 젊은 나이에 바로 법관으로 임용되었던 경력법관제에 대한 반성에서 법조일원화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따라서 사회적 경험과 연륜을 갖춘 법조인 중에서 법관을 선발하자는 법조일원화 제도의 취지와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 현행 법원조직법에 따르면 내년부터 법관임용 시 요구되는 법조경력이 5년에서 7년으로 상향되는데, 그로 인해 법관임용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걱정이 사법부 내외에서 많은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법원조직법이 시행을 예정하고 있는 10년의 법조경력은 세계적으로도 상당히 높은 수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력이 높은 경우 다양한 경험과 연륜이 풍부하다는 장점이 있을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다른 법조직역에서 그 정도의 경력을 쌓은 우수한 법조인이 법관직에 지망하기에는 법관의 처우가 열악한 상황입니다. 또한 7년, 10년의 사회생활 동안 여러 이해관계에 노출되어 공정성 시비에서 자유롭지 못할 우려도 있습니다.

○ 그러한 상황에서 5년의 법조경력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법조인으로서의 초반 5년 동안 상당한 정도의 경험을 쌓을 수 있고, 법조경력 10년에 비해 이해관계에서 좀 더 자유로울 수 있기도 합니다. 게다가 사건이 점점 복잡해지고 파악해야 할 기록도 많아지는 상황에서 조금 더 젊은 나이의 법관이 임용된다면 신속한 재판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법조경력을 5년으로 하향하는 것이 5년차 법조인만을 법관으로 선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5년차의 비교적 젊은 법관과 함께 10년차, 15년차 등 다양한 경력의 법관을 선발하게 된다면 연령적인 측면에서 법관의 다양화, 즉 여러 세대를 대표할 수 있는 법관의 다양화로 발전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최근 사법부에서 법원조직법의 개정을 추진한 것은 법조일원화 제도를 경력법관제로 되돌리기 위한 것이 아닌, 현재 우리의 상황에서 더 적합한 법조일원화 제도를 정착하기 위한 노력으로 이해해주셨으면 합니다.

11. 해사법원 설치여부, 설치지역, 해사민사사건의 사건관할에 대한 각 견해

○ 해사사건은 전문성, 신속성 및 국제성이라는 성격을 띠고 있는바, 해사사건의 적정한 처리를 위하여 체계적인 전문성을 갖춘 해사법원의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21대 국회에서 해사법원의 설치와 관련하여 법원 설치지역을 인천, 부산, 서울 등으로 하는 법률안이 발의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해사법원의 설치와 관련하여서는 해사사건의 전문적이고 신속한 법률서비스 제공과 국제해사사건의 유치로 인한 소송비용 등의 해외 유출 방지를 근거로 이를 긍정하는 견해와, 해사사건의 수가 별도의 법원을 설치할 정도로 많지 않은 점, 사건 수에 비하여 별도의 해사법원이라는 인적·물적 조직을 갖추는데 드는 비용이 상당한 점 등을 근거로 이를 부정하는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최근까지 법원행정처 차장, 기획조정실장으로 근무하며 가정법원과 회생법원의 신설을 추진하기도 하여 전문법원의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해사법원을 설치하는 경우 국제해사사건의 유치와 해사법 관련 지식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만 전문법원의 설치는 결국 국민의 추가적인 부담이 수반될 수 있으므로, 해당 전문법원의 필요성, 효과, 관계기관과의 업무조율 등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 충분한 연구와 논의가 있어야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향후 설치될 해사법원의 구체적인 규모, 형태 및 지역 등에 대하여는, 해사법원이 담당할 구체적인 사건의 유형, 사물관할 및 심급관할의 구체적 형태, 이에 따른 예상사건 수가 먼저 확정되어야 하고, 지역균형발전과 이에 따른 국민의 사법접근성 및 비용 등에 대하여 사회 각계각층 및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최근 사법정책연구원에서 '해사법원 설치에 관한 연구'(2021)의 연구보고서를 발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보고서를 참조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2. 현재 서울, 수원, 부산에 각 회생법원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 외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한 견해

○ 2023년 전국 법원 도산사건 접수건수는 2022년 대비 대폭 증가하였고, 이 중 법인회생사건은 55%, 법인파산사건은 65%, 개인회생사건은 34%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도산절차 이용에 대한 국민의 수요가 이와 같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문법원인 회생법원은 도산사건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특히 저는 법원행정처 기조실장·차장으로 재직하면서 회생법원의 확대 설치를 중점적으로 추진하였는데, 2023. 3. 개원한 수원회생법원·부산회생법원의 경우 개원 전·후 법인회생사건 처리기간이 절반으로 단축(개시결정까지 소요기간 : 수원 개원 전 61일 ⇨ 현재 28일, 부산 개원 전 97일 ⇨ 현재 45일)되는 등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채무자의 신속한 갱생과 회복을 돕고 도산사건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 제22대 국회에서도 회생법원 추가설치를 위하여 각급법원설치법과 채무자회생법 개정안이 발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민형배의원등: 대전/대구/광주, 주호영의원등: 대구).

○ 회생법원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개인과 기업의 재기를 돕고, 나아가 국가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도 기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

다. 이러한 역할이 전국적으로 균등하게 수행되기 위하여 도산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인프라인 회생법원이 확대 설치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아직 회생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고등법원 권역(광주, 대구, 대전)에 설치를 추진하여 도산사법서비스의 지역적 편차를 완화하고, 보다 많은 국민들이 전문법원에서 신속히 재기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13. 회생법원의 사건 수 대비 법관과 회생위원 등 관련 직원 증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

○ 코로나 19 이후 경제침체 및 물가상승의 영향으로 작년 개인회생 사건의 접수건수가 전년 대비 34% 증가하는 등 도산절차 이용에 대한 국민의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도산 사법절차를 통해 채무자-채권자 간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개인과 기업이 신속하게 재기하도록 하는 것은 국가경제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도산사건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도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후보자는 작년 5월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근무할 당시, [신속한 도산절차 진행을 위한 종합대책팀]의 TF 팀장을 맡아, 도산사건의 증가추이 및 처리상황을 점검하였고, 도산사건의 신속·적정한 처리를 위한 인적·물적·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 구체적으로는 회생위원 등 개인도산사건을 담당하는 인력을 증원하였고, 수원·부산회생법원 개원을 계기로 권역별로 균등하고 전문적인 도산사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서울·수원·부산회생법원이 참여하는 '회생법원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였습니다(2024. 7. 현재 3차 회의까지 진행).

○ 서울·수원·부산회생법원 개원의 성과를 공유하기 위한 「수원·부산회생법원 개원1주년 기념 서울·수원·부산회생법원 공동심

포지엄」이 2024. 8. 26. 개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력의 증원에는 시설의 확충도 함께 검토되어야 하고 이에 따른 예산이 소요되므로, 서울·수원·부산회생법원 개원의 성과, 현황 및 전망 등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과 수요조사를 통해 추가적인 증원의 필요성과 범위가 검토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14.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데, 해당 청원이 국회법(제123조)과 청원법(제6조)에 따라 접수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견해

○ 국회법 제123조 및 청원법 제6조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회법

제123조(청원서의 제출)

① 국회에 청원을 하려는 자는 의원의 소개를 받거나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동의를 받아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청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지 아니한다.

1. 재판에 간섭하는 내용의 청원
2.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내용의 청원
3. 국가기밀에 관한 내용의 청원

청원법

제6조(청원 처리의 예외)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유를 청원인(제11조제3항에 따른 공동청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1. 국가기밀 또는 공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
2. 감사·수사·재판·행정심판·조정·중재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조사·불복 또는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3. 허위의 사실로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하는 사항
4. 허위의 사실로 국가기관 등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사항
5.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6. 청원인의 성명, 주소 등이 불분명하거나 청원내용이 불명확한 사항

○ 이와 같은 법률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일반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 외에 대법관 후보자로서 이에 관하여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면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최근 사회 여러분야에서 'AI'(인공지능 시스템)이 도입되고 있고 일부 대형로펌에서도 초기 단계 'AI'를 도입하는 등 확대되는 분위기이고, 지난 1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취임사에서 "재판 지연 해소에 AI를 활용하겠다"고 밝혔는데, 재판에 AI를 도입하는 것에 대한 견해

○ 인공지능과 관련하여 여러 문제들, 즉 학습데이터의 편견으로 인해 편향된 알고리즘이 생성되는 '데이터 편향성', 거짓 정보를 마치 사실인 것처럼 생성하는 '환각현상', 알고리즘의 작동원리를 설명할 수 없는 '블랙박스', 대량의 데이터 학습과정에서 '개인정보 수집 우려'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 법관은 재판연구원의 보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판 및 판결서 작성 과정 전체를 혼자 수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하여 관련 법률과 판례를 검색하고, 간단한 사건의 판결문 작성 보조로 AI를 활용한다면, 업무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다만, 앞서 언급한 여러 문제들로 인해 AI가 도출한 결과물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이미 유럽과 주요국에서는 사법의 영역에서 인공지능 사용에 있어 준수해야 할 법적·윤리적 기준 등을 논의하여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기준이 있어야 인공지능 활용에서 생길 수 있는 여러 법적·윤리적 문제를 판단할 수 있고, 그 결과물에 대해 신뢰할 수도 있게 됩니다.

○ 사법부에서도 그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최근 발족한 사법정책자문위원회 회부 안건에 ‘사법절차에서의 인공지능 활용과 그 법적·윤리적 기준’을 포함시켰고, ‘재판지원을 위한 인공지능 활용 방안’을 논하기 전에 전자에 대해 우선적인 기준을 마련키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 논의를 통해 우리 사법부의 인공지능 활용을 위한 기준이 적절하게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6. 최근 일부에서 상법 제622조의 특별배임죄에 대한 완화 또는 폐지 필요성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

○ 상법 제622조의 특별배임죄는 '회사'라고 하는 특정 대상을 전제로 입법된 것으로 그 행위 주체를 '이사 등'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의 종류를 묻지 않고, 행위주체에 제한 없이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형법 제356조의 업무상 배임죄와 구별됩니다.

○ 특별배임죄의 폐지 논의는, 이미 형법에 업무상 배임죄가 규정되어 있고, 그 이득액에 따라 특정경제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가중처벌이 되고 있어 그 필요성이 크지 않은데, 비교법적으로 미국, 영국은 배임죄 처벌 규정 없이 민사상 손해배상 또는 사기죄로 다루고, 독일도 형법상 일반 배임죄만 두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우리나라도 배임죄 처벌을 단계적으로 줄여가자는 취지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 기본적으로 특별배임죄의 폐지 논의는 법조계와 학계 등 전문가의 의견, 해외 사례와 국민의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회에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 다만 이 문제는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에 대해서까지 확대하려는 상법 개정의 추진과 함께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지배주주가 부당하게 소수주주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되 상법의 다른 법리와 조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학계 및 사회의 각 전문가들이 깊이 있는 토론과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7. 현재 중대재해처벌법 사건은 법원조직법 제32조에서 합의재판부 담당 예외 사건으로 규정하여 단독재판부 관할로 두고 있고 재정합의에 따라 합의부가 재판할 수도 있게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 다수 희생자가 발생하고 사회적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합의부에서 심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

○ 2022년부터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합니다)」은 사업주 등이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이를 처벌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 「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 제3호는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하여 합의부 관할로 규정하면서, 아.목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항 및 제1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건'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우 다수 희생자가 발생하고 사회적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합의부에서 심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법률이 시행된지 3년이 되지 않은 초기 단계로 관련되는 여러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위 아.목을 삭제하여 원칙적으로 합의부 관할 사건으로 둘 것인지 여부의 문제는, 법률의 시행경과에 따라 축적되는 사건 수, 양형 및 판결례와 이와 함께 진행되는 연구를 토대로 국민적 합의를 거쳐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18. 사법부의 현재 가장 시급한 현안, 이유

○ 사법부는 재판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기관입니다. 그러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최근 재판지연 현상에 대해 국민의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신속한 재판을 구현하기 위해서 우선 재판지연의 원인을 정확히 분석하고, 인적·물적 자원이 확충되기 전에라도 재판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재판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올해부터 법관 사무분담을 장기화하고, 법원장이 직접 재판을 담당하며, 판결서 작성방식을 사건 난이도에 따라 적정화하여 사건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또한 이를 위하여 법관 및 재판연구원 증원 등 인적 여건의 확충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법관증원에 관해서는 21대 국회에서 법관증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무척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법부 구성원은 물론이고 여, 야 가릴 것 없이 모두 법관 증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22대 국회에서는 조속하게 법관증원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아울러 법조일원화가 시행된 지 10년이 되었는바, 풍부한 경력과 실력을 갖춘 법조인이 법관으로 임용되고, 임용된 법관이 열정과 사명감을 가지고 재판에 임할 수 있도록 법관 인사제도 개선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고민을 해야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 최근 대법원장 자문기구인 사법정책자문위원회에서도 관련하여 법관인사제도 및 재판절차 개선을 위한 논의에 착수하였고, 2024. 7. 16.자 회의 결과 '법관임용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법원조직법 개정을 통해 5년 이상 법조경력자를 법관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면서, 재판장이 되기 위한 요건은 법조경력 10년 이상으로 강화하여 법조일원화의 목적과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건의 내용을 잘 반영하여 법관임용제도를 개선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구현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박준태 위원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

《박준태 위원 서면질의》

1. 대법관이 갖추어야 할 능력과 자질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대법관으로서 가장 중요한 능력과 자질은 사람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에 따라 대법관에게는 헌법적 가치에 대한 수호 의지, 함께 살아가는 시민들에 대한 애정, 소수자 보호에 대한 신념,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포용하고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균형 감각 그리고 최종심급 담당자로서 시대적 요구와 가치를 반영하는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통찰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 대법관이 된다면 중점적으로 추진할 과제는?

○ 사법부는 재판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기관입니다. 그러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최근 재판지연 현상에 대해 국민의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신속한 재판을 구현하기 위해서 우선 재판지연의 원인을 정확히 분석하고, 인적·물적 자원이 확충되기 전에라도 재판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재판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올해부터 법관 사무분담을 장기화하고, 법원장이 직접 재판을 담당하며, 판결서 작성방식을 사건 난이도에 따라 적정화하여 사건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또한 이를 위하여 법관 및 재판연구원 증원 등 인적 여건의 확충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법관증원에 관해서는 21대 국회에서 법관증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무척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법부 구성원은 물론이고 여, 야 가릴 것 없이 모두 법관 증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22대 국회에서는 조속하게 법관증원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아울러 법조일원화가 시행된 지 10년이 되었는바, 풍부한 경력과 실력을 갖춘 법조인이 법관으로 임용되고, 임용된 법관이 열정과 사명감을 가지고 재판에 임할 수 있도록 법관 인사제도 개선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고민을 해야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 최근 대법원장 자문기구인 사법정책자문위원회에서도 관련하여 법관인사제도 및 재판절차 개선을 위한 논의에 착수하였고, 2024. 7. 16.자 회의 결과 '법관임용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법원조직법 개정을 통해 5년 이상 법조경력자를 법관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면서, 재판장이 되기 위한 요건은 법조경력 10년 이상으로 강화하여 법조일원화의 목적과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건의 내용을 잘 반영하여 법관임용제도를 개선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구현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3. 신속한 권리구제와 법적 안정성 확보를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 사법부는 재판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기관입니다. 그러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현재의 재판지연으로 신속한 권리구제가 지연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를 포함한 사법부의 구성원 모두가 매우 무겁게 받아드리고, 그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여러 방면에 걸친 다양한 재판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올해부터 사무분담을 장기화하여 1심을 전문화하고, 사법행정을 담당하는 법원장이 일정 부분 본안재판을 담당하는 것도 재판지연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나라 법관의 업무 부담이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과도한 상황에서 근본적으로는 법관 및 재판연구원 증원 등 인적 여건의 확충이 절실합니다.

○ 또한 법원은 재판을 통하여 법을 해석하여 적용하는 기관으로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보장하며 법적 안정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법적 안정성의 확보를 위해서는 다른 권력으로부터 독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관들이 소신을 가지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도록, 국민으로부터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여 법관 인사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등 재판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행정부 등 외부로부터의 불필요한 영향을 받지 않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사법부 등 헌법기관에 독립적인 예산안 편성권을 부여하는 것도 재판의 독립, 나아가 법적안정성의 확보를 위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4. 법원장 후보추천제 도입에 대한 평가와 개선점은?

○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대법원장의 인사권 행사에 있어 법관들의 의사를 반영하려는 목적에서 실시되어 사법행정의 투명성과 민주성 제고에 기여한 면이 있습니다. 한편, 법원장 보임이 인기투표에 의해 이루어지고, 그에 따라 법원장이 소극적인 사법행정을 하게 되며, 법관 외 법원 구성원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는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 합리적인 보임제도에 대해 법원행정처에서 연구·검토를 하고 있고, 사법정책자문위원회의 안건으로도 회부되는 등 의견수렴 절차도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모든 제도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몇 년 간 시행한 법원장 후보 추천제의 장점과 단점을 잘 분석하여 바람직한 법원장 보임제도를 새롭게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5. 사법질서 확립에 대한 후보자의 원칙과 소신은?

○ 사법질서의 확립은 헌법상 법치주의 원칙의 구현을 통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치주의는 법의 지배 즉, 국민의 대표가 사회적 합의를 통해 만든 법에 의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보장되고 국가권력이 작동하는 헌법상 원리입니다.

○ 우리 헌법에서 법치주의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국민의 기본권 보장, 법률유보의 원칙, 죄형법정주의, 영장주의, 적법절차 원칙, 삼권분립의 원칙 등은 모두 법치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헌법상 기본원리입니다.

○ 특히, 단순히 법의 존재와 적용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닌, 법의 내용과 그 적용의 결과가 실질적으로 정의롭고 공정할 것을 요구하는 실질적 법치주의의 실현은 사법부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법부는 단순히 형식적 평등에 그치지 말고 사회적·경제적 약자와 소수자들을 배려하고 이들의 절차적 기본권이 충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아울러 다양한 가치관과 이해관계가 얽힌 법률 분쟁에서 법원이 외부적인 영향을 받지 않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을 하여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법치주의와 사법질서를 확립할 수 있다는 점도 늘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6. 법관의 거짓말은 일반 국민보다 더 무겁고 엄중히 다뤄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법관은 법정에서 뿐만 아니라 법정 외의 장소에서도 일반 국민보다 높은 윤리의식이 요구됩니다.

○ 이와 같은 일반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 외에 대법관 후보자로서 가정적인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면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역대 대법원장 중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못했던 사례와 이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과 견해는?

○ 대법원은 그간 외부세력이나 여론의 압력 등에 흔들림 없이 공정한 판결을 내리기 위해 치열하게 노력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대법관 후보자로서 역대 대법원장에 대한 직접적인 평가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후보자의 신념과 가치관의 배경이 되는 법언은?

○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in dubio pro reo)가 떠오릅니다. 형법 강의에서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기초적인 법언이면서도, 실제 형사재판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중요한 법언이기도 합니다.

○ 우리나라 헌법(제27조 제4항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과 세계인권선언(제11조 제1항 "모든 형사피의자는 자신의 변호에 필요한 모든 것이 보장된 공개 재판에서 법률에 따라 유죄로 입증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받을 권리를 가진다.")은 물론이고 대부분 국가에서 형사법의 대원칙으로 자리잡은 무죄추정 원칙을 법관의 입장에서 재판에 반영하는 데 실질적인 역할을 하는 법언입니다.

○ 특히 대부분 유죄판결이 내려지는 형사재판 현실에서 증거에 기초하지 않고 쉽게 유죄심증을 가지게 되는 것에 대한 경각심을 주는 간단하면서도 명료한 법언입니다. 저도 형사재판을 하면서 이 법언에 따라 피고인에게 억울한 사정이 없는지 다시 한 번 살펴보기도 하였습니다.

9. 후보자가 법관으로 재직하며 내린 판결 중 후회나 아쉬움이 남는 판결은? 있다면, 그 사유는 무엇인지?

○ 가장 아쉬웠던 판결로 특별히 기억이 나는 사건은 다행히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가장 판결 내리기 어려웠던 사건으로는 부산고등법원에서 담당하였던 '발달장애인의 영아 투기 살인 사건'이 기억납니다.

○ 1세에 불과한 어린 피해자를 난간 아래로 집어던져 살해하였다는 사실로 발달장애 1급의 18세 피고인이 기소가 되었던 사건입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심신상실 상태를 인정하여 무죄판결을 하고, 치료를 받을 필요와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치료감호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항소심 재판장으로서 관여하였던 저는 결과의 참담함과 자신의 행위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발달장애인인 피고인의 특성 사이에서 깊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무죄판결은 유지하고, 항소심에서의 추가적인 감정결과 등을 종합하며 치료감호는 받아들였습니다. 정신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처우에 대해 우리 사회가 깊이 고민해야 할 숙제를 던져준 사건이었습니다.

10. 소송비용 패소자 부담주의 원칙으로 공익소송의 활성화가 어려움. 후보자가 대법관이 된다면 예외를 인정하는 판례를 만들 의지가 있는지?

○ 공익소송에서도 민사소송법상 소송비용 패소자 부담주의가 그대로 적용된다면 공익소송이 활성화되기 어렵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원고에게 가혹한 결과가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수긍이 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 소송비용 패소자부담주의는 무분별한 소송 제기를 방지하고, 소송의 유형을 불문하고 정당하게 응소하여 승소한 당사자로 하여금 자신이 지출한 소송비용을 보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예외적으로 승소한 당사자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99조, 제100조). 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이와 같은 법률과 원칙에 따라 판단하겠습니다.

○ 이와 같은 점을 염두에 두고, 공익소송에 대한 편면적 패소자 부담주의 도입, 공익소송에서 국가의 소송비용 부담 제도, 정보공개소송 소가 하향 등 현재 논의되는 개선 방안은 현행 법 체계 및 실무와의 정합성, 공익소송의 개념과 효과 등 여러 쟁점에 대한 면밀한 검토 이후 입법정책적으로 결정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11. 헌법 제53조에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규정하고 있음. 이 규정에 담긴 의미와 헌법정신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대한민국 헌법 제53조 제1, 2항은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 대통령은 해당 법률안에 대하여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대통령으로 하여금 의회의 의결권 행사에 제동을 가할 수 있게 함으로써 상호 견제와 균형을 도모하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 이와 같은 헌법 규정에 관한 일반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 외에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인 재의요구권 행사에 관하여 대법관 후보자가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면이 있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대법관 등 고위직 출신의 전관예우 논란에 관련된 입장과 견해는?

○ 전관예우가 실제 존재하는지 여부를 떠나서, 전관예우 관행이 존재한다고 믿는 국민들이 적지 않고, 이러한 인식이 사법부의 신뢰에 큰 손상을 가져오므로, 국민들의 불신이 사라질 때까지 전관예우 의혹 해소에 더욱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고위 공직 퇴임 법관이 퇴임 후 바로 대형로펌에 들어가는 것은 전관예우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고려할 때 사법부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절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13. 재판 지연현상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실현방안에 대한 견해는?

○ 사법부는 재판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기관입니다. 그러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재의 재판지연 문제에 대해서는 저를 포함한 사법부의 구성원 모두가 매우 무겁게 받아드리고, 그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다만 재판지연의 원인은 법원 내외부의 다양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고 어느 한가지의 원인을 주요원인으로 꼽기는 어렵습니다. 법관의 고령화, 사건의 복잡화, 법관 수의 부족, 일과 가정의 균형을 추구하는 사회의 변화 등도 원인이라 할 수 있고, 거기에다가 최근 코로나 사태도 재판지연 현상을 심화시켰다고 생각합니다.

○ 기본적으로 법관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정성을 다해야 하고, 이러한 소명을 다하기 위해 어느 정도 자신의 자유시간도 희생하려는 자세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관의 사명감만을 강조하여 개인의 희생을 강요할 수는 없고, 근본적인 해결책도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우리가 처한 상황에 맞는 제도개선이 전반적으로 이루어져야 재판지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여러 방면에 걸친 다양한 재판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올해부터 사무분담을 장기화하여 1심

을 전문화하고, 사법행정을 담당하는 법원장이 일정 부분 본안재판을 담당하는 것도 재판지연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우리나라 법관의 업무 부담이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과도한 상황에서 근본적으로는 법관 및 재판연구원 증원 등 인적 여건의 확충이 절실합니다. 법관증원에 관해서는 21대 국회에서 법관증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무척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법부 구성원은 물론이고 여, 야 가릴 것 없이 모두 법관 증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22대 국회에서는 조속하게 법관증원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14. 법관 증원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지난 21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폐기되었음.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구술심리주의와 공판중심주의의 강화 및 다수 당사자 사건 등의 증가로 판사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이러한 업무 부담의 가중은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는데 장해요소가 되어 재판지연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학대나 성폭력범죄 등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각종 제도들의 시행으로 법원의 후견적 역할에 대한 요청이 높아지고 있는바, 변화하는 사법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충분한 심리와 신속한 재판을 통하여 국민들에게 더 나은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적정한 규모의 법관 증원이 필수적입니다.

○ 법관증원에 관해서는 21대 국회에서 법관증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무척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법부 구성원은 물론이고 여, 야 가릴 것 없이 모두 법관 증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관의 업무 부담이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과도한 상황에서 우수한 법조인이 법관직을 지망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도 필요하고, 특히 심화된 재판지연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법관증원이 꼭 필요합니다. 22대 국회에서는 조속하게 법관증원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15. 구 '사법정책자문회의'가 사법개혁의 어떤 부분에 기여했는지?

○ 위원님이 질의하신 '구 사법정책자문회의'는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운영된 '제2기 사법정책자문위원회'를 의미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 제2기 사법정책자문위원회는 법조인 위주로 구성된 제1기 사법정책자문위원회와 달리 언론계, 학계, 경제계, 여성계, 법조계, 시민단체의 명망 있는 전문가를 위원으로 선정하는 등 그 구성을 다양화하여 국민의 다양한 시각을 균형 있게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 제2기 사법정책자문위원회는 제1기 사법정책자문위원회의 성과(전면적 법조일원화 및 평생법관제 정착을 위한 토대 마련, 가정법원의 전국적 확대 설치 등 국민의 사법접근성 강화에 기여)를 계승하여 성공적 법조일원화를 위한 법관임용 개선, 가정법원 기능 활성화, 회생법원 설치, 성공적 법조일원화를 위한 법관임용 개선 등 주목할 만한 성과를 도출하여 국민의 사법에 대한 신뢰를 한 차원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16. '사법정책자문회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시 기대효과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재판지연 심화,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신뢰지수 하락, 사법부 예산 비중의 급격한 감소 등 대내외적 상황 악화로 국민을 위한 사법부의 본질적 역할을 다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요구됨에 따라 그를 위한 자문기구 운영의 필요성이 높아졌습니다. 현 대법원장의 취임 이후 기존에 사법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였으나 입법적 근거가 없었던 '사법행정자문회의'를 중단하고, 사법행정자문회의의 성과를 계승하고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법원조직법에 규정된 '사법정책자문위원회'를 운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사법정책자문위원회는 대법원장의 자문기구로서, 사법정책과 관련된 사법제도의 개선 방안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법원장이 부의한 안건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대법원장에게 건의하는 역할을 합니다.

○ 올해 사법정책자문위원회의 안건은 크게 ① 재판절차, ② 법관인사제도, ③ 법원공무원 관련 제도, ④ 사법정보화 제도입니다. 재판절차와 관련하여서는 감정제도 개선, 복잡사건에 대한 공판중심주의의 적정한 운영, 판결서 적정화, 민사 항소심 심리모델 개선을 연구할 예정이고, 법관인사제도 관련하여 법관임용을 위한 적정 법조경력 요건 검토, 합리적인 법원장 보임제도, 법관인사이원화 제도의 정착을 위한 고법판사 제도 개선 방안, 사무분담 장기화에

따른 법관 전보인사 주기의 재편 및 유연화 방안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③ 법원공무원 제도 관련하여 사법보좌관제도 개선 및 법원일반직공무원 임용제도 개선을, ④ 사법정보화 제도 관련하여서는 사법절차에서의 인공지능 활용과 그 법적·윤리적 기준, 재판 지원을 위한 인공지능 활용 방안을 연구할 예정입니다.

○ 사법정책자문위원회가 적정하게 운영이 되면, 이와 같은 주요 사법현안에 대하여 내외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대법원장이 사법행정의 방향을 올바르게 수립할 수 있고, 그 과정이 국민들에게 공개되어 사법행정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더욱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됩니다.

17. 대법관 또한 법관징계법상 징계 대상자라고 보는지? 아니라면 대법관이 공직자의 품위유지를 위반하면 어떤 근거로 조치하는지?

○ 대한민국 헌법 제106조 제1항은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관징계법은 징계 대상을 ‘법관’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 법관에 대법관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한편, 법원조직법 제5조 1항은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판사로 한다’고 규정해 대법관과 일반 법관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법관징계법의 징계 대상은 ‘법관’이고 ‘대법관’은 배제하고 있지 않으므로 대법관도 징계 대상이 된다는 견해가 있고, 대법관은 별도의 임명절차를 거쳐서 임명이 되고, 법관징계법상 법관에 대한 징계청구권자에 대법관이 규정이 되어 있다는 이유로 대법관은 징계 대상이 아니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 이와 같은 법률 규정에 관한 일반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 외에 대법관 후보자로서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면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 올해 대법원 판례 중 성범죄에 대한 무죄 추정의 원칙을 재강조한 판례가 나왔지만, 최근 '동탄 경찰서 CCTV 사건'처럼 무고한 인원이 가해자처럼 조사를 받는 사례가 발생함. 관련하여 후보자의 견해는?

○ 우리나라 헌법(제27조 제4항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과 세계인권선언(제11조 제1항 "모든 형사피의자는 자신의 변호에 필요한 모든 것이 보장된 공개 재판에서 법률에 따라 유죄로 입증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받을 권리를 가진다.")은 물론이고 대부분 국가에서 무죄추정의 원칙은 불리한 처지에 놓여 인권이 유린되기 쉬운 피의자나 피고인의 지위를 옹호하여 형사절차에서 불이익을 필요 최소한에 하자는 것으로 수사절차에서 공판절차에 이르기까지 형사절차의 전과정을 지배하는 원칙입니다.

○ 피해자를 보호하면서 실체진실을 발견하는 것도 형사수사절차의 중요한 목적이나, 수사하는 과정에서 무죄추정의 원칙 및 적법절차의 원칙은 준수되어야 하고, 임의수사를 원칙으로 하면서 조사대상자들의 인격과 명예가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 이와 같은 일반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 외에 대법관 후보자로서 이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건에 관하여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면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 우리나라 사법부의 신뢰도는 전체 167개국 中 146위로 이는 군, 정부, 정치권보다 하위 수준임. 사법부가 신뢰받지 못하는 사유와 개선대책은?

○ 법관의 1인으로서, 또한 최근까지 법원행정처 차장 등 사법행정업무를 담당했었던 사람으로서,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저하에 대하여 무척 가슴 아프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원인은 다양하겠지만, 이른바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국민의 법감정에 부합하지 않는 판결, 최근 심화된 재판지연 문제 등이 주요한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법원은 이른바 사법행정권 남용사태로 인해 뼈아픈 반성을 한 뒤, 기존에 각급 법원에 설치되어 있던 판사회의, 사무분담위원회 외에도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상설화, 사법행정자문회의 및 그 뒤를 이은 사법정책자문위원회 등 민주적 통제를 할 수 있는 여러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법관인사위원회,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등도 외부의 의견을 사법행정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제도들이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할 수는 없으나, 그 경험을 바탕으로 사법행정 중 어떤 분야에 어느 정도의 법관이 관여하는 것이 적절한지 연구와 논의를 지속하여 재판독립을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효율적인 사법행정을 만들어 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국민의 법감정에 부합하지 않는 판결이 많다는 지적에 대하여 사법부의 모든 구성원은 스스로를 돌아보고 더 낮고 헌신적인 자세

로 재판이라는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더 나은 재판으로 그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재판제도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국민 모두가 더 쉽고 효율적으로 사법에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사용자 위주의 전자소송 시스템 개선, 장애인 등을 위한 사법접근센터의 확충,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국민의 신속한 재기를 돕는 개인도산 전문상담센터의 확대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해 법원의 문턱을 낮추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하겠습니다.

○ 최근 재판지연 현상에 대해 국민의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신속한 재판을 구현하기 위해서 우선 재판지연의 원인을 정확히 분석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효율적인 재판제도의 개선, 이에 필요한 법관 및 재판연구원 증원 등 인적·물적 여건의 확충 방안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최근 대법원장 자문기구인 사법정책자문위원회에서도 관련하여 법관인사제도 및 재판절차 개선을 위한 논의에 착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사법부는 재판의 공정성 및 독립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 위에서 존재할 수 있으므로, 국민의 눈높이에서 사법부를 돌아보고 사법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항상 고민하겠습니다.

20. 형사재판 중 국선변호 사건 비율이 높아지고 있지만 국선변호인에 대한 수임료 연체 등 처우와 관련해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후보자가 생각하는 국선변호사 제도 개선 방안은?

○ 법관은 양 당사자에게 균등한 주장·입증 기회를 제공하여 절차적 정의를 구현해야 하고, 동시에 공평하고 엄정한 법적용을 통해 당사자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합당한 결과를 도출해야 할 것입니다. 국선변호제도는 형사재판을 받게 된 국민들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제도입니다. 법원은 국선변호제도를 시행한 뒤 질적·양적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 왔고, 국선변호사 제도에 대한 피고인들의 만족도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런데 최근 국선변호 선정건수의 급격한 증가에도 관련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각급 법원별로 국선변호인에 대한 수임료 연체 등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사건의 난이도가 높아지고 업무량이 과중해 지는데도 보수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국선전담변호사 지원자는 매년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우수한 국선변호인을 유치하고 실질적인 무기평등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보수를 포함한 국선변호인에 대한 처우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취지에 적극 공감합니다.

○ 이를 위하여 일반국선변호인의 1건 당 기본보수가 현실화 되어야 하고, 국선전담변호인의 월보수액도 증액되어야 할 것입니다. 법

원은 이를 위하여 일반국선변호인의 기본보수를 2022년 사건당 45만 원에서 2024년에는 55만 원까지 증액한 바 있고, 국선전담변호인의 월 보수액 증액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러나 여전히 피고인의 충실한 방어권 보장과 이를 위한 우수 국선변호인 확보를 위한 국선변호인에 대한 처우가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국선변호인 보수 현실화 및 처우의 개선에 관하여 국회에서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1. 대법원 판결 이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장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 구체적 사건에서 판결이 확정된 이후 새로운 사실관계가 발견되면, 형사사건에서는 형사소송법 제420조에서 정하는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민사사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451조에서 정하는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각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단 형사사건에서, 현행 형사소송법 제420조에서는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서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이익재심만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재심제도를 어떻게 설계할지 여부는 피고인의 신체의 자유, 법적 안정성, 실체적 진실발견 및 피해자의 인권보호 등 여러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각국의 입법례, 운영 현황, 우리나라의 상황 등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거쳐 결정되어야 하며, 불이익재심을 도입한다 하더라도 재심 사유 등을 제한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2. 지난 '95년 대대적인 비자금 수사 이후, '97년 대법원 판결까지 거쳐 전두환/노태우에 대한 비자금 관련 뇌물죄가 확정되었음. 그런데, 23년 전두환 전 대통령 손자인 전우원씨가 폭로한 전두환 비자금에 이어, 이번 최태원-노소영 재판을 통해서도 새롭게 노태우 전 대통령의 안방 비자금이 드러나, 당시 비자금에 관한 수사/판결이 충분했던 것인지 비판이 일고 있음. 대법원 판결 이후 범죄 수익금인 비자금이 새롭게 밝혀진 경우 법에 따라 준엄한 심판을 내리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 명확한 기준을 세워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 위원님의 질의는 이미 뇌물죄가 확정된 사건에 관하여 추가적인 뇌물로 비자금 축적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 피고인에게 불리한 재심이 가능한지, 또는 다시 수사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시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 먼저 재심과 관련하여 서면질의 21번에서 답변드린바와 같이 현행 형사소송법 제420조에서는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서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이익재심만을 허용하고 있고, 불이익재심의 허용 여부는 입법정책적 결정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 다음으로 새로운 사실관계에 대하여 수사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해당 혐의의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았고, 죄수

관계상 별개의 범죄를 구성하여야 한다는 답변을 드리는 것 외에, 대법관 후보자로서 구체적인 사안과 관련하여 더이상의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면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 심급별 널뛰기 판결 문제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심급별로 판결 결과가 다르게 나오는 상황에 대하여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각 재판부별로 판단의 기준이 자의적이어서라고 보기는 어렵고, 심급에 따라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거나, 기존의 증거를 달리 평가하여 사실관계의 인정이 달라져서 발생할 수 있고, 법률에 대한 법적 해석이 달라져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으며, 형사사건의 양형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합의 하는 등의 사정변경으로 인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 다만 법원도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예측가능성과 법적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고, 이를 위하여 자의적인 편차를 줄이고, 재판 실무를 개선하기 위하여 부단하게 노력해 왔습니다. 법관들에 대한 교육 및 사무분담별 법관들의 간담회 등을 통하여 심리 방법과 심리 기준 등을 함께 연구하고 토론하며 그 성과를 공유하고, 이와 같은 성과를 담은 실무제요 등을 편찬하여 법관들에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 나아가 대법원은 최고법원으로서 대한민국 헌법이 정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헌법이념과 원리에 입각하여 법령을 통일적으로 해석 · 적용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특히 형사사건에서 양형의 편차가 크다는 지적이 있어 국민의 건

전한 상식을 반영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을 실현하기 양형기준을 마련하였고, 그동안 국민의 법 감정에 부합하는 양형, 객관적이고 예측가능성 있는 양형을 실현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양형기준 설정 이후에도 급변하는 사회적·경제적 질서, 다양화·고도화되는 범행 양상, 변화하는 국민들의 의식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수정이 필요한 부분을 발굴하고 법률전문가와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4. 2018년 해군 미투 판결(1심 징역 10년, 2심 무죄), 2019년 전남 지역 군수 3명 선거법 위반 판결(3명 모두 1,2심에서 당선무효형 판단이 모두 달라짐) 등 동일한 사실관계를 두고 심급별 널뛰기 판결로 인해 국민 혼란 초래함. 특히, 가사사건의 경우 재산분할의 핵심요소인 재산분할대상, 기여도는 가사 비송사건에 해당하여 판사의 재량에 따라 1심과 2심이 큰 차이를 보여 '원님재판'이라는 비판 있음. 법적 기준 마련이 시급해 보이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 서면질의 23번에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예측가능성과 법적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법원도 이와 같은 지적이 있음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 심급별로 결론에서 차이가 나는 원인은 새로운 증거의 발견, 사정변경 등 다양하지만, 사법부는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을 실현하기 양형기준을 마련하는 등 기준 설정이 가능한 부분에 있어서는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공유하였고, 그 외에도 법관들에 대한 교육, 토론 등을 통해 혹시 있을 수 있는 자의적인 편차를 줄이고, 재판 실무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5. 간첩죄 적용 관련 친소관계 구분 적용해야 한다는 발언으로 논란이 된 바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지?

○ 형법 제98조는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 및 “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를 간첩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형법 제98조 제1항의 간첩이라 함은 적국을 위하여 적국의 지령, 사주 기타 의사의 연락 하에 군사상의 기밀사항 또는 도서물건을 탐지·수집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대법원 1975. 9. 23. 선고 75도1773 판결)”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 당시 21대 국회에서는 국회에서는 ‘적국’에 대한 간첩행위만을 처벌 대상으로 하는 기존 형법에 관하여, ‘외국과 외국인 단체’에 대한 기밀 누설도 군사기밀보호법위반죄, 산업기술보호법위반죄, 방위산업기술보호법위반죄가 아닌 ‘간첩죄’로 처벌하고자 하는 형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었습니다.

○ 저는 법원행정처 차장으로서 해당 법률안에 대한 법원행정처의 입장을 개진하였는데, 당시 제 발언의 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간첩죄에 있어서 ‘국가기밀’은 판례상 그 범위가 상당히 넓게 인정됩니다. 이는 현재 휴전 중인 북한이라는 ‘적국’이 분명히 존재하고 남북 간의 정보 교류가 엄격하게 통제되고 있는 현실에서, 북한으로 정보 유출은 그 정보의 성격을 크게 따지지 않고 광범위하게 통제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유출행위의 가벌성에 대하여도 어느 정도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있기 때문입니다.

○ 그런데 간첩죄의 대상국을 외국 또는 외국인 단체까지 확장하는 경우, 우방국·동맹국 또는 이에 준하는 외국에 제공해도 되는 정보와 적국·준적국 또는 이에 준하는 외국에 제공해도 되는 정보의 종류에는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 또는 외국인 단체에 대한 간첩죄를 적국에 대한 간첩죄와 동일한 형태로 신설하여 북한과의 관계에서 폭넓게 정의되던 국가기밀의 개념을 외국 또는 외국인 단체 관련 행위에도 적용한다면, 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확장되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거나, 어떠한 정보가 유출되어서는 안 되는지 불분명하여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이 점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 후보자는 간첩죄 관련 형법 개정안에 대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국회에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같은 행위에 대하여 간첩죄는 물론 군사기밀보호법위반, 산업기술보호법위반, 방위산업기술보호법위반에도 해당될 여지가 있고, 그러한 경우에 각각의 적용법조상 법정형에 불균형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하여도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6. 주요 국보법 사건들 모두 1년 이상 재판 중. 재판부 기피신청 등 재판 지연전략과 관련해 형소법 제20조의 적용 및 해당 조항이 규정하는 '명백한 소송 지연 목적'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국가보안법 사건에서 잦은 기피신청, 국민참여재판 신청, 재판장 고발 등으로 인하여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을 잘 알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권리행사는 법률에 근거한 것이나, 재판 지연의 수단으로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소송관계인이 절차적 권리 행사를 명목으로 절차 지연을 도모하는 것이 명백하다면, 법원으로서는 소송지휘권을 적절히 행사하여 이를 방지할 책무가 있습니다. 예컨대 기피신청이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법원 또는 법관이 이를 결정으로 기각(간이기각)할 수 있는데, 이를 적극 활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 다만 '명백한 소송 지연 목적'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재판 진행 상황, 기피신청의 사유 및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담당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항에 해당합니다.

조배숙 위원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

《조배숙 위원 서면질의》

1. 대법관의 가장 중요한 덕목과 자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 대법관으로서 가장 중요한 능력과 자질은 사람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에 따라 대법관에게는 헌법적 가치에 대한 수호 의지, 함께 살아가는 시민들에 대한 애정, 소수자 보호에 대한 신념,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포용하고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균형 감각 그리고 최종심급 담당자로서 시대적 요구와 가치를 반영하는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통찰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 대법원장이 된다면 앞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할 과제는?

○ 사법부는 재판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기관입니다. 그러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최근 재판지연 현상에 대해 국민의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신속한 재판을 구현하기 위해서 우선 재판지연의 원인을 정확히 분석하고, 인적·물적 자원이 확충되기 전에라도 재판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재판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올해부터 법관 사무분담을 장기화하고, 법원장이 직접 재판을 담당하며, 판결서 작성방식을 사건 난이도에 따라 적정화하여 사건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또한 이를 위하여 법관 및 재판연구원 증원 등 인적 여건의 확충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법관증원에 관해서는 21대 국회에서 법관증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무척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법부 구성원은 물론이고 여, 야 가릴 것 없이 모두 법관 증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22대 국회에서는 조속하게 법관증원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아울러 법조일원화가 시행된 지 10년이 되었는바, 풍부한 경력과 실력을 갖춘 법조인이 법관으로 임용되고, 임용된 법관이 열정과 사명감을 가지고 재판에 임할 수 있도록 법관 인사제도 개선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고민을 해야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 최근 대법원장 자문기구인 사법정책자문위원회에서도 관련하여 법관인사제도 및 재판절차 개선을 위한 논의에 착수하였고, 2024. 7. 16.자 회의 결과 '법관임용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법원조직법 개정을 통해 5년 이상 법조경력자를 법관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면서, 재판장이 되기 위한 요건은 법조경력 10년 이상으로 강화하여 법조일원화의 목적과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건의 내용을 잘 반영하여 법관임용제도를 개선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구현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3. 후보자가 판결한 사건 중 가장 기억에 남는 판결 3건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재직 시,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사업부문별 근로자 수의 차이가 큰데도 각 사업부문을 선거구로 하여 같은 수의 근로자위원을 선출한 선거가 무효라고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노사협의회에 근로자위원의 선출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자율적으로 정할 재량이 있더라도, 그 재량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헌법상 권리가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헌법상의 평등 원칙은 노사협의회의 선거구 획정에 있어서도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 서울고등법원에서 근로자가 파면처분의 무효를 구한 사건이 있었는데, 파면처분 이후 이미 정년 도래로 당연 퇴직되어 파면처분의 무효를 구할 이익이 있는지가 선결 쟁점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파면처분 이후 당사자의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대한 구제신청,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한 재심신청이 각 기각되고, 위 재심판정에 대한 행정소송도 이미 기각 확정되어 많은 고민을 하였으나, 1심과 달리 파면처분에 대해 제기한 무효확인청구소송 중 정년이 도래하였다고 하더라도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퇴직급여 등이 감액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면 징계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보았고, 나아가 징계 재심 절차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협약에서 정한 재심의결기한을 경과하여 근로자의 정년이 도래하기까지 재심의결을 하지 않았다면 당초 징계처분은 무효가 된다고 판결하였

습니다. 근로자의 권익을 보장한 판결로 기억에 남는 사건입니다.

○ 부산고등법원에서 담당하였던 ‘발달장애인의 영아 투기 살인 사건’이 가장 판결 내리기 어려웠던 사건으로 기억이 납니다. 1세에 불과한 어린 피해자를 난간 아래로 집어던져 살해하였다는 사실로 발달장애 1급의 18세 피고인이 기소가 되었던 사건입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심신상실 상태를 인정하여 무죄판결을 하고, 치료를 받을 필요와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치료감호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항소심 재판장으로서 관여하였던 저는 결과의 참담함과 자신의 행위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발달장애인인 피고인의 특성 사이에서 깊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무죄판결은 유지하고, 항소심에서의 추가적인 감정결과 등을 종합하며 치료감호는 받아들였습니다. 정신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처우에 대해 우리 사회가 깊이 고민해야 할 숙제를 던져준 사건이었습니다.

4. 국민들의 사법부 불신에 대한 이유와 후보자가 생각하는 개선 방안은?

○ 최근까지 법원행정처 차장 등 사법행정업무를 담당했었던 사람으로서,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저하에 대하여 무척 가슴 아프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원인은 다양하겠지만, 이른바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국민의 법감정에 부합하지 않는 판결, 최근 심화된 재판지연 문제 등이 주요한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법원은 이른바 사법행정권 남용사태로 인해 뼈아픈 반성을 한 뒤, 기존에 각급 법원에 설치되어 있던 판사회의, 사무분담위원회 외에도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상설화, 사법행정자문회의 및 그 뒤를 이은 사법정책자문위원회 등 민주적 통제를 할 수 있는 여러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법관인사위원회,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등도 외부의 의견을 사법행정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제도들이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할 수는 없으나, 그 경험을 바탕으로 사법행정 중 어떤 분야에 어느 정도의 법관이 관여하는 것이 적절한지 연구와 논의를 지속하여 재판독립을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효율적인 사법행정을 만들어 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국민의 법감정에 부합하지 않는 판결이 많다는 지적에 대하여 사법부의 모든 구성원은 스스로를 돌아보고 더 낮고 헌신적인 자세로 재판이라는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더 나은 재판으로 그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재판제도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국민 모두가 더 쉽고 효율적으로 사법에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사용자 위주의 전자소송 시스템 개선, 장애인 등을 위한 사법접근센터의 확충,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국민의 신속한 재기를 돕는 개인도산 전문상담센터의 확대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해 법원의 문턱을 낮추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하겠습니다.

○ 최근 재판지연 현상에 대해 국민의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신속한 재판을 구현하기 위해서 우선 재판지연의 원인을 정확히 분석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효율적인 재판제도의 개선, 이에 필요한 법관 및 재판연구원 증원 등 인적·물적 여건의 확충 방안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최근 대법원장 자문기구인 사법정책자문위원회에서도 관련하여 법관인사제도 및 재판절차 개선을 위한 논의에 착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사법부는 재판의 공정성 및 독립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 위에서 존재할 수 있으므로, 국민의 눈높이에서 사법부를 돌아보고 사법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항상 고민하겠습니다.

5. 법조계 전관예우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이러한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 전관예우 관행이 존재한다고 믿는 국민들이 적지 않고,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를 떠나, 재판은 실체와 외관 모두 공정해야 하므로, 이러한 국민들의 우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법원은 부단히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 정원 외 법관으로서 원로법관제도 도입 및 법관의 직무환경 개선 등을 통해 법관이 정년에 이르기까지 근무하는 평생법관제도가 정착되어, 전관변호사의 발생을 근본적으로 차단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더불어 재판과정 및 결과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형사사건에 있어서는 법정 외 변론 금지, 수임 제한, 연고관계 재배당, 회피제도 활성화 등이 전관예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기준을 토대로 공정하고 적정한 양형을 하고, 국민참여재판, 불구속 재판과 국선변호를 적절하게 확대해 나가 국민들에게 재판 과정과 결과에 대하여 정확하게 설명하고 그에 대한 이해를 구하는 데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6. 대법원장으로 임명된다면 퇴임 후 거취에 대한 견해는?

○ 사법부 독립과 공정한 재판에 대한 오해를 받지 않도록 저는 퇴직한 이후에는 영리 업무에 종사하지 않고 공익적인 활동을 하고 싶습니다.

7. 존엄사에 대한 입장과 그 이유는 무엇인지?

○ 존엄사는 환자가 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르렀을 때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하고 질병에 의한 자연적 죽음을 받아들임으로써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품위를 지키면서 죽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안락사는 인위적인 행위에 의하여 죽음을 맞이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죽음의 시기를 앞당기는 적극적 안락사와 생명유지에 필요한 약물투여 등을 중단함으로써 죽음에 이르게 하는 소극적 안락사로 구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적극적 안락사가 허용될 수 없다는 점에 관해서는 대체로 동의하지만, 존엄사나 소극적 안락사의 인정 여부에 관해서는 윤리적·종교적·법적·의학적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찬반양론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 존엄사와 관련하여 대법원이 무의미한 연명치료 장치 제거 등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는데, 후보자는 대법원 판결과 같이 엄격한 요건을 전제로 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른 환자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 기초하여 죽음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8. 사형제 존폐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사형제에 관하여 찬·반 양론이 대립하고 있고, 양 주장 나름대로 타당한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다만 법정형에 사형이 존치되고 있는 현 상황을 전제로 말씀드리면, 사형제도는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형벌로서 일단 집행된 경우에는 오판이라 해도 돌이킬 수가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범행에 대한 책임의 정도와 형벌의 목적에 비추어 누구라도 그것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사형이 선고되는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9. 가석방 없는 종신형제도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에 대하여는 기본적으로 국회에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 다만 가석방 없는 종신형의 도입은 사형제도의 폐지를 전제로 논의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1대 국회에서 사형제도를 존치한 채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도입하는 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석방 없는 종신형의 논의가 사형 폐지 이후의 대체형벌에 대한 고민에서 시작된 것이고,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사형제에 비하여 기본권 침해가 덜한 형벌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견해도 있는데, 사형제도가 존치된 상태에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도입하게 되면 중한 형벌이 추가되는 것이어서 그 도입에 대하여는 사형선고 및 집행 실태, 국제적 기준, 교도행정의 현황 등 종합적인 측면에서 광범위한 의견수렴 및 제도의 장단점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0. 소년법 존폐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최근 미디어의 발달, 경제성장 등의 영향으로 청소년들의 범죄가 늘어나거나 흉폭해지는 경향에 대하여 형사책임연령을 낮추고, 더 나아가 소년법 폐지와 같은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 소년은 정신적 · 육체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에 있는 자로서 사회적, 법적 책임 외에도 소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양한 보호처분의 활용을 통하여 교육과 치료를 병행함으로써 사회의 건실한 구성원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방안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견지에서 소년법은 존치하면서 필요한 부분은 개선해 나가는 것이 옳다는 입장입니다.

11. 국가보안법 존폐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우리나라는 과거 국가보안법이 악용되었던 아픈 과거가 있고, 헌법재판소에서도 여러 차례 그 위헌성이 문제된 적이 있었던 만큼, 국가보안법 존폐 여부에 대해서는 다양한 논의가 있어 왔습니다.

○ 헌법재판소는 2015. 4. 30. 국가보안법상 이적행위 조항(제7조 제1항), 이적단체가입 조항(제7조 제3항), 이적표현물 조항(제7조 제5항)에 대하여 합헌 결정을 하였고, 2023. 9. 26. 이적행위 조항 및 이적표현물 조항에 대하여 다시 한 번 합헌 결정을 하였습니다. 기본적으로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존중합니다.

○ 과거 국가보안법이 지나치게 확대 적용되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던 과거가 있었던 만큼, 법관으로서는 국가보안법을 적용할 때 입법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만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법률을 해석·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2. 북한 주민들의 인권 탄압 및 유린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인권은 전 세계적으로 보편타당한 인류의 가치이므로 국가, 장소, 인종을 떠나 기본적인 인권보장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인도주의적 관점에 비추어 볼 때 열악한 북한 주민들의 인권 신장을 위해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력 등을 통한 인도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데에 기본적으로 공감합니다.

13. 차별금지법이 성소수자 인정법안이라는 주장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대한민국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 경제적 · 사회적 ·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 개별법이 마련되어 있기는 하나,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하는 차별을 금지하고 구제하기는 어려워 일반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과거부터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지난 21대 국회에 발의되었던 차별금지법 관련하여 대한민국헌법 제11조 평등의 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법안의 취지에 기본적으로 공감합니다. 성소수자 역시 헌법상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누리고 성적 지향이 부당한 편견이나 차별의 이유가 될 수 없음은 명백합니다. 성적 지향성은 지극히 내밀한 사적인 영역이므로 타인에 대한 강요나 위해가 수반되지 않는 한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성소수자에 대하여 어떠한 사회적·법률적 보호를 할 것인지는 입법정책적인 문제로, 공론화 및 폭넓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국민적·사회적 합의를 통하여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14. 대법관 증원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대법원은 최고법원으로서 당사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최후의 보루이자, 헌법 원리에 입각하여 법령을 최종적으로 해석 · 적용함으로써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법률적 쟁점에 관하여 규범적 기준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러나 대법원에 접수되는 사건 수를 고려할 때 대법관들이 모든 사건에 대하여 하급심 판결과 같이 상세한 논증을 담은 판결서를 작성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 따라서 상고제도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대법관 증원 역시 상고제도 개선 방안 중 하나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관의 수는 단순히 사건의 수에 비례하여 대법관을 증원하는 것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고, 통일적 법해석을 위하여 대법원 재판의 핵심인 전원합의체를 구성하고 유지할 수 있는 정도여야 하며, 상고제도 자체를 개선하는 방안과 결합하여 논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15. 상고허가제, 고등법원 상고부 설치, 상고법원 설치 등 상고심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서면질의 질문 14번에서 말씀드렸듯이, 대법원에 접수되는 사건 수를 고려할 때 대법관들이 모든 사건에 대하여 하급심 판결과 같이 상세한 논증을 담은 판결서를 작성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상고제도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 이용훈 대법원장 시기부터 전임 대법원장 시기까지, 상고제도 개편 방안에 관하여 이미 많은 연구 결과가 축적되어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상고허가제, 고등법원 상고부 설치 방안, 상고법원 설치방안 등은 각각 제도의 장점과 단점에 대한 연구, 검토 결과가 상당히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기부터 섣불리 어떤 방식을 정해 추진하기보다, 그동안 연구·검토된 결과를 기초로, 법원 내부 구성원을 포함한 각계의 총의를 모아가며 큰 틀에서의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현재 운영되는 제도로서는 심리불속행제도가 대법원의 법률심 기능을 확보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이유의 기재가 없다는 등 사유로 여러 비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현재의 과다한 대법원의 사건 부담에 비추어 볼 때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따라서 우선적으로 심리불속행제도의 긍정적인 역할을 유지하면서도, 심리불속행 기준을 마련하는 등 보다 합리적으로 제도를 운

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상고이유서 원심법원 제출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고, 장기적으로는 상고심에서 심리할 실질적인 사건을 선별하는 상고심사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고심사제를 도입하더라도, 헌법을 부당하게 해석한 사건,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는 판단을 한 사건, 판결의 이유를 밝히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사건 등 권리구제가 필요한 사건들은 본안판단의 대상이 될 것이므로, 현행 제도 하에서 상고심에서 파기될만한 사건들은 상고심사제 하에서도 본안판단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하는 동시에 법률심인 대법원의 기능도 충분히 발휘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하급심 강화를 통해 재판에 대한 승복률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이와 함께 큰 틀에서의 상고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검토도 지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6. 고법부장제, 법원장추천제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과거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도가 승진대상기수에 해당하는 법관들의 업무량에 영향을 미쳤고, 제도의 폐지로 인해 법관들의 근로의욕이 저하되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도 승진제도는 독립된 재판을 추구하는 법관의 업무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또한 승진이 되지 않은 다수의 실력을 갖춘 연륜 있는 법관의 사직이 사법부로서는 큰 고민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정 등을 감안하여 국회의 논의 등을 거쳐 위 제도가 폐지되기에 이르렀고, 법조일원화 제도의 도입을 비롯한 법조환경의 변화에 따라 다시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도를 부활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 법원장후보 추천제도 사법행정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대법원장의 권한을 분산한다는 의도로 도입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도 운영과정에서 법원장이 사법행정상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추천과정도 인기투표로 전락하였다는 비판이 있어서, 새로운 대법원장님 취임 후 바람직한 법원장 보임인사에 대해 연구·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제도의 장점을 높이고 단점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17.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이후 사실상 법원장들의 사법행정권 기능이 작동하지 않고 있음. 최소한의 사법행정권 행사를 위한 규범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하는 의견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사법행정이란 법원의 조직, 인사, 예산, 회계, 시설관리 등과 같이 사법부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행정작용을 의미합니다. 대법원장은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며, 사법행정사무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을 지휘·감독합니다.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법원행정처의 사무를 관장하고, 법원의 사법행정사무를 감독합니다. 법원장은 그 법원과 소속 지원 등의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합니다(법원조직법 제26조, 제28조의2, 제29조).

○ 각급 법원의 사법행정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단정하여 평가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사법부 내부에서 사법행정의 재판지원 역량이 약화되었다는 지적이 있고, 각급 법원에서는 재판 지연 문제가 대두되어 국민의 사법신뢰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법행정 권한이 적정하게 행사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법원조직법의 규정 외에 사법행정권의 행사를 위한 규범을 만드는 것과 관련하여, 규범의 적용범위, 내용, 형식에 따라 사법행정이 오히려 재판사항에 개입하거나 법관의 독립을 저해하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그러한 점과 사법행정권의 효율적인 행사가 조화될 수 있도록 법원 내외의 충분한 의견 수렴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8. 김명수 前대법원장 재임기간 동안 대법관회의 및 전국법원장회의가 유명무실해지고 반면 전국법관회의가 사실상 사법부의 주요사항을 결정함. 이러한 방식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 대법관회의, 전국법원장 회의의 활성화 및 전국법관회의 기능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대법관회의, 전국법원장회의,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목적, 성격, 역할, 구성원, 논의 내용 등이 모두 다릅니다. 다만, 시대의 변화와 당시의 주요 이슈에 따라 특정 회의체가 주목받거나 좀 더 활발한 활동을 하게 되는 것은 자연스러울 수 있습니다.

○ 대법관회의는 법관의 임명과 연임, 대법원규칙의 제정과 개정 등을 비롯한 사법부의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는 최고 의결기구입니다. 전국법원장회의는 각급 법원의 원활한 재판지원 등을 위해 좀 더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사법행정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 법관의 독립, 주요 사법 이슈에 대해 전국법관들의 총의를 모으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이처럼 각 회의체가 사법부에서 차지하는 고유한 위치와 역할이 분명하기 때문에 서로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고, 앞으로도 함께 발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9. 경력대등재판부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경력대등재판부는 경험과 연륜이 풍부한 법조경력 15년 이상이고, 지위, 기수, 경력 등이 대등한 부장판사 3인으로 구성되는 재판부로, 2019년 시범 실시되어 현재까지 꾸준히 그 범위가 확대되어 왔습니다.

○ 재판부 내부의 수평적 의사결정 구조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합의재판을 구현하여 오류 수정, 올바른 결론 도출을 기대할 수 있고, 소송당사자 입장에서는 충분한 경륜을 갖춘 법관 3인으로 구성된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는 점에서 절차적 만족감을 느낄 수 있다는 점에서, 취지에 맞게 운영된다면 장점이 많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 재판연구원 등의 보조인력이 충분히 배치된다면, 이와 같은 장점을 살려 경륜이 풍부한 법관이 법정에서의 재판 진행과 법리적인 판단에 보다 역량을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20. 작년 대법원의 현대자동차 손해배상 연대책임 제한 판결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우선 해당 판결(2017다46274)은 대법원이 면밀한 심리를 거쳐 판단한 것으로, 존중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는 공동불법행위자들의 책임 제한 비율을 달리 산정하는 법리는 주주대표소송에서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정하는 경우, 투자상품을 판매한 증권회사와 자산운용회사의 책임을 정하는 경우 등에 활용된 적이 있는 것으로서, 해당 사안에서 최초로 창설된 법리가 아닙니다. 해당 판결은 책임제한 개별화에 관한 기존 선례들의 연장선상에서 쟁의행위로 인해 조합원들이 회사 측에 부담하게 되는 손해배상책임이 과도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조합원들의 책임 범위를 개별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 판결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21. 별도의 사법행정기구에서 사법행정권을 담당하는 것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법원행정처가 아닌 별도의 사법행정기구, 심지어 사법부 외부의 별도 기구에서 사법행정을 담당하는 방안 모두 장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사법행정회의 또는 법무부에서 사법행정을 담당하는 나라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러나 사법제도는 그 나라의 역사, 다른 국가권력기관과의 상호관계,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인식과 기대 등 여러 요소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섣불리 다른 나라의 사법행정제도를 도입하였다가는 그 제도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여 장점을 살리지 못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재판 독립의 침해에까지 이를 수도 있습니다.

○ 결국 우리 국민들이 사법부에 대해 기대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볼 수 있는 재판 독립을 지키면서 사법행정의 여러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찾는 과정은 충분한 연구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2. 현직 판사가 SNS 상에 특정 정치성향을 여과 없이 표출하는 행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 법관이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면 법관으로서 업무를 하는 것이 무척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물론이고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도 법관이 SNS를 이용할 때 각별히 주의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 특히 정치적 견해의 표명은 아무리 순수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논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법관직의 무거움과 국민의 법관에 대한 신뢰를 항상 유념하여 법관들은 매사 신중하게 처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3. 김명수 前대법원장의 사법개혁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김명수 전 대법원장은 관료화되어 가고 있다는 비판을 받은 사법행정 분야를 민주적이고 수평적으로 바꾼 것 외에도 영상재판 확대, 형사전자소송 추진 등 국민의 사법접근성을 높이려는 노력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 다만, 현재 법원의 문제로 지목되고 있는 재판지연 현상이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 추진되었던 여러 정책의 결과라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과거의 사법정책 중 긍정적으로 평가받는 부분은 더욱 발전시키되, 재판지연 등 당면한 과제는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국민의 다양한 의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24. 임성근 판사 사표 수리를 거부하고 국회에 거짓 답변서를 보낸 김명수 前대법원장의 소위 거짓말 논란 사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김명수 전 대법원장은, 공개된 녹음자료에 기초하여 기억을 되짚어 보니 약 9개월 전의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했던 기존 답변에서 이와 다르게 답변한 것에 대하여 송구하다는 뜻을 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 외에 대법관 후보자로서 이에 관하여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면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 현재 특정 성향의 연구회 출신들이 법원 주요 요직에 자리 했다는 논란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특정 성향 연구단체가 정치화되었고 그 출신들이 법원 주요 요직에 중용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던 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내 학술 모임은 자발적인 모임이고, 법관이 어느 연구회에 소속되어 활동하는지에 따라 해당 법관의 이념이나 성향을 단정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 법관 개개인이 생활에서 절제하여 자신의 재판에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활동을 삼가야 하지만, 특정 모임에 가입하고 있다는 이유로 해당 법관의 이념이나 성향을 단정하고, 이를 그룹화 하는 것은 법원내 갈등을 증대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6. 대법원(대법관) 구성의 다양성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대법원은 사회 구성원의 다양한 이해관계의 통합을 이루어 내고, 이를 통하여 우리 사회의 규범적 가치 기준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대법원이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관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인적 구성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깊이 공감합니다.

○ 우리나라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대법관의 학력, 경력, 성별, 지역을 안배하는 방향으로 구성을 다양화 하여야 한다는 요구가 크고, 이러한 방안도 대법원 인적 구성 다양화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궁극적으로는 사회적 쟁점에 관한 가치관이나 사법철학을 다양화하는 방향이 강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대법관 제청절차에서 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피천거인 중 심사동의자의 명단과 정보를 미리 공개하여 후보자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비당연직 위원에 대한 추천절차를 도입하는 한편 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를 비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하며,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에 대하여도 다시 한번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는 것은 대법관 구성에서 다양성을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 아직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이 국민의 눈높이에 충분하지 않을 수 있으나, 위와 같은 노력에 더하여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와 법조일원화 제도가 정착되어 감에 따라 법관 구성 자체가 다양해지고 있어 향후 대법원의 다양성이 더욱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27. 각급 법원의 사건처리 지연에 대한 후보자의 대처 방안은?

○ 사법부는 재판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기관입니다. 그러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재의 재판지연 문제에 대해서는 저를 포함한 사법부의 구성원 모두가 매우 무겁게 받아드리고, 그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다만 재판지연의 원인은 법원 내외부의 다양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고 어느 한가지의 원인을 주요원인으로 꼽기는 어렵습니다. 법관의 고령화, 사건의 복잡화, 법관 수의 부족, 일과 가정의 균형을 추구하는 사회의 변화 등을 원인으로 볼 수 있고, 거기에다가 최근 코로나 사태도 재판지연 현상을 심화시키는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 기본적으로 법관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정성을 다해야 하고, 이러한 소명을 다하기 위해 어느 정도 자신의 자유시간도 희생하려는 자세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관의 사명감만을 강조하여 개인의 희생을 강요할 수는 없고, 근본적인 해결책도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우리가 처한 상황에 맞는 제도개선이 전반적으로 이루어져야 재판지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여러 방면에 걸친 다양한 재판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올해부터 사무분담을 장기화하여 1심

을 전문화하고, 사법행정을 담당하는 법원장이 일정 부분 본안재판을 담당하는 것도 재판지연을 해소하는 데 일정 부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 또한 무엇보다 우리나라 법관의 업무 부담이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과도한 상황에서 근본적으로는 법관 및 재판연구원 증원 등 인적 여건의 확충이 절실합니다.

28. 사건이 남아있더라도 오후 6시면 재판을 끝내는 이른바 '땡퇴근' 및 3·3·3캡(주3건씩 3주간 총9건 판결문 작성)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개인의 생활, 일과 가정의 균형을 추구하는 사회의 변화 등이 재판 지연의 원인으로 지적되기도 하였던 점을 알고 있습니다.

○ 기본적으로 법관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정성을 다해야 하고, 이러한 소명을 다하기 위해 어느 정도 자신의 자유시간도 희생하려는 자세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관의 사명감만을 강조하여 개인의 희생을 강요할 수는 없고, 근본적인 해결책도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 이러한 문화적 변화를 수용하면서 법관의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고, 우리가 처한 상황에 맞게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에 필요한 법관 및 재판연구원 증원 등 인적 여건의 확충 방안도 찾아야 할 것입니다.

29. 장기미제 사건 해소를 위해 후보자가 생각하는 해결 방안은?

○ 장기미제가 증가하는 원인은 다양하나, 사회의 변화에 따라 사건의 난이도가 증가하고 재판의 충실성이 중요시되는 상황에서, 이를 당장 해소하기에 사법부의 인적 자원이 부족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신속한 재판을 통해 사건적체 현상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법관 및 재판연구원의 증원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 다만 이와 같은 인적 충원이 이루어지기 전에, 높은 경력의 법관이 증가한 상황에서 민사 및 가사사건의 단독관할을 확대한 것은 의미 있는 조치라고 볼 수 있고, 전문법관과 전문법원 제도를 확대 실시하여 전문성을 요하는 사건에 대하여 좀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부터 사무분담을 장기화하여 1심을 전문화하고, 사법행정을 담당하는 법원장이 일정 부분 본안재판을 담당하는 것도 재판지연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 나아가 감정절차를 신속화 한다든지 쟁점 파악 및 심리계획 수립 등 장기미제 사건 심리에 관한 노하우를 연구하고 공유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0. 후보자는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내정 소식을 최초 누구로부터 언제 어디서 어떻게 전달 받았는지?

○ 대법관 임명제청 보도가 있던 6월 27일(목) 16:20경 대법원장님으로부터 전화로 대법관 후보자 임명 제청에 대해 들었습니다.

31. 후보자는 법관으로 재직하며 대략 몇 건의 사건을 처리했는지? 그리고 가장 판결 내리기 어려웠던 판결은 어떤 사건인지?

○ 제가 있는 재판부에서 판결을 선고한 사건은 약 11,887건 정도입니다.

○ 가장 판결 내리기 어려웠던 사건으로는 부산고등법원에서 담당하였던 '발달장애인의 영아 투기 살인 사건'이 기억납니다. 1세에 불과한 어린 피해자를 난간 아래로 집어던져 살해하였다는 사실로 발달장애 1급의 18세 피고인이 기소가 되었던 사건입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심신상실 상태를 인정하여 무죄판결을 하고, 치료를 받을 필요와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치료감호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항소심 재판장으로서 관여하였던 저는 결과의 참담함과 자신의 행위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발달장애인인 피고인의 특성 사이에서 깊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무죄판결은 유지하고, 항소심에서의 추가적인 감정결과 등을 종합하며 치료감호는 받아들였습니다. 정신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처우에 대해 우리 사회가 고민해야 할 숙제를 던져준 사건이었습니다.

32. 후보자가 판결한 사건 중 정치적으로 쟁점이 됐던 대표 사건 3건의 사건 개요, 판결, 판결이유는?

○ 특별히 정치적으로 쟁점이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사건은 없었다고 기억합니다.

33. 헌재의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결정에 대한 후보자 견해는?

○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한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개정안은 오랜 기간 국회에서 치열한 논의를 거쳐 입법되었고, 그 절차적 정당성을 둘러싼 치열한 법적 분쟁도 있었습니다.

○ 기본적으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고, 대법관 후보자로서 행정부 내부에서 기관의 권한 배분에 관한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 22대 국회 이기헌 등 민주당 의원 17명이 발의한 국조완박(국정원 조사권 완전 박탈)법안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국정원 조사권 배제 여부 및 그 범위는 법조계와 학계 등 전문가의 의견, 국민의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회에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하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대법관 후보자로서 더 이상의 의견을 밝히는 것은 권력분립의 원칙상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 후보자가 생각하는 법관의 근로의욕 고취 및 인사 제도 개혁 방안은?

○ 독립된 지위를 보장받으며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구체적인 사건에서 정의를 추구하는 법관의 직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와 함께 저와 같은 선배 법관들이 흔들림 없이 정의를 추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국민들께서 재판독립과 법관의 판결을 존중해 주신다면, 법관의 근로의욕 고취는 자연스럽게 뒤따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다만, 법조인들도 가족이 있는 생활인으로서 일과 가정을 균형 있게 유지할 수 있는 인사제도 개혁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미성년자녀의 돌봄과 교육을 위해 지역순환근무에 대한 피로감을 호소하는 법관들이 많습니다. 지역순환근무를 완화할 수 있는 장기근무제도의 도입이나 스마트워크센터 확충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업무부담 자체를 낮추기 위한 법관증원과 재판연구원과 같은 보조인력 확충도 필요합니다. 법관의 보수 인상이나 법조일원화에 따른 수당구조의 개편도 고민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처우개선이 이루어진다면 법관들의 근무의욕도 한층 더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36. 강제징용 관련 제3자 변제 공탁불수리에 대한 후보자 견해는?

○ 민법 제469조 제1항은 ”채무의 변제는 제삼자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삼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단서의 해석과 관련하여 채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가 허용되는지, 공탁관이 이러한 사유로 불수리 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법률적인 쟁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제3자 변제안을 기초로 한 공탁신청에 대하여 공탁관의 불수리처분이 있었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항고절차가 진행 중에 있으므로, 대법원장 후보자로서 이에 관한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은 지난 11. 29. 1심이 선고되어 송철호, 황운하, 백원우, 박형철 등 대부분 유죄 판결을 받았음. 문제는 1심 판결까지 3년 10개월이라는 시간이 소요되어 송철호는 울산시장을, 황운하는 국회의원 임기를 다 채우게 된 바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공직선거법」 제270조는 '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의 선고가 있는 날부터 각각 3월 이내에 반드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위 기간을 위반하였다고 하여 재판이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11434 판결). 다만 선거범죄 처리기간이 공직선거법에 정한 기간을 위반하여 지연되고 있고, 이에 따라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임기를 모두 채우게 되는 경우까지 있다는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 법관의 고령화, 법관 수의 부족 등으로 이미 재판지연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선거사건 중 기록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하며, 혐의 유무를 다투는 경우에는 다수의 증인을 소환해야 하는 점이 선거범죄 처리가 지연되는 추가적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 선거범죄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는 재판부 역량을 단기간 해당 사건 처리에 집중할 필요가 있으나, 이미 형사합의부의 업무가 과중하여 역량 집중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근본적으로는 법관증원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다만 법관증원이 이루어지기 전이라도 법원 내부에서 한시적으로 배당이나 사무분담을 조정하고, 선거재판장 온라인 간담회 등을 통하여 집중심리 등 신속한 처리를 위한 재판 진행 노하우 등을 공유하는 등으로 선거범죄의 신속처리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8. 국회의 무분별한 탄핵소추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헌법 제65조는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 등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헌법재판소법 제53조는 헌법재판소로 하여금 '탄핵심판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에는 피청구인을 해당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탄핵심판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란 피청구인의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고 설시하고 있습니다(헌법재판소 2023. 7. 25. 결정 2023헌나1).

○ 이와 같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요건을 갖춘 탄핵이 바람직하다고 일반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 외에 대법관 후보자로서 더 이상 언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9.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내일 당장 가겠다", "비회기 중 영장청구하라"라고 발언한 바 있음. 이처럼 형사사건 소환 조사 일시, 영장 청구일을 수사기관이 아닌 피의자가 지정하는 것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구체적인 사건과 관련하여 특정인이 한 발언에 대해 대법관 후보자로서 의견을 밝히는 것은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일반론적으로 피의자 출석요구는 수사기관이, 영장실질심사를 위한 기일 지정 및 피의자 소환은 법원이 그 권한을 가지며 행사합니다.

40. 사법부의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 헌법은 법관이 독립하여 심판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법부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다른 국가권력 뿐만 아니라, 정치적 단체나 이해집단, 여론으로부터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내는 것도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 우선 법관들 스스로 오직 헌법과 법률, 직업적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판단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고, 아울러 법관 개인에 대한 위협 및 인신공격에 대하여 해당 법관이 오로지 재판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아가 사법부의 독자적인 예산편성권을 인정하는 등 사법부가 행정부의 영향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도록 검토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41. 검찰의 권한 남용과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현재 검찰개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후보자가 생각하는 검찰개혁 방안은 무엇인지?

○ 검찰은 물론이고 모든 국가기관은 국민을 위해 존재합니다. 따라서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올바른 방향의 제도 개선은 지속적으로 검토되고 추진되어야 합니다.

○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실체적 진실에 입각한 국가 형벌권의 실현을 위하여 공소제기와 유지를 할 의무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정당한 이익을 옹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검찰의 권한 남용에 의하여 개별 국민의 기본권이 부당하게 침해되거나 형사사법의 공정과 정치적 중립성이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에 공감하며, 제도의 개선은 검찰의 권한 남용을 적절하게 통제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최근 조직적이고 치밀한 신종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의 수사 및 소추 역량이 지나치게 약화되지는 않도록 신경을 쓸 필요도 있습니다.

42. 비위 법관에 대한 징계해임제 도입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헌법 제106조 제1항은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위 헌법 규정의 해석상 징계처분으로 파면과 유사한 효력이 있는 면직을 할 수 있는지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다만, 그러한 법률이 발의된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하며, 우리 사회가 법관에게 기대하는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충족할 수 있도록 저부터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3. 현행 판사연임심사제도에 대한 공정성 및 외부평가 필요성에 대한 후보자 견해는?

○ 헌법 제105조 제3항은 법관의 임기를 10년으로 정하고,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 취지는 법관의 임기 동안 신분을 보장해주되, 임기 이후 재심사를 거쳐 법관직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사람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관의 수준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임심사는 그러한 취지를 충분히 반영한 실질적인 평가가 되어야 함이 당연합니다.

○ 다만, 연임제도로 인해 법관의 신분보장이 오히려 정년이 보장되는 다른 일반직 공무원보다 더 열악하게 될 우려도 있습니다. 전관예우의 폐해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연륜 있는 법관의 사직을 막기 위해 평생법관제를 지향하는 상황에서 연임심사의 강화가 자칫 법관 독립의 침해가 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 현재 다수의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법관인사위원회에서 과거보다는 실질적인 연임심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관 독립을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국민의 눈높이에 걸맞은 좀 더 실질적인 심사방안에 대해 지속적인 검토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44. 법관평정 결과 공개와 변호사단체 법관평가결과 반영 등 법관 평가방식 개선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국민의 법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짐에 따라 법관평정 결과도 공개하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한 명의 법관으로서, 특히 사법행정업무를 담당했었던 사람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법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더 노력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 그러나 법관평정 결과를 공개하는 것은 새로운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판은 그 속성상 승패가 나뉘고, 패소한 측에서는 해당 법관의 판결 결과에 불만을 품고 그 원인을 법관평정에서 찾으려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비슷한 이유에서 변호사단체의 법관평가결과를 법관평가에 반영하는 것도 현재로서는 우려가 큽니다. 각 지역별로 변호사협회의 평가방법이 일관되지 못하고, 그 평가방식의 객관성과 공정성에 대한 비판이 여전히 존재하며, 평가결과에 대해 해당 법관 등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등 변호사협회의 법관평가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는 것이 법관들 다수의 의견이기도 합니다.

○ 다만, 법조일원화 제도의 도입에 따라 과거와는 달리 다양한 배경의 법관이 함께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법관의 독립을 충분히 보장하면서 시대적 변화를 담아낼 수 있도록 종래의 법관평가

제도를 수정할 때가 되었고, 그 과정에서 법원 내부는 물론이고 변호사단체를 포함한 다양한 재판관계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5. 사회적 약자라고 하는 장애인, 여성, 노인, 성적 소수자 등을 위해 그동안 후보자가 노력한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 또 이를 위해 대법원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 저는 서울고등법원 노동전담부에 근무하면서 헌법과 법에 따른 근로자의 권리가 보장되고 있는지 늘 고민하며 재판하였습니다.

- 학원강사들의 근로자성이 문제된 사건에서, 해당 강사들이 학원과 수강료를 일정한 비율에 따라 나눠 갖는 소위 '비율제 강사'들이었고, 근로계약의 형식이 강의위수탁계약으로 형식적으로 개인사업자의 성격을 띠고 있기는 하지만, 학원이 교육과정별 통일성 있는 수업 진행을 하도록 하고, 학생 수 및 학생들의 레벨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강사를 지정하였으며, 수강료의 비율을 정하는 점 등 그 실질에 대하여 충실하고 심도 깊게 심리하여 해당 학원강사들이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사업부문별 근로자 수의 차이가 큰데도 각 사업부문을 선거구로 하여 같은 수의 근로자위원을 선출한 선거가 무효라고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노사협의회에 근로자위원의 선출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자율적으로 정할 재량이 있더라도, 그 재량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헌법상 권리가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헌법상의 평등 원칙은 노사협의회의 선거구 획정에 있어서도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 근로자가 파면처분의 무효를 구한 사건이 있었는데, 파면처분 이후 이미 정년 도래로 당연 퇴직되어 파면처분의 무효를 구할 이익이 있는지가 선결 쟁점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파면처분 이후 당사자의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대한 구제신청,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한 재심신청이 각 기각되고, 위 재심판정에 대한 행정소송도 이미 기각 확정되어 많은 고민을 하였으나, 1심과 달리 파면처분에 대해 제기한 무효확인청구소송 중 정년이 도래하였다고 하더라도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퇴직급여 등이 감액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면 징계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보았고, 나아가 징계 재심 절차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협약에서 정한 재심의결기한을 경과하여 근로자의 정년이 도래하기까지 재심의결을 하지 않았다면 당초 징계처분은 무효가 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 또한 법관은 재판과 일상에서도 늘 성인지 감수성을 잃거나 부당한 성차별적 고정관념을 갖는 것을 경계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젠더법연구회의 참여 하에 법원행정처에 설치된 양성평등연구반의 반장을 맡아 경력별 연수 등 법관연수에 성인지 교육을 도입하는 한편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성희롱 등 처리절차와 양성평등상담위원 제도를 포함한 피해회복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양성평등 가이드북을 제작하는 등 법원 내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나아가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해 신설된 법관연수 성인지 교육과정에 강사로 참여하기도 하였습니다.

○ 대법원은 최고법원으로서 대한민국 헌법이 정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최후의 보루이며, 헌법이념과 원리에 입각하여 법령을 통일적으로 해석 · 적용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아울러 단순히 형식적 평등에 그치지 말고 사회적·경제적 약자와 소수자들을 배려하고 이들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정책과 제도를 적극적으로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각급 법원에 장애인 사법접근센터 설치, 영상재판 실시,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소송구조·국선변호 등 확대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실질적 법치주의 구현을 위한 좋은 예라고 생각합니다.

46. 현재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에 공개된 판결문은 법원이 선고하는 판결 전체의 1%도 채 안 돼 판결은 공개해야 한다는 헌법 제109조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판결문 공개 확대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대법원 홈페이지에 있는 '종합법률정보'는 주로 선례적 가치가 있는 판결만을 선정하여 제공하고 있어서, 공개되는 판결의 수가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현행법에 따라 일반 국민에게 공개되어야 하는 2023. 1. 1. 이후 확정된 형사사건, 2015. 1. 1. 이후 확정되었거나 2023. 1. 1. 이후 선고된 민사(행정·특허 포함) 사건의 판결문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서 100% 가까운 비율로 공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판결서에 기재된 문자열, 숫자열이 검색어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면서 소송관계인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기 위한 고안된 검색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원론적으로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판결 공개의 범위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를 위한 인적·물적 자원이 필요하다는 점 외에도, 형사 미확정 판결서의 전면 공개에 대하여는 무죄추정의 원칙이나 소송관계인의 개인정보 보호 문제 등에 대한 우려가 있어,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통하여 균형점을 찾아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7. 국민의 사법부 불신 및 법관의 정치재판 논란 등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국민참여재판 확대 의견이 있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국민참여재판 제도는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고 공판중심주의를 활성화함으로써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 있으므로 국민참여재판을 양적·질적으로 활성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현행과 같은 피고인 신청주의 아래에서는 국민참여재판이 유리하다고 판단한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서만 국민참여재판을 실시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일정 범죄에 대하여는 필수적 국민참여재판을 도입하고 피고인에게는 배제신청권을 부여하는 등으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나아가 현재는 지방법원 본원에서만 국민참여재판을 실시할 수 있어 지원 단위 주민의 배심원으로 참여할 권리가 제한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향후 일정 규모 이상의 지원에서도 국민참여재판을 실시하여 지원 단위 주민의 권익을 향상시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국회에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한편, 법원에서도 현행 제도에서 국민참여재판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8. 고위직 판검사들의 퇴임 후 로펌 취업 후 고액 급여 수령에 대한 견해?

○ 전관예우가 실제 존재하는지 여부를 떠나서, 전관예우 관행이 존재한다고 믿는 국민들이 적지 않고, 이러한 인식이 사법부의 신뢰에 큰 손상을 가져오므로, 국민들의 불신이 사라질 때까지 전관예우 의혹 해소에 더욱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고위 공직에서 퇴임한 법관이 퇴임 후 바로 대형로펌에 들어가는 것은 전관예우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고려할 때 사법부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절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49.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 구성 시 민주적 정당성을 제고하기 위해 대통령 및 대법원장의 권한을 축소하고, 국회 선출 및 후보추천위원회 추천을 통한 기관 구성하자는 의견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대법원장은 헌법에 따라 대법관 제청권, 헌법재판소 재판관 지명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지명권을 가집니다.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제청권을 부여한 것은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고,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역시 기관 구성에 있어서 삼권 모두 관여하도록 하여 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 대법원장에게 부여된 헌법기관 구성 권한을 축소하고 국회에서 선출하게 할 경우 민주적 정당성이 제고된다고 볼 수도 있지만, 기관 구성에 있어서 견제와 균형 원리를 통한 정치적 중립성 확보는 중요한 문제이고, 이에 어려움이 초래될 우려도 있어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헌법 또는 법률 개정이 필요한 영역이라고 보이는데, 변화가 가질 장·단점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사회 각계 각층의 충분한 의견수렴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50. 현행 헌법상 헌법재판관을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이 3인씩 임명, 지명하도록 한 헌재재판관 구성방식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사법적으로 해결하는 기관이므로,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독립성·중립성 보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 헌법에서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헌법재판소 구성에 모두 관여하게 한 것은 권력분립과 통제의 원리를 충실히 구현하여 헌법재판소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 특히 대법원장에게 지명권을 부여한 것은, 헌법재판소가 특정 정파의 영향으로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고, 다수결 원리에서 소외될 수 있는 소수자의 권익보호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가 담겨있다고 생각합니다.

51.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간 역할 및 권한, 위상 등에 대한 다툼이 있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해소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재판소원의 인정여부, 한정위헌 결정의 기속력, 명령·규칙에 대한 위헌심사권, 관습법·긴급조치에 대한 위헌심사권 등에 관하여 다소 입장의 차이가 있어 왔습니다.

○ 우리 헌법은 제5장에서 법원을 사법권의 담당기관으로 규정하고, 제6장에서는 헌법재판소를 위헌법률심판 등을 관장하는 헌법기관으로 규정하여, 담당하는 사법권의 영역이 서로 상이하지만 대등한 사법기관으로서 지위와 권한이 분배되어 있습니다.

○ 양 기관이 헌법의 취지에 따라 서로의 역할과 기능을 존중하여 각자의 영역 내에서 헌법질서의 유지 및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사명에 충실한다면, 위와 같은 입장의 차이를 점차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52. 부산 돌려차기 사건 등 잇따른 강력범죄에 대하여 '너그러운 양형'이 국민적 반감을 사고 있는 바 후보자는 현재 양형기준이 합리적이고 국민의 상식과 법 감정에 부합한다고 생각하는지?

○ 양형기준은 법원조직법 제81조의2, 6에 따라 형을 정함에 있어 국민의 건전한 상식을 반영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을 실현하기 위하여 마련된 기준으로, 그동안 국민의 법 감정에 부합하는 양형, 객관적이고 예측가능성 있는 양형을 실현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 그럼에도 법원의 양형기준이 급변하는 사회적·경제적 질서, 다양화·고도화되는 범행 양상, 변화하는 국민들의 의식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음을 알고 있고, 강력범죄에 대한 법원의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에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 강력범죄의 엄중한 처벌을 원하는 국민적 요구에 대하여는 형사법관들도 무겁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강력범죄의 발생 원인은 양형의 문제만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고, 급격한 사회변화와 이로 인한 세대간, 계층간의 갈등 악화 등 사회적 환경과 시스템의 영향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범죄에 대한 엄정한 처벌 외에도 가족·사회공동체 회복 및 사회환경 개선, 각종 범죄예방조치, 범죄자의 사회복귀 방안 등 우리 사회의 종합적인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53. 개헌이 이루어질 경우 법원 관련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헌법 개정 여부와 그 방향은 국민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국민적 합의를 통해 매우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문제로서, 대법관 후보자의 입장에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는 것은 조심스럽습니다.

○ 다만, 저 개인적으로는,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여 정보기본권을 기본권 조항에 추가하는 방안과, 법원의 조직·인사·시설 등 사법행정과 재판절차·제도에 관한 사법부의 독자적 법률안제출권, 독자적 예산편성권을 인정하여 사법부 독립의 여건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54. 압수수색 영장 발부시 대면 심리제도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은?

○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관련 임의적 대면심사제도는 압수·수색 영장 발부 여부 및 그 범위를 정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법관이 필요성과 대상의 특정 등 영장발부 요건이 충족되었는지에 대하여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설명을 청취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 기본적인 취지는 수사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전자정보에 대하여 선별적인 압수·수색이 이루어지도록 압수·수색실무를 개선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더욱 충실하게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사 밀행성과 신속성 또한 중요한 가치이므로 이를 해하지 않는 제도 운용 방안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한편 이와 같은 제도의 도입은 대법원 규칙보다는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고, 최근 22대 국회에서 관련 법률안이 발의된 만큼, 국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지혜로운 결론을 도출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55. 경력법관 임용 중 대형 로펌 출신이 다수인 것으로 나타남. 후관예우 등을 근절하기 위한 후보자의 대안 및 입장은?

○ 법조일원화 제도 시행으로 대형 로펌 출신 법관들이 상당수 임명되는 것에 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 사법부로서는 블라인드 방식으로 절차를 진행하고 또 다양한 외부인사의 참여를 통해 공정한 법관임용절차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왔음에도 그러한 비판이 있다는 것이 다소 안타깝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큰 사건을 대형 로펌이 주로 담당하는 현실이나 과거 전관예우로 인한 문제로 인해 이른바 후관예우에 대해서도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바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 이미 후관예우 방지를 위해서 형사소송법상 제척사유로 퇴직 후 일정기간이 지나지 않은 법무법인의 사건을 규정하고 있고, 예규와 각급 법원 내규에서 연고관계에 있는 사건의 경우 재배당할 수 있는 제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다만, 공정성을 중시하는 현재의 법관임용절차에서 일정 비율의 대형 로펌 출신 법관이 선발되는 것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비율이 과도한 것인지 제대로 점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그 비율이 과도하다면 다양한 법조경력자가 선발될 수 있도록 임용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겠으나, 그 경우에도 공정성이 크게 훼손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56. 촉법소년 연령을 조정하여 중대범죄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 형법은 14세 미만을 형사미성년자로 처벌하지 아니하고, 소년법은 형사책임연령이 아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을 이른바 촉법소년으로 보호처분의 대상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 최근 미디어의 발달, 경제성장 등의 영향으로 청소년들의 범죄가 늘어나거나 흉폭해지는 경향에 대하여 형사책임연령을 낮추고, 처벌을 강화하자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한 의견에 경청할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다만, 개별적인 책임능력과 달리 형사책임연령을 일괄하여 조정하면 책임능력이 갖추어졌다고 보기 힘든 소년까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우려가 있고, 아직은 어린 나이의 소년들에게 사회적 낙인 효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은 사회환경의 변화, 범죄 예방의 필요성 및 방법, 해외 국가들의 사례, 청소년 처벌에 대한 재범방지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또한 처벌 강화와 관련하여, 소년은 정신적·육체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에 있는 자로서 응보적 관점에서 성인과 동일한 사회적, 법적 책임을 묻는 것 외에, 소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양한 보호처분의 활용을 통하여 교육과 치료를 병행함으로써 사회의 건실한 구성원으로서 성장시키는 방안을 병행하여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57.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 참여하는 법관을 추천하도록 한 것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은?

○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2011년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에서 대법원장의 대법관 임명제청권 행사가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입한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관들이 선출한 대표로 구성된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추천한 법관이 대법관이 아닌 법관의 자격으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상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추천받은 법관은 자기 개인의 의견이 아닌 법관들 다수의 의견을 대법관후보 추천에 반영하기 위해 지원단을 꾸리고 여러 자료를 수집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8.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 참여하는 법관을 지원한다며 '지원단'을 구성하도록 한 것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은?

○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선출된 법관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 참여하고 있고, 지원단을 구성하여 도움을 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 지원단 운영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자세하게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대법관 후보자가 법관들의 자율적 행동에 대해 구체적으로 의견을 밝히는 것이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 다만, 지원단을 통해 대법관후보 추천 과정에 법관들의 의사를 좀 더 충실하게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비밀누설금지의무를 위반하거나 추천위원에게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법관들께서 현명하게 잘 운영하리라 기대합니다.

59. 기피신청·국민참여재판신청·재판장고발 등 간첩사건 재판지연 논란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대책은?

○ 국가보안법 사건에서 잦은 기피신청, 국민참여재판 신청, 재판장 고발 등으로 인하여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권리행사는 법률에 근거한 것이나, 재판지연의 수단으로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재판부에서 법률에 규정된 수단(예컨대 형사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기피신청의 간이한 기각 등)을 통하여 재판의 지연을 방지하고자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현행법상 권리행사를 제한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구속기간 연장 또는 불산입, 기피신청 제한 등의 도입을 재판 지연 방지책으로서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경우 피고인의 절차적 권리나 방어권을 제한하는 면이 있으므로, 그 제한의 필요성과 그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부작용 등에 관하여 종합적이고 충분한 검토와 광범위한 의견수렴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60. 제주 ㅎㄱㅎ사건 관련, 직권보석·전자팔찌착용 면제·주거제한 일시 해제 등 간첩사건 피고인에 대한 각종 혜택과 배려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 피고인에게 행해진 직권보석·전자팔찌착용 면제·주거제한 일시 해제 등의 조치는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재판장이 판단하여야 하는 사항이므로 대법관 후보자로서 당해 사건과 관련하여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아니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1. 계속중인 형사 재판 피고인의 죄명과 형벌의 종류를 감경해 달라는 국회의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민원(업무) 처리 절차 및 보고절차는?

○ 법원은 재판을 통하여 법을 해석하여 적용하는 기관으로, 다른 권력으로부터 독립하여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보장하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재판부는 오직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독립하여 판단합니다.

○ 사건당사자가 아닌 국회의원에게 피고인의 죄명과 형벌의 종류를 감경해 달라고 요청할 법률상 권한이 없고, 이러한 요청이 해당 법원에 서면으로 접수되는 경우 재판부에 대한 탄원서로 처리하는 것 외에 별도의 민원 처리 절차 및 보고절차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2. 특정 재판과 관련하여 국회의원 등 정치인들의 지속적인 피고인 면회(신청), 검찰청 연좌농성 상황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특정 정치인을 둘러싼 논란들에 대해 대법관 후보자로서 구체적으로 답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화와 타협으로 국회 내에서 원만히 해결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63. 피의자(피고인) 신분으로 수사(재판)를 받고 있는 국회의원이 대법원장·대법관·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등 사법부 인사청문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현재 인사청문회 절차에 참여중인 대법관 후보자로서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기 어려움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64. 법원노조와 법원장의 교섭대상은 무엇이며 재판 시간도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 관계 법령 상 교섭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
제8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①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또는 조합원의 보수·복지, 그 밖의 근무조건에 관하여 국회사무총장·법원행정처장·헌법재판소사무처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인사혁신처장(행정부를 대표한다)·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정부교섭대표"라 한다)과 각각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다만, 법령 등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으로 행하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의 행사 등 그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4조(비교섭 사항)
법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른 법령 등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으로 행하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의 행사 등 그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책의 기획 또는 계획의 입안 등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2. 공무원의 채용·승진 및 전보 등 임용권의 행사에 관한 사항
3. 기관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4. 예산·기금의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5. 행정기관이 당사자인 쟁송(불복신청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6.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그 밖의 사항

○

○ 대법원은 단체교섭사항에 대하여 "이러한 공무원노조법 관련 규정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법령 등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으로 행하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의 행사 등 그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이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려면 그 자체가 공무원이 공무를 제공하는 조건이 될 정도로 근무조건

과 직접 관련된 것이어야 하며(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0두5097 판결, 헌법재판소 2013. 6. 27. 선고 2012헌바169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이 경우에도 기관의 본질적·근본적 권한을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내용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1두13392 판결).

○ 이와 같은 법률 규정 및 판례에 관한 일반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 외에 대법관 후보자로서 향후 사건화가 될 수 있는 사안에 관하여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면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5. 국회의원 개개인의 헌법상 지위와 독립성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 후보자의 임명 동의 여부를 당론으로 결정하여 표결하도록 하는 양태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대법관 후보자로서 국회의원의 의정활동과 정당의 당론에 관하여 의견을 밝히는 것은 권력분립의 원칙에 반하거나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6. 조희대 대법원장과의 사적(학연, 지연 등 친목 모임 등), 공적(법원 근무지, 학술연구모임 등) 인연은 어떠한가?

○ 없습니다.

67. 조희대 대법원장과 가장 최근에 만난 공적 만남은 어떤 자리인가?

○ 대법관 제청 다음날(6월 28일) 후보자로서 대법원장실에서 접견을 하였습니다.

68. 조희대 대법원장과 가장 최근에 만난 사적 만남은 어떤 자리인가?

○ 사적 만남이라고 할 만한 자리는 없었습니다.

69. 조희대 대법원장으로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2027. 6. 정년 퇴임을 하게 되는 바 이에 대한 후보자의 우려 내지 전반적인 견해는?

○ 조희대 대법원장님이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는 것에 대한 우려와 아쉬움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장 지명 당시부터 초대 대법원장이셨던 가인 김병로 선생은 물론, 조진만 전 대법원장, 민복기 전 대법원장, 이일규 전 대법원장 등이 헌법상 정해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정년으로 인하여 퇴직한 선례가 있다는 사정이 이미 충분히 고려되었다고 생각합니다.

○ 조희대 대법원장님은 사법의 본질이자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재판을 어떻게 하면 신속하고 공정하게 할 수 있을 것인지 고민하고 사법부 구성원들이 각자의 재판에 정성과 성의를 다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대법관으로 임명이 된다면, 이와 같은 노력에 저의 경험과 지식을 보태고, 우리 법원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0. 헌재의 결정 이후 발생한 낙태법 장기 공백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헌법재판소는 2019. 4. 11. 낙태죄에 대하여 '자기낙태죄 조항은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지만, 모자보건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예외 없이 전면적, 일률적으로 임신의 유지 및 출산을 강제하고 있으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정한 2020. 12. 31.까지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 그로 인해 현재 낙태죄 처벌 조항은 효력을 상실하였고, 그로 인해 입법의 공백이 발생하여 태아의 생명권에 대한 보호는 물론이고 임신 중지를 한 여성의 지위도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 헌법재판소에서 단순 위헌 결정이 아닌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취지를 고려하여, 국회에서 신속한 입법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71. 최근 '36주 낙태 브이로그'가 논란이 되고 있는 바 해당 영상이 사실일 경우 관련자에 대한 죄명은 무엇인가?

○ '36주 낙태 브이로그'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에서는 살인죄로 수사의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다만 향후 사건화가 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안에 관하여 대법관 후보자로서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2. 이적단체에서 핵심 구성원으로 활동하며 국가보안법을 위반하는 등 수차례 유죄판결을 확정받은 안보사범이 현역 국회의원과 접촉하며 원내에 진입하려는 시도하는 행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 대법관 후보자로서 향후 사건화가 될 수도 있는 문제에 대해 언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73. 국회에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를 청원'하는 국민동의청원을 접수하였을 때 헌법 및 국회법과 청원법상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가?

○ 국회법 제123조 및 청원법 제6조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회법

제123조(청원서의 제출)

① 국회에 청원을 하려는 자는 의원의 소개를 받거나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동의를 받아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청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지 아니한다.

1. 재판에 간섭하는 내용의 청원
2.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내용의 청원
3. 국가기밀에 관한 내용의 청원

청원법

제6조(청원 처리의 예외)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유를 청원인(제11조제3항에 따른 공동청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1. 국가기밀 또는 공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
2. 감사·수사·재판·행정심판·조정·중재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조사·불복 또는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3. 허위의 사실로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하는 사항
4. 허위의 사실로 국가기관 등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사항
5.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6. 청원인의 성명, 주소 등이 불분명하거나 청원내용이 불명확한 사항

○ 이와 같은 법률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일반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 외에 대법관 후보자로서 이에 관하여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면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4. 수사기관이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하여 국회가 특검을 진행하는 것에 대하여 삼권분립에 위배된다는 의견이 있는 바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은 2014년 특별검사제도의 발동 경로와 수사대상, 임명 절차 등을 법률에 규정하여, 문제가 된 사건이 발생되면 곧바로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최대한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수사할 수 있게 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원론적으로 특검 제도는 대통령 측근이나 고위공직자 등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에 있어 개별 법안을 통해 여·야 합의로 도입하는 제도로, 공직사회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여 공정한 수사 및 기소를 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도입 취지에 따라 사법 신뢰를 제고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운용되기를 바랍니다.

○ 다만 대법관후보자로서 향후 사건화 될 가능성이 있는 사안에 관하여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면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5. 선거사범은 1심의 경우 6개월 이내에 판결을 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판이 길어져 '해당 조문의 사문화', '판사들의 위법'과 같이 지적되는 바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공직선거법」 제270조는 '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의 선고가 있는 날부터 각각 3월 이내에 반드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위 기간을 위반하였다고 하여 재판이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11434 판결). 다만 선거범죄 처리기간이 공직선거법에 정한 기간을 위반하여 지연되고 있고, 이에 따라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임기를 모두 채우게 되는 경우까지 있다는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 서면질의 37번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미 재판지연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선거사건 중 기록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하며, 다투는 경우에는 다수의 증인을 소환해야 하는 점이 선거범죄 처리가 지연되는 추가적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재판부 역량을 단기간 해당 사건 처리에 집중할 필요가 있으나, 이미 법관들의 업무가 과중한 상황이어서, 법관증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다만 법관증원이 이루어지기 전이라도 법원 내부에서 한시적으로

배당이나 사무분담을 조정하고, 선거재판장 온라인 간담회 등을 통하여 집중심리 등 신속한 처리를 위한 재판진행 노하우 등을 공유하는 등으로 선거범죄의 신속처리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76. 역대 국회에서 발의된 탄핵소추안 중 가장 탄핵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탄핵안은 어떤 것이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

○ 대법관 후보자로서 국회에서 발의된 탄핵소추안에 대하여 의견을 밝히는 것은 권력분립의 원칙상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7. 최근 '유튜버 쯔양 금품갈취 사건'과 관련 수익을 좇는 사이버 레커들에 대한 형량이 너무 낮다는 여론이 일고 있음. 이런 사이버 레커에 관한 건은 특별히 과중하는 방향으로 양형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사이버 레커'는 남의 불행이나 사고, 실수, 결점, 잘못 등을 인터넷상에 주로 영상의 형태로 공론화해서 이득(조회수, 인지도, 광고수익)을 챙기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도 무겁게 인지하고 있습니다.

○ 명예훼손, 공갈죄 등의 양형기준에는 특별 가중요소로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를 두고 있고,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는 '피해자에게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야기하는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이 초래된 경우, 실직·가정파탄·자살시도나 자살 등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회적 평판이 심각하게 훼손된 경우,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명예훼손)' 또는 '피해자가 대부분의 재산을 상실하게 한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공갈)'로 정의되고 있고,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에는 '허위 또는 위조된 서류, 합성된 사진이나 조작된 SNS 대화내용을 첨부하는 등 부정한 수단을 사용한 경우(명예훼손)' 또는 '가족의 신변에 대한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한 경우, 피해자의 집이나 직장에서 심각한 행패를 부린 경우, 공무원의 지위 또는 언론사 기타 사회적 영향력을

가진 단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사칭하여 범행한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공갈)'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사이버 레커의 구체적 행위에 따라 위와 같은 특별 가중요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박은정 위원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

《박은정 위원 서면질의》

1. 사형제 폐지와 국가보안법 폐지에 관한 후보자 입장은?

○ 사형제에 관하여 찬·반 양론이 대립하고 있고, 양 주장 나름대로 타당한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다만 법정형에 사형이 존치되고 있는 상황을 전제로 말씀드리면, 사형제도는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형벌로서 일단 집행된 경우에는 오판이라 해도 돌이킬 수가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범행에 대한 책임의 정도와 형벌의 목적에 비추어 누구라도 그것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사형이 선고되는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 우리나라는 과거 국가보안법이 악용되었던 아픈 과거가 있고, 헌법재판소에서도 여러 차례 그 위헌성이 문제된 적이 있었던 만큼,국가보안법 존폐 여부에 대해서도 다양한 논의가 있어 왔습니다.

○ 헌법재판소는 2015. 4. 30. 국가보안법상 이적행위 조항(제7조 제1항), 이적단체가입 조항(제7조 제3항), 이적표현물 조항(제7조 제5항)에 대하여 합헌 결정을 하였고, 2023. 9. 26. 이적행위 조항 및 이적표현물 조항에 대하여 다시 한 번 합헌 결정을 하였습니다. 기본적으로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존중합니다.

○ 과거 국가보안법이 지나치게 확대 적용되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던 과거가 있었던 만큼, 법관으로서는 국가보안법을 적용할 때 입법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만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법률을 해석·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 지난 7월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에 관한 건을 심사하기 위한 청문회 일정을 19일과 26일로 의결하였음.

- 국회법 제125조에 따라 위원회에 회부된 청원을 90일 이내에 심사하여 국회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는 조항과 국회법 제65조 1항, 중요한 안건의 심사와 관련하여 청문회를 열 수 있다는 조항에 따라 위원회 의결로 청문회 실시의 건이 채택되었음. 이번 청문회가 탈헌법적, 탈법률적 청문회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 국회법 제65조 제1항은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중요한 안건의 심사와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 필요한 경우 증인 · 감정인 · 참고인으로부터 증언 · 진술을 청취하고 증거를 채택하기 위하여 위원회 의결로 청문회를 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중요한 안건"에 관하여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이와 같은 법률 규정에 관한 일반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 외에 대법관 후보자로서 이에 관하여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면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상고법원 도입 등 상고심 제도 개선과 현행 13인 체제의 대법관을 증원하는 방안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대법원은 최고법원으로서 당사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최후의 보루이자, 헌법 원리에 입각하여 법령을 최종적으로 해석 · 적용함으로써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법률적 쟁점에 관하여 규범적 기준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러나 대법원에 접수되는 사건 수를 고려할 때 대법관들이 모든 사건에 대하여 하급심 판결과 같이 상세한 논증을 담은 판결서를 작성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 따라서 상고제도의 개선이 필요하고, 상고법원 도입도 그중 하나의 방안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상고법원 도입 방안은, 상고심의 법령해석 통일 기능(대법원)과 권리구제 기능(상고법원)을 분리함으로써 대법원의 역할을 회복하고, 국민은 충실한 권리구제의 기회를 얻게 된다는 장점은 있으나, 대법원이 담당하는 사건과 상고법원이 담당하는 사건 사이의 분류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대법원의 판단을 받을 기회를 제한한다는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하는 동시에 법률심인 대법원의 기능도 충분히 발휘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하급심 강화를 통해 재판에 대한 승복률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이와 함께 큰 틀에서의 상고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검토도 지속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단기적으로는 상고이유서 원심법원 제출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고, 장기적으로는 상고심에서 심리할 실질적인 사건을 선별하는 상고심사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비교법적으로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 많은 선진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 상고심사제를 도입하더라도, 헌법을 부당하게 해석한 사건,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는 판단을 한 사건, 판결의 이유를 밝히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사건 등 권리구제가 필요한 사건들은 본안판단의 대상이 될 것이므로, 현행 제도 하에서 상고심에서 파기될만한 사건들은 상고심사제 하에서도 본안판단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 대법관 증원 역시 상고제도 개선 방안 중 하나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관의 수는 단순히 사건의 수에 비례하여 대법관을 증원하는 것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고, 통일적 법해석을 위하여 대법원 재판의 핵심인 전원합의체를 구성하고 유지할 수 있는 정도여야 하며, 상고제도 자체를 개선하는 방안과 결합하여 논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4. 상고심 적체와 대법원의 재판 지연에 관한 국민 불편이 증가하고 있음. 상고심 적체와 대법원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할 후보자의 의견은?

○ 상고심 적체와 대법원의 재판 지연이 생기는 원인으로 우선 상고사건의 증가를 꼽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최종심까지 판단을 받아보고자 하는 오래된 관념을 가지고 있는데다, 최근 사실관계가 복잡하고 쟁점이 어려운 사건의 증가와 함께 하급심의 결론에 쉽게 수긍하지 못하는 분위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조정·화해와 같은 대체적 분쟁해결수단으로 종국 되는 사건 수가 접수되는 사건 수와 비교하여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기도 합니다. 대법원에서 구체적 타당성 있는 결론을 내기 위해 채증법칙 위반 등의 사유로 사실인정 문제를 다루는 것 또한 사건당사자들에게 상고를 하게 만드는 이유일 수 있습니다.

○ 이러한 사건 수의 증가로 사건 처리에 대한 부담이 매우 과중하여 상고심 적체와 대법원의 재판 지연이 생기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종심이자 법률심으로서 사회의 규범적 가치기준을 제시하는 대법원의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에 상당한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 따라서 상고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상고이유서 원심법원 제출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고, 장기적으로는 상고심에서 심리할 실질적인 사건을 선별하는 상고심사제를 도입

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비교법적으로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 많은 선진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 상고심사제를 도입하더라도, 헌법을 부당하게 해석한 사건,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는 판단을 한 사건, 판결의 이유를 밝히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사건 등 권리구제가 필요한 사건들은 본안판단의 대상이 될 것이므로, 현행 제도 하에서 상고심에서 파기될만한 사건들은 상고심사제 하에서도 본안판단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하는 동시에 법률심인 대법원의 기능도 충분히 발휘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하급심 강화를 통해 재판에 대한 승복률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이와 함께 큰 틀에서의 상고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검토도 지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5.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사건은 6월 10일 사건 종결 처리되었음. 김건희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에 대한 판단 근거로 배우자 제재 규정이 없다는 이유를 들었고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없어 처벌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었음.

-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사나 사실관계 확인조차 거치지 않은 부실한 절차였다는 비판이 일고 있음. 국민의 법 감정상 국민권익위의 결정이 과연 옳은 결정인지? 후보자의 입장은?

- 김건희 여사가 청탁의 대가로 명품 등을 수수한 뒤, 김창준 전 미국 연방 하원의원의 국정자문위원 임명과 국립묘지 안장 등 청탁 내용을 참모진에게 검토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한 알선수재 혐의와 국민권익위의 직무 유기 혐의가 있을 수 있다는 일각의 지적이 있음. 이러한 지적에 대한 후보자의 법적 견해는?

○ 배우자가 공직자의 직무 관련 청탁을 부탁받으면서 일정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합니다)은 해당 공직자에 대하여 신고의무 및 반환의무 등을 부여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규정을 두고 있으나(청탁금지법 제9조 제1항, 제6항, 제22조 제1항 제2호), 배우자에 대하여는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 이와 같은 법률 규정에 관한 일반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 외에 대법

관 후보자로서 이에 관하여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면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지난 2020년 12월, 서울행정법원은 두 차례에 걸쳐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장관을 상대로 "직무집행 정지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음.

- 첫 번째 직무집행 정지처분 인용 이후인 12월 16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재판부 사찰 문건 작성·배포 ▲채널A 사건 감찰 ▲채널A 사건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을 이유로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림.

- 이에 윤 전 총장은 징계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고, 10개월만인 2021.10,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용석 부장판사)는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 1심 재판부는 윤 전 총장의 징계 사유 4건 중 3건인 '재판부 사찰 문건 작성·배포'와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가 인정된다고 판결했음.

- 재판부는 이런 행위가 검찰의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한 비위라고 밝혀. 결국 법원의 판단에 따르면 윤석열 감찰과 이에 따른 직무정지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하였는데 1심 판결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 1심 재판부가 인정한 "▲재판부 사찰 문건 작성·배포 ▲채널A 사건 감찰 ▲채널A 사건 수사 방해" 세 개의 각각 혐의별 후보자의 법리적 의견이 어떠한지?

○ 비록 해당 사건이 확정되었으나, 대법관 후보자로서 구체적인 사건의 당부에 관한 견해를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더군다나 해당사건에 제출된 주장과 증거를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고 있어 섣불리 의견을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7. 2023.2, 서울고등법원 행정1-1부(심준보 김종호 이승한 부장판사)는 윤 전 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처분이 유효하다고 판단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계처분 취소를 선고했음. 재판부는 징계 절차의 위법을 파기 사유로 들었음.

- '징계를 청구한 사람은 사건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는 감사징계법 17조에도 불구하고, 당시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1차 심의기일을 지정·변경하거나 징계위원을 신규 위촉해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로 지정한 행위를 두고 위법이라고 판단했음. 또한 징계위원 기피 신청과 징계 의결 과정에서 정족수 요건을 미달했고 징계위원회가 윤석열 총장 쪽의 증인 심문 청구를 합리적 이유 없이 기각한 것도 적법절차 원칙에 어긋나 위법하다고 봤음.

- 재판부는 "징계위원회의 원고(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의결 및 그에 터 잡은 (문재인) 대통령의 징계처분은 모두 위법하므로, 징계사유의 존부에 대해서는 나아가 판단할 것 없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대통령의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을 취소한다"라고 판시했음.

- 징계사유가 타당한지에 대한 판단을 배제한 채, 징계 절차의 위법성만 강조한 2심 재판부의 판결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 1심에서 승소한 변호인을 대거 해촉하고 교체한 징계 취소 소송

의 피고인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의 소위 "패소할 결심"이 논란을 낳기도 했음. 현직 대통령과 검사 재직시절부터 특수관계를 형성해 온 한 전 장관이 선임한 변호인단은 항소심 과정에서 재판부로부터 신문이 부실하다는 질책을 여러 차례 받기도 하였음. 항소심 변론을 부실하게 진행한 피고인측 변호인단의 소극적인 변론으로 인해 판결이 뒤바뀔 수밖에 없었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은?

- 현직 대통령에게 임면 권한이 있는 법무부장관이 과거 함께 근무했던 고위공직 당사자(검찰총장)의 징계취소 소송 변호인단을 새로 선임하고 항소심 변론을 부실하게 진행한 행위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형법상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에 적용될 수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후보자는 어떠한 입장인지?

○ 비록 해당 사건이 확정되었으나, 대법관 후보자로서 구체적인 사건의 당부에 관한 견해를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더군다나 해당사건의 세부적인 진행상황과 기타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고 있어 섣불리 의견을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8.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징계취소 소송 항소심 선고 이후, 법무부는 상고를 포기함으로써 2024. 1, 윤석열 대통령의 징계가 최종 취소되었음. 현직 대통령의 검찰총장 재임 당시의 비위로 진행된 징계라는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법률심을 통해 법리상 제대로 된 판결을 받았어야 했다는 비판이 있음. 대법관 후보자로서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에 비춰 법무부가 상고를 포기하여 대통령을 구제하고, 법무부장관은 집권여당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정치권에 데뷔했던 점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대통령의 중대 비위 의혹에 대해 법률심에서 위 사안을 다뤘어야 했다고 판단하는지?

○ 법무부의 상고 포기 경위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있는데다, 대법관 후보자로서 구체적인 사건의 상고 필요성에 관한 견해를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오석준 현 대법관이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에 재직하던 2011년 '운송수입금 800원으로 자판기 커피 2잔을 사 마신 버스기사의 해고는 정당하다'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고, 이후 2022년 대법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제 판결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겁다. 국민 우려에 십분 공감한다"라고 사과의 뜻을 밝히기도 하였음.

- 미국의 피오렐로 라과디아(1882~1947) 판사는 뉴욕 치안 판사로 재직하면서 1920년대 어느 겨울, 나흘을 굶고 식료품 가게에 들어가 10달러 정도의 빵을 훔친 혐의의 절도죄로 법정에 선 노인에게 10달러의 벌금형을 선고하며 "이 노인이 이렇게 어려운 삶을 살게 된 데에는 이 비정한 도시에 사는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돌보지 않은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이 잘못에 대해 나 자신에게 벌금 10달러를 선고합니다. 그리고 이 법정에 온 모든 참석자도 함께 잘못을 저질렀으므로 각기 5센트의 벌금을 선고합니다."라고 평결하였고 재판장에서 모은 57달러 50센트 중 벌금 10달러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노인에게 전달하였음.

- 오석준 대법관과 라과디아 판사의 평결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대법관 후보자로서 구체적인 판결의 당부에 관한 견해를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라과디아 판사의 일화에 관하여는, 판사 본인은 물론이고 방청객에게까지 책임을 묻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형사재판제도에 들어맞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다만, 국민들께서 법관에게 느끼는 아쉬움 때문에 그러한 일화가 자주 언급된다고 생각합니다. 법관으로서의 제 모습을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 평생을 법관에 봉직해 온 고위공직자로서, 평소 후보자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활동과 경험이 있는지?

○ 노블레스 오블리주 활동이라고 내세우기는 부끄럽지만, 2023. 2. 20. ~ 2024. 2. 4. '대법원 사랑나눔 자원봉사단'의 단장으로 활동한 적이 있습니다. 해당 봉사단은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불우한 이웃들과 고통을 함께하고 국민들에게 '봉사하는 법원', '따뜻한 법원'이라는 이미지 제고를 목표로 활동하였으며, 2023. 11 .28.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 봉사활동 진행, 장애인 보호시설 모랫말꿈터 등에 김장김치 및 라면 등 기부물품을 전달하였습니다.

○ 그 외에 많지 않은 금액이나마 종교단체 등에 꾸준히 기부해오고 있습니다.

10. 소위 50억 클럽 논란으로 뇌물수수 및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의원은 2023. 2. 8,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 배석판사 남민영·홍사빈)는 "곽상도 피고인의 아들 곽병채에게 화천대유가 지급한 50억 원은 사회 통념상 이례적으로 과다하다"면서도 "아들 계좌로 입금된 성과급 중 일부라도 피고인에게 지급되는 등 의사정이 없는 점을 감안하면 검찰 증거만으로 아들에게 지급된 돈을 피고인에게 지급된 것으로 평가하는 것은 어렵다", "뇌물 의심 되지만 증명되지 않는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음.

- 50억 퇴직금이 사회 통념상 이례적으로 과다하다는 설명에 동의하는지?

- 1심 재판부 판결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에 관하여 대법관 후보자로서 구체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양승태 대법원장 재임 당시 불거진 소위 사법농단(판사 사찰,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 변협회장 사찰 및 변협 외압행사, 민변 외압 행사, 재판 거래 등)에 법원행정처를 비롯한 사법행정기관의 위법 부당한 혐의에 대법원이 개입되었다는 의혹이 있었음. 사법농단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무엇인지? 법원행정처 등 사법행정 사무를 관장하는 대법원의 일원으로서 재발 방지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양승태 사법농단의 관련자들이 무죄를 선고 받았고, 이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많음. 헌법상 최고법원의 일원으로서 후보자가 대법관에 지명된다면 사법농단 판결상 유죄가 인정된 부분에 대한 재발방지책은 무엇이 있을지? 사법농단 각 혐의점들에 대해 후보자의 입장은?

○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는 국민 여러분에게 큰 실망을 드렸고, 이에 대하여 후보자 역시 법원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재판의 독립은 외부로부터 뿐만 아니라, 내부로부터도 지켜져야 하므로 사법행정이 사법지원의 영역을 넘어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법원 구성원 모두 경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다만,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에 관하여 대법관 후보자로서 구체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감사원은 지난 5월 14일 법원행정처에 보낸 공문을 통해「법원 노동조합 전임자 급여 지급실태 점검」을 위한 감사를 5월 16일부터 6월 5일까지 실시한다고 통보했음. 또한 5월 22일 자로 법원행정처에 공문을 보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 출신 전·현직 간부 14명에게 출석답변요구서 제출을 통보했음.

- 감사원법 제24조 3항에 따라 감사원이 감찰할 수 있는 직무감찰 대상에 법원 소속 공무원이 제외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이 직무권한을 남용하여 법원 내의 노동조합에 대한 부당한 직무감찰을 실시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었음. 이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 관련 이슈에 대해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서 사실관계 조사 중 감사원 감사가 시작되어 현재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대법관 후보자로서 감사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감사원의 사실상의 직무감찰이 진행되는 동안 법원행정처는 법원 소속 공무원의 평정비율 개정, 초과근무수당 삭감 등 법원 공무원들의 노동조건을 후퇴시키는 조치들을 시도하고 있다는 주장이 있음. 이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 법원공무원의 평정비율 개정은 사무관승진시험 폐지에 따른 평정 실질화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논의가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초과근무수당은 코로나 이후 초과근무가 증가한 반면 예산은 그에 맞춰 증액되지 못함에 따라 직원들에게 적정한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결국 두 사안은 각각 별개로 추진되거나 발생한 일로서 감사원 감사와 관련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3.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극단적 선택에 이른 배우 이선균 씨는 수사단계의 정보가 유출되었고, 인천지방검찰청의 수사관과 인천지방경찰청의 경찰관 등 다수의 공무원이 유출에 연루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음. 한편,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은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의 제출 이유를 설명하면서 공판청구 전에 피의사실과 범죄행위를 공표하였음.

- 위의 두 사례가, "형법 제126조(피의사실공표) 검찰, 경찰 그 밖에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피의사실을 공소제기 전에 공표(公表)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와 "형사소송법 제275조의2(피고인의 무죄추정)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의 조항에 위배되는 불법행위라는 지적이 있는 바, 이에 대한 후보자의 법적 견해는?

○ 수사기관의 피의사실공표는 무죄추정을 받는 피의자의 명예가 훼손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나, 헌법상 보장된 일반 국민의 알권리도 무시할 수 없는 중대한 가치이므로, 피의자의 명예와 일반 국민의 알권리가 균형을 이루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인 사실의 공표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대법원은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행위는 원칙적으로 일반 국민들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관하여 객관적이고도 충분한 증거나 자료를 바탕으로 한 사실 발표에 한정되어야 하고, 이를 발표함에 있어서도 정당한 목적 하에 수사 결과를 발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에 의하여 공식의 절차에 따라 행하여져야 하며,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여 유죄를 속단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현이나 추측 또는 예단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표현을 피하는 등 그 내용이나 표현 방법에 대하여도 유념하여야 하며, 나아가 피의사실과 불가분의 관계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사기관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사실관계’까지 피의사실에 포함시켜 수사 결과로서 발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22. 1. 14. 선고 2019다282197 판결)”는 취지로 판결한 바 있습니다. 저는 위 판결의 취지에 공감하고, 피의사실의 공표는 대법원이 제시한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와 같은 법률 규정에 관한 일반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 외에 대법관 후보자로서 이에 관하여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면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현행 공직자윤리법상 재산을 등록할 의무가 있는 등록의무자에게는 이해충돌을 방지할 의무도 규정하고 있음. 고위공직자 등 재산등록 의무자의 배우자가 의무자와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기업의 비상장주식을 사들여 자녀에게 매수하게 한 뒤, 6년 만에 30배가 넘는 차익을 거둬들이게 하는 행위에 대해 국민의 법 감정과 도덕적 잣대에 비춰 후보자의 의견은 어떠한지?

○ 대법관 후보자로서 다른 고위공직 후보자 관련 사항에 대하여 견해를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 의무가 있는 고위공직자의 자녀가 30배가 넘는 비상장주식 거래 차익을 통해 개발 호재가 있는 서울시내 지역의 다세대주택을 7.7억 원에 분양받았으며, 전세를 끼고 투자하는 소위 갭투자를 실행하였음. 재산등록 의무가 있는 고위공직자의 자녀는 별다른 소득이 없는 대학원생으로 확인되었음. 비상장주식의 거래가 완료되기 전에는 고위공직자의 배우자로부터 2억 원이 넘는 자금을 차용하였다가 비상장주식의 거래 완료 후, 이를 한 번에 상환하였음.

- 국민의 법 감정과 사회적으로 모범을 보여야 할 고위공직자의 사회적 책임에 비춰, 위 고위공직자가 임명 동의가 필요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면 공직자 후보자로서 처신이 적절했는지?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대법관 후보자로서 다른 고위공직 후보자 관련 사항에 대하여 견해를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현행 공직자윤리법 제4조에는 재산등록 의무자의 등록대상재산을 규정하고 있으며,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증권 및 주식도 등록대상재산으로 분류하고 있음. 지난 2023년 이균용 전 대법원장후보자는 공직자윤리법상 신고대상인 비상장주식의 신고를 누락하여 이에 사퇴한 바 있음. 국회의 임명동의와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공직후보자가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된다면 사퇴해야 하는 게 맞는지?

- 인사청문 과정을 통해 밝혀진 공직자윤리법 위반 내역에 대해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심의를 통해 징계 등을 사후에 결정하여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지? 후보자의 견해는?

- 인사청문 과정을 통해 밝혀진 공직자윤리법 위반 내역에 대하여는 불문에 부치는 게 적법한 판단일지?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공직자윤리법 제5조 제1항은 공직자의 재산 등록의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여 재산등록을 하지 아니하면, 공직자윤리법 제22조 제1호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해당 공직자에 대하여 해임 또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인사청문 과정에서 위반 내용이 밝혀지더라도 위 조항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 이와 같은 법률 규정에 관한 일반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 외에 대법

관 후보자로서 다른 고위공직 후보자 관련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면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형법은 14세 미만을 형사미성년자로 처벌하지 아니하고, 소년법은 형사책임연령이 아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을 이른바 촉법소년으로 보호처분의 대상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 최근 미디어의 발달, 경제성장 등의 영향으로 청소년들의 범죄가 늘어나거나 흉포해지는 경향에 대하여 형사책임연령을 낮추자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한 의견에 경청할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다만, 개별적인 책임능력과 달리 형사책임연령을 일괄하여 조정하면 책임능력이 갖추어졌다고 보기 힘든 소년까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우려가 있고, 아직은 어린 나이의 소년들에게 사회적 낙인 효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은 사회 환경의 변화, 범죄 예방의 필요성 및 방법, 해외 국가들의 사례, 청소년 처벌에 대한 재범방지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8. 고위공직자들의 자녀가 약탈적 학술지에 논문을 기고해서 해외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스펙 부풀리기에 사회적 비판이 있음. 일부 고위공직자의 자녀 또한 논문 대필을 통해 약탈적 학술지에 논문을 기고해 논란이 되었음. 이처럼 고위공직자들이 자녀의 대학 진학을 위해 학문 시스템의 허점을 악용하는 것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 대법관 후보자로서 특정인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건의 당부에 관한 견해를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 고위공직자를 역임한 퇴직자의 재직 당시의 징계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원고인 퇴직자와 피고인 주무부처 장관은 같은 기관에 소속하여 깊은 유대관계를 형성하였음. 이에 따라 재판의 적법성과 공정성에 대한 우려와 비판이 있었음. 해당 주무부처 장관은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하였음에도 1심 변호사들을 교체하고, 상고를 포기하여 징계취소가 확정되었음. 이와 같이 재판의 양 당사자가 이해관계나 친소관계가 얽혀있는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재판의 공정성과 적법성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대법관 후보자로서 특정인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건의 당부에 관한 견해를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23. 6. 28. 법사위 1소위에서 후보자는 간첩죄 개정안에 대해 '간첩을 친소관계에 따라 형량을 달리 적용해야 한다'고 발언하였는데 이에 대해 당시 언론과 법조계의 비판이 있었음. 현재 후보자의 입장은?

○ 형법 제98조는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 및 "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를 간첩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형법 제98조 제1항의 간첩이라 함은 적국을 위하여 적국의 지령, 사주 기타 의사의 연락 하에 군사상의 기밀사항 또는 도서물건을 탐지·수집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대법원 1975. 9. 23. 선고 75도1773 판결)"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 당시 21대 국회에서는 국회에서는 '적국'에 대한 간첩행위만을 처벌 대상으로 하는 기존 형법에 관하여, '외국과 외국인 단체'에 대한 기밀 누설도 군사기밀보호법위반죄, 산업기술보호법위반죄, 방위산업기술보호법위반죄가 아닌 '간첩죄'로 처벌하고자 하는 형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었습니다.

○ 저는 법원행정처 차장으로서 해당 법률안에 대한 법원행정처의 입장을 개진하였는데, 당시 제 발언의 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간첩죄에 있어서 '국가기밀'은 판례상 그 범위가 상당히 넓게 인정됩니다. 이는 현재 휴전 중인 북한이라는 '적국'이 분명히 존재하고 남북 간의 정보 교류가 엄격하게 통제되고 있는 현실에서, 북한으

로 정보 유출은 그 정보의 성격을 크게 따지지 않고 광범위하게 통제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유출행위의 가벌성에 대하여도 어느 정도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있기 때문입니다.

○ 그런데 간첩죄의 대상국을 외국 또는 외국인 단체까지 확장하는 경우, 우방국·동맹국 또는 이에 준하는 외국에 제공해도 되는 정보와 적국·준적국 또는 이에 준하는 외국에 제공해도 되는 정보의 종류에는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 또는 외국인 단체에 대한 간첩죄를 적국에 대한 간첩죄와 동일한 형태로 신설하여 북한과의 관계에서 폭넓게 정의되던 국가기밀의 개념을 외국 또는 외국인 단체 관련 행위에도 적용한다면, 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확장되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거나, 어떠한 정보가 유출되어서는 안 되는지 불분명하여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이 점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 저는 간첩죄 관련 형법 개정안에 대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국회에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같은 행위에 대하여 간첩죄는 물론 군사기밀보호법위반, 산업기술보호법위반, 방위산업기술보호법위반에도 해당될 여지가 있고, 그러한 경우에 각각의 적용법조상 법정형에 불균형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하여도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1. 현재 노랑봉투법은 여당이 반대하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까지 거론되고 있는 법안임.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노랑봉투법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21대 국회에 발의되었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와 재투표 부결로 인하여 폐기되었으나, 22대 국회에도 동일한 내용의 법률안이 발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다시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법률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는 것은 대법관 후보자로서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 최근 정부와 의료계에서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간 대치 국면에 서 있음. 최근 의료계 측이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대법원은 최종 기각을 내림. 이에 대해 동의하는지? 또한 각 대학 총장을 상대로 의료계가 낸 집행정지 신청이 10건 넘게 서울고법에 계류 중인데 판결에 대해 후보자의 입장은?

○ 대법관 후보자로서 진행 중이거나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건의 당부에 관한 견해를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 방통위 위원장 후보로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이진숙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 때 MBC 기획조정본부장을 지내며 언론노조 MBC 본부 간부들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음. 이에 대한 판결에 대해 동의하는지 대법관 후보자로서 견해는? 또한 MBC, YTN 바이든-날리면 보도에 따른 방심위의 법적제재가 있었음. 정부의 언론탄압이라는 국민적 의견에 대해 후보자의 법적 견해와 의견은?

○ 대법관 후보자로서 다른 고위공직자 후보자에 관한 사안이나 사건화가 될 수 있는 구체적 사안에 대하여 견해를 밝히는 것이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 최근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이 '채해병 특검법'과 관련해 대법원장이 특별검사 후보를 추천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음.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이에 따른 근거

○ 과거 대법원장이 특별검사를 추천한 전례가 있으므로, 독립성과 중립성이 높은 대법원장이 추천자로서 적절하다는 견해가 있는 반면, 특검에서 수사하여 기소한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될 경우 소추기관과 심판기관을 분리하는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대법관 후보자로서 국회의 입법권에 관한 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견해를 밝히는 것은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5.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은 주거공간 또는 대통령관저에 포함된다고 생각하는지? 대통령실 용산 이전 이후 경찰이 인근 지역 집회를 막아오고 있는데 이에 대한 법적 판단과 의견은?

○ 용산 대통령 집무실은 관저가 아니므로 집회를 허용해야 한다는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올해 4월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 기본적으로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합니다.

○ 헌법상 집회의 자유는 국민의 집단적 의사 표현을 보호함으로써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기본권으로, 집회의 자유가 가지는 헌법적 가치, 집회에 대한 허가제 금지를 선언한 헌법 취지를 고려하여, 국가의 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이유로 법률로 제한을 하는 경우에도 그 제한은 필요·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다만 대법관 후보자가 그 이상의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 보이스피싱, 전세사기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 최근 보이스피싱 사기, 전세사기, 보험사기 사건 등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되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사기범죄의 수가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사기범죄 처벌강화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사기범죄 양형기준은 2011년 설정, 시행된 이후 그 권고 형량범위가 수정되지 않아 그 후의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범죄양상이나 국민인식의 변화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제9기 양형위원회는 현재 사기범죄 양형기준과 함께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양형기준을 수정하여 보이스피싱을 포함한 사기범죄 관련 양형기준 전반을 정비하기로 의결하고, 양형실무에 대한 조사와 분석 등을 거쳐 양형기준 설정 및 수정을 위한 회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향후 양형위원회에서 사기범죄 양형기준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합리적으로 수정하여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7. 검찰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는 검찰권의 폐해에 대한 사회적 비판에 따라 마련된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이 지난 2022년부터 시행되어 오고 있음.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의 개정 취지에 맞게 법이 시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시행령을 개정하여 국회의 입법 취지를 형해화하고 본법의 의미를 퇴색시켰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음.

- 개정 검찰청법에 따라 검찰이 명예훼손 사건을 직접 수사할 수 없음에도 검찰은 대검찰청 예규를 근거로 수사를 강행했으며, 특히 보도의 신속성을 담보해야 하는 언론의 특성상 검찰의 무분별한 명예훼손 사건 수사로 인해 언론의 자유와 독립성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 또한 커지고 있음. 일례로 뉴스타파 前 전문위원 신학림 씨는 대통령을 명예훼손했다는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았고, 기소되었음.

- 법률에 위반되는 내용의 검찰 내부지침인 예규로 검찰 수사권을 무한하게 확장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대법원판례에 따르면 ① 법률의 위임 규정 자체가 의미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여 위임의 한계를 분명히 하고 있는데도 하위 법령이 문언적 의미의 한계를 벗어났다든지, ② 위임 규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의미를 넘어 범위를 확장하거

나 축소함으로써 위임 내용을 구체화하는 단계를 벗어나 새로운 입법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 이는 위임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은 법률 규정에 관한 일반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 외에 대법관 후보자로서 더 이상의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면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재 대법원의 위헌명령, 규칙, 처분심사권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대책은 무엇인지?

○ 대법원에서 명령 또는 규칙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에서 심리하고(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 제1호) 그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다만 합헌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부에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은 구체적 사건을 판단함에 있어 명령, 규칙 등의 위헌 여부를 항상 염두에 두고 판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사자들이 근거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주장을 하는 경우가 빈번하고, 적법하고 타당한 결론을 내기 위해서는 해당 명령, 규칙 등의 위헌성 판단이 항상 전제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 검찰의 과도한 영장 행사의 폐해를 방지하고자 개인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와 수색을 제한하고 사전심문제를 도입하여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들이 제안되고 있고

논의되고 있음. 이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 과도한 압수·수색으로 인하여 국민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침해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사회의 특성상 압수·수색을 통하여 휴대전화, 컴퓨터 등에 저장된 내밀한 사생활 정보까지 무분별하게 압수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사법부가 적절히 통제하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는 점에 공감합니다. 무분별한 압수수색영장의 발부를 제한하기 위하여 개인의 주거지 등 일정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의 제한 및 사전심문제의 도입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 압수·수색영장의 발부를 신중히 해야 한다는 점에는 깊이 공감하고, 이를 위하여 법관들이 수사의 밀행성과 필요성을 존중하면서도,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조화롭게 고려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심리할 수 있는 수단을 부여하는 등의 제도적 개선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먼저 무분별한 압수수색영장의 발부를 제한하기 위하여, 압수·수색영장 발부 단계에서 압수 대상 정보를 최대한 선별할 수 있도록 심리 여건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장소에 대한 제한도 이 단계에서 검토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도는 압수·수색 영장 발부 여부 및 그 범위를 정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법관이 필요성과 대상의 특정 등 영장발부 요건이 충족되었는지에 대하여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설명을 청취할 수 있게 함으로써, 선별적인

압수·수색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나아가 압수된 정보가 수사 및 재판 종료 후 확실히 폐기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 역시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한편 이와 같은 제도의 도입은 대법원 규칙보다는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고, 최근 22대 국회에서 관련 법률안이 발의된 만큼, 국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지혜로운 결론을 도출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28. 헌법에서는 독립적인 사법기관으로서 법원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명시하고 있으며, 조직의 구성은 물론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임명 및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음. 반면 법무부의 외청 행정기관인 검찰청은 독립적인 사법기관이 아닌 행정기관으로서 검찰을 구성하는 공무원들 역시 기존의 행정 공무원과 신분상의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독점적 특권을 누려왔다는 비판이 있어 왔음.

- 법원과 대등한 검찰의 각급 검찰청의 설치와 법관과의 직급체계의 유사성, 앞서 서술한 시행령과 검찰 예규를 통한 권한 통제의 비대칭성 등 입법·사법·행정 권력을 넘나드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해 왔다는 비판이 있음.

- 검찰이 법무부의 외청으로서 검사가 행정부의 국가공무원으로서 본연의 역할과 기능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검찰개혁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한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개정안은 오랜 기간 국회에서 치열한 논의를 거쳐 우여곡절 끝에 입법되었으나, 여전히 검찰 직접 수사 범위, 수사와 기소 주체 분리를 비롯한 다양한 부분에서 많은 논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검찰 기관의 구성,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 수사와 기소 주체 분리 등 행정부 내부에서 각 기관의 권한 배분 문제는 법조계와 학계

등 전문가의 의견, 해외 사례와 국민의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회에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하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대법관 후보자로서 더 이상의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는 것은 권력분립의 원칙상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1)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를 담당하는 공소청으로 재조정하여 공소청 소속 검사는 수사의 적법성 통제 및 공소의 제기, 유지 등의 직무만을 수행하게 하며 2)검사의 수사권을 모두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관하며 3)기소권에 대한 시민 통제를 체계화 하기 위한 기소심의위원회의 설치하고 4)검사의 지위를 행정부 소속 공무원으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소위 "공소청법" 제정안이 최근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음. 후보자는 공소청법 제정안의 위의 4개 주요 내용별로 각각 입장이 어떠한지?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재구성하는 방안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입장은?

○ 검찰 기관의 구성,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 수사와 기소 주체 분리 등 행정부 내부에서 각 기관의 권한 배분 문제는 법조계와 학계 등 전문가의 의견, 해외 사례와 국민의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회에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하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대법관 후보자로서 더 이상의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는 것은 권력분립의 원칙상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중대범죄수사청법"제정안은 1)검사의 직접 수사가 폐지되며 2)중대범죄에 대한 수사를 중대범죄수사청이 맡게 됨. 3)직접수사대상 또한 부패, 경제범죄에 더해 공직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 범죄, 대형참사, 마약범죄수사로 확대하고, 국가 반부패 수사에 대응토록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며 4)중수청을 검사가 속하지 않은 수사조직으로 강제수사를 위한 영장청구는 공소청을 통하게 함으로써 겸제와 감시의 균형으로 수사권의 오남용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논의되고 있음.

- 중대범죄수사청법 제정안에 대한 위 4개 주요사항별 각각 후보자의 입장과 견해는?

- 중대범죄수사청이 검사의 직접수사권 이관에 그치지 않고 독점적으로 행사되는 국가형벌권의 엄정한 집행에 앞장서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떠한 입장인지?

○ 검찰 기관의 구성,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 수사와 기소 주체 분리 등 행정부 내부에서 각 기관의 권한 배분 문제는 법조계와 학계 등 전문가의 의견, 해외 사례와 국민의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회에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하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대법관 후보자로서 더 이상의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는 것은 권력분립의 원칙상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 국회에서 논의 중인 "수사절차법" 제정안과 관련된 내용임.

- 아래 수사절차법 제정안에 대한 7개의 각 주요 내용별 후보자의 견해와 입장은?

-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온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수사 적법절차에 관한 내용을 반영.

1) 수사의 주체가 검사가 아닌 사법경찰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법안 전체에서 관철, 관통되도록 함.

- 다만, 현행법상 검사가 수사권을 갖는 공수처, 특별검사의 임명에 관한 법률 및 국회 입법에 의한 특별검사, 군검사의 경우에는 수사절차에서 이 법을 준수하도록 함(법안 제2조).

2) 불구속수사원칙, 증거수사주의, 별건, 타건 수사 금지 규정 등 수사에 있어서의 적법절차와 인권보호 관련 원칙 및 수사기관이 준수해야 할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법안 제3조, 제4조).

3) 형사소송법의 수사에 관한 규정을 쉽게 이해하고 찾아볼 수 있도록 조문의 편제와 나열을 국민 눈높이에 맞춤.

4) 피의자 수사에 있어서 피의자의 인권 및 적법절차의 구현을 위한 여러 규정들을 마련(법안 제34조 ~ 제42조).

5) 압수수색 영장 발부 요건을 강화해 인권침해를 최소화하고자 함.

- 주거지 압수수색 영장의 발부 요건을 강화하고(법안 제75조 제2항), 전자정보 압수수색 또한 최근 대법원에서 입법예고한 형사소송규칙 안을 입법으로 반영(법안 제82조).

6) 수사 중 언론에 의한 명예형 인격살인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형사사건 공개금지를 상세하게 입법(법안 제4장 제105조 ~ 제113조).

7) 별건수사, 타건으로 본건에 대한 진술을 강요하는 행위(법안 제114조), 수사기밀 공개 내지 누설하는 경우/형사사건 관련하여 언론기관 종사자와 개별접촉하는 경우(제115조), 수사과정에서 취득한 서류 또는 물건에 대한 목록을 작성하지 않거나 증거기록 편철을 누락한 때(법안 제116조) 처벌하도록 함.

- 특히 상대방이 수사기밀을 누설받아 이를 공개하는 경우를 처벌하도록 함(제115조 제2항).

- 누설받은 자는 처벌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로 인한 처벌의 사각지대를 해소.

○ 우리나라 헌법(제27조 제4항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과 세계인권선언(제11조 제1항 “모든

형사피의자는 자신의 변호에 필요한 모든 것이 보장된 공개 재판에서 법률에 따라 유죄로 입증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받을 권리를 가진다.")은 물론이고 대부분 국가에서 무죄추정의 원칙은 불리한 처지에 놓여 인권이 유린되기 쉬운 피의자나 피고인의 지위를 옹호하여 형사절차에서 불이익을 필요 최소한에 하자는 것으로 수사절차에서 공판절차에 이르기까지 형사절차의 전과정을 지배하는 원칙입니다.

○ 형사수사절차에서 무죄추정의 원칙 및 적법절차의 원칙은 준수되어야 하고, 임의수사를 원칙으로 하면서 조사 대상자들의 인격과 명예가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수사절차에 관한 규정은 이와 같은 점들을 고려하여 법조계와 학계 등 전문가의 의견, 해외 사례와 국민의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회에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하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대법관 후보자로서 더 이상의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는 것은 권력분립의 원칙상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 국회에서 논의 중인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된 내용임.

- 아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3개의 각각 주요 내용별 후보자의 견해와 입장은?

1) 수사절차법 제정을 통해 형사소송법상 수사편을 분리 독립

2) 형사소송법 전반에 존재하는 검사 수사권의 잔재 규정을 정비

3) 재정신청제도 및 준항고 제도를 실효성 높게 개정

- 재정신청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1. 필요적 심문 및 필요적 증거조사 도입, 2. 3개월 시한 폐지, 3. 심리 공개를 규정하여 재정신청이 활성화, 신속화할 수 있도록 함.

- 준항고 제도의 활성화, 신속화를 도모하기 위해 필요적 심문 제도 및 심문 종료 후 2주 내 결정을 하도록 함.

○ 수사절차법의 제정,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 수사와 기소 주체 분리, 재정신청 제도 등에 관하여 법조계와 학계 등 전문가의 의견, 해외 사례와 국민의 여론 등을 충분히 수렴하여, 국회에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하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대법관 후보자로서 더 이상의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는 것은 권력분립의 원칙상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 언론에 보도된 대검찰청 예규 '검사의 수사개시에 대한 지침'을 보면 제7조 1항은 '범인·범죄사실·증거 중 어느 하나 이상을 공통으로 하는 등 합리적 관련성이 있는 범죄의 경우'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 보고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개정 검찰청법의 취지가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로 명시한 부패·경제범죄, 경찰공무원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이 범한 범죄, 경찰이 송치한 사건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 제한하고 있는 바, 검찰의 예규 및 시행령 개정을 통한 수사 권한 확대로 인해 그 외의 범죄도 수사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줬다는 비판이 있음.

-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지난 7월 12일, "검사 수사개시에 대한 지침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에 정보 공개를 판결하였음. 행정법원의 판결 결정에 대한 취지에 대한 후보자의 이해와 견해는?

- 비공개된 대검찰청 예규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형사사법절차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해결책은?

○ 대법관 후보자로서 진행 중인 사건의 당부에 관한 견해를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 노동운동을 탄압하는 데 악용됐던 노동쟁의조정법의 '제3자 개입금지조항'이 업무방해방조죄라는 이름으로 부활한 게 아닌지 우려가 있음. 업무방해 방조죄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대법원은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나 노동조합이 노동3권을 행사할 때 제3자의 조력을 폭넓게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근로자나 노동조합에 조력하는 제3자도 헌법 제21조에 따른 표현의 자유나 헌법 제10조에 내재된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가지고 있으므로, 위법한 쟁의행위에 대한 조력행위가 업무방해방조죄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는 헌법이 보장하는 위와 같은 기본권이 위축되지 않도록 업무방해방조죄의 성립 범위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여(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5도12632 판결), 근로자의 쟁의행위에 대한 조력행위와 관련하여 업무방해방조죄의 성립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판결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 그러한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충분히 존중하고, 특히 노동운동에 대한 탄압수단으로 업무방해방조죄가 무분별하게 적용되지는 않는지 항상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청문회 준비 요령

2024. 7.

대법관후보자박영재

- 목　　차 -

《김기표 위원 서면질의》 ····· 3

6. 후보자가 담당했던 사건 중 가장 힘들었던 판결과 그 이유는? ····· 3

19. 법관 육아휴직 관련 육아휴직자 대체 인력 운용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4

41. 과거 법원행정처의 '공'과 '과'를 평가한다면? ····· 5

55 코로나 이후 영상재판 확대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 8

김기표 위원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

《김기표 위원 서면질의》

6. 후보자가 담당했던 사건 중 가장 힘들었던 판결과 그 이유는?

○ 가장 판결 내리기 어려웠던 사건으로는 부산고등법원에서 담당하였던 ‘발달장애인의 영아 투기 살인 사건’이 기억납니다.

○ 1세에 불과한 어린 피해자를 난간 아래로 집어던져 살해하였다는 사실로 발달장애 1급의 18세 피고인이 기소가 되었던 사건입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심신상실 상태를 인정하여 무죄판결을 하고, 치료를 받을 필요와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치료감호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항소심 재판장으로서 관여하였던 저는 결과의 참담함과 자신의 행위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발달장애인인 피고인의 특성 사이에서 깊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무죄판결은 유지하고, 항소심에서의 추가적인 감정결과 등을 종합하며 치료감호는 받아들였습니다. 정신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처우에 대해 우리 사회가 깊이 고민해야 할 숙제를 던져준 사건이었습니다.

19. 법관 육아휴직 관련 육아휴직자 대체 인력 운용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 법관 육아휴직 인원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2019년 128명, 2020년 104명, 2021년 106명, 2022년 128명, 2023년 144명, 2024년은 7. 1. 기준으로만 해도 134명). 육아휴직은 법에 보장된 제도인데다 사회적 문제인 저출생 해소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충분히 보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그런데 법관은 법관정원법에 의해 정원이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데다 21대 국회에서 법관증원도 이루어지지 않아 육아휴직자를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이 기본적으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자가 생기는 경우 기존 육아휴직 법관이나 해외연수 법관의 복귀를 기다려서 충원하는 방법으로 겨우 공석을 메꾸는 수준입니다. 법관직의 중요성, 특성 등으로 인해 일반공무원처럼 한시임기제 공무원 등의 제도도 활용하기 어렵습니다. 그에 따라 육아휴직, 육아기 단축근무는 물론이고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법관이 있는 경우 소속 법원의 동료법관이 업무를 나누어서 담당해야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 결국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단축근무 등의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조속히 법관증원이 이루어져야 하고, 정원 외로 정년퇴직 법관의 계속 근무를 가능케 하는 시니어법관제도의 도입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41. 과거 법원행정처의 '공'과 '과'를 평가한다면?

○ 사법행정이란 법원의 조직, 인사, 예산, 회계, 시설관리 등과 같이 사법부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행정작용을 의미합니다.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법원행정처의 사무를 관장하고, 법원의 사법행정사무를 감독합니다. 헌법이 대법원장에게 인사권 등 사법행정권을 부여한 것은 삼권분립의 정신에 따라, 사법권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성, 사법부의 안정적 운영을 바라는 주권자인 국민의 의지와 결단의 산물이라고 생각합니다.

○ 법원행정처의 '공'으로는 개별 법원이 단독으로 하기 어려운 재판지원 및 사법서비스를 개선하고 발전시켰다는 점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을 해왔으나, 최근의 예로, 코로나 사태 이후 영상재판시스템을 확대하고, 신속하게 제도적·기술적으로 검토하여 각급 법원의 영상재판시스템을 지원한 것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전자소송 시스템도 구축하였습니다. 형사전자소송이 도입되면 소송기록의 전자화로 기록에 대한 접근권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어 피고인의 방어권이나 피해자의 절차관여권 등 소송관계인의 기본권이 크게 강화되고, 사법절차의 투명성이 제고되어 사법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도산사건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2023년 수원회생법원과 부산회생법원을 성공적으로 출범시키기도 하였습니다. 2023. 3. 개원한 수원회생법원·부산회생법원의 경우 개원 전·후 법인회생사건 처리기간이 절반으로 단축(개시

결정까지 소요기간 : 수원 개원 전 61일 ⇨ 현재 28일, 부산 개원 전 97일 ⇨ 현재 45일)되는 등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채무자의 신속한 갱생과 회복을 돕고 도산사건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현재 재판지연 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법관 및 재판연구원의 충원을 위해 노력하고, 법조일원화 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각급 법원의 의견과 각계 각층의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관련 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그 실행을 위해서도 다각도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 법원행정처의 '과'로, 이른바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는 국민 여러분에게 큰 실망을 드렸고, 이에 대하여 후보자 역시 법원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재판의 독립은 외부로부터 뿐만 아니라, 내부로부터도 지켜져야 하므로 사법행정이 사법지원의 영역을 넘어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 법원은 사법행정권 남용사태로 인해 뼈아픈 반성을 한 뒤, 기존에 각급 법원에 설치되어 있던 판사회의, 사무분담위원회 외에도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상설화, 사법행정자문회의 및 그 뒤를 이은 사법정책자문위원회 등 민주적 통제를 할 수 있는 여러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법관인사위원회,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등도 외부의 의견을 재판과 사법행정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모든 제도들이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할 수는 없으나, 과거의 사법

정책 중 긍정적으로 평가받는 부분은 더욱 발전시키되, 재판지연 등 새로운 당면한 과제는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국민의 다양한 의견에 더욱 귀 기울이겠습니다.

【김기표 위원 서면질의】

55. 코로나 이후 영상재판 확대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 코로나 사태 이후 영상재판이 비약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영상재판이 없던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영상재판의 확대 및 활성화를 당연한 전제로 두고, 영상재판이 문제없이 진행될 수 있는 제도적·기술적 지원책 마련에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영상재판 또한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재판과 같게 취급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참여자의 모자이크 처리나 음성변조 등의 개인정보 보호조치는 공개재판의 원칙에 배치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도 공개재판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 민사재판에서는 이미 대부분 영상재판이 도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형사재판의 경우에는 화면 사각지대에서 증인을 협박하고 있다가 적발된 외국사례와 같이 현장재판과 다른 환경으로 인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판중심주의가 강조되는 형사재판의 경우 그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더욱 세심한 준비를 거친 이후에야 영상재판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